

2018

기획연구 2018-03

전라북도 복지기준선 설정을 위한 기초연구

연구진 이종섭 · 조원지 · 송용호

Jeonbuk Institute

기획연구 2018-03

전라북도 복지기준선 설정을 위한 기초연구



연 구 진

연 구 책 임	이 중 섭 •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공 동 연 구	조 원 지 •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
	송 용 호 •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관리 코드 : 17GI03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목 차 | Contents

제I장.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II장. 중앙정부 복지기준선 현황 검토	7
1. 복지기준선 개념 및 필요성	8
2. 국내외 복지기준선 사례검토	11
제III장. 중앙정부 복지기준변화 및 전라북도 복지현황 검토	37
1. 중앙정부의 복지소득기준 검토	37
제IV장. 전라북도 복지기준선 욕구진단	51
1. 전라북도 복지기준선 욕구	51
제V장. 전라북도 복지기준선 설정	161
1. 전라북도 복지기준선 설정 방향	161
2. 소득분야 복지기준선 설정	165
3. 돌봄 및 교육분야 복지기준선 설정	175
4. 건강분야 복지기준선 설정	197
5. 일자리 분야 복지기준선 설정	213
6. 복지전달체계 분야 복지기준선 설정	228
참 고 문 헌	241

표목차 | Contents

〈표Ⅱ-1〉 신정부의 복지정책	7
〈표Ⅱ-2〉 복지기준선의 정의 및 개념	8
〈표Ⅱ-3〉 최저기준선과 적정기준선 비교	9
〈표Ⅱ-4〉 사회복지정책과 국가복지정책의 보장 수준	9
〈표Ⅱ-5〉 전라북도 복지기준선 설정의 필요성	10
〈표Ⅱ-6〉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평가지표	14
〈표Ⅱ-7〉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복지분야 성과목표	15
〈표Ⅱ-8〉 분야별 대표지표	16
〈표Ⅱ-9〉 2016년 대표 통계지표현황(162개)	17
〈표Ⅱ-10〉 2016년 대표 통계지표현황(162개)	18
〈표Ⅱ-11〉 타지역 복지기준선 영역 비교	19
〈표Ⅱ-12〉 국내외 복지기준선 분야별 비전	20
〈표Ⅱ-13〉 서울형 복지기준선 방향	21
〈표Ⅱ-14〉 서울형 복지기준선 세부 내용	22
〈표Ⅱ-15〉 부산형 복지기준선 세부내용	23
〈표Ⅱ-16〉 대구광역시 복지기준선 세부내용	24
〈표Ⅱ-17〉 광주광역시 복지기준선 세부내용	25
〈표Ⅱ-18〉 대전광역시 복지기준선	26
〈표Ⅱ-19〉 세종시 복지기준선	27
〈표Ⅱ-20〉 전라남도 복지기준선	28
〈표Ⅱ-21〉 시도별 영역별 복지기준선 최저기준 비교(1)	29
〈표Ⅱ-22〉 시도별 영역별 복지기준선 최저기준 비교(2)	30
〈표Ⅱ-23〉 시도별 영역별 복지기준선 적정기준 비교(1)	31
〈표Ⅱ-24〉 시도별 영역별 복지기준선 적정기준 비교(2)	32
〈표Ⅲ-1〉 신정부의 가구원수별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37
〈표Ⅲ-2〉 기준중위소득	38
〈표Ⅲ-3〉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계획	40
〈표Ⅲ-4〉 중위소득 활용 지원복지사업 현황	41
〈표Ⅲ-5〉 중위소득 활용 지원복지사업 현황	42
〈표Ⅲ-6〉 중위소득 활용 지원복지사업 현황	43
〈표Ⅲ-7〉 중앙-부산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 비교	44

〈표Ⅲ-8〉 부산형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지원액	44
〈표Ⅲ-9〉 부산형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지원액	45
〈표Ⅲ-10〉 아동돌봄정책의 변화	46
〈표Ⅲ-11〉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재정소요 추계	47
〈표Ⅲ-12〉 노인돌봄정책의 변화	48
〈표Ⅳ-1〉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및 추이	51
〈표Ⅳ-2〉 소득원천별 연평균소득액 현황	52
〈표Ⅳ-3〉 소득정도별 지역별 가구 구성비	53
〈표Ⅳ-4〉 신청부의 복지기준선 적용 시 적용대상 구성비	54
〈표Ⅳ-5〉 19세 미만 아동가구의 소득원천별 연평균소득액 현황	55
〈표Ⅳ-6〉 19세 미만 아동가구의 소득구성비	56
〈표Ⅳ-7〉 5세 미만 아동가구의 분위별 가구비율	57
〈표Ⅳ-8〉 19세 미만 아동가구의 분위별 가구비율	58
〈표Ⅳ-9〉 소득원천별 노인의 연평균소득현황(개인)	59
〈표Ⅳ-10〉 65세 이상 노인인구 빈곤추정	60
〈표Ⅳ-11〉 노인 빈곤율 추정	60
〈표Ⅳ-12〉 가구원수별 기초생활수급 가구 현황	61
〈표Ⅳ-13〉 가구유형별 기초생활수급 가구 현황	62
〈표Ⅳ-14〉 기초생활수급별 지원예산 현황	63
〈표Ⅳ-15〉 기초연금수급자 및 지원금액 현황	63
〈표Ⅳ-16〉 장애수당 수급자 현황	64
〈표Ⅳ-17〉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현황	65
〈표Ⅳ-18〉 장애연금 수급자 현황	65
〈표Ⅳ-19〉 긴급복지지원 건수 및 지원금액	66
〈표Ⅳ-20〉 전라북도 연령별 인구 및 빈곤인구 현황	67
〈표Ⅳ-21〉 전라북도 연령별 빈곤율 현황	68
〈표Ⅳ-22〉 푸드뱅크 기부자 통계	68
〈표Ⅳ-23〉 푸드뱅크 기부물품 제공 통계(2016년 말)	69
〈표Ⅳ-24〉 푸드뱅크 기부물품 접수 통계(2016년 말)	69
〈표Ⅳ-25〉 소득영역 주요지표 비교	70
〈표Ⅳ-26〉 영유아 및 아동 돌봄정책	71
〈표Ⅳ-27〉 영유아 인구 현황	72
〈표Ⅳ-28〉 1인 가구 현황	73
〈표Ⅳ-29〉 노인 1인 가구 현황	74
〈표Ⅳ-30〉 전라북도 연령별 1인 가구 현황	75
〈표Ⅳ-31〉 지역별 보육시설 이용율	76

〈표IV-32〉 보육시설 현황	76
〈표IV-33〉 전라북도 14개 시군별 설립유형별 보육시설 현황	77
〈표IV-34〉 지역별 보육시설 현황	78
〈표IV-35〉 특수보육현황	79
〈표IV-36〉 평가인증 보육시설 현황	80
〈표IV-37〉 공공형 어린이집 현황	81
〈표IV-38〉 가정양육수당 지급현황	82
〈표IV-39〉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현황	83
〈표IV-40〉 지역별 지역아동센터 현황 및 추이	84
〈표IV-41〉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현황	85
〈표IV-42〉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현황	85
〈표IV-43〉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수	86
〈표IV-44〉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현황	87
〈표IV-45〉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대상 및 서비스 내용	87
〈표IV-46〉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현황	88
〈표IV-47〉 학교급식 현황	89
〈표IV-48〉 5세 미만 자녀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정도	90
〈표IV-49〉 6세 이상~고등학생 자녀의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정도	90
〈표IV-50〉 학교급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91
〈표IV-51〉 아동학대 발생현황	92
〈표IV-52〉 ADL 도움필요정도(장애인)	93
〈표IV-53〉 ADL 도움필요정도(장애인)	94
〈표IV-54〉 IADL 도움필요정도(장애인)	95
〈표IV-55〉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현황	96
〈표IV-56〉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재판정 현황	97
〈표IV-57〉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현황	98
〈표IV-58〉 장애인 특별교통도입현황	99
〈표IV-59〉 노인인구 추계	100
〈표IV-60〉 고령인구의 비율	100
〈표IV-61〉 독거노인 비율	101
〈표IV-62〉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 및 접수율	101
〈표IV-63〉 ADL 도움필요정도(노인)	102
〈표IV-64〉 IADL 도움필요정도(노인)	103
〈표IV-65〉 IADL 도움필요정도(노인)	104
〈표IV-66〉 일상생활 도움 여부(노인)	105
〈표IV-67〉 지역별 장기요양보험 신청자 현황	106
〈표IV-68〉 장기요양 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107

〈표IV-69〉 장기요양 등급별 현황	107
〈표IV-70〉 돌봄 및 교육영역 주요지표 비교	108
〈표IV-71〉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인원 현황	109
〈표IV-72〉 영유아 건강검진 미수검자 현황	110
〈표IV-73〉 한번도 검진을 받지 않은 건강검진 미수검자 현황	111
〈표IV-74〉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현황	112
〈표IV-75〉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	112
〈표IV-76〉 영유아 건강검진 종합판정 결과	113
〈표IV-77〉 예방접종률	113
〈표IV-78〉 영유아 예방접종 일정표	114
〈표IV-79〉 보건기관 이용율	114
〈표IV-80〉 치매환자 등록현황	115
〈표IV-81〉 주요 질병 현황	116
〈표IV-82〉 노인 우울증 추정	117
〈표IV-83〉 자살자 수	117
〈표IV-84〉 공공의료기관 현황	118
〈표IV-85〉 건강보험 연체자 현황	119
〈표IV-86〉 공공보건의료기관 수	120
〈표IV-87〉 공공보건의료기관 병상 수	121
〈표IV-88〉 공공의료기관 취약계층 진료 비중	122
〈표IV-89〉 공공의료기관 진료과목 현황	123
〈표IV-90〉 공공의료기관 전문의 현황	124
〈표IV-91〉 건강영역 주요지표 비교	125
〈표IV-92〉 경제활동참가율	126
〈표IV-93〉 경제활동인구현황	127
〈표IV-94〉 연령별 경제활동참여 인원	128
〈표IV-95〉 연령별 경제활동 참여인구 현황	128
〈표IV-96〉 연령별 경제활동참여율	129
〈표IV-97〉 장애인경제활동 상태	130
〈표IV-98〉 장애인경제활동 상태	131
〈표IV-99〉 장애인경제활동 상태	131
〈표IV-100〉 시도 장애인 고용율 현황	132
〈표IV-101〉 장애인 의무고용율	132
〈표IV-102〉 장애인취업자 현황	133
〈표IV-103〉 장애인취업자 현황	134
〈표IV-104〉 연령별 취업자 현황	135
〈표IV-105〉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	136

〈표Ⅳ-106〉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137
〈표Ⅳ-107〉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현황	138
〈표Ⅳ-108〉 공익활동 참여인원 누적현황	139
〈표Ⅳ-109〉 시장형 사업단 참여인원 누적현황	140
〈표Ⅳ-110〉 원하는 희망근로 종류	141
〈표Ⅳ-111〉 노인일자리 참여의향	141
〈표Ⅳ-112〉 노인취업알선 실적	142
〈표Ⅳ-113〉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2016년 기준)	143
〈표Ⅳ-114〉 일자리영역 주요지표 비교	144
〈표Ⅳ-115〉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현황	145
〈표Ⅳ-116〉 사회복지자원봉사 현황	146
〈표Ⅳ-117〉 아동복지시설 현황	147
〈표Ⅳ-118〉 아동복지시설 정원 및 현원현황	147
〈표Ⅳ-119〉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	148
〈표Ⅳ-120〉 사회복지관 수	149
〈표Ⅳ-121〉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150
〈표Ⅳ-12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현황	151
〈표Ⅳ-123〉 애플 때 병원을 미이용 경험	152
〈표Ⅳ-124〉 최근 1년간 치과진료 가지 못한 경험	153
〈표Ⅳ-125〉 노인복지 이용시설 현황	154
〈표Ⅳ-126〉 정신요양시설 및 입소자 수(2016. 12월 기준)	155
〈표Ⅳ-127〉 전라북도 지역사회복지시설 현황	156
〈표Ⅳ-128〉 전라북도 지역사회복지시설 현황	156
〈표Ⅳ-129〉 사회복지예산 비율	157
〈표Ⅳ-130〉 지역별 세입예산(순계) 규모	158
〈표Ⅳ-131〉 복지전달체계영역 주요지표 비교	158
〈표Ⅴ-1〉 전라북도 복지기준선의 분야별 목표	161
〈표Ⅴ-2〉 전라북도 복지기준선의 분야별 주요지표	163
〈표Ⅴ-3〉 전라북도 복지기준선의 분야별 목표	164
〈표Ⅴ-4〉 중위소득기준 평균소득 및 가구비율	165
〈표Ⅴ-5〉 중위소득기준 평균소득 및 가구비율	167
〈표Ⅴ-6〉 소득기준 복지기준선	169
〈표Ⅴ-7〉 소득기준 복지기준선	170
〈표Ⅴ-8〉 전라북도 소득기준적용 복지사업 현황	172
〈표Ⅴ-9〉 전라북도 복지수급자 인구순위별 분포	174
〈표Ⅴ-10〉 전라북도 빈곤취약지역 특성	175

〈표V-11〉 생애주기별 돌봄 위험대상 분류	176
〈표V-12〉 생애주기별 돌봄 위험대상 분류	178
〈표V-13〉 전라북도 1인 가구	179
〈표V-14〉 돌봄 및 교육분야 복지기준선	182
〈표V-15〉 돌봄 및 교육분야 복지기준선	182
〈표V-16〉 전라북도 보육시설 증축률 현황	183
〈표V-17〉 전라북도 보육시설 미설치지역 현황	185
〈표V-18〉 전라북도 특성별 보육시설 현황	185
〈표V-19〉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현황	186
〈표V-20〉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현황	187
〈표V-21〉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현황	188
〈표V-22〉 전라북도 아동학대 현황	188
〈표V-23〉 전라북도 아동학대예방 통합교육 현황	189
〈표V-24〉 전라북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현황	189
〈표V-25〉 전라북도 장애인 일상생활수행능력 정도	191
〈표V-26〉 사유별 차별행위 진정접수 현황	191
〈표V-27〉 전라북도 장애인 차별인식 정도	192
〈표V-28〉 전라북도 전체노인 돌봄서비스 사각지대 추정	193
〈표V-29〉 전라북도 장기요양 자격별 주요질병 및 증상 현황	194
〈표V-30〉 전라북도 등급별·자격별 판정 현황(65세 이상)	194
〈표V-31〉 전라북도 장기요양시설 추이	196
〈표V-32〉 전라북도 요양시설 추가 수요	196
〈표V-33〉 치매등록사각지대 현황	197
〈표V-34〉 전라북도 장기요양 주요질병 및 증상 현황	198
〈표V-35〉 전라북도 자살생각 및 이유	199
〈표V-36〉 우울감 경험률	199
〈표V-37〉 연령대별 자살률 현황	200
〈표V-38〉 전라북도 연령별 자살자 및 인구십만명당 자살율 현황	201
〈표V-39〉 전라북도 연령별 자살자 및 인구십만명당 자살율 현황	201
〈표V-40〉 전라북도 연령별 수 추이	202
〈표V-41〉 보건·의료 분야 복지기준선	203
〈표V-42〉 건강분야 복지기준선 달성을 세부정책과제	204
〈표V-43〉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사업 현황	205
〈표V-44〉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율 현황	205
〈표V-45〉 영유아 건강검진 종합판정 결과	206
〈표V-46〉 OECD 치매관리정책 방향 및 우리나라 3차 치매관리정책 작성 비교 ..	206
〈표V-47〉 전라북도 등급별 장기요양현황 및 치매노인	207

〈표V-48〉 전라북도 등급별 장기요양 증상현황	208
〈표V-49〉 전라북도 치매환자(입원) 현황	208
〈표V-50〉 전라북도 노인야간돌봄 데이케어센터 현황	209
〈표V-51〉 전라북도 진료시설 현황	210
〈표V-52〉 기준시간내 의료기관 접근율(비율)	211
〈표V-53〉 관내 의료기관 이용율	211
〈표V-54〉 관내 의료기관 이용율	212
〈표V-55〉 건강보험 연차제 현황	213
〈표V-56〉 전라북도 종사자 지위별 현황	214
〈표V-57〉 일자리분야 복지 기준선	216
〈표V-58〉 일자리분야 복지 기준선	217
〈표V-59〉 전라북도 노인 취업자 수	217
〈표V-60〉 전라북도 노인일자리 현황	219
〈표V-61〉 전라북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시군별 배치현황	220
〈표V-62〉 전라북도 경제활동미참여 장애인 중 일을 하지 않는 이유	221
〈표V-63〉 직업훈련 경험 여부	221
〈표V-64〉 직업훈련 희망 분야	222
〈표V-65〉 장애인 직업재활 위해 국가가 해야할 일	222
〈표V-66〉 전라북도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	223
〈표V-67〉 전라북도 자활사업단 현황	223
〈표V-68〉 전라북도 자활사업단 현황	224
〈표V-69〉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치 현황	225
〈표V-70〉 전체 인구대비 연령대별 빈곤율 현황	226
〈표V-7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사업 제공인력현황	226
〈표V-72〉 전라북도 유망사회서비스 전망	227
〈표V-73〉 사회복지시설 인구당 현황	228
〈표V-74〉 사회복지시설 인구당 현황	229
〈표V-75〉 전라북도 복지수요 대비 복지자원 현황	230
〈표V-76〉 복지전달체계 분야 복지기준선	230
〈표V-77〉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현황	231
〈표V-78〉 전라북도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설치 지역 현황	232
〈표V-79〉 전라북도 잠재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234
〈표V-80〉 전라북도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234
〈표V-81〉 전라북도 복지수급자 인구순위별 분포	235
〈표V-82〉 전라북도 빈곤취약지역 특성	235

그림목차 | Contents

〈그림Ⅱ-1〉 복지건강도시 Tokyo 비전	11
〈그림Ⅲ-1〉 최저생계비의 변화(4인 가족 기준)	38
〈그림Ⅲ-2〉 2015년 기준 소득계층별 규모추정	39
〈그림Ⅳ-1〉 소득원천별 연평균소득 현황	53
〈그림Ⅳ-2〉 설립유형별 보육시설 현황	77
〈그림Ⅳ-3〉 전라북도 치매환자 비교	116
〈그림Ⅴ-1〉 중위소득 50%기준 적정소득지원시 추정예산	166
〈그림Ⅴ-2〉 복지사각지대 규모 추정	167
〈그림Ⅴ-3〉 생애주기별 빈곤율 추정	168
〈그림Ⅴ-4〉 전라북도 소득기준선 설정의 방향	169
〈그림Ⅴ-5〉 전라북도 소득복지기준선 달성 방향	170
〈그림Ⅴ-6〉 전라북도 소득기준적용 복지사업 현황	171
〈그림Ⅴ-7〉 전북형 소득보장제도 운영(안)	173
〈그림Ⅴ-8〉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제도(안)	173
〈그림Ⅴ-9〉 기초생활수급자 다수거주지역	174
〈그림Ⅴ-10〉 전체 인구대비 복지수급자 구성비	174
〈그림Ⅴ-11〉 전라북도 생애주기별 돌봄위험주기	175
〈그림Ⅴ-12〉 생애주기별 빈곤율 추이	177
〈그림Ⅴ-13〉 전라북도 보육대상 아동 연령추계	178
〈그림Ⅴ-14〉 전라북도 어린이집 정원 및 현원 추이	179
〈그림Ⅴ-15〉 노인돌봄 기준선 설정 방향	180
〈그림Ⅴ-16〉 장애인 자립지원 관련 기준선 설정 방향	181
〈그림Ⅴ-17〉 보육시설 증장기 수요	184
〈그림Ⅴ-18〉 전라북도 국공립보육시설 추가설치 필요개수	184
〈그림Ⅴ-19〉 대빈곤아동 비 지역아동센터 이용율	187
〈그림Ⅴ-20〉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운영 현황	190

〈그림V-21〉 전라북도 장애인활동지원 복지 적정선 설정 기준	190
〈그림V-22〉 전라북도 인권센터의 장애인인권개선방향	192
〈그림V-23〉 전라북도 노인돌봄서비스 사각지대 추정	195
〈그림V-24〉 전라북도 연령대별 자살자 추이	202
〈그림V-25〉 보건의료분야 복지기준선 설정영역	203
〈그림V-26〉 전라북도 치매노인 돌봄기준선 설정	209
〈그림V-27〉 연령대별 자살자 현황	210
〈그림V-28〉 전라북도 인구구성비	214
〈그림V-29〉 임금-비임금 근로자 현황 비교	215
〈그림V-30〉 종사자 지위별 추이	215
〈그림V-31〉 전라북도 노인일자리 수요	218
〈그림V-32〉 전라북도 노인일자리 수요추정	219
〈그림V-33〉 전라북도 자활참여자 특성별 자활정책 방향	224
〈그림V-34〉 전라북도 소득계층별 인구구성 및 시장소득 확대 기준	227
〈그림V-35〉 전라북도 민간복지전달체계 개선 방향	229
〈그림V-36〉 맞춤형 복지팀 추진실적(2017년 10월)	231
〈그림V-37〉 맞춤형 복지팀 추진계획	231
〈그림V-38〉 사례관리	233
〈그림V-39〉 돌봄지원	233
〈그림V-40〉 지역조직화	233
〈그림V-41〉 장애인자립지원	233
〈그림V-42〉 교육문화	233
〈그림V-43〉 지역사회보호	233
〈그림V-44〉 전체사업	233
〈그림V-45〉 건강지원	233
〈그림V-46〉 기초생활수급자 다수거주지역	235
〈그림V-47〉 전체 인구대비 복지수급자 구성비	235
〈그림V-48〉 기초생활수급자(수)	236
〈그림V-49〉 기초생활수급자(비율)	236
〈그림V-50〉 긴급복지지원자 수	236
〈그림V-51〉 자활참여자 수	236
〈그림V-52〉 장애연금수급자(수)	236
〈그림V-53〉 복지수급자 구성비	237

1

장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전북의 복지정책은 국가의 복지기준선에 의해 상당부분을 영향을 받고 있다.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은 대부분 선별적 복지로 복지급여의 대상자를 소득이나 자산 혹은 부양의무자의 존재유무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고, 제한된 조건을 충족한 대상만을 수급권자로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전라북도를 포함한 지역의 복지정책은 주로 중앙정부의 복지기준선 하에서 지역주민의 복지대상을 선별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복지정책의 틀에 들어가지 못한 광범위한 사각지대에 대한 보호의 문제가 항상 부연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 같은 국가복지의 선별성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복지정책이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형 복지기준선을 설정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하여 부산, 경기 등의 지역에서 국가의 선별적인 복지기준선의 설정에 따른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한적인 수준에서나마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복지기준선을 새롭게 설정하여 국가복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는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복지정책에도 상당한 변화를 주고 있고, 이 같은 변화는 주로 선별적 복지의 제한적인 수준을 상당부분 보완하여 다수 국민을 복지정책의 틀내로 보호하기 위한 보편성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복지정책의 특히 급여대상이나 급여의 내용에서 상당부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하지만 국가복지정책도 조세에 기반한 현실적인 재원의 문제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가복지정책은 지역의 복지정책과 상호 연계하여 완전한 복지정책의 틀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와 지역이 복지정책의 보편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체 국민의 복지수준을 일정수준 이상 향상시켜야 하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이 생각하는 복지정책의 적정선을 설정하고 이 적정선이 현재 국가의 복지정책과 지역의 복지정책에서 어느정도 보호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호가 필요하지만 재정적 한계를 이유로 보호하지 못하

고 있는 사각지대는 그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지에 대한 정책적 수요진단이 불가피하다.

신정부의 복지정책은 크게 복지공공성 강화, 노후소득보장 확대, 생애주기형 소득지원제도 마련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신정부의 복지정책은 영국의 국민최저선(national minimum)에 기초하여 국가수준에서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는데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현실의 재정여건을 고려한다면 신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은 다소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측면이 없지 않지만 국가복지의 큰 방향을 국민 누구나 국민최저선(national minimum) 이상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하겠다는 선언적 목표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신정부의 복지정책이 큰 틀에서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 전라북도의 복지정책의 기준선도 새롭게 재설정될 필요가 있다. 다만, 전라북도의 복지기준선은 국가의 복지기준선에 대한 분석과 함께 국가의 기준선의 보완을 통해 전라북도 전체의 복지정책의 향상이 견인되도록 이상적 수준이 아닌 합리적 수준에서 설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신정부의 복지정책 기준선의 변화에 따른 정책보호의 범위에 대한 규모파악을 토대로 전라북도의 복지정책의 목표가 반영된 새로운 기준선 설정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신정부의 출범에 따른 복지정책 분석에 기초하여 전라북도의 복지정책이 나아가야할 적정 기준을 설정하고자 한다.

2장

중앙정부 복지기준선 현황 검토

-
1. 복지기준선 개념 및 필요성
 2. 국내외 복지기준선 사례검토

II. 중앙정부 복지기준선 현황 검토

타시도의 복지기준선은 지방정부의 권한범위를 벗어나 이상적 수준에서 설정되어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한국의 복지정책 구조상 국가의 복지정책과 연계하여 지역의 복지정책이 설정되어야 하지만 기존 지역의 복지기준선은 지역정책만으로 그 범위를 설정하여 현실성이 떨어진다. 즉, 타시도의 복지기준선은 대체로 재정현황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전제로 하지 않아 합리적 기준선이라기보다는 이상적 기준선에 가까웠고 이로 인해 실현가능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국가의 복지기준선 변화에 따른 전라북도의 복지수혜자의 범위를 파악하고 국가의 복지정책과 연계하여 전라북도의 복지정책의 현실적 재정여건 하에서 전북의 복지정책의 목표로서 새로운 복지기준선 설정 필요가 있다. 다만, 다만, 전라북도의 복지기준선은 신정부의 복지정책의 현황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국가의 정책적 보호에서 포괄되지 못한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합리적 기준선이 설정되어야 한다.

<표II-1> 신정부의 복지정책

0세	5세	10세	15세	20세	25세	30세	35세	40세	45세	50세	55세	60세	65세	70세	75세~
아동수당(신설) ∴ 2.6조				구직촉진수당(월30만원) 5.4천억								기초노령연금확대 4.4조			
				초중고 독감예방접종 확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 도입									
								건강진단 바우처 도입(40대 이상)							
								장애연금 인상 4.2천억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 단계적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및 장애인 지원법 제정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청년대학생 임대주택 30만실 공급확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육아휴직 확대 및 육아휴직급여 인상 4.6천억						국가치매관리제 (치매센터 확대) 520억			
입원진료비 국가책임제 (본인부담률 5% 이하) ∴ 2천억~3천억												노인일자리 확대 8천억원			
												어르신종합복지센터 (경로당) 전환			
												실버극장, 실버관광 활성화			

1. 복지기준선 개념 및 필요성

국민복지기준선은 영국의 국민최저선(National Minimum)의 개념에서 유래하여 국민이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와 시민사회가 보장해야 할 책임을 강조하는 제도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최저선은 19세기말 영국에서 Web부부에 의해서 국민최저선(National Minimum)이라는 용어로 처음 개념화되었고, 당시 국민최저선은 최저임금제, 8시간 노동제, 아동영양·주거·의료의 최저기준, 그리고 실업방지 등 6개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이후 국민최저선의 개념은 서구 복지 국가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베버리지보고서에서 정책목표로 구체화되어 근대 복지국가 형성을 견인하였다. 당시 국민최저선의 개념에는 정책적으로 전국민의 사회적 보호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하는 사회보험의 영역과 저소득 빈곤계층에 대한 제한적 급부로서 공공부조가 강조되었다.

경제성장을 기초로 물질 토대를 구축한 최근에는 국민최저선의 개념에서 국민적정선 즉, 적정복지기준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김희연, 2014) 국민적정선은 국제노동기구는 1967년 적정한 급여수준(adequate benefit standards)을 반영하여 연금제도의 중요한 원칙을 적절한 급여수준으로 설정하였다.

<표II-2> 복지기준선의 정의 및 개념

구분	개념 및 정의
변재관 (1998)	국민복지기본선이라함은 '한 사회가 ① 공적 제도를 통해 개별 사회구성원에게 ② 경제·사회적 발전 수준에 부합되게 ③ 제공하는 제반 사회복지의 수준
김미곤 (2016)	세종시민 복지기준은 '① 공적 제도를 통해 세종시민에게 ② 경제·사회적 발전 수준에 부합되게 ③ 제공하는 제반 삶의 기준'으로 정의
일본도쿄 시민복지 기준선	Civil Minimum이란 "국민경제에 있어서 공적·사적 형태의 사회적 잉여를 주민/시민의 자발성에 근거하여 계획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지방자치체의 정책공준(政策公準)"이며, 이는 National Minimum의 local 판, 즉 '도시시민 생활기준'이라고 해석
일본 civil mimimum	근대적인 대도시가 당연히 갖추어야 하는 조건의 최저한도로서 도시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이 안전 및 건강, 능률적이고 쾌적한 도시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최저조건이라고 할 수 있음

<표II-3> 최저기준선과 적정기준선 비교

	최저기준선	적정기준선
정의	모든 시민이 누려야하는 최저한의 보장선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하는 소망하는 수준
실행주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보장 (국가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민간,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노력으로 달성 추구 (공동체 복지)
추상수준	구체적	다소 선언적
달성시기	가급적 임기 전후의 시기에 달성노력	민관의 노력에 의해 중장기적으로 달성노력
대상	소득과 주거영역은 잔여적 복지 나머지 복지서비스 건강, 교육, 고용 등 서비스 영역은 보편적 복지	

자료 : 김미곤 외 2016 재구성

한편,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도 1950년대에 보편적으로 평등한 정액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시스템 구축이라는 정책목표가 1960년대를 기점으로 적정한 급여수준, 평등, 예방적 사회정책, 수급자격의 강화를 보장하는 쪽으로 이동했음을 지적(김미곤 외, 2016)하고 있다. 국민복지기준선의 두 가지 유형인 국민복지 최저선과 국민복지적정선의 개념적 차이와 주요원리를 ① 기본선의 수준, ② 보장의 책임 주체, ③ 재원의 부담방식, ④ 주요적용대상, ⑤ 권리의 성격 그리고 ⑥ 제도의 운영원칙 등 여섯 가지 측면에서 개념화하고 있다.

<표II-4> 사회복지정책과 국가복지정책의 보장 수준

구분	최저수준	보편수준	목표수준
전제조건	국가(중앙정부)가 보장하는 사회보장의 수준이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구와 문제를 완전하게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해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적정기준을 국가가 보장할 수 있는 최상의 수준이라고 가정한다.		
보장의 목표	최소한도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	국민의 일정한 기여로 인한 반대급부	정책이 설정한 목표의 달성
제도의 형태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책임의 주체	정부(국가)	사회일반(국가+국민+기업 등)	정부(국가)
재원의 부담	정부(국가)	국가, 기업, 개인	정부(국가)
지원 대상	저소득 빈곤층 실업자,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중산층 혹은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일반 시민	정치적 및 정책적 목표집단

자료 : 이대영 외 2012 재구성

이대영 외(2012)는 국가복지정책의 보장수준을 최저수준과 보편수준에 이어 목표수준을 별도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다. 최저수준은 저소득 빈곤계층만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사회보장적 보호가 주된 목표인 반면 보편수준은 모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위험을 보호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여기에 국가의 정책적 목표에 따른 사회보장수준도 별도로 분류된다. 목표수준은 대상의 선별성이 정책의 보호범위를 이론적으로 혹은 실천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국가의 정책적 목표에 따라 대상집단과 지원목표를 설정하여 국가의 보장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최저수준과 보편수준의 가장 다른 점이다.

이 같은 개념하에서 지방정부도 지역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를 가지고 있고, 국가의 복지정책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지방정부차원의 복지기준선 설정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방정부에서는 처음으로 복지기준을 설정하여 소득, 건강, 주거, 고용 등 4개 영역에서 서울시가 추진해야 할 복지의 기준선을 설정하였고, 박원순 시장은 2011년 당시 후보로 시민복지기준을 공약으로 제시 서울시 차원에서 서민의 복지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표II-5> 전라북도 복지기준선 설정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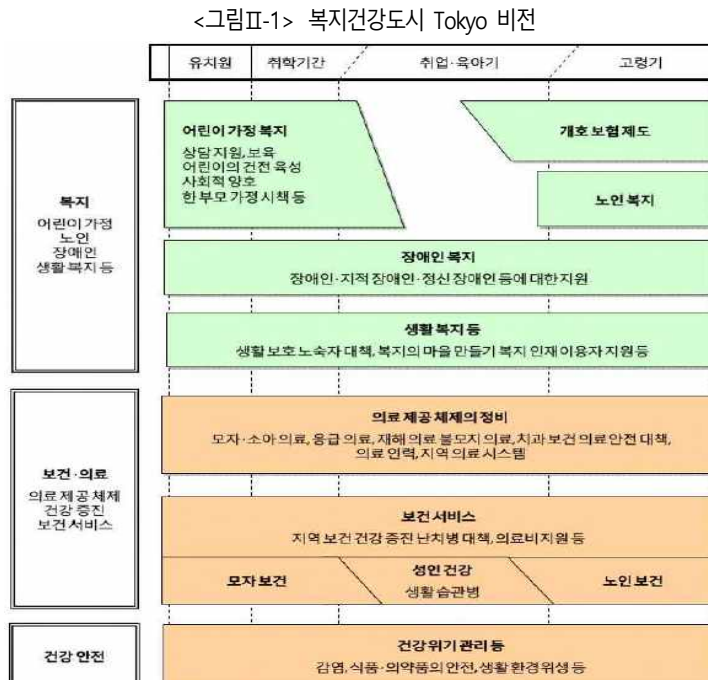
구분	개념 및 정의
제도적 필요성	·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책무는 법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로 규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 지역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과 함께 지방정부도 재정부담의 책임 그리고 전달체계의 이행 등의 의무를 가지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지역적 필요성	· 중앙정부의 복지만으로는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해결에 한계 · 전라북도는 복지수요는 매우 높은데 반해 재정여건은 좋지 않아 지역차원에서 실현가능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른 자원배분의 합리성 확보 필요
사회적 필요성	· 전라북도 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도 함께 참여하는 공동의 역할 부여 필요 · 각 영역별 복지기준선 설정 이후 민간의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역할 수행을 유인할 수 있는 합의된 공동의 목표 설정 필요

서울시민복지기준선 설정의 영향으로 타지방자치단체(광주, 부산, 대구, 대전, 세종, 경기) 등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의 기준선을 설정하기 위한 복지기준선 연구를 진행하여 관련 정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복지기준선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거가 제시될 수 있지만 크게는 제도적 필요성과 정책적 필요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국내외 복지기준선 사례검토

(1) 국외 사례

일본의 도쿄는 복지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생애주기 발달단계별로 보건의료 정책을 통합적으로 제시한 중장기 복지계획을 수립하였다. 복지건강도시 도쿄의 비전 및 사업계획을 보면, 생애주기는 취학전부터 고령기까지 구분하고 사업의 영역은 생활복지영역, 보건의료영역 그리고 건강안전 영역으로 분류하여 생애주기별 각 제도적 영역별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였다.



자료 : 한동우 외(2017) 전남복지기준선 설정 및 중장기계획수립 최종보고서

도쿄 복지비전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생활복지영역에서는 보육과 돌봄, 그리고 취약가정인 한부모가정에 대한 보호대책을 담고 있고, 고령기에는 개호보험제도를 중요한 정책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전 생애에 걸쳐 모든 유형의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생활복지영역도 마찬가지로 전 생애에 걸쳐 마을만들기, 복지인재 이용자 지원 등을 주요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해서는 보건의료안전대책, 의료인력 및 지역의료시스템의 구축 등을 주요 과제 및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고, 생애주기별로는 취학전까지는 모자보건, 취업 및 육아기에는 성인건강 그리고 노령기에는 노인보건 정책의 영역으로 관련 세부적인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도쿄 복지비전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생애주기별로 각 정책의 영역에서 요구되는 복지수요를 진단하고 진단에 기초한 각 영역별 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이 같은 정책의 영역을 복지로만 한정하지 않고 보건과 복지를 통합하여 건강과 의료의 문제를 함께 복지의 비전과 계획속에 담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장계획을 포함하여 모든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보건의료계획과 연동하도록 하고 있어 핵심적인 보건계획도 주요 계획에 반영되어 있지만 복지계획과 보건계획은 별도의 법정계획 하에서 수립되고 있어 실질적인 통합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새로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의 도쿄 복지비전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복지계획의 추진 주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민간의 역할도 함께 강조하고 있고, 복지계획의 주된 수행공간으로 마을만들기를 주요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도 이채롭다.

마을은 복지계획이 실제로 집행되는 최소의 단위라는 점에서 복지계획의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규모 마을단위에서 복지사업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마을내의 다양한 복지자원이 체계적으로 연계되고 결합되는 공동체의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복지비전으로 마을을 제시한 일본의 사례는 참고할만하다.

(2) 국내 사례

① 중앙정부 복지기준 검토

중앙정부의 복지기준선은 명확한 개념적 정의를 토대로 관련 정책을 설정하고 있지 않고 법정계획인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기본계획의 관련 지표를 통해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명확하게 표현하지만 복지기준선이라기보다는 복지정책의 성과목표라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은 주로 소득, 주거, 일자리, 돌봄, 건강(보건), 사회서비스, 교육 등 6대 영역을 중심으로 관련사업과 성과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중앙정부는 복지기준선이라는 개념보다는 각 분야별 정책목표와 성과목표의 개념을 토대로 정책의 시기별 달성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각 분야별 성과지표는 사회경제적 여건과 복지재정상황을 고려한 정책의 목표일뿐 국민의 복지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국가복지정책의 정책기준선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가차원에서 국민복지기준선은 아직까지 설정되어 있지 않다.

중앙정부의 복지기준선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권의 명문화적 법적 논거에 기초하여 그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헌법 제3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일부 학자들이 이 같은 헌법조문이 국민복지의 최저선(national minimum) 이상의 국민복지 적정선(decent standards)의 보장으로 해석한다. 국민복지기본선이 국가의 정책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1988년 김대중 정부시절 한국의 사회보장과 국민복지기본선에서 제시하고 있다. 당시 국민복지기본선은 최저선과 적정선으로 구분되어 논의하였고, 국가의 정책방향은 최저선 뿐만 아니라 적정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적정선의 정책영역으로 소득, 건강, 주거, 고용, 복지서비스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민복지기본선이 제도 속에서 안착된 계기는 IMF이후 대량실업에 따른 사회안전망의 부재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구체화 되었다.

복지서비스를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가 아닌 제한적인 극빈계층을 대상으로 한 국가의 시혜로 해석한 생활보호법 하에서는 국민의 시각에서 복지권이 논의되지 못하고 국가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시혜로 해석한다.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복지서비스를 국민의 권리 즉 수급권으로 명기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하에서 최소한의 소득기준은 최저한의 보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복지기준선의 제도적 기반을 제시하였다.

<표II-6>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평가지표

지표	2014년	현재	2018년	출처
생활체육 참여율	45.5%(13)	54.8%(14)	6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비율	35.2%(11)	36.9%(13)	33%	OECD
평생학습 참여율	35.6%(12)	36.8%(14)	40%	한국교육개발원
자원봉사 참여율(성인)	16.50%	19.40%	25%	행정자치부
아동안전사고 사망률(10만명당)	4.2명(12)	2.9명(14)	3.7명	통계청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8.5%(12)	0.8%(15)	1.60%	교육부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수혜율	12.4%(13)	34.5%(15)	20%	보건복지부
출산율	1.19명(13)	1.24명(15)	1.3명	통계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39.1%(12)	50.5%(15)	70%	보건복지부
육아휴직자 수	7만명(13)	7만7천명(14)	10만명	고용보험DB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33.9%(12)	51%(15)	50%	교육부
고용률	64.4%(13)	65.7%(15)	70%	통계청
청년실업률	7.4%(13)	9.2%(15)	6%	통계청
60세 이상 정년기업	37.5%(13)	50.5%(14)	70%	고용노동부
국민연금 수급률	28.2%(12)	34.8%(14)	33%	보건복지부
60세 이상 노인자원봉사 참여율	7.8%(13)	7.8%(15)	10.00%	통계청
건강수명	71세(11)	73세(12)	75세	WHO
장기요양서비스 인정률	6.1%(13)	7.0%(15)	7.00%	보건복지부
행복주택 공급	2만6천가구	6만4천가구	14만가구	국토교통부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3.1점(11)	3.2점(14)	3.4점	장애인실태조사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수혜율	12.9%(13)	13.4%(15)	13.40%	여성가족부
저소득층 자활성공률	28%(12)	33.3%(15)	40%	보건복지부

자료 : 오윤섭(2016) 사회보장제도 평가체계 내실화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Ⅱ-7>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복지분야 성과목표

지표	2017		2021년
자활사업 참여수급자 자활성공률(%)	34	→	38
기초연금 수급자 수(만명)	498.3	→	598.1
돌봄서비스를 받는 독거노인 비율(%)	39.1	→	40.2
예방가능 외상사망률(%)	31	→	25
해외환자 유치 수(만명)	32	→	80

중앙정부에서는 정부출범과 함께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확대, 노인일자리 확대 등의 정책확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핵심성과지표로는 자활성공률, 기초연금 수급자 수, 돌봄서비스를 받는 독거노인 비율, 예방가능 외상 사망률, 해외환자 유치 수 등이다.

성과지표의 성과목표로는 자활사업참여자의 자활성공률은 2017년 34%에서 2021년 38%로 약 4%p상향하고, 기초연금의 수급자도 현재 498.3만명에서 2021년에는 598.1만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주요현황을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11개 분야별로 사회보장지표를 조사 및 분석, 관리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2조에서는 사회보장정책의 효과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해 사회보장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동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같은 사회보장통계를 작성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사회보장통계의 관리는 국가 수준에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수준을 여건에 따라 진단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을 위해 요구되는 기초적이 자료의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11개 사회보장지표의 영역은 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보육 및 교육, 근로, 소득보장과 빈곤, 건강, 주거, 에너지, 환경, 문화, 사회재정 등이다. 가족분에서는 주로 1인 가구, 노인가구, 한부모가족 수, 다문화가족수, 의사상자수 등 총 15개 대표 지표와 관리되고 있다.

<표II-8> 분야별 대표지표

분야	대표지표
가족	1인가구, 노인가구, 한부모가족 수, 다문화가구 수, 출산전후휴가급여수급자 수, 의사상자 수 등 15개
아동·노인·장애인	아동 수면시간, 아동 인터넷 등 과의존 위험군 비율,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수, 65세 기대여명, 노인의 학대경험률,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 등 35개
보육 및 교육	어린이집 및 유치원 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가정 양육수당수혜율, 학교급별 취학률, 학급당 학생수, 고등교육 이수율 등 14개
근로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등 17개
소득보장과 빈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및 수급률, 상대적 빈곤율, 국민연금가입자수 및 가입종별 비율 등 10개
건강	기대수명(평균수명), 조사망률, 자살률, 10대 다빈도 상병, 현재 흡연율, 고위험 음주율, 비만율 등 18개
주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저소득층 주택개보수 지원가구 수,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 주택연금대출(역모기지) 보증건수 등 12개
에너지	가전기기 보급률, 소득분위별 연료비 지출 등 8개
환경	상수도보급률, 주요도시 미세먼지 오염도, 환경성 질환자 수 등 8개
문화	연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인구 100만 명당 문화시설의 수 등 15개
사회재정	사회재정 국가 사회복지 보건 분야 지출비중, 공적연금수지 등 10개

사회보장통계는 2016년 국가의 주요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총 33개의 사회복지 및 보장정책을 중심으로 핵심지표별 현황을 관리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보장지표는 11개 영역으로 설정되어 있고, 각 영역별로 현재 국가의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수준을 진단하고 국가의 정책적 성과를 객관적이면서도 과학적으로 분석 평가하기 위한 목적에서 관리되고 있다. 사회보장지표는 11개 분야 총 162개의 대표지표와 함께 관련된 연관지표로 90개가 선정 관리되고 있다.

사회보장지표는 보건과 복지분야 뿐만아니라 문화와 환경 등을 포함하여 국민 삶의 영역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영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다 포괄적인 영역에서 지표가 관리되고 있다. 가령, 주거와 에너지분야 그리고 문화와 사회재정분야도 대표지표로서 정책의 효과 등이 측정 및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전라북도의 경우도 정책의 주요영역별로 대표지표와 연관지표 등을 통해 정책의 목표와 효과 등이 종합적으로 측정되고 관리될 필요가 있다.

<표II-9> 2016년 대표 통계지표현황(162개)

분야		대표지표
가족	다양한 가족	1인가구, 노인가구, 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
	가족과 일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가정관리 및 가족돌봄
	가족갈등	가정폭력 발생률 및 신고율, 조이혼율
	가족지원서비스	의사상자 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수 및 이용액, 가사간병방문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언어발달 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아동 노인 장애인	아동건강발달	아동 수면시간, 아동 인터넷 등 과의존 위험군 비율, 아동 자살률
	아동안전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 수, 학대피해아동 발견율, 학교폭력 피해경험률
	아동빈곤	아동 빈곤율
	아동의 사회적 보호	나홀로 아동 수, 요보호 아동 수, 국내외 입양아동 수
	아동복지지출	아동 가족의 공공사회 복지지출
	노인건강수준	65세 기대여명, 노인의 ADL 제한율, 노인의 운동 실천율, 노인의 학대경험률
	노인의료이용	노인 진료비, 노인의 일반검진 수검률
	노인장기요양	노인의 공적 장기요양 보호율, 장기요양기관 수
	장애인 인구	등록장애인 수, 장애인의 ADL(IADL) 제한율
	장애인복지서비스	장애인 복지시설 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 수 및 이용액,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장애인	장애인보육교육	장애아 어린이집 및 이용 아동 수, 특수교육 대상자 수,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급건수 및 지급액, 장애인 교육수준
	장애인경제활동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장애인 임금 근로자의 최근 3개월 평균 임금
	장애인소득보장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 수,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영유아보육 교육	어린이집 및 유치원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가정 양육수당수혜율
	교육의 질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교실 참여 학생 수, 학교급별 취학률, 학급당 학생수, 고등학교 학업중단율, 교원 1인당 학생수, 학생 1인당 사교육비
보육 및 교육	교육기회 보장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비율, 학생 1인당 국가장학금 수혜금액, 고등교육기관 입학생 중 기회균형 선발학생 비율, 고등교육 이수율, 한부모가족 고교생 학비 지원건수 및 지원금액
	고용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근로	고용안정성	실업급여 수급자 수,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대책 지원 규모
	일자리 질	총 근로시간,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비율, 근로형태별 취업자 비율, 사회보험 가입률, 산업재해율
	근로빈곤	저임금근로자 비율, 시간급 최저임금, 시간당 임금액,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자활	자활사업 대상자 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 차상위 자활수급자 수

<표II-10> 2016년 대표 통계지표현황(162개)

분야	대표지표	
소득보장과 빈곤	최저소득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 및 수급률, 우선돌봄 차상위 수급자 수
	상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율, 상대적 노인 빈곤율
	불평등	소득5분위배율, 지니계수
	노후소득보장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 및 수급률, 국민연금 가입자 수 및 가입종별 비율, 국민연금 수급자 수 및 급여종류별 비율, 국민연금 평균지급액
건강	건강수준	기대수명(평균수명), 조사망률, 저체중아 발생률, 자살률, 10대 다빈도 상병
	건강관리	현재흡연율, 고위험 음주율, 비만율, 영양섭취부족자 분율
	의료이용	평균재원일수, 1일 외래환자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의료자원	의료보장 적용인구, 의사수, 병상수, GDP 대비 경상의료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수급자 수
주거	주거의 질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저소득층 주택개보수 지원 가구 수, 주택 이외의 거주 가구 비율
	주거안정성	인구 천인 당 주택 수,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 현재 주택에서의 거주기간, 노숙인 수
	주거비부담 및 가능성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용자가구 수, 주거급여 지원가구 비율, 주택연금대출(역모기지) 보증 건수
에너지	에너지 사용 유형	가전기기 보급률, 난방시설별 가구분포, 도시가스 보급률, 연탄사용 가구 현황
	에너지 소비	소득분위별 연료비 지출,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연료비 비율, 가정부문 가구당 에너지 소비
	에너지 복지	에너지복지사업 지원가구
환경	환경의 질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1인당 도시공원원 조성 면적, 주요도시 미세먼지 오염도, 주요 대도시 소음도
	환경관리	생활폐기물 재활용 비율, GDP 대비 환경보호 지출률
	환경보건	환경성질환자 수
문화	문화향유	연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연간 독서량
	문화접근성 (문화 인프라)	인구 100만 명당 문화시설의 수, 인구 100만 명당 공공체육시설의 수, 연간 예술공간 이용률
	문화참여	연간 문화예술(창작·발표)활동 참여율, 생활체육 참여율
	문화교육	학교문화예술교육 수혜율, 사회문화예술교육 경험률
	문화복지	통합문화이용권 수혜율,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율,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수혜자 수,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사업 수혜율, GDP대비 문화예산, 오락문화비 가계지출 비중
사회재정	재원배분	국가 사회복지·보건분야 지출비중,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보건분야 지출비중,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보건분야 보조사업 비중
	사회보장 지출구조	7대 사회복지 예산사업 규모, 공적연금수지, 고용·산재보험수지,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수지, 사회복지·보건 조세지출 규모
	국제비교	공공사회지출(Public SOCX) 비중
	생애주기 재정	지방교육재정 유아보육·교육지출

② 지방자치단체 복지기준 검토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의 복지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역복지정책의 주요 쟁점에 따른 지역의 복지수요를 감안한 복지기준선을 수립하고 있다. 타시도의 복지기준선은 지방정부의 정책영역이 아닌 국가의 영역까지 포괄적으로 설정하여 관련 기준선 설정하고 있다. 경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자체는 국가의 정책영역인 주거영역까지 포함하여 복지기준선 설정하였고, 일부지역(부산, 세종, 경기) 등의 지역은 고용과 일자리 영역까지 복지기준선의 정책영역으로 설정하여 세부적인 기준선 제시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타지역의 복지기준선은 개념적 정의에서부터 기준선의 설정 영역에 이르기까지 지역별로 다소 상이하게 진행되어 왔다. 다만, 서울을 비롯한 지역의 복지기준선은 소득과 주거의 영역은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기준선을 설정하였고, 돌봄과 교육, 고용 등의 영역은 일부 지역에서는 별도 영역으로 설정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대전은 지역공동체의 영역을 기준선영역으로 포함하여 세부 기준을 설정하였고, 세종과 경기 등의 지역은 사회서비스를 복지기준선 설정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표II-11> 타지역 복지기준선 영역 비교

구분	중앙	서울시 (2012)	부산 (2015)	광주 (2015)	대구 (2016)	대전 (2015)	세종시 (2016)	경기
소득	●	●	●	●	●	●	●	●(1차)
주거	●	●	●	●	●	●	●	●(1차)
돌봄	●	●	●	●	●	●		●(2차)
건강	●	●	●	●	●	●	●	
교육	●	●	●	●	●	●		
고용	●		●				●	●
지역공동체						●		
사회서비스	●						●	●
전체	7대 영역	5대 영역	6대 영역	5대 영역	5대 영역	6대 영역	6대 영역	2대 영역 3대 영역

자료 : 각 지역별 복지기준선 연구 참고

<표II-12> 국내외 복지기준선 분야별 비전

도시	분야	시민참여형으로 규정한 미래상
서울	소득	가난의 두려움 없이 삶의 목표를 가질 수 있는 서울
	주거	집 걱정없이 안정된 삶의 터전을 누리는 서울
	돌봄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을 함께 돌보는 서울
	건강	아파도 치료 못받는 사람없는 모두가 건강을 누리는 서울
	교육	경쟁과 차별을 넘어 창조적 인재를 길러내는 서울
대구	소득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과 건강이 보장되는 도시
	일자리	능력과 의지가 있으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도시
	교육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성장하는 도시
	출산	여성의 출산과 육아걱정이 줄어드는 도시
	장애	장애가 가 불편하지 않은 도시
	노후생활	노후생활이 보장되는 도시
세종	복지서비스	영유아 아동에게 희망을, 노인에게 안락한 생활을, 장애인에게 차별없는 세종
	소득	가난의 두려움없이 인간다운 삶을 꿈꿀수 있는 세종
	주거	집 걱정없이 쾌적한 주거에서 삶을 누리는 세종
	건강	누구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모두가 건강을 누리는 세종
	일자리	시민 모두가 능력과 의사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는 세종
	교육	누구나 기본적 교육기회를 누리는 세종
부산	소득	주민들의 기초소득보장
	일자리	일자리 마련 및 고용안정
	돌봄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돌봄서비스
	건강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교육	아동, 청소년 성인들의 질 높은 교육
	주거	불편함이 없는 주택
	문화	문화시설, 공원, 교통 등 생활여건이 갖춰진 마을시설
	안전	질서와 안녕이 보장되는 마을 안전
	공동체	더불어 협력하는 지역사회공동체
런던	소득	경제, 인구증가에 대응하는 도시
	경제	국제 경쟁력이 있는 성공적 도시
	공동체	다양하고 강력하고 안전하게 접근가능한 이웃사회도시
	문화	감각을 증겹게 하는 도시
	환경	환경개선의 세계적 모범도시
	공공서비스	직업, 기회, 시설 접근성이 용이한 도시
시애틀	음식과 거처	시민을 위한 충분한 식량 확보, 시민거처의 마련
	가족과 이웃, 지역사회공조	유치원확충, 조기교육프로그램 이용접근성 강화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	여성과 아동대상의 폭력줄이기
	신체정신적 건강서비스	건강한 65세 이상 인구비율의 증가, 삶의 질 향상, 건강격차 감소
	교육과 직업기술	노인, 노숙자 최저생계비 인상
	정보 및 서비스 공평한 접근	정보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

자료 : 각 지역별 복지기준선 연구 참고

한편, 국내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기준선은 각 영역별로 비전을 설정하여 각각의 비전에 따른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대체로 지방자치단체 복지기준선의 비전은 각 분야별로 국민이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최적의 가치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일부지역에서는 복지기준선을 방향을 어느정도의 수준까지 설정할 것인지를 두고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으로 분류하여 논의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복지기준선은 누구나 누려야 할 최저한의 삶을 보장하는 최저수준과 품위있는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정기준을 두고 세부적인 복지기준선을 설정하고 있다. 최저기준의 경우 책임의 주체는 서울시가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는 수준으로 주로 공적 책임이 요구되는 부분을 최저수준으로 정의하고 있고, 적정수준은 책임의 주체로서 국가뿐만 아니라 공동체, 개인 등의 공동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기준선 설정의 기초가 되는 보장의 수준은 최소한의 삶의 질 보장인지 아니면 품위있는 삶의 질 향유인지에 따라 최소와 적정의 기준하에서 관련 복지기준선이 설정되어야 한다. 대체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최저기준보다는 적정기준을 중심으로 각각의 복지기준선을 설정하고 있다.

<표II-13> 서울형 복지기준선 방향

구분	최저기준(minimum standard)	적정기준(decent standard)
수준	누구나 누려야 할 최저한의 삶의 질 보장	품위있는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
책임	서울시가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는 수준	서울시, 공동체, 개인 공동책임으로 보장되는 수준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복지기준선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복지기준선의 초안이 된 서울의 복지기준선은 최저기준에서 적정기준으로 방향을 설정하여 관련 세부 기준선을 제시하고 있다.

시도별로 복지기준선의 세부적인 정책영역을 보면, 서울은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고, 광주만 최저기준으로만 복지기준선을 설정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최저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116%, 적정기준으로 중위소득 50% 구간 설정하고 있으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위소득 50% 구간이 최저기준으로 설정되어 향후 재설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주거영역에서 최저기준을 전체 소득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30%, 적정기준은 임대료 비중을 25% 이하로 설정하였으며, 건강영역에서도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의료미치료율을 28%이하로 낮추는 것, 그리고 적정기준을 OECD평균 이상의 수치로 유지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서울시민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있다.

<표II-14> 서울형 복지기준선 세부 내용

영역구분	기준구분	내용	기준선
소득영역	최저기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최저생계비 116%
	적정기준	서울시 전체가구 중위소득 50% 이상	중위소득 50%
주거영역	최저기준	한뎃잠 자거나, 거주 부적합한 곳에서 살지 않도록 함 주택거주 경우 임대료 비중 한도 설정 및 최저주거기준 충족위한 정책적 지원	임대료 비중 소득 30% 이하
	적정기준	4인 표준가구 기준 54㎡ 주거공간 확보 임대료 비중 한도 설정	임대료 비중 소득 25% 수준
돌봄영역	최저기준	돌봄필요 시민은 가구소득 10%이내의 지출로 돌봄서비스 이용 (돌봄서비스 이용권리, 비용부담에 초점)	가구소득 10% 이내 비용부담
	적정기준	10분 이내의 돌봄서비스 접근성 및 OECD 평균 수준의 돌봄서비스 품질(돌봄서비스 품질에 초점)	돌봄서비스 접근성 10분 이내
건강영역	최저기준	돈 없어서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서울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 미치료율 28%
	적정기준	건강수준을 OECD평균수준 이상으로 항상 지역별 건강격차 해소를 모두가 건강한 서울 지향	OECD 평균이상 수치
교육영역	최저기준	누구나 원하는 수준의 학교기회 보장	법정 교육기본권 보장
	적정기준	평생에 걸친 질 높고 균등한 교육경험 보장	

부산형 복지기준선은 3대 영역(시민복지기준,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서비스 기준, 동네 생활복지기준)으로 설정하고 지역의 복지수준에 대한 진단을 기초로 부산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지기준선을 설정하였다.

부산형 복지기준선은 6대 영역(소득, 고용, 돌봄, 교육, 주거, 건강)별로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설정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표II-15> 부산형 복지기준선 세부내용

영역구분	기준구분	내용	기준선
소득영역	최저기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수준 보장	중위소득 43%
	적정기준	가구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50% 이상이 되도록 보장	중위소득 50%
고용영역	최저기준	고용취약계층의 일할권리 보장을 통해 취약계층 고용률을 전국 평균 이상으로 상향	정규직 비중 70.5% 고용률 68.0%
	적정기준	근로여가가 있는 시민의 일할권리 보장으로 전국 상위수준의 고용 지표 달성	정규직 비중 73.0% 고용률 70.0%
돌봄영역	최저기준	영유아, 장애인, 노인의 특성 및 환경, 긴급상황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에게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	
	적정기준	10분 이내의 거리에서 돌봄서비스에 접근 가능 지역사회, 공동체, 유료서비스 등을 통해 서비스의 접근성과 포괄성 보장	10분 이내 접근성
건강영역	최저기준	건강관련 예방, 관리, 치료, 자원이용에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 제약 없이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경제적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 미충족률 15.0% 보건예산비중 1.97%
	적정기준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고려한 보건, 의료, 복지의 포괄적 안전망 구축으로 시민의 건강권 보장	인구 십만명당 사망률 372.0명 현재흡연율 18.0% 고위험음주율 17.2% 걷기실천율 55.0%
교육영역	최저기준	교육법에 명시된 교육의 기본권을 보장 교육여건 격차 최소화로 학습권을 충실히 보장	
	적정기준	학교교육 기간 동안 낙오없이 질 높은 교육 제공 생애단계에 필요한 교육이나 역량개발을 차별없이 경험할 수 있도록 보장	
주거영역	최저기준	저소득층 가구가 집 걱정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 보급 '부산형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주거환경 제공을 보장	부산형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거환경
	적정기준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주거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함 장기적으로 '유도주거기준'에 준하는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유도주거기준에 준하는 주거환경

가령 소득영역에서는 최저기준은 중위소득 43%까지 최소한도의 생활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으로는 부산시민의 소득을 중위소득 50%이상 상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부산복지기준선은 복지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동네생활복지기준선을 제시하였다. 동네 복지기준선에서는 걸어서 10분내 복지시설(어린이집, 초등학교, 아동보호시설, 경로당, 버스정류소, 동네

가게) 접근, 버스로 10분내 복지시설(도서관, 체육관, 중고등학교, 병원 및 보건소, 노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이용시설, 지역자활센터, 지역사회복지관 등) 접근 등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표II-16> 대구광역시 복지기준선 세부내용

영역구분	기준구분	내용	기준선
소득영역	최저기준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의 기초보장 사각지대해소 · 차상위 소득보장을 위한 대구형 생계급여 기준 마련	
	적정기준	· 중위소득 50% · 취약계층 대상으로 좋은 일자리 제공으로 근로소득 증대	중위소득 50%
돌봄영역	최저기준	· 영유아 : 돌봄사각지대 해소 · 아동청소년 : 안전망 구축 · 장애인 : 생활안정과 돌봄서비스 강화 · 노인 : 기능제한 노인 대상 사각지대 해소	
	적정기준	· 영유아 : 돌봄 접근성과 형평성 보장 · 아동청소년 : 권리보장 및 행복한 성장 지원 · 장애인 : 자립지원, 사회참여 확대 · 노인 : 독립생활 지원	
건강영역	최저기준	· 의료취약계층 대상 의료사각지대 해소	
	적정기준	· 모든 시민의 건강증진	
교육영역	최저기준	· 학령기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보편적 학습권 실현	
	적정기준	· 학령기 아동청소년과 성인의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기회 확대	
주거영역	최저기준	· 주거상실 및 주거급여 수급자 대상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3%미만 수준 보장	
	적정기준	· 임차가구 및 결함주택 거주자 대상으로 안정적 주거생활과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대구복지기준선은 다른 지역과 달리 5개의 정책영역별로 정책의 방향만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설정하고 있다. 이를테면 소득기준선은 중위소득 50%를 적정기준으로 제시하고 있고, 돌봄영역은 영유아,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을 대상으로 돌봄사각지대해소, 접근성 확대, 자립지원 등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광주복지기준선도 대구광역시와 유사하게 5개의 정책영역별로 포괄적으로 복지기준선을 설정하였다. 다만 광주의 복지기준선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최저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적정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다.

<표II-17> 광주광역시 복지기준선 세부내용

영역구분	기준구분	내용	기준선
소득영역	적정기준	- 문화적이고 건강한 삶 영위 - 저소득 가구의 적정생활비 6대 광역시 평균이상	중위소득 50%
돌봄영역	적정기준	영유아	보육교사 처우개선, 보육환경 개선으로 평가인증 어린이집 비율 80% 이상으로 향상
		아동청소년	특별한 욕구에 상응하는 적절한 복지서비스 제공,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이 활동하고, 쉼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적 환경 조성
		노인	일상생활 수행능력 제한 노인에게 기능 수준에 따라 연속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독립적 일상생활 유지
		장애인	소득 및 일자리, 이동권보장, 복지사각지대해소 등 모든 분야에서 최고수준을 유지하도록 함
		다문화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사회참여와 경제적 자립 지원
건강영역	적정기준	- 의료접근성과 건강형평성 보장 - 광주시민 건강수명을 「Health Plan 2020」 목표치 이상으로 유지	건강수명 남 73.2세 여 76.6세
교육영역	적정기준	- 헌법상 권리인 초·중학교 교육을 무상·의무로 받을 수 있도록 함 - 모든 시민이 평생동안 학습할 권리를 보장	
주거영역	적정기준	주거환경개선, 주거급여 확대로 「주택법」 상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비율 5%미만이 될 수 있도록 함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5% 미만 소득대비 임대 료 비율 5%

소득영역의 경우 중위소득 50%를 기준선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저소득 가구의 적정생활비가 6대 광역시의 평균 이상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돌봄영역의 경우 영유아,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를 대상으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영유아의 경우 돌봄기준선을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비율의 80%이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건강영역의 경우 건강수명을 남성은 73.2세, 여성은 76.6세로 기준을 제시하였고, 교육영역은 초·중학교의 무상교육과 광주시민의 평생교육권리 보장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거영역은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의 비율이 5% 미만으로 제시, 소득대비 임대료의 비중 또한 5%로 제시하고 있다.

<표II-18> 대전광역시 복지기준선

영역구분	기준구분	내용	기준선
소득영역	최저기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 보장	중위소득 30%
	적정기준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정한 소득 보장	중위소득 50%
돌봄영역	최저기준	6대 광역시 평균 수준 이상의 돌봄서비스 보장	
	적정기준	6대 광역시 상위 10% 이상의 돌봄서비스 제공	
건강영역	최저기준	경제적, 지역별 격차없이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보장	
	적정기준	OECD 평균 수준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교육영역	최저기준	경제적 수준, 지역여건 관계없이 교육의 기본권 보장	
	적정기준	질적수준이 높은 학교교육과 시민역량을 강화 시킬 수 있는 평생교육 기회 제공	
주거영역	최저기준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생활 위한 최소한의 주거공간 보장	4인가구 기준 43㎡
	적정기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영위에 필요한 적정수준 공간보장	4인가구 기준 54㎡
지역공동체	적정기준	믿고 배려하며, 정을 나누는 시민문화 조성	

대전광역시의 복지기준선은 각 영역별로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설정하여 관련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있고 복지기준선의 일부 영역을 시민의 복지육구 기준이 아닌 타시도와의 비교기준으로 제시하여 복지기준선을 설정하였다. 이를테면, 돌봄영역의 경우 최저기준은 6대 광역시의 평균수준 이상, 적정기준은 6대 광역시의 상위 10%이상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소득영역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적정한 소득을 보장하기위해 최저기준은 중위소득 30%, 적정기준은 중위소득 50%를 기준선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주거영역은 4인가구 기준으로 최저기준의 주거공간은 43㎡, 적정기준은 54㎡를 제시하였다. 소득과 주거영역을 제외한 돌봄, 건강, 교육, 지역공동체 영역에서는 명확한 기준선의 제시보다는 정책적 방향에 대한 제시를 하는 것으로 기준선을 설정하였다.

세종시도 대전광역시와 유사하게 각 영역별로 최저 및 적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소득영역의 기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안정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기준은 중위소득 40%, 적정기준은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표II-19> 세종시 복지기준선

영역구분	기준구분	내용	기준선
소득영역	최저기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소 생활수준 영위	중위소득 40%
	적정기준	안정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생활수준 영위	중위소득 50%
고용영역	최저기준	기본적 생계가 가능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는 일자리 보장 고용형태로 인한 차별 받지 않음	
	적정기준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보장 고용 안정성 향유	
돌봄영역	최저기준	세종시민(아동, 노인, 장애인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가구원)은 법령에 규정된 복지서비스를 10분 이내에서 보장	
	적정기준	거주지역과 소득에 따른 차별없이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가구소득의 10% 이내의 지출로 향유할 수 있음	
건강영역	최저기준	경제적, 지리적 문제로 필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함	
	적정기준	국내최고의 건강수준을 누리고, 건강 형평성을 향유하도록 함	
교육영역	최저기준	경제적 수준과 지역의 여건에 관계없이 기본적 교육 받을 동등한 기회 제공	
	적정기준	자주적 생활능력과 시민의 자질을 형성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여건 및 복지지원 향유	
주거영역	최저기준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한 주거환경수준 유지 임대료 비중이 소득의 30% 넘지 않도록 정주권 보장	임대료 비중 소득 30%
	적정기준	쾌적한 주거환경수준 영위 임대료 비중이 소득의 20% 수준으로 안정적이고 품위있는 주거생활 향유	임대료 비중 소득 20%

고용영역에서는 기본적 생계가 가능한 임금의 보장, 고용형태로 인한 차별방지, 고용의 안정성 향유 등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돌봄영역과 건강, 교육영역 또한 기준선의 제시보다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돌봄영역의 최저기준은 복지서비스의 접근성 확보, 적정기준은 복지서비스의 이용부담 완화 등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건강영역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성 확대, 교육영역은 경제적·지역적 차별없는 기본적인 교육권리의 보장을 제시하고 있다.

전남의 복지기준선은 소득과 돌봄, 고용, 인프라 구축의 4대 영역에 대한 적정기준에 대한 내용만 제시하고 있다. 소득영역의 경우 최소한의 생활보장이 가능한 소득보장, 일자리의 최소한의 기회와 참여보장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고용영역은 근로빈곤층의 고용안정에 대한 적정기준선을 제시하고 있다.

<표II-20> 전라남도 복지기준선

영역구분	기준구분	내용
소득영역	적정기준	· 체감 있는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도록 소득보장서비스 제공 · 근로소득을 원하는 도민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와 참여 보장 · 생활 어려운 도민의 지역사회안전망 관리지표를 전국 평균이상 수준으로 향상
돌봄영역	적정기준	· 영유아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25%이상 - 도내 모든 어린이집이 100% 평가인증과 환경안심인증 획득 · 아동 청소년 -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에게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할 수 있도록 함 - 모든 청소년이 생활권 청소년 시설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음 · 노인 - 건강위험 노인에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 기능장애 발생 예방 - 건강하고 소득수준 높은 노인 중 1,000명이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리더로 활동 - 복합적 문제를 가진 노인을 대상으로 지역여건에 상관없이 사례관리 등의 전문서비스 제공 · 장애인 - 장애인의 사회참여 위한 핵심사업들을 전국 평균수준으로 향상시켜 지역사회 참여 향유 지원 - 장애인관련 서비스를 전국 평균수준으로 높여, 장애인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 구축 · 여성 - 1인 이상 사업장의 정규직 여성비율 50%이상 증가시켜 여성의 고용 안정화 및 자립 지원 - 임신/갱년기 여성이 100% 건강검진 받도록하여 건강한 출산과 노후 준비 - 가족 친화적 인프라 조성하여 합계출산율을 OECD 평균(1.68)수준으로 유지 · 가족 - 모든 시군에 가족복지서비스 기관(one-stop) 1개소 이상 설치하여 지역격차 해소 -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 및 인권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으로 다문화 가족의 지역통합역량 강화
고용영역	적정기준	· 근로빈곤층 취업자 수 매년 0.87% 이상 증가 · 근로빈곤층 직업능력개발과 고용복지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되도록 지원
인프라 구축	적정기준	· 인구 천명당 복지시설 수 전국평균 수준 · 공공부문 사회복지 인력 담당 인구 수 1,000명 이하 유지 · 일반회계 세출 기준 복지분야 예산비율 33% 이상 · 민간부분 사회복지자원 확보율 매년 5% 이상 증가

한편, 돌봄영역의 경우 영유아,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로 돌봄에 대한 적정 기준안을 제시하고 있다. 영유아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25%이상으로 확대 등, 노인대상으로는 돌봄서비스리더활동, 여성의 경우 고용안정화 및 자립 지원 등의 정책적제안의 내용을 담아내고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 복지기준 비교

시도별로 복지기준선의 영역별 최저기준은 광주와 전남의 경우 적정기준선만을 제시하고 있고, 그 외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세종시는 최저기준선을 제시하고 있다. 소득영역의 경우 서울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116%를 제시하고 있고,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영역의 최저기준선을 설정하였다. 대구와 대전은 중위소득 30%, 부산은 중위소득 43%, 세종시는 중위소득 40%로 설정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표II-21> 시도별 영역별 복지기준선 최저기준 비교(1)

구분	소득	주거	돌봄
서울	최저생계비 116%	임대료비중 소득 30%	돌봄비용부담 가구소득 10%
부산	중위소득 43%	부산형 최저주거기준 이상	돌봄사각지대 해소
대구	중위소득 30%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비율 3%미만	<영유아> 돌봄사각지대 해소
			<아동청소년> 안전망구축
			<장애인> 생활안정/돌봄강화
			<노인> 기능제한노인사각지대해소
광주	-	-	-
대전	중위소득 30%	4인가구 주거공간 43㎡	6대광역시 평균수준 이상 돌봄보장
세종	중위소득 40%	임대료비중 소득 30%	돌봄서비스 10분 이내 접근성
전남	-	-	-

주거영역은 서울과 세종시가 임대료비중을 소득의 30%로 설정하여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부산은 '부산형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주거환경을 보장하고 있다. 대구의 경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비율의 3%미만 수준을 보장하고 있고 대전은 4인가구를 기준으로 최소주거공간을 43㎡로 제시하고 있다.

돌봄영역은 서울은 돌봄서비스의 비용부담을 가구소득 10%이내에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구의 경우 영유아,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으로 돌봄대상을 구분하여 대상별에 따른 돌봄최저기준선을 제시하고 있다.

<표II-22> 시도별 영역별 복지기준선 최저기준 비교(2)

구분	건강	교육	고용	인프라
서울	경제적/지역별 격차해소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보장	법정 교육기본권 보장	-	-
부산	의료서비스 미충족률 15% 보건예산비중 1.97%	법정 교육기본권 보장 교육여건 격차 최소화	정규직 비중 70.5% 고용률 68.0%	-
대구	의료취약계층 대상 의료사각 지대 해소	아동청소년의 보편적 학습권 실현	-	-
광주	-	-	-	-
대전	경제적/지역별 격차해소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보장	경제적·지역적 여건격차해소 교육의 기본권 보장	-	-
세종	경제적/지역별 격차해소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보장	경제적·지역적 여건격차해소 기본적 교육기회 제공	기본적생계가능한 임금보장 고용형태로인한 차별방지	-
전남	-	-	-	-

건강영역은 서울과 부산의 경우 경제적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미충족률 15%로 제시하여 모든 시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다. 대구의 경우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정책적 제안을 최소기준으로 제시하고 있고, 대전과 세종시 역시 경제적여건과 지역별 격차의 해소를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을 최저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교육분야는 서울과 부산은 법정 교육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최저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대전과 세종시는 경제적, 지역적 여건으로 인한 격차를 해소하여 교육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분야에 있어서는 부산과 세종시만 최저기준선을 제시하고 있으며 부산의 경우 정규직의 비중을 70.5%로 하여 취약계층의 고용률을 전국 평균 이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세종시는 기본적인 생계가 가능한 임금의 보장과 고용형태로 인한 차별방지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시도별 복지기준선의 적정기준으로 먼저 소득영역에서는 전남을 제외한 서울, 부산, 대구 등에서 중위소득 50%를 기준선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광주·경북의 경우 6대 광역시의 중위소득 50%를 제시하며 광역시를 기준으로 소득의 적정기준선을 마련하였다.

〈표Ⅱ-23〉 시도별 영역별 복지기준선 적정기준 비교(1)

구분	소득	주거	돌봄
서울	중위소득 50%	임대료비중 소득 25%	돌봄서비스 10분 이내 접근성
부산	중위소득 50%	유도주거기준 주거환경	돌봄서비스 10분 이내 접근성
대구	중위소득 50%	안정적주거생활 쾌적한주거환경	<영유아> 돌봄접근성/형평성 보장
			<아동청소년> 권리보장, 행복한성장지원
			<장애인> 자립지원 사회참여확대
			<노인> 독립생활지원
광주	6대광역시 중위소득 50%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5%	<영유아> 평가인증어린이집비율 80%
			<아동청소년> 육구대응서비스, 문화적환경조성
			<장애인> 장애인돌봄분야최고수준유지
			<노인> 독립생활지원
			<다문화> 사회참여지원, 경제적자립지원
대전	중위소득 50%	4인가구 주거공간 54㎡	6대광역시 상위 10% 이상 돌봄제공
세종	중위소득 50%	임대료비중 소득 20%	돌봄비용부담 가구소득 10%
전남	최소한의소득보장 근로기회참여보장 안전망관리지표전국평균이상	주택개량지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에너지바우처대상범위 동절기 한해 차상위로 확대 GDP환경보호 지출률 1.5% 연평균 농도 30μg/㎥	<영유아> 국공립어린이집이용률 25% 평가인증시설 100%
			<아동청소년> 돌봄필요아동서비스보장
			<장애인> 지역사회참여향유지원 전국평균수준서비스제공
			<노인> 예방적서비스로기능장애예방 돌봄서비스리더양성(1,000명) 사례관리서비스확대
			<여성> 정규직여성비율50% 성별영향분석평가개선율100% 임신/경년기여성 건강검진 100% 합계출산율 OECD평균 수준유지
			<가족> 가족복지서비스기관 시군당 1개소 이상 설치 다문화가족 지역통합역량 강화

주거영역의 적정기준은 서울과 부산은 임대료의 비중을 기준으로 서울은 소득의 25%, 세종시는 소득의 20%를 기준선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전남의 경우 주택개량지원기준을 중위소득 50%이하로 설정, 에너지바우처대상범위를 동절기에 한해 차상위로 확대하는 등의 다양한 정책적 제안을 적정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돌봄분야의 경우 서울과 부산은 돌봄서비스의 접근성을 10분 이내로 제시하고 있으며, 세종시는 돌봄비용부담이 가구소득의 10%를 넘지 않도록 하여 시민 누구나 돌봄서비스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대구와 광주, 전남의 경우 대상별로 돌봄에 대한 적정기준을 마련하였는데 전반적으로 영유아의 경우 보육시설의 평가인증확대,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과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한 문화조성, 노인을 대상으로는 독립생활에 대한 지원과 예방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담아내고 있다.

<표II-24> 시도별 영역별 복지기준선 적정기준 비교(2)

구분	건강	교육	고용	인프라
서울	OECD 평균수준이상 유지 지역별 건강격차 해소	질높고 균등한 평생교육보장	-	-
부산	인구 372.0명 십만명당 사망률 현재흡연율 18.0% 고위험음주율 17.2% 걷기실천율 55.0%	낙오없는 질 높은 교육제 공 생애단계에 필요한 교육, 역량개발경험 보장	정규직 비중 73.0% 고용률 70.0%	-
대구	모든 시민의 건강증진	아동청소년, 성인의 교육기회 확대	-	-
광주	의료접근성·형평성 보장 건강수명 유지 남 73.2세/여 76.6세	초중학교 무상·의무교육 평생학습권리보장	-	-
대전	OECD 평균 수준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평생교육기회제공	-	-
세종	국내최고의 건강수준 영위 건강 형평성 향유	시민자질 형성할 수 있는 교육여건 및 복지지원	문화생활영위가능임금보장 고용안정성 향유	-
전남	필요의료서비스미충족률 10% 표준화사망률 800	의무교육 100% 무상지원 차별없는교육기회보장 학교폭력사각지대해소 평생교육경험보장	근로빈곤층취업자수 증가 매년 0.87%이상 근로빈곤층 지속가능일자 리 지원	인구 천명당 복지시설 수 전국평균 수준 사회복지인력 담당 인구 수 1,000명 이하 유지 복지분야 예산비율 33% 이상(일반회계) 민간사회복지지원 확보율 매년 5% 이상 증가 여가문화기반 시설 수 전 국평균이상유지 여가문화프로그램 참여율 전국 평균 수준

건강영역에 있어서는 부산의 경우 부산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구십만명당 사망률, 흡연율, 음주율 등의 비중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서울과 대선은 OECD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기준선으로 제시하고 있다.

교육의 분야에서는 서울과 광주, 대전, 전남이 평생교육에 대한 보장을 적정기준으로 제시하고 있고, 대구의 경우 아동청소년과 성인의 교육기회 확대, 전남의 경우 평생교육보장과 더불어 의무교육의 100%무상지원, 학교폭력사각지대해소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영역은 부산과 세종시, 전남에서만 적정기준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부산의 경우 정규직의 비중 73.0%로 확대, 고용률 70.0%확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세종시는 문화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보장, 전남은 근로빈곤층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인프라 분야에서는 전남에서만 적정기준선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인구천명당 복지시설수의 전국평균수준 유지, 사회복지인력 1인당 담당인구수 1,000명 이하 유지, 복지예산비율 33%이상 확보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3

장

중앙정부 복지기준변화 및 전라북도 복지현황 검토

Jeonbuk Institute

1. 중앙정부의 복지소득기준 검토

Ⅲ. 중앙정부 복지기준변화 및 전라북도 복지현황 검토

1. 중앙정부의 복지소득기준 검토

(1) 소득기준선 변화

복지정책 지원의 기준선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소득기준선은 2017년 빈곤선의 상향 조정을 통해 일정한 확대가 예견되고 있다. 중위소득 50%이하의 소득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약 226만원으로 올해 223만원에서 약 2.6만원 증가하였고, 주거급여도 내년에는 2.2만원 증가한 194만원으로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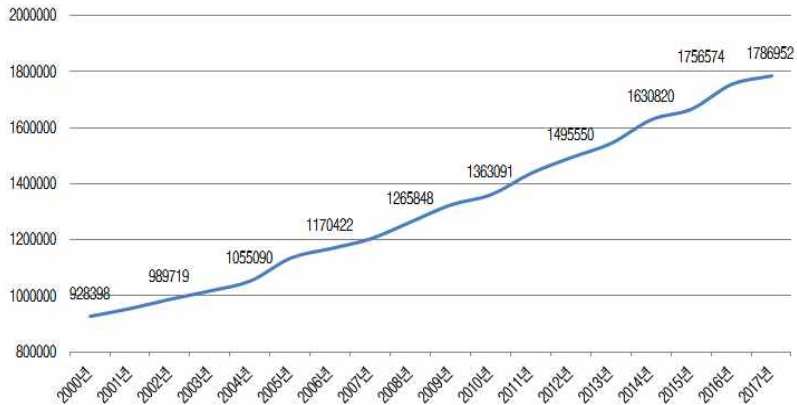
정부의 최저생계비는 4인 기준 2000년 928,398원에서 2017년 1,786,952원으로 증가하였고, 매년 3~4% 이상 증가하고 있다. 2018년 중위소득은 4인 기준 4,519,202원으로 전년도 4,467,380원보다 약 5.2만원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2018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구간은 가원수별로 차이는 있지만 중위소득 50%를 기준(교육급여)으로 1인 가족 기준 9,588원에서 6인 가족 기준 35,499정도 증가하였다.

<표Ⅲ-1> 신정부의 가구원수별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17년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18년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증액	9,588	16,324	21,118	25,911	30,704	35,499
주거급여 (중위 43%)	'17년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18년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증액	8,245	14,039	18,162	22,284	26,406	30,529
의료급여 (중위 40%)	'17년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18년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증액	7,670	13,059	16,894	20,729	24,564	28,399
생계급여 (중위 30%)	'17년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18년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증액	5,753	9,794	12,671	15,547	18,422	21,299

<그림Ⅲ-1> 최저생계비의 변화(4인 가족 기준)



신정부 출범 이후 복지정책의 기준선은 기존의 ‘최저한도의 보호’에서 ‘국민최저선 이상의 보장’으로 전환되고 있어 국가정책과 연동되어 있는 지역복지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신정부의 출범과 함께 복지정책의 기준선은 큰폭으로 변화가 예고되고 있고, 복지기준선의 변화와 함께 현금지원의 지급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소득기준선을 중위소득 50%에서 소득분위 70%까지 범위를 설정하되 해당 범주 내의 국민에게는 최소 10만원(아동수당)에서 최대 30만원(기초연금)까지 현금급여 지급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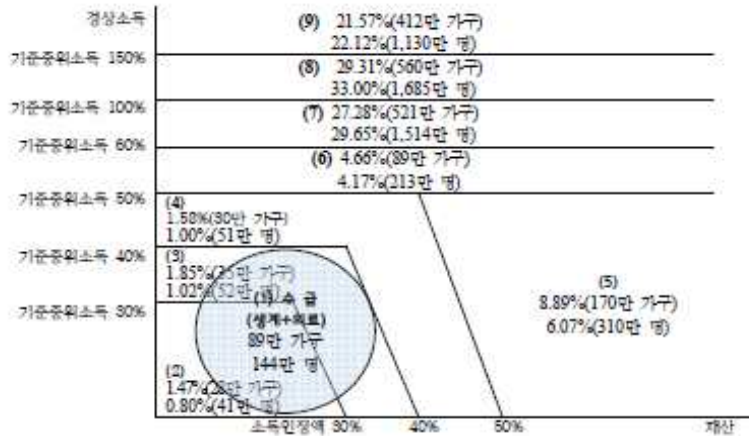
한편, 2018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 기준 167.2만원으로 전년도 165.3만원보다도 1.9만원 증가하였고, 선정기준도 2018년 1인 기준 50.2만원으로 2017년 49.6만원보다도 5.7천원 증가하였다.

<표Ⅲ-2> 기준중위소득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017년(㉠)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2018년(㉡)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증감	19,174	32,648	42,235	51,822	61,409	70,996
선정기준 (최대 급여액)	2017년(㉢)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2018년(㉣)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증감	5,753	9,794	12,671	15,547	18,422	21,299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2017)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그림Ⅲ-2> 2015년 기준 소득계층별 규모추정



한편, 2015년 기준 소득계층별 규모를 추정해보면, 복지급여의 기준선이 되는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은 88.9%로 나머지 11.06%만이 기준중위소득 50%미만의 빈곤가구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기준중위소득 40-50%에 해당하면서 소득인정액이 50%미만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1.58%를 차지하고 있고, 기준중위소득 30-40%미만인 소득인정액이 40% 미만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1.85%로 추정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이 50%를 초과하는 비빈곤가구로 추정되지만 약 11%의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50%미만의 빈곤가구로 분류되고 있다.

한편, 중앙정부의 복지기준선은 중위소득 구간으로 가구원수별로 일정액 이상이 상향조정되는 것과 함께 그동안 복지급여의 지원조건에 해당했던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광범위한 복지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한 요인으로 지적되어왔다. 즉, 부양의무자의 존재유무에 따른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선정으로 소득이 낮은 저소득계층도 1촌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가 부양능력이 있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탈락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사실상 부양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의 존재로 인해 광범위한 복지사각지대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부양의무자의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표Ⅲ-3>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계획

구분	주요내용	
주요 내용	2017년 11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소득 하위 7분위 노인 및 장애인 포함 시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19년 1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하위 7분위 중증장애인 포함 시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2022년 1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하위 7분위 노인 포함 시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2022년 10월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4.17%→2.08%)
기대 효과	대상자 확대	2017년 대비 연간 46~54만명 가구(약 90만명) 추가 보호
	2017년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113만 가구, 163만명 수준
	2018년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1676만 가구, 253만명 수준

자료 : 기획예산처(2017)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계획에 따르면, 1단계에서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중에서 중증장애인이 나 노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 그리고 2단계에서는 부양의무자 가구 중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마지막으로 부양의무자 가구 중에서 노인이 포함된 경우이다. 이처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경우 2016년 기초생활수급자는 163명이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시 2020년에는 90만명 증가한 252만 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빈곤완화를 위해 자활일자리를 3년간 7천개를 창출하고 자활기업오 600개를 창업하여 탈빈곤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청년빈곤의 심각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저소득 청년 등 일하는 수급자를 위해 근로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자산형성지원 등의 강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통합적인 자활 및 자립상담을 통해 일자리를 연계하여 빈곤탈출을 도모하고 긴급복지지원 확대 등을 통해 위기가정에 대한 발굴 및 지원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국가 주도의 빈곤정책이 큰 틀에서 확대 또는 강화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전라북도도 중앙의 빈곤정책의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차원의 빈곤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다 세부적인 빈곤정책의 기준선이 설정되어야 한다.

<표Ⅲ-4> 중위소득 활용 지원복지사업 현황

연번	사업명	소관 부처
1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지원	보건 복지부
2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3	취학전아동 실명예방	
4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5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6	긴급복지(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 연료·바·전기요금, 해산·장제비)	
7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8	노인돌봄종합서비스	
9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	
1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1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1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3	양곡할인	
14	입원격리치료명령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15	한센인 피해자 지원	
16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I, II 및 내일키움통장)	
17	(기초생활) 생계급여	
18	(기초생활) 의료급여	
19	(타 법 의료급여) 북한이탈주민, 무형문화재, 국가유공자	보건 복지부
20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21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굴	
22	장애(아동)수당	
23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24	장애인 연금(차상위)	
25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26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27	장애인 무료법률 구조 제도	
28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29	중증 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30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31	노인장기요양보험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32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3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34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35	치매 검진비 지원	
36	지역아동센터 지원	

자료 :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17)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실태조사 의결 재구성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사업은 보건복지부만 노인돌봄서비스, 양곡할인, 장애아동수당, 장애인거주시설 실비입소료 지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등 총 36개 사업에 이른다.

<표Ⅲ-5> 중위소득 활용 지원복지사업 현황

연번	사업명	소관 부처
37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고용 노동부
38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부	
39	근로자 임금체불생계비대부	
40	취업성공패키지(취업성공수당,참여수당,생계지원수당)	
41	고교 학비 지원	교육부
42	급식비	
4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44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45	(기초생활) 교육급여	
46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국가 보훈처
47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 발급	
48	보훈요양원 이용지원	
49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문화체육 관광부
50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청
51	산림서비스 도우미(직접 일자리 사업)	
52	산림재해 일자리(직접 일자리 사업)	
53	청소년특별지원	
54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여성 가족부
55	매체 활용 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치료비 지원)	
56	미혼모부 초기지원	
57	아이 돌봄 서비스	
58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59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지원	
60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61	취약위기 가족돌봄지원(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62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63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행정 안전부
64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65	석면피해구제급여(급여지급 시 활용)	
66	(기초생활) 주거급여	국토 교통부

자료 :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17)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실태조사 의결 재구성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치매검진비 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등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그리고 국가보훈처와 산림청, 여성가족부 등도 총 30개 사업을 중위소득을 활용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Ⅲ-6> 중위소득 활용 지원복지사업 현황

임신	출산이후	건강	생활지원	교육	고용
중위소득 30%			생계급여		
중위소득 40%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중위 52%)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 ·주거급여		
중위소득 50%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경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경감	교육급여	
중위소득 60%		노인실명예방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취업성공 패키지 I ·희망키움통장
중위소득 80%	영양플러스 사업(임산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영양플러스 사업(영유아)		
중위소득 100%			장애인자립 자금 대여		취업성공 패키지 II (미취업 청년)
월평균소득 100%		·치매검진비 ·치매치료 관리비지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월평균소득 120%		언어발달지원 (비장애아동)			
월평균소득 150%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 비스 ·발달장애 공공후견서비스		
소득 7분위			기초연금		
소득 8분위				·국가근로장학금 (C학점 이상) ·국가장학금	

한편, 빈곤선과 관련해서는 지역에서도 자체적인 기준선을 설정하여 지역의 빈곤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 부산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2017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부산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 국가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를 제외하고 가구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35%이하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과 함께 재산기준 3.6억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초수급자 중에서 노인, 장애인, 한부모구성가구에 대해서는 부가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부산형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소득평가액을 기준으로 1인 최대 19.8만원, 4인 기준 53.6만원을 지원하고, 부산형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이나 한부모, 장애인 가구에는 1인 가구 최대 4.9만원의 부가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부산은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운영을 위해 2017년도에만 2천 가구를 지원하고 위해 약 2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2017년 9월 말 현재 1,049가구가 지원을 받았고, 약 10.7억원을 지원하였다.

<표Ⅲ-7> 중앙-부산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 비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선정기준 (최대 급여액)	중앙[㉠]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부산[㉢]	578,526	985,057	1,274,320	1,563,583	1,852,846	2,142,109
	증감[㉠-㉢]	82,647	140,722	182,046	223,369	264,692	306,016

<표Ⅲ-8> 부산형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지원액

가구 규모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가구규모별 소득평가액 대비 최저생계유지비 금액					
	0%-40% 이하		41%-70% 이하		71%-100% 이하	
	소득평가액	급여액	소득평가액	급여액	소득평가액	급여액
1인	0 ~ 231,410	198,000	231,411 ~ 404,968	123,000	404,969 ~ 578,526	74,000
2인	0 ~ 394,023	337,000	394,023 ~ 689,540	211,000	689,541 ~ 985,057	126,000
3인	0 ~ 509,728	436,000	509,729 ~ 892,024	273,000	892,025 ~ 1,274,320	163,000
4인	0 ~ 625,433	536,000	625,434 ~ 1,094,508	335,000	1,094,509 ~ 1,563,583	201,000
5인	0 ~ 741,138	635,000	741,139 ~ 1,296,992	397,000	1,296,993 ~ 1,852,846	238,000
6인	0 ~ 856,844	734,000	856,845 ~ 1,499,476	459,000	1,499,477 ~ 2,142,109	275,000

<표Ⅲ-9> 부산형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지원액

가구 규모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가구규모별 소득평가액 대비 부가급여액					
	0%-40% 이하		41%-70% 이하		71%-100% 이하	
	소득평가액	급여액	소득평가액	급여액	소득평가액	급여액
1인	0 ~ 231,410	49,000	231,411 ~ 404,968	37,000	404,969 ~ 578,526	25,000
2인	0 ~ 394,023	84,000	394,023 ~ 689,540	63,000	689,541 ~ 985,057	42,000
3인	0 ~ 509,728	109,000	509,729 ~ 892,024	81,000	892,025 ~ 1,274,320	54,000
4인	0 ~ 625,433	134,000	625,434 ~ 1,094,508	100,000	1,094,509 ~ 1,563,583	67,000
5인	0 ~ 741,138	158,000	741,139 ~ 1,296,992	119,000	1,296,993 ~ 1,852,846	79,000
6인	0 ~ 856,844	183,000	856,845 ~ 1,499,476	137,000	1,499,477 ~ 2,142,109	91,000

(2) 돌봄 기준선 변화

돌봄정책은 크게 아동돌봄과 노인돌봄으로 나누어 정책이 설계되고 있다. 아동 돌봄의 경우 주로 미취학 아동을 위한 보육정책과 취학아동의 방과후 돌봄 그리고 아동의 보건 및 치료 정책으로 대별된다.

아동 돌봄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 수당제도는 저출산해소를 목적으로 신정부의 공약사업으로 반영되어 2018년 신규 예산이 편성되면서 구체화되고 있다. 2018년 예산안에는 아동수당예산이 약 1.1조 억원이 편성되었다.

또한 아동의료비의 확대를 위해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5% 이하로 인하하고 독감예방접종도 초, 중, 고등학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초등학교의 경우 지역사회주도의 다함께 돌봄시범사업을 10개 시군구에서 실시하고 온종일 돌봄을 위한 돌봄 컨트롤타워 구축 그리고 방과후 돌봄의 거점기관인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처우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여 보육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고 보육에 대한 공공의 책임성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육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보육시설의 이용율을 4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8년에만 국공립보육시설을 180개소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제도도 간소화하고 등급제 도입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한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어린이집 보조 및 대체교사를 확대배치하고 교육교사의 근무환경도 2016년 20만원에서 2017년에는 22만원으로 인상하였다.

<표Ⅲ-10> 아동돌봄정책의 변화

사업	지원기준	대상
아동수당	• 0-5세 아동 대상 월 10만원	약 253만명
아동진료비	•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지원(본인부담 5% 이하) • 초중고 독감예방접종 단계적 확대(2018년 이후)	
임신출산지원	•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 난임 및 우울증 상담센터 등 인프라 구축	18년 4개소
초등완전돌봄	• 지역사회주도 공공 민간자원활용 다함께 돌봄시범추진(10개 시군구) •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지자체 중심 돌봄 컨트롤타워 구축 및 돌봄협의체 운영 활성화) • 학교밖 돌봄(복지부 총괄), 학교안 돌봄(교육부 총괄)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 위기아동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학대, 실종 등) • 아동보호체계 공적 책임강화	
보육책임성 강화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국공립어린이집 이용율 40%) • 2017년 추경으로 국공립어린이집 180개소 추가하여 2018년 총 460개소 운영 •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개선(등급제 도입)	국공립보육시설 460개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	• 어린이집 보조 및 대체교사 확대 배치 •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인상('16년 20만원→'17년 22만원)	
보육지원체계 개편	• 보육지원체계 개편(이용자 중심의 적정보상체계 구현) • 표준보육비용 계측(표준보육비용 재산정)	

특히, 아동돌봄의 중요한 인프라인 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2022년까지 매년 450개소씩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공공보육의 비율을 4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민간어린이집의 장기임차(최대 10년) 방식을 신규로 도입하고 민간어린이집의 민간 매입을 활성화하는 등의 정책을 이행할 계획이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의 신축지원단가를 현재 평균 4.2억원에서 7.8억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도 개선할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아동돌봄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큰 변화는 2018년부터 도입되게 될

아동수당제도이다. 아동수당제도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5세 이하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현금성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2018년 기준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는 약 253만명으로 추정되고 있고, 0-5세 모든 아동에게 6개월간 월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가계획상으로는 2018년부터 5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가구의 소득에 관계없이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8년에는 국비예산만 1.1조원이고 지방비를 포함할 경우 약 1.5조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특히, 아동수당제도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아동수당관련 총예산규모는 지방비를 포함하여 13.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표Ⅲ-11>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재정소요 추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초계	연평균
대상아동	2,534	2,503	2,478	2,449	2,436	12,401	2,480
총예산	15,207	30,038	29,737	29,392	29,236	133,611	26,722
국비	10,913	21,556	21,340	21,092	20,980	95,881	19,176
지방비	4,294	8,482	8,397	8,300	8,256	37,730	7,546

자료 : 보건복지부, 국회예산정책처(2018) 재인용

장애인의 돌봄정책과 관련해서는 크게 장애인거주시설의 탈시설화의 문제 그리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통합, 시설보호아동의 지역사회통합 등으로 요약되고 있다. 2018년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에서는 탈시설장애인에게 공동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거주를 유인하고 자립정착금도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에 대해서도 시설보호 위주에서 지역사회 및 가정보호중심으로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아동복지시설 기능개편을 2018년도에 추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아동보호정책에서는 특히 학대아동에 대한 예방과 구제조치가 강화될 예정이다. 학대예방을 위해서는 학대에 대한 조기발견과 조사기능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학대가 의심되는 고위험가정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위기아동의 조기발견을 통한 지원자원과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피해아동에

대한 구제와 능동적 대응을 위해 피해아동에 대한 법률적 상담을 지원하고 전담의
료기관을 지정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능동적인 보호절차도
함께 이행된다.

다음으로 노인돌봄정책도 큰 틀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
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국가치매관리제 추진을 통해 치매노인의 요양과 돌봄을 체
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고 노인일자리도 공공형 중심으로 일자리 개수뿐만 아니라
일자리 급여도 약 두 배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전라북도의 경우 그동안 높은 고령
화로 인해 노인복지수요가 매우 높는데 반해 재정적 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체
적인 노인복지사업을 구상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에서 국가의 노인돌봄정책의 확대
는 지역의 관점에서 새로운 노인돌봄정책의 설계를 요구하고 있다. 노인돌봄정책
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장기요양정책과 관련해서는 민간 요양시설의 난립에 대
한 품질저하 문제 해결을 위해 요양시설 평가체계 개선할 계획이고 평가결과에 따
른 최하위 기관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
다. 또한 치매환자의 치료기관으로서 치매안심병원 확충, 치매안심센터 등을 설치
할 계획이다.

<표Ⅲ-12> 노인돌봄정책의 변화

사업	지원기준	대상
장기요양 다양화	• 돌봄, 간호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재가 서비스 및 가족 상담 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 요양시설의 평가체계를 서비스 질 평가 중심으로 개선하고 평가결과 최하위 기관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품질관리 강화 추진	
독거노인 사회적 돌봄 강화	• 보호가 필요한 요보호 취약 노인을 대상으로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제공 및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강화	
치매노인 사회적 보호	• 치매안심병원 확충(79개 공립요양병원 중심) • 치매의료비 및 요양비 부담 경감(중증치매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인하 (200~60%→10%)) • 신경인지검사(SNSB, CERAD-K)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 치매의심환자에 대한 MRI 건강보험적용(18. 1월) • 지역노인복지관(352개소)에서 치매고위험군 대상 인지활동서비스 제공 • 치매노인 실종 예방 및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	
제도개선	•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확대 등을 위한 치매관리법, 노인장기요양법 개정 추진 • 장기요양 등급확대 방안, 지원범위 및 지원수준에 대한 종합적이 검토를 통해 장기요양심의위원회 심의 및 시행	

4장

전라북도 복지기준선 욕구진단

Jeonbuk Institute

1. 전라북도 복지기준선 욕구

IV. 전라북도 복지기준선 욕구진단

1. 전라북도 복지기준선 욕구

(1) 소득분야 복지기준선 욕구

전라북도의 기초생활수급자는 2016년 기준 99,708명으로 전체 인구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의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이 3.2%인 점을 감안하면 전라북도의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도 2.1%p 높은 수준이다. 특히, 전라북도의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은 세종시를 포함한 17개 시도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라북도의 기초생활수급자는 2002년 약 11만명에서 2016년 9.9만명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IV-1>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및 추이

시도별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전국	1,351,185	1,424,088	1,534,950	1,529,939	1,549,820	1,394,042	1,328,713	1,630,614
비율(%)	2.8	2.9	3.1	3.1	3.1	2.7	2.6	3.2
서울	160,784	177,370	200,359	206,133	214,256	199,310	206,687	267,023
부산	104,251	116,347	135,407	138,890	145,198	135,973	126,962	149,528
대구	70,635	81,269	93,475	100,113	108,586	99,473	93,539	107,763
인천	56,247	60,158	69,525	69,786	73,749	70,860	72,113	100,301
광주	47,078	53,595	60,804	61,339	65,821	60,684	59,598	69,420
대전	37,560	40,415	45,026	46,635	48,338	44,992	43,469	54,490
울산	15,604	17,367	19,632	18,741	18,851	15,804	15,363	18,776
세종	-	-	-	-	-	3,442	3,274	4,286
경기	180,925	190,957	207,258	207,821	209,175	192,170	189,400	263,841
강원	59,712	59,625	64,184	64,679	66,503	58,820	54,841	62,509
충청	52,530	55,292	57,238	57,400	57,408	49,669	44,964	53,748
충남	82,320	80,490	77,902	74,105	72,989	58,363	53,288	62,677
전북	110,169	113,169	119,016	115,093	110,894	95,656	87,008	99,708
비율(%)	5.6	5.9	6.4	6.2	5.9	5.1	4.6	5.3
전남	137,884	133,225	126,372	114,922	106,210	87,670	75,501	83,850
경북	120,753	123,243	127,581	124,538	122,450	105,193	95,609	105,146
경남	95,592	100,880	108,721	106,597	104,797	93,977	86,996	104,213
제주	19,141	20,686	22,450	23,147	24,595	21,986	20,101	23,335
전국·전북	▲2.8	▲3.0	▲3.2	▲3.1	▲2.9	▲2.4	▲2.1	▲2.2

자료 : 보건복지부(각연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

한편, 전라북도의 소득분야 복지기준선 설정을 위해 소득유형별 평균소득을 산출하였다. 전라북도의 평균소득은 2015년(한국노동패널 18차) 기준 3,188만원으로 전국평균보다도 낮은 상황이다. 소득원천별로 보면, 근로소득 3,271만원, 사회보험 소득 692만원, 부동산소득 409만원 등의 순이다. 전라북도의 연평균소득을 전국과 비교해 보면, 전국 평균소득에 비해서 약 1,042만원 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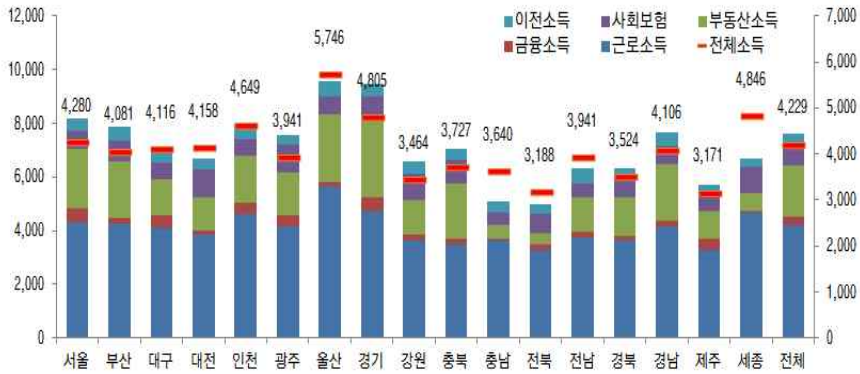
<표IV-2> 소득원천별 연평균소득액 현황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	이전소득	전체소득
서울	4,299	555	2,182	705	418	4,280
부산	4,248	202	2,140	762	495	4,081
대구	4,086	463	1,352	633	478	4,116
대전	3,876	121	1,249	1050	414	4,158
인천	4,630	414	1,735	627	584	4,649
광주	4,183	397	1,600	1012	371	3,941
울산	5,637	150	2,561	647	575	5,746
경기	4,716	553	2,963	762	477	4,805
강원	3,656	212	1,262	981	469	3,464
충북	3,481	219	2,064	845	421	3,727
충남	3,623	97	474	493	417	3,640
전북	3,271	229	409	692	404	3,188
전남	3,732	229	1,261	558	523	3,941
경북	3,667	134	1,442	746	356	3,524
경남	4,178	199	2,081	716	493	4,106
제주	3,305	385	1,050	708	243	3,171
세종	4,671	75	660	955	344	4,846
전체	4,239	273	1,908	735	454	4,229
전체-전북	▼968	▼44	▼1,499	▼43	▼50	▼1,041

자료 : 한국노동패널 18차 원자료 분석

1) 노동패널은 세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2015년 말 기준 통계청 기준 평균가구소득은 4,767만원으로 노동패널의 평균소득과는 다소 차이가 난다.

<그림IV-1> 소득원천별 연평균소득 현황



한편, 연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전라북도의 빈곤선을 추정해 보면, 중위소득 50% 이하 빈곤가구는 전라북도의 경우 33.6%로 전국 평균인 19.1%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중위소득 50%이하 빈곤가구의 비율이 시장소득 기준으로 19.0%를 보이고 있어 노동패널의 분석결과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지역별로는 표본가구의 수가 많지 않아 중위소득 50% 이하가구의 비율에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어 빈곤률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표IV-3> 소득정도별 지역별 가구 구성비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전체	전체 - 전북
중위 50%이하	17.7	20.1	20.8	19.1	12.2	24.2	10.6	13.7	25.9	23.6	23.6	33.6	25.6	25.3	19.0	23.8	25.0	19.1	▲ 14.5
중위 50% 100% 이하	32.0	32.7	32.9	31.1	28.4	27.5	18.5	30.1	35.3	34.9	33.6	29.7	34.9	29.2	29.7	38.1	8.3	30.9	▼ 1.2
중위 100% 120% 이하	11.0	12.1	10.9	10.4	16.2	9.3	16.4	11.8	10.9	13.1	11.5	12.0	6.2	11.0	13.7	9.5	8.3	11.8	▲ 0.2
중위 120% 이상	39.3	35.1	35.4	39.3	43.3	39.0	54.5	44.4	27.9	28.4	31.2	24.7	33.2	34.5	37.6	28.6	58.3	38.2	▼ 13.5

주 : 소득범주는 OECD기준 가구균등화소득 보정이후 ($Y^* = Y_i / \sqrt{S_i}$) 중위소득 기준으로 분석 ($Y_i = i$ 의 가구소득, $S_i =$ 가구의 가구원수, 그리고 $Y^* = i$ 가구의 균등화된 소득).

자료 : 전라북도 복지실태조사(2014)

표본의 부족으로 인해 분석결과에 한계는 있지만 패널데이터에 기초한 전라북도의 빈곤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전라북도의 법정빈곤율이 5%대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위소득 50%이하 빈곤가구의 상당수가 소득규모로는 빈곤층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정부의 제도적 지원은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지역별 소득을 분위별로 분류해 보면, 1분위에서 4분위까지의 빈곤가구는 전라북도의 경우 46.7%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전국 평균 4분위 이하 가구의 비율인 35.6%보다도 약 10%p이상 높은 수준이다. 5분위에서 8분위까지의 중산층은 전북은 40.5%인 반면 전국 평균은 42.0%로 중산층의 규모는 전국 평균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9분위 이상 고소득층의 비율은 12.8%로 전국 평균 9분위 이상 가구인 22.2%보다도 약 10%p낮은 수준이다.

<표IV-4> 신정부의 복지기준선 적용 시 적용대상 구성비

소득 분위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합	총합 - 전북
1분위	7.2	8.7	11.1	8.9	6.0	10.1	6.8	4.9	9.4	7.4	11.2	11.9	11.4	11.9	6.2	7.0	7.8	▲4.1
2분위	9.3	9.7	9.6	8.7	7.1	7.0	3.9	8.6	10.6	5.6	8	13.2	8.2	9.8	8.5	23.1	8.9	▲4.3
3분위	8.7	10.6	13.3	4.8	8.2	10.3	2.5	9.0	12.0	10.3	11.7	15	12.2	7.8	7.6	8.6	9.4	▲5.6
4분위	10.5	11.1	10.4	12.7	9.4	5.8	6.7	8.6	7.1	11.3	9.8	6.6	10.6	8.6	10.7	11.7	9.5	▼2.9
5분위	10.4	8.8	9.8	9.9	13.7	7.1	10.9	8.2	16.5	12.6	11	7.5	5.6	10.5	12.4	10.5	10	▼2.5
6분위	9.2	9.8	8.4	11.9	12.4	19.3	11	11.9	10.9	12	9.7	10.5	7.3	5.6	11.3	20.9	10.6	▼0.1
7분위	11.8	11.8	7.5	10.8	11.5	6.2	8.9	9.8	7.9	15.7	6.6	10.5	12.8	14.4	9	8.4	10.5	0.0
1-7분위	67.1	70.5	70.1	67.7	68.3	65.8	50.7	61.0	74.4	74.9	68.0	75.2	68.1	68.6	65.7	90.2	66.7	▲8.5
8분위	10.8	8.0	7.8	7.3	9.3	8.7	14.7	13.5	11.0	9.8	9.1	12.0	7.8	12.3	12.9	6.1	10.9	▲1.1
9분위	11.1	10.8	11.7	10.8	10.7	10.5	12.2	12.3	8.0	7.4	12.4	7.7	11.8	12.0	13.1	3.2	11.2	▼3.5
10분위	11.1	10.6	10.4	14.3	11.8	15.2	22.5	13.2	6.6	7.9	10.3	5.1	12.2	7.0	8.5	0.6	11.0	▼5.9
1-4분위(빈곤층)	35.7	40.1	44.4	35.1	30.7	33.2	19.9	31.1	39.1	34.6	40.7	46.7	42.4	38.1	33	50.4	35.6	▲11.1
5-8분위(중산층)	42.2	38.4	33.5	39.9	46.9	41.3	45.5	43.4	46.3	50.1	36.4	40.5	33.5	42.8	45.6	45.9	42	▼1.5
9-10분위(고소득층)	22.2	21.4	22.1	25.1	22.5	25.7	34.7	25.5	14.6	15.3	22.7	12.8	24	19	21.6	3.8	22.2	▼9.4

주 : 소득범주는 OECD기준 가구균등화소득 보정이후($Y^* = Y_i / \sqrt{S_i}$) 중위소득 기준으로 분석($Y_i = i$ 의 가구소득, $S_i = i$ 의 가구의 가구원수, 그리고 $Y^* = i$ 의 가구의 균등화된 소득).

자료 : 한국노동패널 18차 원자료 분석

전체적으로 보면, 전라북도의 중산층 비율이 높은 것은 9분위 이상의 고소득층의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도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이다.

다음으로 19세 미만아동이 있는 가구의 연평균 소득을 분석해보면, 아동이 있는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5,591만원이고 전라북도는 4,882만원으로 추정된다. 전라북도의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원천별 총소득액을 보면, 연평균 근로소득이 4,847만원, 금융소득 671만원, 부동산 소득 845만원, 그리고 사회보험소득과 이전소득이 각각 204만원과 365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라북도의 아동이 있는 가구의 전체 소득은 전국평균 아동이 있는 가구의 평균소득보다도 약 1,042만원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소득은 967만원, 금융소득은 43만원, 그리고 부동산 소득은 1,499만원이 전국 평균 아동이 있는 가구보다도 전라북도 아동가구의 소득이 더 적다.

<표IV-5> 19세 미만 아동가구의 소득원천별 연평균소득액 현황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	이전소득	전체소득
서울	5,346	474	2,455	810	370	5,634
부산	4,947	115	1,713	243	494	5,294
대구	5,532	454	3,391	648	445	5,979
대전	4,646	78	2,910	980	390	5,139
인천	5,415	760	1,650	795	747	5,958
광주	5,296	678	6,600	643	267	5,775
울산	5,981	78	25,000	397	605	6,671
경기	5,513	701	1,248	390	451	5,734
강원	4,480	240	865	576	294	4,566
충북	5,036	119	400	356	435	5,389
충남	4,914	103	544	453	402	5,341
전북	4,847	671	845	204	365	4,882
전남	6,199	98	1,157	142	570	6,447
경북	4,780	142	2,916	529	328	5,059
경남	5,049	143	1,271	618	433	5,306
제주	3,888	500		720	100	3,954
세종	5,368	75			614	5,866
전체	5,279	317	1,953	542	444	5,591
전체-전북	▼432	▲354	▼1,108	▼338	▼79	▼709

자료 : 한국노동패널 18차 원자료 분석

<표IV-6> 19세 미만 아동가구의 소득구성비

구분	절대빈곤(최저생계비 기준)		상대빈곤		
	빈곤	비빈곤	중위 50이하	중위50~150이하	중위150 이상
서울	4.96	95.04	6.01	64.23	29.77
부산	2.94	97.06	2.94	72.06	25.00
대구	5.50	94.50	5.50	63.30	31.19
대전	11.48	88.52	11.48	59.02	29.51
인천	2.68	97.32	2.68	68.46	28.86
광주	11.11	88.89	12.96	53.70	33.33
울산	4.82	95.18	4.82	53.01	42.17
경기	3.12	96.88	3.94	65.85	30.21
강원	8.20	91.80	9.84	70.49	19.67
충북	7.94	92.06	7.94	69.84	22.22
충남	6.36	93.64	6.36	69.09	24.55
전북	14.47	85.53	14.47	57.89	27.63
전남	11.11	88.89	13.89	48.61	37.50
경북	6.31	93.69	8.11	65.77	26.13
경남	0.61	99.39	1.21	71.52	27.27
제주	5.00	95.00	5.00	85.00	10.00
전체	5.08	94.92	5.78	65.09	29.13
전체-전북	▲9.39	▼9.39	▲8.69	▼7.20	▼1.50

자료 : 한국노동패널 18차 원자료 분석

다음으로 아동가구의 소득구성비를 보면, 최저생계비 기준 절대빈곤가구는 전라북도의 경우 14.47%로 추정된다. 전라북도의 절대빈곤가구는 전국 평균 아동가구의 빈곤율인 5.08%보다도 약 세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중위소득 50%이하 빈곤가구는 전라북도의 경우 14.47%로 추정된다. 전국 평균 중위소득 50%이하 상대적 빈곤가구가 5.78%인 점을 감안하면 전라북도의 상대적 빈곤가구도 절대빈곤가구와 유사하게 약 세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전라북도의 아동가구 중 중위소득 50%~150%의 중산층은 57.89%로 전국 평균 중산층 가구의 구성비인 65.09%보다도 약 9%p정도 낮은 수준이다. 또한 중위소득 50%이상 고소득층 가구는 전북의 경우 27.63%로 전국 평균 중위소득 150%이상의 고소득층 가구인 29.13%보다도 약 2%p 낮은 수준이다.

정리하자면, 전라북도 아동가구의 절대빈곤인구가 상대적 빈곤인구는 전국평균보다도 세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중산층(중위소득 50%~150%), 고소득층(중위소득 150%)의 가구비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표V-7> 5세 미만 아동가구의 분위별 가구비율

구분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전체	전국 전북
1분위	2.08	-		9.52	-	-	-	0.94	-	4.76	-	6.45	8.70	2.17	-	1.52	▲4.93
2분위	2.78	-	4.88	-	-	9.52	-	3.77	7.14	-	2.13	9.68	4.35	6.52	-	3.15	▲6.53
3분위	8.33	6.25	12.20	-	3.64	9.52	-	14.62	28.57	4.76	10.64	16.13	-	8.70	6.35	9.32	▲6.81
4분위	13.19	20.31	9.76	14.29	12.73	9.52	13.04	17.45	14.29	14.29	12.77	19.35	13.04	10.87	11.11	14.57	▲4.78
5분위	16.67	20.31	12.20	4.76	16.36	28.57	10.87	10.85	7.14	9.52	10.64	9.68	4.35	19.57	19.05	13.87	▼4.19
6분위	6.94	14.06	7.32	9.52	16.36	4.76	13.04	16.04	7.14	23.81	21.28	19.35	-	8.70	19.05	13.05	▲6.30
7분위	13.19	9.38	12.20	19.05	12.73	9.52	8.70	12.26	-	14.29	4.26	6.45	26.09	13.04	11.11	11.77	▼5.32
8분위	12.50	10.94	17.07	9.52	12.73	4.76	19.57	7.55	7.14	19.05	17.02	3.23	21.74	10.87	19.05	12.12	▼8.89
9분위	11.11	7.81	14.63	19.05	10.91	4.76	17.39	8.96	28.57	-	12.77	9.68	13.04	15.22	6.35	10.84	▼1.16
10분위	13.19	10.94	9.76	14.29	14.55	19.05	17.39	7.55	-	9.52	8.51	-	8.70	4.35	7.94	9.79	▼9.79
1분위 4분위	26.39	26.56	26.83	23.81	16.36	28.57	13.04	36.79	50.00	23.81	25.53	51.61	26.09	28.26	17.46	28.55	▲23.06
5분위 8분위	49.31	54.69	48.78	42.86	58.18	47.62	52.17	46.70	21.43	66.67	53.19	38.71	52.17	52.17	68.25	50.82	▼12.11
9분위 10분위	24.31	18.75	24.39	33.33	25.45	23.81	34.78	16.51	28.57	9.52	21.28	9.68	21.74	19.57	14.29	20.63	▼10.95

자료 : 한국노동패널 18차 원자료 분석

한편, 5세 미만의 아동가구의 분위별 가구수를 분석해보면, 5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전체 가구의 경우 1분위에서 4분위까지의 저소득층은 28.55%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5분위에서 8분위까지의 중산층은 50.82%로 추정되고 9분위 이상 고소득층은 20.63%로 추정된다.

전라북도를 포함한 16개시도의 경우 5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의 수가 많지 않아 분위별 소득구성비를 분석결과를 신뢰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전라북도의 경우 전체 5세 미만의 가구로 분석된 분위별 소득을 기준으로 추정하는 것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16개 시도 중 서울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동이 있는 가구의 수는 표본수가 50개 내외에 불과하다.

현재 아동수당제도의 지원대상이 소득상위 90%까지를 대상으로 설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라북도의 경우 아동이 있는 가구의 85%에서 90%정도까지는 정책의 수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되고 나머지 10% 내외의 5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표IV-8> 19세 미만 아동가구의 분위별 가구비율

구분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전체	전국 전북
1분위	3.11	1.59	-	6.67	-	9.52	-	0.39	2.94	5.26	4.55	7.41	10.00	2.04	-	2.26	▲5.15
2분위	3.63	1.59	4.65	10.00	-	4.76	-	3.14	5.88	5.26	2.27	7.41	-	6.12	1.79	3.38	▲4.03
3분위	8.81	6.35	11.63	6.67	7.02		2.56	9.41	11.76	10.53	6.82	11.11	-	6.12	1.79	7.59	▲3.52
4분위	11.92	15.87	6.98	10.00	7.02	9.52	12.82	7.84	20.59	5.26	18.18	7.41	3.33	8.16	12.50	10.87	▼3.46
5분위	14.51	14.29	11.63	10.00	14.04	4.76	2.56	9.80	17.65	21.05	20.45	7.41	13.33	26.53	23.21	13.54	▼6.13
6분위	14.51	19.05	11.63	20.00	17.54	4.76	17.95	16.08	8.82	10.53	11.36	14.81	6.67	10.20	12.50	14.46	▲0.35
7분위	10.36	11.11	11.63	10.00	12.28	23.81	10.26	14.12	8.82	5.26	9.09	7.41	16.67	16.33	8.93	12.00	▼4.59
8분위	12.44	9.52	9.30	3.33	12.28	14.29	28.21	10.98	11.76	26.32	13.64	7.41	23.33	6.12	16.07	12.41	▼5.00
9분위	8.29	7.94	16.28	10.00	17.54	19.05	12.82	13.33	8.82	-	2.27	22.22	13.33	14.29	12.50	11.49	▲10.73
10분위	12.44	12.70	16.28	13.33	12.28	9.52	12.82	14.90	2.94	10.53	11.36	7.41	13.33	4.08	10.71	12.00	▼4.59
1분위 4분위	27.46	25.40	23.26	33.33	14.04	23.81	15.38	20.78	41.18	26.32	31.82	33.33	13.33	22.45	16.07	24.10	▲9.23
5분위 8분위	51.81	53.97	44.19	43.33	56.14	47.62	58.97	50.98	47.06	63.16	54.55	37.04	60.00	59.18	60.71	52.41	▼15.37
9분위 10분위	20.73	20.63	32.56	23.33	29.82	28.57	25.64	28.24	11.76	10.53	13.64	29.63	26.67	18.37	23.21	23.49	▲6.14
1분위 7분위	66.84	69.84	58.14	73.33	57.89	57.14	46.15	60.78	76.47	63.16	72.73	62.96	50.00	75.51	60.71	64.10	▼1.14

자료 : 한국노동패널 18차 원자료 분석

다음으로 19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의 10분위별 가구비율을 분석한 결과 전체 가구 중 19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 중 4분위 이하의 가구는 24.1%로 추정되고 5분위에서 8분위까지의 중산층은 52.41%로 추정된다. 9분위 이상의 고소득층 가구는 전체 가구의 23.49%정도 추정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5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와 유사하게 4분위 이하의 저소득층은 25% 내외정도이고, 5분위에서 8분위까지의 고소득층은 50%내외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전라북도의 경우 19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 중 4분위 이하의 저소득 가구는 33.33%로 추정되고 5분위에서 8분위까지의 중산층은 37.04% 정도로 추정된다. 또한 9분위 이상의 고소득층 가구는 29.63%정도이다. 전라북도의 19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수도 표본이 많지 않아 소득구간별 편차가 커 분석결과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지만 전국과 비교 시 전북의 19세 미만이 있는 가구는 4분위 이하 빈곤가구와 5분위와 8분위의 중산층 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표IV-9> 소득원천별 노인의 연평균소득현황(개인)

(단위 : 만원)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개인 연금	퇴직 연금	농지 연금	사적 이전 소득	공적 연금	기초 노령 연금	국민 기초 생활 급여	기타 공적 급여	기타 소득	총수입
서울	207.5	203.7	193.2	3.0	1.9	1.3	215.1	248.6	55.2	20.5	35.4	35.2	1,220.6
부산	148.2	89.1	94.7	1.6	0.0	1.3	256.5	174.6	76.8	15.8	52.6	16.6	927.8
대구	95.7	119.5	84.7	0.0	0.0	0.0	269.7	270.5	65.7	10.4	23.7	4.7	944.5
인천	137.3	40.6	107.5	1.3	0.4	0.3	201.9	91.9	79.3	39.1	36.3	14.7	750.6
광주	88.6	40.7	99.0	0.0	0.0	0.5	244.8	426.4	64.6	19.5	12.5	2.2	998.8
대전	114.1	83.7	154.9	0.5	0.0	0.0	260.8	338.7	67.5	35.4	31.9	6.7	1,094.1
울산	184.4	121.0	147.1	0.4	0.0	0.0	190.8	212.9	63.7	23.0	36.6	12.4	992.2
경기	126.6	137.5	126.6	3.1	3.3	3.9	227.9	189.2	61.7	17.1	38.2	6.8	941.9
강원	82.4	113.5	46.8	0.3	0.0	2.6	216.8	216.0	79.8	13.1	45.6	10.4	827.5
충북	74.4	217.8	94.4	0.7	0.0	0.0	248.7	189.7	69.3	13.5	44.1	27.2	979.9
충남	86.2	169.0	97.2	0.9	0.0	0.0	233.8	156.9	67.6	13.0	35.5	3.9	864.0
전북	72.0	155.2	51.6	3.6	3.7	1.2	217.6	203.5	79.1	19.1	27.6	1.5	835.8
전남	58.6	126.4	47.9	0.0	0.0	0.1	224.8	137.7	88.6	24.1	31.1	7.4	746.6
경북	91.5	220.7	74.9	0.0	1.1	0.0	257.2	288.9	69.8	11.5	28.0	8.1	1,051.6
경남	80.1	89.3	67.8	1.5	0.0	0.5	207.1	189.9	76.7	18.7	32.6	0.5	764.6
제주	98.1	277.7	85.5	0.3	0.0	2.3	132.8	266.1	59.2	7.1	34.9	0.3	964.4
전체	122.3	145.0	110.6	1.7	1.3	1.3	228.7	213.3	68.3	18.4	35.4	12.9	959.3
전체-전북	▼50.3	▲10.2	▼59.0	▲1.9	▲2.4	▼0.1	▼11.1	▼9.8	▲10.8	▲0.7	▼7.8	▼11.4	▼123.5

자료 : 노인생활실태조사(2015) 원자료

다음으로 노인가구의 소득을 노인생활실태조사(2014)로 분석해 보면, 개인소득 기준으로 전라북도의 노인의 연간총수입은 835.8만원으로 전국 평균인 959.3만원보다도 약 120만원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의 연평균소득을 소득원천별로 분석해보면, 사적이전소득이 217.6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공적연금 203.5만원, 그리고 사업소득 155.2만원, 근로소득 72.0만원 등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라북도의 노인소득은 안정적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보다는 가족이나 친척 등이 용돈의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적이전소득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은 소득액은 많지만 연금소득자는 30%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민연금 수급자는 전라북도의 경우 2016년 기준 약 20만명 정도이고, 65세 이상부터 지급되는 노령연금의 경우 수급자가 15.6만명 정도로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약 40%정도만 지원을 받고 있다.

한편, 전라북도의 노인가구의 빈곤율을 추정해보면, 노인생활실태조사 중위소득 50%미만의 상대적 빈곤율은 34.52%로 추정되고, 한국노동패널로 분석시에도 중위 소득 50%이하 빈곤가구는 32.81%로 추정된다. 전라북도의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전국 평균인 24.86%보다도 약 8%p 높은 수준이다.

한국노동패널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을 추정해 보면, 전라북도 노인은 32.81% 정도가 중위소득 50%미만의 빈곤가구로 추정되고 있어 전체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빈곤율인 18.86%보다도 약 두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IV-10> 65세 이상 노인인구 빈곤추정

구분	노인생활실태조사(2015)		한국노동패널(2015)	
	빈곤	비빈곤	빈곤	비빈곤
서울	18.95	81.05	17.61	82.39
부산	23.14	76.86	18.14	81.86
대구	16.15	83.85	21.61	78.39
인천	28.72	71.28	21.77	78.23
광주	25.38	74.62	11.44	88.56
대전	26.27	73.73	23.94	76.06
울산	20.26	79.74	12.16	87.84
경기	19.47	80.53	13.47	86.53
강원	25.36	74.64	27.16	72.84
충북	19.90	80.1	21.71	78.29
충남	28.32	71.68	24.80	75.2
전북	34.52	65.48	32.81	67.19
전남	41.76	58.24	27.06	72.94
경북	25.35	74.65	23.73	76.27
경남	36.11	63.89	18.06	81.94
제주	32.58	67.42	24.39	75.61
전체	24.86	75.14	18.86	81.14
전체-전북	▲9.7	▼9.7	▲14.0	▼14.0

자료 : 노인생활실태조사(2015), 한국노동패널 18차 자료 원자료

한편, 전라북도의 노인빈곤율을 개인과 가구로 분석해보면,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34.5%이고 노인개인의 빈곤율은 18.6%로 추정된다.

<표IV-11> 노인 빈곤율 추정

구분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전체 - 전북
중위 50% 이하 (개인)	9.8	9.6	6.4	11.0	13.4	8.6	11.2	10.7	11.1	10.7	13.8	18.6	15.9	11.5	17.0	18.9	11.8	▲6.8
중위 50% 이하 (가구)	19.0	23.1	16.1	28.7	25.4	26.3	20.3	19.5	25.4	19.9	28.3	34.5	41.8	25.4	36.1	32.6	24.9	▲9.6

자료 : 노인생활실태조사(2015)

<표IV-12> 가구원수별 기초생활수급 가구 현황

	구분	총가구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이상 가구
가구수	전체	1,035,435	630,037	186,329	116,251	67,080	26,613	9,125
	서울	173,675	105,216	31,425	19,718	11,673	4,326	1,317
	부산	99,909	63,763	17,649	10,423	5,665	1,861	548
	대구	66,472	38,606	12,752	8,162	4,996	1,547	409
	인천	61,918	34,574	12,169	8,274	4,598	1,770	533
	광주	39,316	20,717	7,442	5,862	3,491	1,413	391
	대전	32,729	18,608	6,209	4,141	2,420	995	356
	울산	12,538	8,572	1,905	1,010	687	268	96
	세종	2,509	1,538	450	266	143	73	39
	경기	168,333	99,964	29,732	20,738	11,622	4,645	1,632
	강원	40,244	25,934	7,322	3,639	2,148	874	327
	충북	33,112	20,972	5,900	3,284	1,809	807	340
	충남	39,798	25,144	7,059	4,004	2,213	973	405
	전북	60,394	35,794	11,015	6,653	4,188	1,979	765
	전남	52,818	33,765	9,327	4,792	2,821	1,485	628
	경북	68,732	44,990	11,815	6,244	3,702	1,469	512
	경남	69,276	44,008	11,707	7,414	3,919	1,635	593
	제주	13,662	7,872	2,451	1,627	985	493	234
비율	전체	100	60.85	18.00	11.23	6.48	2.57	0.88
	서울	100	60.58	18.09	11.35	6.72	2.49	0.76
	부산	100	63.82	17.67	10.43	5.67	1.86	0.55
	대구	100	58.08	19.18	12.28	7.52	2.33	0.62
	인천	100	55.84	19.65	13.36	7.43	2.86	0.86
	광주	100	52.69	18.93	14.91	8.88	3.59	0.99
	대전	100	56.85	18.97	12.65	7.39	3.04	1.09
	울산	100	68.37	15.19	8.06	5.48	2.14	0.77
	세종	100	61.30	17.94	10.60	5.70	2.91	1.55
	경기	100	59.38	17.66	12.32	6.90	2.76	0.97
	강원	100	64.44	18.19	9.04	5.34	2.17	0.81
	충북	100	63.34	17.82	9.92	5.46	2.44	1.03
	충남	100	63.18	17.74	10.06	5.56	2.44	1.02
	전북	100	59.27	18.24	11.02	6.93	3.28	1.27
	전남	100	63.93	17.66	9.07	5.34	2.81	1.19
	경북	100	65.46	17.19	9.08	5.39	2.14	0.74
	경남	100	63.53	16.90	10.70	5.66	2.36	0.86
	제주	100	57.62	17.94	11.91	7.21	3.61	1.71
	전체-전북	-	▼1.58	▲0.24	▼0.21	▲0.45	▲0.71	▲0.39

자료 : 보건복지부(2017) 보건복지통계연보 2016년 말 기준

전라북도의 기초생활수급가구는 총 60,394가구로 그 중 1인가구의 수가 35,794가
 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2인가구 3인가구 등의 순으로 많았다. 한편, 1인가구의
 비중만 봤을 때 전국의 1인가구 비중 60.85%에 비해 1.58%p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V-13> 가구유형별 기초생활수급 가구 현황

	구분	계	노인세대	소년소녀 가장세대	모자세대	부자세대	장애인 세대	일반세대	기 타
가구수	전체	1,035,435	261,680	4,324	132,277	37,753	193,585	328,282	77,534
	서울	173,675	46,370	453	23,561	6,047	28,214	55,310	13,720
	부산	99,909	25,925	343	11,793	3,471	17,116	34,367	6,894
	대구	66,472	14,545	229	9,381	2,517	10,596	24,875	4,329
	인천	61,918	14,663	244	9,992	2,485	10,067	18,559	5,908
	광주	39,316	6,915	229	7,009	1,841	7,037	13,749	2,536
	대전	32,729	7,164	79	5,120	1,354	6,300	11,173	1,539
	울산	12,538	3,266	70	1,150	338	2,554	3,898	1,262
	세종	2,509	644	5	294	93	449	730	294
	경기	168,333	44,817	762	24,257	6,445	29,758	47,685	14,609
	강원	40,244	11,200	261	4,028	1,288	8,310	12,264	2,893
	충북	33,112	8,267	193	3,696	1,118	7,357	10,105	2,376
	충남	39,798	10,702	200	4,250	1,314	9,261	11,281	2,790
	전북	60,394	13,528	299	6,773	2,050	12,828	20,536	4,380
	전남	52,818	14,728	352	4,545	1,810	12,820	14,846	3,717
	경북	68,732	17,809	246	6,496	2,207	13,957	23,157	4,860
	경남	69,276	17,375	303	7,888	2,606	14,393	21,944	4,767
	제주	13,662	3,762	56	2,044	769	2,568	3,803	660
비율	전체	100.00	25.27	0.42	12.78	3.65	18.70	31.70	7.49
	서울	100.00	26.70	0.26	13.57	3.48	16.25	31.85	7.90
	부산	100.00	25.95	0.34	11.80	3.47	17.13	34.40	6.90
	대구	100.00	21.88	0.34	14.11	3.79	15.94	37.42	6.51
	인천	100.00	23.68	0.39	16.14	4.01	16.26	29.97	9.54
	광주	100.00	17.59	0.58	17.83	4.68	17.90	34.97	6.45
	대전	100.00	21.89	0.24	15.64	4.14	19.25	34.14	4.70
	울산	100.00	26.05	0.56	9.17	2.70	20.37	31.09	10.07
	세종	100.00	25.67	0.20	11.72	3.71	17.90	29.10	11.72
	경기	100.00	26.62	0.45	14.41	3.83	17.68	28.33	8.68
	강원	100.00	27.83	0.65	10.01	3.20	20.65	30.47	7.19
	충북	100.00	24.97	0.58	11.16	3.38	22.22	30.52	7.18
	충남	100.00	26.89	0.50	10.68	3.30	23.27	28.35	7.01
	전북	100.00	22.40	0.50	11.21	3.39	21.24	34.00	7.25
	전남	100.00	27.88	0.67	8.61	3.43	24.27	28.11	7.04
	경북	100.00	25.91	0.36	9.45	3.21	20.31	33.69	7.07
	경남	100.00	25.08	0.44	11.39	3.76	20.78	31.68	6.88
	제주	100.00	27.54	0.41	14.96	5.63	18.80	27.84	4.83
	전체-전북	-	▼2.87	▲0.08	▼1.57	▼0.26	▲2.54	▲2.30	▼0.24

자료 : 보건복지부(2017) 보건복지통계연보 2016년 말 기준

전라북도의 가구유형별 기초생활수급가구는 일반세대가구가 20,536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노인세대가구가 13,528가구로 많았다. 한편 일반세대가구의 비중을 전국비중과 비교시 전북이 34.00%로 전국 31.70%보다 2.54%p 더 높았다.

<표IV-14> 기초생활수급별 지원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전체	4,156,506	3,410,734	745,772	3,058,829	2,318,618	740,211	116,838	88,349	28,489
서울	688,510	409,998	278,512	3,312,681	2,504,880	807,801	125,082	94,818	30,264
부산	399,723	358,411	41,312	3,536,380	2,773,041	763,339	139,737	109,066	30,671
대구	275,057	247,553	27,504	3,790,678	2,979,105	811,573	132,353	103,374	28,979
인천	245,561	220,008	25,553	3,853,891	3,048,281	805,610	143,875	112,275	31,600
광주	162,355	146,120	16,235	3,856,064	3,073,708	782,355	161,206	126,569	34,637
대전	134,864	121,378	13,486	3,760,536	3,017,731	742,805	169,732	134,178	35,554
울산	50,499	44,310	6,189	3,898,755	3,126,051	772,703	189,431	149,757	39,675
세종	9,892	7,914	1,978	3,853,220	3,103,974	749,246	218,329	172,924	45,405
경기	645,051	555,387	89,664	3,179,608	2,586,520	593,088	229,914	184,083	45,831
강원	169,375	146,491	22,884	3,913,587	3,214,263	699,324	242,919	196,471	46,448
충북	143,522	120,675	22,847	657,426	394,456	262,970	31,084	15,542	15,542
충남	163,226	135,886	27,340	385,641	345,801	39,840	14,082	12,610	1,472
전북	252,459	217,290	35,169	260,439	234,396	26,043	14,618	13,157	1,461
전남	210,837	174,885	35,952	233,819	209,626	24,193	11,742	10,382	1,360
경북	280,533	231,674	48,859	154,598	139,138	15,460	7,757	6,982	775
경남	271,848	230,199	41,649	126,647	113,983	12,664	8,217	7,395	822
제주	53,194	42,555	10,639	47,612	41,895	5,717	2,887	2,415	472

자료 : 보건복지부(2017) 보건복지통계연보 2016년 말 기준

<표IV-15> 기초연금수급자 및 지원금액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수급자 수			지원금액		
	전체노인	수급자 수	수급률	계	국비	지방비
전체	6,987,489	4,581,406	65.6	9,911,957	7,554,459	2,357,498
서울	1,292,381	681,235	52.7	1,484,752	1,061,089	423,663
부산	535,628	370,176	69.1	793,157	602,139	191,018
대구	328,731	222,609	67.7	478,949	355,962	122,987
인천	323,869	226,640	70.0	489,292	351,308	137,984
광주	172,508	113,714	65.9	243,073	172,711	70,362
대전	171,445	109,586	63.9	236,125	165,287	70,837
울산	108,733	68,248	62.8	147,371	103,160	44,211
세종	24,174	14,429	59.7	30,760	21,532	9,228
경기	1,372,197	817,956	59.6	1,766,517	1,256,755	509,762
강원	265,997	184,249	69.3	401,332	326,050	75,282
충북	240,606	171,027	71.1	370,061	297,134	72,927
충남	349,975	247,019	70.6	532,916	445,662	87,254
전북	341,112	256,186	75.1	555,154	459,972	95,182
전남	398,821	323,483	81.1	703,622	594,952	108,669
경북	492,267	372,525	75.7	805,892	665,872	140,020
경남	480,103	346,364	72.1	751,337	589,707	161,630
제주	88,942	55,960	62.9	121,648	85,166	36,482
전체-전북			▲9.5			

자료 : 보건복지부(2017) 보건복지통계연보 2016년 말 기준

전라북도의 기초생활수급비용은 총 2,524억원이 기초생활수급비용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일반수급자대상 지원액이 2,604억원, 시설수급자대상으로 146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전라북도의 기초연금수급자 현황으로는 총 256186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북 전체노인인구 대비 75.1%의 수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국평균 65.6%보다 9.5%p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IV-16> 장애수당 수급자 현황

구분	총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시설)		차상위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전체	336,224	100.0	223,744	66.5	12,528	3.7	99,952	29.7
서울	50,193	100.0	35,918	71.6	1,129	2.2	13,146	26.2
부산	27,800	100.0	20,700	74.5	660	2.4	6,440	23.2
대구	18,541	100.0	13,377	72.1	841	4.5	4,323	23.3
인천	17,894	100.0	12,702	71.0	663	3.7	4,529	25.3
광주	11,299	100.0	7,407	65.6	356	3.2	3,536	31.3
대전	10,231	100.0	7,126	69.7	500	4.9	2,605	25.5
울산	4,419	100.0	2,920	66.1	102	2.3	1,397	31.6
세종	1,021	100.0	559	54.8	118	11.6	344	33.7
경기	51,984	100.0	34,394	66.2	2,080	4.0	15,510	29.8
강원	15,719	100.0	9,539	60.7	513	3.3	5,667	36.1
충북	12,902	100.0	7,984	61.9	953	7.4	3,965	30.7
충남	14,477	100.0	9,311	64.3	730	5.0	4,436	30.6
전북	22,595	100.0	14,104	62.4	856	3.8	7,635	33.8
전남	23,774	100.0	13,100	55.1	881	3.7	9,793	41.2
경북	25,148	100.0	16,193	64.4	1,015	4.0	7,940	31.6
경남	23,669	100.0	15,476	65.4	792	3.3	7,401	31.3
제주	4,558	100.0	2,934	64.4	339	7.4	1,285	28.2
전체-전북	-	-	▼4.10		▲0.10		▲4.10	

자료 : 보건복지부(2017) 보건복지통계연보 2016년 말 기준

장애수당수급자는 전라북도의 경우 총 22595명이 장애수당을 받고 있었고 이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4104명으로 가장 많고, 차상위 수급자, 시설기초생활수급자의 순으로 많았다.

일반기초생활수급자의 비중은 전북이 62.4%로 전국평균 66.5%보다 4.1%p 낮았으나 시설수급자와 차상위수급자의 비율은 전국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IV-17>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총계 (a)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시설)			
		소계 (b)	비율 (b/a)	중증	경증	소계 (c)	비율 (c/a)	중증	경증	소계 (d)	비율 (d/a)	중증	경증
전체	19,934	10,652	53.4	6,197	4,455	5,771	29.0	3,668	2,103	3,511	17.6	2,500	1,011
서울	2,930	1,540	52.6	932	608	825	28.2	544	281	565	19.3	425	140
부산	1,309	684	52.3	413	271	351	26.8	232	119	274	20.9	194	80
대구	1,166	586	50.3	332	254	283	24.3	171	112	297	25.5	204	93
인천	1,137	634	55.8	373	261	344	30.3	219	125	159	14.0	103	56
광주	913	516	56.5	330	186	235	25.7	159	76	162	17.7	107	55
대전	769	418	54.4	237	181	209	27.2	144	65	142	18.5	103	39
울산	303	137	45.2	80	57	85	28.1	57	28	81	26.7	75	6
세종	51	38	74.5	16	22	10	19.6	7	3	3	5.9	2	1
경기	3,655	1,839	50.3	1,118	721	1,328	36.3	847	481	488	13.4	378	110
강원	804	421	52.4	230	191	243	30.2	141	102	140	17.4	102	38
충북	867	420	48.4	224	196	200	23.1	120	80	247	28.5	171	76
충남	830	514	61.9	272	242	218	26.3	146	72	98	11.8	67	31
전북	1,340	809	60.4	453	356	346	25.8	211	135	185	13.8	117	68
전남	1,064	605	56.9	370	235	274	25.8	173	101	185	17.4	120	65
경북	1,296	714	55.1	399	315	334	25.8	200	134	248	19.1	165	83
경남	1,134	572	50.4	327	245	380	33.5	237	143	182	16.0	129	53
제주	366	205	56.0	91	114	106	29.0	60	46	55	15.0	38	17
전체-전북			▲6.9				▼3.1				▼3.8		

자료 : 보건복지부(2017) 보건복지통계연보 2016년 말 기준

<표IV-18> 장애연금 수급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총 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차상위 초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시설)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전체	350,161	100.0	134,432	38.4	45,085	12.9	142,769	40.8	27,875	8.0
서울	50,468	100.0	20,219	40.1	6,421	12.7	21,257	42.1	2,571	5.1
부산	25,313	100.0	11,283	44.6	2,810	11.1	9,779	38.6	1,441	5.7
대구	17,250	100.0	7,242	42.0	2,131	12.4	6,199	35.9	1,678	9.7
인천	17,396	100.0	6,800	39.1	2,082	12.0	7,432	42.7	1,082	6.2
광주	10,343	100.0	4,360	42.2	1,461	14.1	3,439	33.2	1,083	10.5
대전	10,011	100.0	3,914	39.1	1,121	11.2	4,100	41.0	876	8.8
울산	5,739	100.0	1,737	30.3	943	16.4	2,679	46.7	380	6.6
세종	1,316	100.0	329	25.0	141	10.7	579	44.0	267	20.3
경기	65,759	100.0	21,174	32.2	9,128	13.9	30,730	46.7	4,727	7.2
강원	14,242	100.0	5,470	38.4	2,042	14.3	5,396	37.9	1,334	9.4
충북	14,191	100.0	4,912	34.6	1,672	11.8	5,529	39.0	2,078	14.6
충남	18,495	100.0	6,334	34.2	2,016	10.9	8,162	44.1	1,983	10.7
전북	20,109	100.0	9,161	45.6	2,519	12.5	6,687	33.3	1,742	8.7
전남	22,074	100.0	9,455	42.8	3,090	14.0	7,941	36.0	1,588	7.2
경북	26,188	100.0	10,274	39.2	3,349	12.8	10,023	38.3	2,542	9.7
경남	26,142	100.0	10,089	38.6	3,508	13.4	10,570	40.4	1,975	7.6
제주	5,125	100.0	1,679	32.8	651	12.7	2,267	44.2	528	10.3
전체-전북	-	-	-	▲7.2	-	▼0.3	-	▼7.5	-	▲0.7

자료 : 보건복지부(2017) 보건복지통계연보 2016년 말 기준

전라북도의 장애아동 수급자는 총 1340명으로 이중 기초생활수급자가 809명으로 가장 많고, 차상위수급자, 시설기초수급자의 순으로 많았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중은 전북이 60.4%로 전국평균 53.4%보다 6.9%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연금수급자의 현황은 전북이 총 20,109명으로 17개 시도 중 경기, 서울, 경북, 경남 등에 이어 8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중으로 보게되면 전북이 45.6%로 전국평균 38.4%보다 7.2%p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V-19> 긴급복지지원 건수 및 지원금액

(단위 : 건수, 백만원)

구 분	지 원 건 수	지 원 금 액
전체	222,982	109,342
서울	27,850	10,569
부산	15,763	8,789
대구	12,853	6,573
인천	13,647	8,340
광주	17,867	7,999
대전	7,013	3,503
울산	3,783	1,847
세종	694	346
경기	54,745	26,942
강원	7,711	3,902
충북	7,951	3,676
충남	9,164	4,545
전북	13,800	6,686
전남	12,019	5,753
경북	8,950	4,427
경남	7,623	4,582
제주	1,549	863

긴급복지지원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총 222천건이 지원되었으며 총 예산으로는 1,093억원이 지급되었다. 전라북도의 경우 긴급복지지원건수는 총 13,800건, 지원금액은 6,686백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돌봄정책의 수요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연령대별로 돌봄정책의 직접적인 수혜대상에 대한 분류이다. 전라북도의 생애주기별 빈곤인구비율을 분석해보면 20세 전후의 아동청소년 그리고 40대 후반의 청장년, 70세 이상의 고령노인의 빈곤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표IV-20> 전라북도 연령별 인구 및 빈곤인구 현황

구분	0~4세	5~9세	10~14세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전국	224,271	236,897	239,979	318,089	354,061	321,367	351,788	406,272	421,248	439,810	418,332	424,289	319,076	228,345	178,229	145,780	159,988
서울	376,575	384,739	395,786	538,419	690,728	751,973	803,507	817,467	811,751	866,421	770,459	799,578	627,314	448,956	350,580	251,961	244,402
부산	132,044	135,043	134,883	190,317	240,006	215,193	223,739	259,777	262,415	295,913	285,203	325,197	262,725	191,726	140,369	106,214	97,755
대구	99,198	107,838	114,049	160,078	180,631	149,296	152,640	181,128	202,133	229,689	212,076	210,139	156,761	113,421	82,739	67,796	64,945
인천	130,380	139,130	134,173	177,320	210,927	195,695	209,170	240,973	245,705	266,469	254,636	247,951	166,285	108,013	83,667	63,942	68,633
광주	65,365	75,592	78,816	108,788	113,334	88,068	97,913	115,482	124,435	131,518	114,620	108,294	74,417	58,451	44,765	34,529	34,827
대전	68,212	73,864	75,562	100,354	113,205	99,591	104,843	118,036	126,340	137,925	119,089	120,022	85,759	57,891	43,716	34,059	35,902
울산	57,567	58,354	55,355	77,357	84,934	73,770	81,689	95,455	95,661	111,174	105,322	99,773	67,125	41,855	27,464	19,897	19,552
세종	17,044	17,867	14,676	12,449	12,764	13,759	20,193	25,758	24,293	19,895	14,927	14,513	10,713	7,446	5,763	5,030	5,958
경기	598,082	653,028	684,739	804,776	881,482	805,768	892,726	1,063,220	1,124,294	1,188,236	1,044,815	981,143	669,996	440,224	357,143	283,006	294,102
강원	56,219	65,162	68,928	94,473	103,672	81,197	84,641	100,766	115,638	130,734	127,620	144,107	111,497	70,835	70,620	62,162	62,535
충북	68,043	73,502	72,974	98,821	107,711	90,423	100,107	112,483	122,308	137,329	128,372	136,462	102,400	67,836	60,318	53,799	58,737
충남	95,052	102,154	97,587	124,772	129,557	116,741	137,091	157,444	161,823	173,888	157,684	166,438	126,378	99,447	81,949	76,860	91,852
전북	73,102	84,270	87,768	119,853	124,667	94,669	102,681	122,970	140,393	155,191	145,516	153,759	118,749	99,944	82,388	73,568	85,303
전남	75,316	81,420	82,763	117,131	118,330	88,043	100,521	118,971	132,372	153,868	152,650	161,888	121,725	109,451	96,220	93,770	99,475
경북	110,059	112,213	110,753	153,905	167,180	141,123	157,308	182,285	197,370	224,577	221,457	238,550	191,201	145,050	116,069	109,699	121,599
경남	151,587	163,889	157,298	210,364	218,740	178,628	210,208	256,039	271,415	303,440	275,777	285,726	210,482	150,374	115,340	103,023	111,541
제주	30,426	33,832	33,859	41,882	43,143	33,430	38,891	48,018	53,897	58,533	52,169	48,779	35,549	26,425	22,119	18,575	22,070
전국	21,988	73,282	133,922	209,498	72,059	22,173	21,897	38,960	69,911	109,808	116,896	125,858	102,556	98,293	103,040	101,057	118,341
서울	3,310	10,184	20,342	34,411	12,419	4,456	3,499	5,730	10,525	17,689	19,751	21,373	17,905	18,007	19,414	17,746	18,465
부산	1,596	5,118	10,087	17,614	7,030	2,106	1,829	3,436	6,416	10,686	11,336	13,006	11,413	10,663	10,482	10,172	10,921
대구	1,322	4,495	8,751	13,697	5,881	1,664	1,441	2,584	4,986	8,509	8,730	8,595	6,797	6,144	6,020	6,050	6,364
인천	1,782	5,280	9,146	13,740	4,533	1,474	1,511	2,657	4,741	6,944	6,962	7,265	6,017	5,504	5,867	5,823	6,521
광주	1,476	3,815	6,197	10,139	4,965	1,447	1,187	2,161	3,652	5,562	5,267	5,038	3,589	3,213	2,840	2,704	3,043
대전	903	2,682	4,896	7,549	2,960	883	716	1,410	2,655	4,076	3,772	4,128	3,283	2,949	2,969	2,653	2,956
울산	265	772	1,369	2,150	724	209	272	475	910	1,330	1,386	1,583	1,368	1,248	1,242	1,158	1,226
세종	58	239	380	439	145	42	68	116	158	228	237	261	233	226	255	302	354
경기	3,577	13,300	24,301	37,351	10,432	3,265	3,439	6,073	10,690	16,579	17,729	18,736	15,171	14,851	17,229	16,895	19,326
강원	767	2,470	4,594	7,326	2,543	634	763	1,407	2,579	4,009	4,549	5,063	4,100	3,722	4,247	4,516	5,211
충북	764	2,520	4,370	6,222	1,846	602	798	1,363	2,190	3,358	3,555	4,110	3,205	2,876	3,429	3,194	3,892
충남	812	2,929	5,302	7,563	2,073	640	817	1,572	2,653	3,856	4,096	4,676	3,781	3,813	4,123	3,987	5,203
전북	1,494	5,067	8,721	13,000	5,001	1,370	1,456	2,716	4,485	6,561	6,929	7,298	5,728	5,782	5,565	5,528	7,586
전남	1,106	3,607	6,451	10,231	2,987	928	1,170	1,897	3,400	5,101	5,864	6,304	4,835	5,038	5,160	5,639	8,113
경북	1,221	4,284	7,679	11,658	3,671	1,143	1,396	2,520	4,480	6,893	7,643	8,544	7,047	6,568	6,731	7,245	9,320
경남	1,147	5,105	9,040	13,088	3,782	1,027	1,267	2,295	4,420	6,981	7,549	8,474	6,911	6,477	6,282	6,277	8,107
제주	388	1,415	2,296	3,320	1,067	283	268	548	971	1,446	1,541	1,404	1,173	1,212	1,185	1,168	1,733

자료 : 행자부(2016) 주민등록인구통계, 보건복지부(2017)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 재구성

<표IV-21> 전라북도 연령별 빈곤율 현황

구분	0~4세	5~9세	10~14세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전국	1.00	3.32	6.08	9.50	3.27	1.01	0.99	1.77	3.17	4.98	5.30	5.71	4.65	4.46	4.67	4.58	5.37
서울	0.88	2.70	5.40	9.14	3.30	1.18	0.93	1.52	2.79	4.70	5.24	5.68	4.75	4.78	5.16	4.71	4.90
부산	1.21	3.88	7.64	13.34	5.32	1.59	1.39	2.60	4.86	8.09	8.59	9.85	8.64	8.08	7.94	7.70	8.27
대구	1.33	4.53	8.82	13.81	5.93	1.68	1.45	2.60	5.03	8.58	8.80	8.66	6.85	6.19	6.07	6.10	6.42
인천	1.37	4.05	7.01	10.54	3.48	1.13	1.16	2.04	3.64	5.33	5.34	5.57	4.61	4.22	4.50	4.47	5.00
광주	2.26	5.84	9.48	15.51	7.60	2.21	1.82	3.31	5.59	8.51	8.06	7.71	5.49	4.92	4.34	4.14	4.66
대전	1.32	3.93	7.18	11.07	4.34	1.29	1.05	2.07	3.89	5.98	5.53	6.05	4.81	4.32	4.35	3.89	4.33
울산	0.46	1.34	2.38	3.73	1.26	0.36	0.47	0.83	1.58	2.31	2.41	2.75	2.38	2.17	2.16	2.01	2.13
세종	0.34	1.40	2.23	2.58	0.85	0.25	0.40	0.68	0.93	1.34	1.39	1.53	1.37	1.33	1.50	1.77	2.08
경기	0.60	2.22	4.06	6.25	1.74	0.55	0.58	1.02	1.79	2.77	2.96	3.13	2.54	2.48	2.88	2.82	3.23
강원	1.36	4.39	8.17	13.03	4.52	1.13	1.36	2.50	4.59	7.13	8.09	9.01	7.29	6.62	7.55	8.03	9.27
충북	1.12	3.70	6.42	9.14	2.71	0.88	1.17	2.00	3.22	4.94	5.22	6.04	4.71	4.23	5.04	4.69	5.72
충남	0.85	3.08	5.58	7.96	2.18	0.67	0.86	1.65	2.79	4.06	4.31	4.92	3.98	4.01	4.34	4.19	5.47
전북	2.04	6.93	11.93	17.78	6.84	1.87	1.99	3.72	6.14	8.98	9.48	9.98	7.84	7.91	7.61	7.56	10.38
전남	1.47	4.79	8.57	13.58	3.97	1.23	1.55	2.52	4.51	6.77	7.79	8.37	6.42	6.69	6.85	7.49	10.77
경북	1.11	3.89	6.98	10.59	3.34	1.04	1.27	2.29	4.07	6.26	6.94	7.76	6.40	5.97	6.12	6.58	8.47
경남	0.76	3.37	5.96	8.63	2.49	0.68	0.84	1.51	2.92	4.61	4.98	5.59	4.56	4.27	4.14	4.14	5.35
제주	1.28	4.65	7.55	10.91	3.51	0.93	0.88	1.80	3.19	4.75	5.06	4.61	3.86	3.98	3.89	3.84	5.70
전국	▲1.05	▲3.61	▲5.85	▲8.28	▲3.57	▲0.87	▲1.00	▲1.95	▲2.96	▲3.99	▲4.18	▲4.27	▲3.18	▲3.45	▲2.94	▲2.98	▲5.01
전북																	

<표IV-22> 푸드뱅크 기부자 통계

구분	식품제조·가공업	주식판매·제조·가공업	식품·도·소매업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일반가정	기타
중앙	32	1	17				1
서울	671	67	155	33	4	189	522
부산	189	3	54	2	1	134	72
대구	114	6	24	7		10	35
인천	148	32	91	19	3	11	43
광주	83	17	51	3	3	8	19
대전	83	15	49	5		40	94
울산	86	7	9	1		3	54
경기	659	68	355	24	14	40	215
강원	70	12	26	2	4	34	34
경북	95	12	25	3		9	25
경남	95	19	59	2		28	47
전북	88	33	46	8	1	36	55
전남	83	16	26	14	1	17	32
충북	141	3	32	2		11	28
충남	98	17	75	8	1	5	41
제주	56	5	11	5		5	19
세종	15	1	3				7

자료 : 사회복지협의회(2016) 공공데이터 자료

<표IV-23> 푸드뱅크 기부물품 제공 통계(2016년 말)

구분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기초생활 보장수급 탈락자	기타시설	긴급지원 대상자	생활시설	이용시설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중앙			7		7	32		
서울	21,654	99	145	4,525	336	1,202	6,629	13,572
부산	10,351	72	57	2,968	103	413	3,919	3,801
대구	4,905	74	23	1,170	113	512	378	1,834
인천	6,515	204	26	1,915	92	435	1,903	4,552
광주	5,889	40	20	1,533	127	391	3,408	3,615
대전	5,034	123	50	775	207	379	694	3,022
울산	2,116	18	36	1,033	158	295	1,652	1,140
경기	19,830	212	163	12,480	648	1,509	10,099	12,261
강원	5,714	88	85	2,714	301	448	5,633	3,665
충북	4,526	139	77	2,935	234	342	5,200	3,685
충남	7,268	247	102	3,303	235	509	3,615	3,121
전북	3,597	30	213	2,377	306	1,080	3,826	3,523
전남	6,742	117	98	2,599	245	845	4,450	3,572
경북	6,744	81	156	3,532	341	594	5,017	2,885
경남	3,509	61	80	2,701	262	587	3,260	2,541
제주	2,141	130	5	199	122	213	288	1,340
세종	247	12	19	49	26	307	200	93

<표IV-24> 푸드뱅크 기부물품 접수 통계(2016년 말)

구분	식품	생활용품
중앙	24,985,360,069	3,510,558,262
서울	30,219,610,783	14,134,567,467
부산	6,688,892,666	894,996,222
대구	4,488,557,455	177,621,044
인천	6,248,751,754	990,413,458
광주	4,170,311,361	187,377,673
대전	4,234,293,254	690,722,258
울산	2,260,696,676	84,111,156
경기	34,689,111,527	3,750,023,058
강원	3,251,953,805	27,010,833
충북	6,842,876,752	149,967,249
충남	6,748,587,699	302,300,177
전북	5,252,619,328	349,559,092
전남	2,495,406,189	65,968,530
경북	3,015,818,275	268,390,088
경남	4,028,992,852	596,284,118
제주	2,164,322,698	59,918,154
세종	280,725,821	9,794,567

전라북도의 푸드뱅크 기부자는 식품제조가공업의 기부자가 88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부물품을 제공받는 대상으로는 저소득층이 3,826명으로 가장 많았다.

<표IV-25> 소득영역 주요지표 비교

시도별	기초수급 (%)	전체소득 (만원)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구성비	전체가구 1~4분위 구성비	19세미만 가구 1~4분위 구성비	5세미만 가구 1~4분위 구성비	노인 연평균 소득액 (만원)	노인가구 빈곤율 (중위50% 이하)	장애수당 (기초수급) 비율	장애아동 수당 (기초수급) 비율	장애연금 (기초수급) 비율
전국	3.2	4,229	19.1	35.6	24.10	28.55	959.3	24.9	66.5	53.4	38.4
서울	2.7	4,280	17.7	35.7	27.46	26.39	1,220.6	19.0	71.6	52.6	40.1
부산	4.3	4,081	20.1	40.1	25.40	26.56	927.8	23.1	74.5	52.3	44.6
대구	4.3	4,116	20.8	44.4	23.26	26.83	944.5	16.1	72.1	50.3	42.0
인천	3.4	4,649	12.2	30.7	14.04	16.36	750.6	25.4	71.0	55.8	39.1
광주	4.7	3,941	24.2	33.2	23.81	28.57	998.8	26.3	65.6	56.5	42.2
대전	3.6	4,158	19.1	35.1	33.33	23.81	1,094.1	28.7	69.7	54.4	39.1
울산	1.6	5,746	10.6	19.9	15.38	13.04	992.2	20.3	66.1	45.2	30.3
세종	1.8	4,846	25.0						54.8	74.5	25.0
경기	2.1	4,805	13.7	31.1	20.78	36.79	941.9	19.5	66.2	50.3	32.2
강원	4.0	3,464	25.9	39.1	41.18	50.00	827.5	25.4	60.7	52.4	38.4
충북	3.4	3,727	23.6	34.6	26.32	23.81	979.9	19.9	61.9	48.4	34.6
충남	3.0	3,640	23.6	40.7	31.82	25.53	864.0	28.3	64.3	61.9	34.2
전북	5.3	3,188	33.6	46.7	33.33	51.61	835.8	34.5	62.4	60.4	45.6
전남	4.4	3,941	25.6	42.4	13.33	26.09	746.6	41.8	55.1	56.9	42.8
경북	3.9	3,524	25.3	38.1	22.45	28.26	1,051.6	25.4	64.4	55.1	39.2
경남	3.1	4,106	19.0	33	16.07	17.46	764.6	36.1	65.4	50.4	38.6
제주	3.6	3,171	23.8	50.4			964.4	32.6	64.4	56.0	32.8
전국·전북	▲2.1	▼1,041	▲14.5	▲11.1	▲9.23	▲23.06	▼123.5	▲9.6	▼4.1	▲7.0	▲7.2

전라북도 소득영역의 주요 지표 중 전국평균보다 낮은 지표로는 먼저 전국평균 소득액이 전북이 3,188만원으로 전국 평균 4,229만원보다 1,041만원 적었으며, 노인의 연평균 소득액 또한 전북이 835.8만원으로 전국 평균 959.3만원보다 123.5만원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장애수당수급자의 비중 또한 전국평균 66.5%보다 4.1%p 낮은 62.4%로 나타났다.

한편, 기초수급자의 비중과 중위소득 50%이하 가구구성비, 1~4분위가구(저소득층)비중 등의 지표가 전국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라북도의 빈곤층이 전국

평균보다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소득영역의 지표를 분석해보면 빈곤층의 비중이 전국평균보다 높고 가구별 소득금액 또한 전국평균보다 낮아 전국의 빈곤층을 해소하고 지원할 수 있는 복지기준선의 마련이 시급하다.

(2) 돌봄 및 교육분야 복지기준선 욕구

돌봄분야의 복지욕구는 주로 아동과 노인 그리고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나타난다. 아동의 경우 미취학 아동은 보육 중심의 돌봄수요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고, 노인의 경우 치매와 중풍 등의 노인성질환에 따른 요양돌봄의 욕구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장애인도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일상생활지원 등의 정책욕구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먼저 아동관련 돌봄정책을 보면, 주로 영유아의 경우 보육과 돌봄, 건강관리와 예방접종 등의 복지정책이 지원되고 있고, 초등학생은 방과후 돌봄, 취약계층(한부모 가정 자녀양육비, 방과후 수강권, 급식비 지원 등이 저소득 아동을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다. 또한 중고등학생은 취약청소년(빈곤, 한부모,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지원사업이 주요 돌봄정책으로 지원되고 있다.

<표IV-26> 영유아 및 아동 돌봄정책

영유아 (0-5세)	초등학생 (6-11세)	중학생 (12세-14세)	고등학생 (15-17세)
보육지원	방과후돌봄		
가정양육수당			
예방접종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건강검진	학교건강검진		
아이돌봄서비스(만12세)			
산모신생아건강관리			
	급식비지원(초중고 재학생 중 중위소득빈곤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간 60만원)		

영유아 (0-5세)	초등학생 (6-11세)	중학생 (12세-14세)	고등학생 (15-17세)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초4-중3)		
	학교밖청소년 지원		
	청소년한부모지원서비스(교육비, 실비지원)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13세 미만 자녀) 12만원			
	청년증(청소년요금 할인) 9세-18세		
	청소년특별지원(학교밖청소년 지원)		
	발달재활서비스(평균소득 150%이하 등록장애인)		
	저소득여성청소년 생리대지원사업(11세~18세)		

<표IV-27> 영유아 인구 현황

구분	영유아 양육가구 (전체)	1명	2명	3명이상	영유아 (전체)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국	2,055,585	1,495,139	526,846	33,600	2,650,800	408,999	433,104	429,909	436,761	474,648	467,379
서울	352,882	267,471	81,223	4,188	442,601	73,531	74,559	72,289	71,482	76,537	74,203
부산	123,456	90,583	31,112	1,761	158,146	24,973	26,122	25,855	25,843	27,934	27,419
대구	93,467	68,298	23,814	1,355	120,031	18,609	19,418	19,371	19,748	21,736	21,149
인천	122,962	90,162	30,867	1,933	157,749	24,040	25,791	25,650	26,061	28,230	27,977
공주	61,528	43,550	16,776	1,202	80,751	11,843	12,674	13,173	13,306	14,985	14,770
대전	63,682	45,723	16,887	1,072	82,744	12,646	13,645	13,284	13,893	14,551	14,725
울산	53,267	37,996	14,435	836	69,401	10,966	11,537	11,446	11,411	12,171	11,870
세종	15,511	11,129	4,108	274	20,172	3,268	3,230	3,210	3,343	3,547	3,574
경기	562,393	412,531	141,419	8,443	720,949	108,105	117,066	117,010	119,231	130,719	128,818
강원	52,987	38,308	13,784	895	68,594	10,150	10,915	10,896	11,250	12,762	12,621
충북	62,707	44,437	17,027	1,243	82,267	12,847	13,210	13,307	13,484	14,720	14,699
충남	87,340	61,674	23,883	1,783	114,849	17,391	18,679	18,400	19,231	20,701	20,447
전북	67,042	46,638	18,727	1,677	89,200	12,951	14,168	14,280	14,990	16,303	16,508
전남	67,173	46,054	19,279	1,840	90,241	13,844	14,613	14,241	15,055	16,243	16,245
경북	100,910	71,612	27,373	1,925	132,226	20,778	22,040	21,284	21,880	23,449	22,795
경남	140,586	99,614	38,532	2,440	184,079	27,490	29,689	30,189	30,434	33,309	32,968
제주	27,692	19,359	7,600	733	36,800	5,567	5,748	6,024	6,119	6,751	6,591

자료 : 통계청(2017) 연령별 인구 및 가구현황

전라북도의 영유아 인구 및 가구를 보면, 전라북도의 영유아 양육가구는 2016년 말 기준 6.7만 가구이고 이중 1명의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는 4.6만명, 그리고 2명은 1.8만명, 4명 이상은 1.7천명이다. 전라북도의 아동양육가구의 대부분은 1명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이다.

영유아 인구를 보면, 전라북도의 영유아 인구는 총 8.9만명이고 연령대별로 보면, 0세 1.3만명, 1세 1.4만명, 2세 1.4만명, 3세 1.5만명, 4세 1.6만명 그리고 5세 1.7만명 등이다.

전라북도의 영유아 가구는 전체 영유아 가구인 205만 가구 중 3.3%를 차지하고 있고, 전라북도의 영유아 인구는 3.4%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영유아 인구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영유아 가구도 대체로 1명인 가구가 전체 영유아 양육가구의 69.5%를 차지하고 있다.

<표IV-28> 1인 가구 현황

	합계	20세 미만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세 이상
서울	1,138,860	14,937	101,069	169,534	152,434	107,045	88,976	83,763	74,817	79,744	70,085	196,456
부산	372,412	4,624	29,404	31,123	26,751	23,682	23,549	27,378	28,825	37,902	36,297	102,877
대구	247,444	2,828	17,048	20,391	20,165	17,710	18,730	21,125	21,238	24,210	21,605	62,394
인천	254,076	2,306	12,907	21,070	23,777	22,764	22,633	24,067	23,750	26,227	20,303	54,272
공주	165,169	2,351	14,400	17,256	17,899	14,749	13,611	13,997	12,923	14,127	10,850	33,006
대전	179,605	5,048	25,545	23,119	17,963	13,583	12,554	13,129	12,343	14,241	11,577	30,503
울산	104,856	528	4,645	10,096	11,056	9,836	9,490	10,094	10,019	10,918	8,851	19,323
세종	27,683	911	5,595	4,135	2,918	2,204	1,889	1,955	1,643	1,606	1,225	3,602
경기	1,067,916	7,702	51,968	103,092	114,909	102,362	99,784	101,905	96,053	99,959	78,549	211,633
강원	197,917	2,934	20,989	16,820	11,666	10,124	11,346	14,362	16,606	20,548	17,310	55,212
충북	187,377	2,709	17,006	17,425	15,017	11,968	12,031	14,167	15,145	17,686	14,740	49,483
충남	247,056	3,511	20,749	23,305	22,126	17,318	16,149	17,677	18,608	21,296	17,418	68,899
전북	222,201	3,689	18,297	15,462	14,170	12,699	13,631	15,370	16,594	19,362	17,079	75,848
전남	227,225	1,948	9,467	11,511	12,193	11,643	12,495	15,556	17,852	20,922	17,794	95,844
경북	336,547	3,668	24,496	25,113	23,695	20,059	20,143	23,192	26,112	30,630	27,663	111,776
경남	358,430	2,393	15,218	24,088	27,830	26,182	26,065	29,738	31,035	35,849	31,097	108,935
제주	62,841	552	2,825	4,240	4,959	5,181	5,731	6,762	6,605	6,464	5,132	14,390

자료 : 통계청(2016) 인구주택총조사

전라북도의 연령별 1인가구는 전체적으로 총 222천 가구가 있으며, 이 중 65세 이상의 노인 1인 가구가 75천 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55세~59세 가구 19천 가구, 20~24세 가구 18천 가구로 뒤를 이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1인가구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노인 1인가구를 세부 연령별로 보게되면 60세 이상 1인 가구가 총 92천 가구가 있으며 75세~79세 1인가구의 비중이 19.7%, 60세~64세 1인가구가 18.4% 등의 순으로 차지하고 있었다. 연령대

별 노인 1인가구의 비중을 전국평균과 비교했을 시 74세를 기점으로 전라북도의 고령 노인 1인가구의 비중이 전국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IV-29> 노인 1인 가구 현황

	60~64		65~69		70~74		75~79		80~84		85세 이상		60세 이상		65세 이상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서울	70,085	26.3	58,448	21.9	51,275	19.2	43,075	16.2	27,040	10.1	16,618	6.2	266,541	100.0	196,456
부산	36,297	26.1	30,706	22.1	26,085	18.7	23,648	17.0	14,663	10.5	7,775	5.6	139,174	100.0	102,877
대구	21,605	25.7	17,755	21.1	15,026	17.9	14,600	17.4	9,769	11.6	5,244	6.2	83,999	100.0	62,394
인천	20,303	27.2	15,428	20.7	13,640	18.3	12,047	16.2	8,221	11.0	4,936	6.6	74,575	100.0	54,272
공주	10,850	24.7	9,186	20.9	8,193	18.7	7,593	17.3	4,941	11.3	3,093	7.1	43,856	100.0	33,006
대전	11,577	27.5	8,703	20.7	7,627	18.1	6,638	15.8	4,771	11.3	2,764	6.6	42,080	100.0	30,503
울산	8,851	31.4	6,298	22.4	4,896	17.4	4,116	14.6	2,568	9.1	1,445	5.1	28,174	100.0	19,323
세종	1,225	25.4	908	18.8	800	16.6	842	17.4	640	13.3	412	8.5	4,827	100.0	3,602
경기	78,549	27.1	59,551	20.5	53,457	18.4	47,982	16.5	32,007	11.0	18,636	6.4	290,182	100.0	211,633
강원	17,310	23.9	12,884	17.8	13,895	19.2	13,641	18.8	8,989	12.4	5,803	8.0	72,522	100.0	55,212
충북	14,740	23.0	11,129	17.3	11,505	17.9	12,325	19.2	9,280	14.4	5,244	8.2	64,223	100.0	49,483
충남	17,418	20.2	15,465	17.9	15,003	17.4	16,524	19.1	13,947	16.2	7,960	9.2	86,317	100.0	68,899
전북	17,079	18.4	16,586	17.8	16,856	18.1	18,308	19.7	15,032	16.2	9,066	9.8	92,927	100.0	75,848
전남	17,794	15.7	18,457	16.2	21,046	18.5	25,036	22.0	19,046	16.8	12,259	10.8	113,638	100.0	95,844
경북	27,663	19.8	24,568	17.6	23,873	17.1	28,086	20.1	22,068	15.8	13,181	9.5	139,439	100.0	111,776
경남	31,097	22.2	26,250	18.7	24,318	17.4	26,796	19.1	19,936	14.2	11,635	8.3	140,032	100.0	108,935
제주	5,132	26.3	3,656	18.7	3,221	16.5	3,083	15.8	2,570	13.2	1,860	9.5	19,522	100.0	14,390
전국	407,575	23.9	335,978	19.7	310,716	18.3	304,340	17.9	215,488	12.7	127,931	7.5	1,702,028	100.0	1,294,453
전국	-	▼5.6	-	▼1.9	-	▼0.1	-	▲1.8	-	▲3.5	-	▲2.2	-	-	-
전북	-		-		-		-		-		-		-		-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연령별 1인가구는 전주가 71천 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서 익산 36천 가구, 군산 33천 가구 등의 순으로 1인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는 전주 15천 가구, 익산 10천 가구, 군산 8천 가구, 정읍 7천 가구 등의 순으로 많이 있었고, 65세 이하의 경우 20세~29세 1인가구, 55세~59세 1인 가구의 수가 전주에서만 6천 가구 이상으로 나타나 전주시의 1인 가구가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IV-30> 전라북도 연령별 1인 가구 현황

	전북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합계	222,201	71,515	33,020	36,474	14,279	10,591	11,008	12,182	3,398	3,320	2,941	4,187	3,807	7,931	7,548
20세 미만	3,689	1,113	570	977	60	63	50	629	12	8	8	139	9	31	20
20~24	18,297	6,982	3,092	4,851	264	333	156	1,997	38	21	32	266	40	127	98
25~29	15,462	7,309	2,351	2,954	451	420	264	845	71	83	53	155	71	226	209
30~34	14,170	6,817	2,472	2,095	538	427	341	696	77	87	67	77	80	223	173
35~39	12,699	5,643	2,310	1,979	550	386	368	631	80	105	78	87	96	206	180
40~44	13,631	5,486	2,538	2,158	661	562	443	665	126	127	85	116	121	265	278
45~49	15,370	5,688	2,616	2,429	946	701	568	762	168	202	149	178	187	369	407
50~54	16,594	5,649	2,738	2,694	1,094	756	730	752	235	258	217	239	234	482	516
55~59	19,362	6,175	3,036	3,150	1,343	934	1,005	881	352	307	269	309	262	658	681
60~64	17,079	5,048	2,584	2,890	1,242	832	945	742	297	262	289	300	295	664	689
65~69	16,586	4,552	2,369	2,405	1,228	967	1,074	743	330	306	295	373	358	796	790
70~74	16,856	3,794	2,143	2,341	1,490	1,083	1,243	771	395	381	338	447	527	1,017	886
75~79	18,308	3,408	1,902	2,402	1,750	1,336	1,502	884	489	516	461	637	670	1,238	1,113
80~84	15,032	2,524	1,432	1,938	1,669	1,096	1,390	724	445	416	409	538	519	976	956
85세 이상	9,066	1,327	867	1,211	993	695	929	460	283	241	191	326	338	653	552
65세 이상	75,848	15,605	8,713	10,297	7,130	5,177	6,138	3,582	1,942	1,860	1,694	2,321	2,412	4,680	4,297

영유아 및 아동돌봄과 관련된 정책수요도 현재 제공되고 있는 돌봄정책에서 대부분 지원되고 있다. 다만, 지원되고 있는 규모와 양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복지 기준선 설정 시 충분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우선 보육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보육의 공공성 그리고 취약보육에 대한 접근성이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보육의 공공성을 담보할 만큼의 충분한 물리적 인프라를 갖추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라북도의 보육시설은 2017년 기준 1,536개소로 이중 정원은 71,103명, 현원은 47,030명으로 정원대비 입소율이 66.1%수준이다. 영유아대비 입소율은 44.7%, 보육 시설 공급률은 67.5%이다. 전라북도의 보육시설 총량에 비추어보면 보육인프라는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많다. 하지만 아직까지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읍면지역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표IV-31> 지역별 보육시설 이용률

구분	영유아수	어린이집			정원대비 입소율	영유아수 대비 입소율	보육시설 공급률
		설치수	정원	현원			
계(17. 3월)	3,128,156	40,651	1,761,394	1,319,876	74.9	42.2	56.3
서울	524,684	6,284	268,810	223,350	83.1	42.6	51.2
부산	186,090	1,931	89,551	68,575	76.6	36.9	48.1
대구	141,582	1,486	75,546	52,306	69.2	36.9	53.4
인천	184,719	2,215	94,383	73,993	78.4	40.1	51.1
광주	94,280	1,241	62,794	41,137	65.5	43.6	66.6
대전	96,464	1,552	54,188	39,428	72.8	40.9	56.2
울산	80,432	884	40,022	31,841	79.6	39.6	49.8
세종	25,097	258	13,580	10,577	77.9	42.1	54.1
경기	855,217	11,958	465,288	356,582	76.6	41.7	54.4
강원	81,030	1,165	54,287	37,316	68.7	46.1	67.0
충북	96,747	1,198	63,051	45,466	72.1	47.0	65.2
충남	135,921	1,967	87,401	62,567	71.6	46.0	64.3
전북	105,295	1,536	71,103	47,030	66.1	44.7	67.5
전남	107,002	1,254	70,741	48,895	69.1	45.7	66.1
경북	153,818	2,094	93,700	62,872	67.1	40.9	60.9
경남	215,923	3,098	126,321	92,570	73.3	42.9	58.5
제주	43,855	530	30,628	25,371	82.8	57.9	69.8
전국·전북					▼8.8	▲2.5	▲11.2

자료 : 전라북도 내부자료(2017. 3월 기준)

<표IV-32> 보육시설 현황

구분	계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 법인 어린이집	법인· 단체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계	41,084	2,859 (7.0)	1,402 (3.4)	804 (2.0)	14,316 (34.8)	20,598 (50.1)	157 (0.4)	948 (2.3)
서울	6,368	1,071 (16.8)	33 (0.5)	131 (2.1)	2,054 (32.3)	2,824 (44.3)	29 (0.5)	226 (3.5)
부산	1,937	163 (8.4)	82 (4.2)	38 (2.0)	804 (41.5)	795 (41.0)	13 (0.7)	42 (2.2)
대구	1,483	54 (3.6)	121 (8.2)	32 (2.2)	689 (46.5)	558 (37.6)	5 (0.3)	24 (1.6)
인천	2,231	150 (6.7)	11 (0.5)	19 (0.9)	808 (36.2)	1,181 (52.9)	6 (0.3)	56 (2.5)
광주	1,238	33 (2.7)	107 (8.6)	23 (1.9)	419 (33.8)	620 (50.1)	10 (0.8)	26 (2.1)
대전	1,584	33 (2.1)	40 (2.5)	13 (0.8)	428 (27.0)	1,013 (64.0)	8 (0.5)	49 (3.1)
울산	895	36 (4.0)	13 (1.5)	5 (0.6)	460 (51.4)	347 (38.8)	4 (0.4)	30 (3.4)
세종	250	14 (5.6)	8 (3.2)	4 (1.6)	89 (35.6)	123 (49.2)	0 (0.0)	12 (4.8)
경기	12,120	625 (5.2)	67 (0.6)	132 (1.1)	3,911 (32.3)	7,096 (58.5)	65 (0.5)	224 (1.8)
강원	1,180	87 (7.4)	111 (9.4)	44 (3.7)	401 (34.0)	493 (41.8)	4 (0.3)	40 (3.4)
충북	1,208	59 (4.9)	108 (8.9)	33 (2.7)	448 (37.1)	525 (43.5)	6 (0.5)	29 (2.4)
충남	1,974	77 (3.9)	125 (6.3)	55 (2.8)	647 (32.8)	1,029 (52.1)	1 (0.1)	40 (2.0)
전북	1,562	56 (3.6)	144 (9.2)	95 (6.1)	501 (32.1)	743 (47.6)	0 (0.0)	23 (1.5)
전남	1,251	97 (7.8)	174 (13.9)	55 (4.4)	406 (32.5)	490 (39.2)	2 (0.2)	27 (2.2)
경북	2,102	137 (6.5)	83 (3.9)	39 (1.9)	886 (42.2)	913 (43.4)	1 (0.0)	43 (2.0)
경남	3,158	140 (4.4)	99 (3.1)	47 (1.5)	1,120 (35.5)	1,706 (54.0)	3 (0.1)	43 (1.4)
제주	543	27 (5.0)	76 (14.0)	39 (7.2)	245 (45.1)	142 (26.2)	0 (0.0)	14 (2.6)
전국		▼3.4	▲5.8	▲4.1	▼2.7	▼2.5	▼0.4	▼0.8
전북								

자료 : 보육통계(2016) 2016년 12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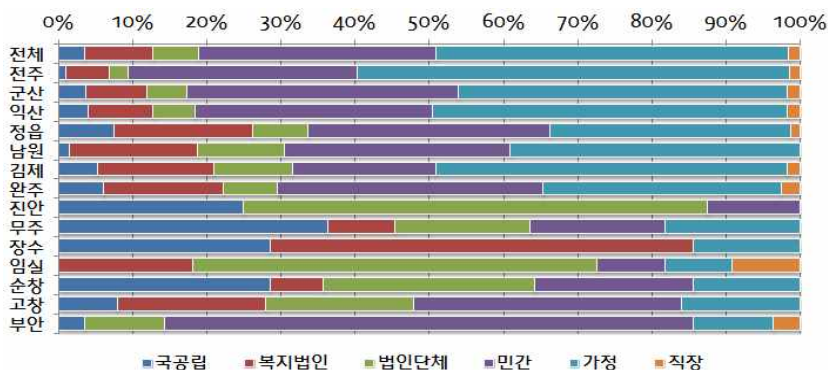
한편, 전라북도의 돌봄정책과 관련하여 보육시책 중 공공보육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국공립어린이집은 총 56개소로 전체 보육시설 1,562개소의 3.6%에 불과하다. 전라북도의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율은 전국 평균인 5.0%보다도 낮을뿐만 아니라 광역도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공립보육시설이 공보육 인프라 구축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표인 점을 감안하면 전라북도의 낮은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개선은 시급한 과제이다.

<표IV-33> 전라북도 14개 시군별 설립유형별 보육시설 현황

구분	계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소 계	1,562	56 (3.6)	144 (9.2)	95 (6.1)	501 (32.1)	743 (47.6)	23 (1.5)
전주시	680	7 (1.0)	40 (5.9)	17 ((2.5)	210 (30.9)	397 (58.4)	9 (1.3)
군산시	241	9 (3.7)	20 (8.3)	13 (5.4)	88 (36.5)	107 (44.4)	4 (1.7)
익산시	250	10 (4.0)	22 (8.8)	14 (5.6)	80 (32.0)	120 (48.0)	4 (1.6)
정읍시	80	6 (7.5)	15 (18.8)	6 (7.5)	26 (32.5)	26 (32.5)	1 (1.3)
남원시	69	1 (1.4)	12 (17.4)	8 (11.6)	21 (30.4)	27 (39.1)	0 (0.0)
김제시	57	3 (5.3)	9 (15.8)	6 (10.5)	11 (19.3)	27 (47.4)	1 (1.8)
완주군	81	5 (6.2)	13 (16.0)	6 (7.4)	29 (35.8)	26 (32.1)	2 (2.5)
진안군	8	2 (25.0)	0 (0.0)	5 (62.5)	1 (12.5)	0 (0.0)	0 (0.0)
무주군	11	4 (36.4)	1 (9.1)	2 (18.2)	2 (18.2)	2 (18.2)	0 (0.0)
장수군	7	2 (28.6)	4 (57.1)	0 (0.0)	0 (0.0)	1 (14.3)	0 (0.0)
임실군	11	0 (0.0)	2 (18.2)	6 (54.5)	1 (9.1)	1 (9.1)	1 (9.1)
순창군	14	4 (28.6)	1 (7.1)	4 (28.6)	3 (21.4)	2 (14.3)	0 (0.0)
고창군	25	2 (8.0)	5 (20.0)	5 (20.0)	9 (36.0)	4 (16.0)	0 (0.0)
부안군	28	1 (3.6)	0 (0.0)	3 (10.7)	20 (71.4)	3 (10.7)	1 (3.6)

자료 : 보육통계(2016) 2016년 12월 기준

<그림IV-2> 설립유형별 보육시설 현황



전라북도의 경우 설립유형별 보육시설은 가정어린이집이 743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민간어린이집 501개소,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144개소, 그리고 법인 및

단체 어린이집 95개소 등의 순이다. 현재 국가의 복지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서 국공립보육시설의 수용율을 4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전라북도도 국공립보육시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표IV-34> 지역별 보육시설 현황

구분	계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부모합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계	정원	1,767,224	197,365 (11.1)	134,189 (7.59)	58,511 (3.31)	927,517 (52.48)	374,907 (21.21)	5,052 (0.29)	69,683 (3.94)						
	현원	1,451,215	175,929 (12.12)	99,113 (6.83)	45,374 (3.13)	745,663 (51.38)	328,594 (22.64)	4,240 (0.29)	52,302 (3.60)						
서울	정원	270,231	74,851 (27.70)	2,327 (0.86)	7,035 (2.60)	117,842 (43.61)	51,025 (18.88)	903 (0.33)	16,248 (6.01)						
	현원	236,550	67,240 (28.43)	2,005 (0.85)	5,848 (2.47)	102,575 (43.36)	46,284 (19.57)	798 (0.34)	11,800 (4.99)						
부산	정원	89,658	12,346 (13.77)	7,148 (7.97)	2,998 (3.34)	49,159 (54.83)	14,980 (16.71)	330 (0.37)	2,697 (3.01)						
	현원	75,006	10,964 (14.62)	5,796 (7.73)	2,532 (3.38)	39,945 (53.26)	13,539 (18.05)	278 (0.37)	1,952 (2.60)						
대구	정원	75,255	3,070 (4.08)	14,688 (19.52)	2,181 (2.90)	43,334 (57.58)	10,260 (13.63)	117 (0.16)	1,605 (2.13)						
	현원	58,706	2,719 (4.63)	10,734 (18.28)	1,734 (2.95)	33,680 (57.39)	8,579 (14.61)	101 (0.17)	1,149 (1.96)						
인천	정원	94,314	9,692 (10.28)	1,106 (1.17)	1,339 (1.42)	56,902 (60.33)	21,665 (22.97)	230 (0.24)	3,380 (3.58)						
	현원	81,096	8,687 (10.71)	900 (1.11)	1,129 (1.39)	48,060 (59.26)	19,270 (23.76)	179 (0.22)	2,871 (3.54)						
광주	정원	62,528	2,825 (4.52)	12,171 (19.46)	1,811 (2.90)	32,364 (51.76)	11,007 (17.60)	442 (0.71)	1,908 (3.05)						
	현원	47,207	2,378 (5.04)	8,416 (17.83)	1,483 (3.14)	24,076 (51.00)	9,239 (19.57)	342 (0.72)	1,273 (2.70)						
대전	정원	54,514	1,985 (3.64)	3,675 (6.74)	752 (1.38)	24,621 (45.16)	18,862 (34.60)	438 (0.80)	4,181 (7.67)						
	현원	44,482	1,734 (3.90)	3,010 (6.77)	635 (1.43)	19,710 (44.31)	15,818 (35.56)	302 (0.68)	3,273 (7.36)						
울산	정원	40,257	2,376 (5.90)	983 (2.44)	516 (1.28)	27,855 (69.19)	6,414 (15.93)	160 (0.40)	1,953 (4.85)						
	현원	34,762	2,230 (6.42)	863 (2.48)	454 (1.31)	23,824 (68.53)	5,832 (16.78)	142 (0.41)	1,417 (4.08)						
세종	정원	12,587	1,205 (9.57)	977 (7.76)	397 (3.15)	5,319 (42.26)	2,409 (19.14)	0 (0.00)	2,280 (18.11)						
	현원	10,846	1,077 (9.93)	719 (6.63)	379 (3.49)	4,436 (40.90)	2,153 (19.85)	0 (0.00)	2,082 (19.20)						
경기	정원	467,469	44,746 (9.57)	5,880 (1.26)	10,592 (2.27)	258,351 (55.27)	129,741 (27.75)	1,784 (0.38)	16,375 (3.50)						
	현원	390,870	41,245 (10.55)	4,719 (1.21)	8,250 (2.11)	207,684 (53.13)	114,793 (29.37)	1,564 (0.40)	12,615 (3.23)						
강원	정원	54,408	6,684 (12.28)	9,142 (16.80)	2,850 (5.24)	23,934 (43.99)	9,077 (16.68)	124 (0.23)	2,597 (4.77)						
	현원	41,743	5,477 (13.12)	6,553 (15.70)	1,946 (4.66)	18,122 (43.41)	7,688 (18.42)	86 (0.21)	1,871 (4.48)						
충북	정원	63,108	4,468 (7.08)	11,077 (17.55)	2,906 (4.60)	32,958 (52.22)	9,423 (14.93)	182 (0.29)	2,094 (3.32)						
	현원	50,014	3,879 (7.76)	7,820 (15.64)	2,186 (4.37)	26,279 (52.54)	8,123 (16.24)	153 (0.31)	1,574 (3.15)						
충남	정원	87,635	4,495 (5.13)	11,020 (12.57)	3,633 (4.15)	47,121 (53.77)	18,286 (20.87)	34 (0.04)	3,046 (3.48)						
	현원	69,364	3,782 (5.45)	7,659 (11.04)	2,598 (3.75)	36,910 (53.21)	16,003 (23.07)	32 (0.05)	2,380 (3.43)						
전북	정원	71,946	3,637 (5.06)	12,183 (16.93)	7,142 (9.93)	34,603 (48.10)	13,046 (18.13)	0 (0.00)	1,335 (1.86)						
	현원	53,798	3,017 (5.61)	8,842 (16.44)	5,036 (9.36)	25,201 (46.84)	10,866 (20.20)	0 (0.00)	836 (1.55)						
전남	정원	70,863	5,843 (8.25)	17,601 (24.84)	4,389 (6.19)	32,067 (45.25)	8,818 (12.44)	93 (0.13)	2,052 (2.90)						
	현원	54,708	4,960 (9.07)	12,354 (22.58)	3,305 (6.04)	24,741 (45.22)	7,669 (14.02)	80 (0.15)	1,599 (2.92)						
경북	정원	93,950	7,241 (7.71)	8,011 (8.53)	2,960 (3.15)	56,099 (59.71)	16,088 (17.12)	54 (0.06)	3,497 (3.72)						
	현원	71,010	5,862 (8.26)	5,607 (7.90)	2,119 (2.98)	41,544 (58.50)	13,472 (18.97)	36 (0.05)	2,370 (3.34)						
경남	정원	127,325	10,003 (7.86)	8,566 (6.73)	3,688 (2.90)	70,517 (55.38)	31,136 (24.45)	161 (0.13)	3,254 (2.56)						
	현원	103,822	8,865 (8.54)	6,759 (6.51)	2,898 (2.79)	55,834 (53.78)	26,814 (25.83)	147 (0.14)	2,505 (2.41)						
제주	정원	31,176	1,898 (6.09)	7,634 (24.49)	3,322 (10.66)	14,471 (46.42)	2,670 (8.56)	0 (0.00)	1,181 (3.79)						
	현원	27,231	1,813 (6.66)	6,357 (23.34)	2,842 (10.44)	13,032 (47.86)	2,452 (9.00)	0 (0.00)	735 (2.70)						

자료 : 보육시설통계(2017) 2016년 말 기준

전라북도의 14개 시군의 보육에 대한 인프라도 지역별로 편차가 다소 크게 무주, 장수, 진안, 순창 등의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국공립보육시설의 비율이 높은 반면 전주, 남원, 군산, 익산, 부안 등의 지역은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라북도는 보육아동의 감소와 함께 공보육의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이 많지 않아 공보육 수용율이 4.3%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공립보육시설의 단계적 확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표IV-35> 특수보육현황

구분	어린이집수																아동수			
	총계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 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총계	시간 연장	휴일	
계	시간 연장	휴일	시간 연장	휴일	시간 연장	휴일	시간 연장	휴일	시간 연장	휴일	시간 연장	휴일	시간 연장	휴일	시간 연장	휴일				
계	844	688	156	9	0	5	0	1	0	188	47	462	107	0	0	23	2	2,575	2,079	496
서울	92	80	12	4	0	0	0	0	0	16	2	59	10	0	0	1	0	209	178	31
부산	10	9	1	0	0	0	0	0	0	2	1	4	0	0	0	3	0	23	22	1
대구	39	32	7	0	0	1	0	0	0	12	4	19	3	0	0	0	0	113	89	24
인천	23	19	4	0	0	0	0	0	0	8	1	10	2	0	0	1	1	67	55	12
광주	27	23	4	0	0	0	0	0	0	3	2	18	2	0	0	2	0	127	106	21
대전	23	18	5	0	0	0	0	0	0	3	0	12	5	0	0	3	0	72	52	20
울산	3	3	0	1	0	0	0	0	0	2	0	0	0	0	0	0	0	13	13	0
세종	1	0	1	0	0	0	0	0	0	0	0	0	1	0	0	0	0	3	0	3
경기	298	251	47	2	0	0	0	0	0	63	9	177	37	0	0	9	1	886	754	132
강원	29	16	13	0	0	1	0	0	0	4	3	11	10	0	0	0	0	100	51	49
충북	17	11	6	0	0	0	0	0	0	3	3	7	3	0	0	1	0	41	32	9
충남	31	21	10	0	0	0	0	0	0	6	4	15	6	0	0	0	0	109	69	40
전북	37	27	10	0	0	1	0	0	0	6	3	19	7	0	0	1	0	111	77	34
전남	9	9	0	1	0	1	0	0	0	5	0	2	0	0	0	0	0	43	43	0
경북	88	70	18	1	0	0	0	0	0	31	7	38	11	0	0	0	0	279	221	58
경남	112	97	15	0	0	1	0	0	0	24	6	70	9	0	0	2	0	364	307	57
제주	5	2	3	0	0	0	0	1	0	0	2	1	1	0	0	0	0	15	10	5

자료 : 보육통계(2016) 2016년 12월 기준 재구성

한편,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른 특수보육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시간연장보육시설이나 휴일보육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경

우 시간연장보육시설은 총 27개소, 휴일보육시설은 10개소로 총 37개소가 운영중에 있고, 이 같은 특수보육시설은 인구구성비가 유사한 타지역과 비교시 적은 규모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시간연장보육시설 이용자는 전북이 77명, 휴일보육시설은 34명으로 총 111명이 이용하고 있고,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다.

전라북도의 시간연장보육시설은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다른 지역들도 대체로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 집 그리고 직장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표IV-36> 평가인증 보육시설 현황

구분	전체			국공립 어린이집		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부모합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전체	인증 어린이집	평가 인증 비율	전체	인증비율	전체	인증비율	전체	인증비율	전체	인증비율	전체	인증비율	전체	인증비율	전체	인증비율
계	41,084	32,502	79.11	2,859	92.03	1,402	91.80	804	85.20	14,316	77.56	20,598	78.50	157	41.40	948	59.07
서울	6,368	4,974	78.11	1,071	87.49	33	81.82	131	59.54	2,054	75.32	2,824	78.97	29	79.31	226	58.41
부산	1,937	1,576	81.36	163	95.71	82	96.34	38	100.00	804	78.23	795	81.89	13	15.38	42	50.00
대구	1,483	1,247	84.09	54	85.19	121	98.35	32	100.00	689	85.49	558	79.75	5	40.00	24	58.33
인천	2,231	1,967	88.17	150	95.33	11	100.00	19	94.74	808	88.99	1,181	86.45	6	50.00	56	92.86
광주	1,238	870	70.27	33	90.91	107	90.65	23	86.96	419	64.68	620	70.00	10	20.00	26	61.54
대전	1,584	1,126	71.09	33	96.97	40	100.00	13	100.00	428	74.53	1,013	68.21	8	75.00	49	51.02
울산	895	704	78.66	36	97.22	13	92.31	5	100.00	460	78.26	347	78.96	4	0.00	30	60.00
세종	250	167	66.80	14	78.57	8	100.00	4	100.00	89	53.93	123	73.98	0	0.00	12	41.67
경기	12,120	9,530	78.63	625	96.00	67	95.52	132	83.33	3,911	77.24	7,096	78.59	65	27.69	224	62.50
강원	1,180	937	79.41	87	97.70	111	93.69	44	95.45	401	75.06	493	77.08	4	50.00	40	57.50
충북	1,208	983	81.37	59	93.22	108	92.59	33	96.97	448	79.46	525	79.24	6	50.00	29	72.41
충남	1,974	1,672	84.70	77	94.81	125	88.00	55	87.27	647	81.76	1,029	86.49	1	0.00	40	55.00
전북	1,562	1,389	88.92	56	94.64	144	93.06	95	92.63	501	88.02	743	89.10	0	0.00	23	47.83
전남	1,251	899	71.86	97	85.57	174	83.91	55	80.00	406	65.02	490	71.22	2	50.00	27	44.44
경북	2,102	1,724	82.02	137	95.62	83	93.98	39	92.31	886	79.68	913	82.69	1	0.00	43	41.86
경남	3,158	2,256	71.44	140	96.43	99	87.88	47	85.11	1,120	70.54	1,706	69.17	3	100.00	43	48.84
제주	543	481	88.58	27	96.30	76	93.42	39	94.87	245	87.35	142	87.32	0	0.00	14	64.29
전국			▲		▲		▲		▲		▲		▲		▼		▼
전북			9.81		2.61		1.26		7.43		10.46		10.60		41.40		11.24

자료 : 보육통계(2016) 2016년 12월 기준 재구성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평가인증보육시설은 전라북도의 경우 1,389개소로 전체 보육시설의 88.92%정도이다. 17개 시도의 보육시설 평가인증비율인 85.58%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설립유형별로 보면, 국공립보육시설의 인증비율이 94.6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 93.06%, 법인 및 단체 보육시설 92.63%, 그리고 가정어린이집 89.10%, 민간 어린이집 88.02% 등의 순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공립보육시설의 인증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고 복지법인과 법인 및 단체 보육시설의 인증률이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 집보다도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평가인증보육시설의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별도의 대안이 없는 현재의 조건하에서 한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객관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은 평가인증밖에 없다는 점에서 보육시설 인증을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표IV-37> 공공형 어린이집 현황

시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8월말
						개수 ①	전체 보육시설 ②	①/②	
부산	20	49	86	99	110	124	1,937	6.40	119
대구	45	56	86	96	104	103	1,483	6.95	96
인천	32	31	69	79	91	111	2,231	4.98	109
광주	21	25	40	46	56	75	1,238	6.06	73
대전	43	49	88	95	99	136	1,584	8.59	136
울산	40	39	58	60	65	83	895	9.27	83
세종	0	2	8	10	11	14	250	5.60	13
경기	184	197	401	435	495	590	12,120	4.87	564
강원	32	41	90	93	98	109	1,180	9.24	106
충북	31	31	67	72	78	84	1,208	6.95	81
충남	23	28	96	95	101	103	1,974	5.22	100
전북	40	40	70	83	93	105	1,562	6.72	103
전남	27	29	45	48	56	64	1,251	5.12	61
경북	41	49	79	104	117	139	2,102	6.61	136
경남	72	82	117	113	123	148	3,158	4.69	142
제주	28	30	81	93	99	113	543	20.81	109
전국	679	778	1,481	1,621	1,796	2,101	34,716	6.05	2,031
전북 전국								▲0.67	

한편, 공공형 어린이 집의 경우 2017년 말 기준으로 전라북도는 103개소로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도의 평균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개수인 126개보다는 다소 적은 편이다. 전라북도의 공공형 어린이집은 2011년 40개소에서 2017년 기준 103개소로 약 60개소 이상 증가하였다. 2016년 기준으로 전라북도의 공공형 어린이집의 설치율은 전체 보육시설의 6.72%로 광역도에서는 제주와 강원, 충북 다음으로 가장 높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가정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가정양육수당의 현황으로 전라북도는 총 25천명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12개월 미만의 영유아 양육수당대상자가 11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12개월~23개월 8천명, 24개월~35개월 영유아 2천명 등의 순으로 양육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IV-38> 가정양육수당 지급현황

(단위 : 명)

시도별	합계	0~11개월	12개월~23개월	24개월~35개월	36개월~47개월	48개월~59개월	60개월~71개월	72개월~취학전
전국	933,153	363,178	305,911	117,302	47,840	34,711	30,609	33,602
서울	189,218	65,787	55,591	23,927	11,775	10,469	10,104	11,565
부산	61,194	22,501	20,700	8,441	3,068	2,350	2,094	2,040
대구	42,471	16,582	15,040	5,625	1,785	1,203	1,058	1,178
인천	57,206	21,539	19,064	7,933	3,109	2,093	1,723	1,745
광주	24,431	9,989	8,124	3,130	1,234	648	556	750
대전	26,551	11,132	8,793	3,004	1,210	793	761	858
울산	25,635	9,906	8,937	3,153	969	953	853	864
세종	6,854	2,949	2,424	757	310	182	119	113
경기	251,700	95,510	80,519	32,519	14,291	10,175	8,969	9,717
강원	20,695	8,924	7,240	2,394	837	486	357	457
충북	27,107	11,541	9,570	3,284	1,180	558	423	551
충남	36,879	15,636	12,810	4,440	1,739	914	654	686
전북	25,379	11,200	8,659	2,948	1,127	575	417	453
전남	28,172	12,361	9,894	3,284	1,143	530	408	552
경북	41,125	18,306	15,024	4,649	1,418	737	518	473
경남	58,565	24,434	20,512	6,952	2,296	1,724	1,340	1,307
제주	9,971	4,881	3,010	862	349	321	255	293

자료 : 보건복지부(2016) 보육통계(2016. 12월 기준)

한편, 가정양육수당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가 251천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서울 189천명, 부산 61천명, 경남 58천명 등의 순으로 많았고 전북은 총 25천명으로 17개 시도 중 13번째를 차지하고 있고 전북보다 양육수당인원이 적은 지역은 광주, 강원, 제주, 세종시 등으로 나타났다.

<표IV-39>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현황

구분	예산			이용자수			시도별 아동수 (2015년)	아동수 대비 평균이용율 (%) 15년
	2013년 결산액 (백만원)	2014년 결산액 (백만원)	2015년 결산액 (백만원)	2013년 이용아동수	2014년 이용아동수	2015년 이용아동수		
서울	13,260	17,955	17,079	13,287	13,752	14,063	1,022,292	1.31
부산	6,394	8,791	8,678	4,672	5,119	5,446	348,082	1.45
대구	3,437	5,329	5,078	2,831	3,042	3,228	276,653	1.08
인천	3,587	4,761	4,154	2,863	2,948	3,311	352,087	0.86
광주	3,057	4,377	4,109	2,108	2,544	2,564	191,039	1.23
대전	2,530	3,460	3,463	2,407	2,601	2,764	190,669	1.32
울산	2,509	3,619	3,814	2,538	2,736	2,748	149,404	1.79
세종	285	493	515	214	338	434	37,611	1.25
경기	14,293	19,577	18,994	14,713	15,681	16,791	1,629,292	0.96
강원	6,021	7,785	6,989	4,479	4,705	4,759	164,497	2.76
충북	3,719	5,107	4,708	2,601	2,743	2,817	185,742	1.44
충남	4,070	5,499	5,039	3,649	3,588	3,656	255,198	1.41
전북	5,518	7,746	7,413	3,923	4,384	4,602	212,112	1.99
전남	5,931	7,702	7,010	4,037	4,352	4,543	207,122	2.05
경북	6,678	9,143	8,705	4,828	5,479	5,648	289,548	1.81
경남	6,156	8,266	7,754	4,785	5,199	5,709	411,738	1.26
제주	1,127	1,496	1,407	952	998	1,144	83,115	1.25
계	88,571	121,105	114,907	74,887	80,209	84,227	6,006,201	1.31
전국-전북								▲0.68

자료 : 여성가족부(2015)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만 12세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방문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아이돌봄지원법(2016)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자는 전라북도의 경우 2013년 3,923명에서 2015년 4,602명으로 증가했다. 2015년 기준 아동수가 20.7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아동수 대비 아이돌봄 서비스의 이용율은 1.99%로 전국 평균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율인 1.31%보다도 다소 높은 수준이다.

<표IV-40> 지역별 지역아동센터 현황 및 추이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증감(2010-2016)	
								증감(수)	증감(율)
서울	367	395	404	405	409	414	414	47개소	12.81
부산	185	194	196	200	200	205	204	19개소	10.27
대구	147	171	177	188	191	200	199	52개소	35.37
인천	174	182	187	186	181	179	183	9개소	5.17
광주	218	272	278	285	292	300	301	83개소	38.07
대전	144	149	146	147	147	146	145	1개소	0.69
울산	52	56	57	58	56	56	55	3개소	5.77
세종	-	-	11	9	10	11	12	-	-
경기	679	722	735	728	751	757	763	84개소	12.37
강원	159	164	164	162	163	166	168	9개소	5.66
충북	185	201	202	199	190	188	184	-1개소	-0.54
충남	200	216	214	221	224	232	226	26개소	13.00
전북	267	286	288	287	281	281	286	19개소	7.12
전남	368	399	392	392	383	387	384	16개소	4.35
경북	232	252	256	261	257	259	258	26개소	11.21
경남	244	254	257	260	255	253	259	15개소	6.15
제주	69	72	72	73	69	68	66	-3개소	-4.35

자료 :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2016) 전국지역아동센터통계조사보고서

한편,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으로서 지역아동센터는 2016년 기준 전라북도에는 총 286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전라북도의 지역아동센터는 인구규모가 비슷한 충남보다도 많이 설치되어 있다. 전라북도의 지역아동센터는 2010년 267개소에서 2016년 286개소로 19개소(7.12%p) 증가하였다.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정규교과 수업 종료 이후에 방과후 돌봄을 위한 중추적 기관으로서 교육과 돌봄뿐만 아니라 급식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방과후 돌봄기관은 원칙적으로 모든 읍면동에 한 개소 이상씩은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아동수와 지역여건에 따라서는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미취학 아동대상 보육시설처럼 일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국공립으로 설치하여 지역아동센터의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타지역 지역아동센터의 표준운영모델을 선도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표Ⅳ-41>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센터수	신고정원	이용아동			센터당 이용인원	센터수	신고정원	이용아동			센터당 이용인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4,102	119,746	109,661	55,450	54,211	26.7	4,104	118,441	106,668	55,328	51,340	26
서울	414	12,435	11,428	5,792	5,636	27.6	414	12,283	11,058	5,793	5,265	26.7
부산	205	5,618	4,940	2,520	2,420	24.1	204	5,390	4,653	2,418	2,235	22.8
대구	200	5,605	5,007	2,476	2,531	25	199	5,516	4,905	2,460	2,445	24.7
인천	179	5,049	4,544	2,276	2,268	25.4	183	5,055	4,498	2,395	2,103	24.6
광주	300	8,656	8,137	4,102	4,035	27.1	301	8,560	7,970	4,129	3,841	26.5
대전	146	4,599	4,112	2,097	2,015	28.2	145	4,459	3,872	2,031	1,841	26.7
울산	56	1,440	1,305	695	610	23.3	55	1,424	1,271	692	579	23.1
경기	757	24,218	21,682	11,000	10,682	28.6	761	23,903	21,111	10,910	10,201	27.7
강원	166	4,704	4,375	2,199	2,176	26.4	168	4,736	4,350	2,251	2,099	25.9
충북	188	5,360	5,095	2,515	2,580	27.1	184	5,258	4,959	2,464	2,495	27
충남	232	6,967	6,357	3,263	3,094	27.4	226	6,997	6,098	3,161	2,937	27
전북	281	7,832	7,275	3,710	3,565	25.9	286	7,779	7,125	3,704	3,421	24.9
전남	387	10,839	10,342	5,138	5,204	26.7	384	10,629	9,944	5,084	4,860	25.9
경북	259	7,124	6,503	3,317	3,186	25.1	258	7,111	6,417	3,462	2,955	24.9
경남	253	6,995	6,417	3,307	3,110	25.4	258	7,066	6,396	3,362	3,034	24.7
제주	68	1,984	1,857	909	948	27.3	66	1,921	1,718	861	857	26
세종	11	321	285	134	151	25.9	12	354	323	151	172	26.9
전국						▼0.80						▼1.10
전북												

자료 :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2017) 지역아동센터 현황보고서

다음으로 아동청소년의 돌봄정책은 주로 방과후 돌봄인프라의 구축이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기관으로서 전라북도에는 281개가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가 설치되지 못한 지역이 있고, 빈곤아동이 이용하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전라북도의 지역아동센터 이용율은 2016년 기준 32.8%로 전국 평균인 31.1%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표Ⅳ-42>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현황

구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전국
이용아동	106,668	11,058	4,653	4,905	4,498	7,970	3,872	1,271	21,111	4,350	4,959	6,098	7,125	9,944	6,417	6,396	1,718	323	
5-9세	133,922	16,987	10,087	8,751	9,146	6,197	4,896	1,369	24,301	4,594	4,370	5,302	8,721	6,451	7,679	9,040	2,296	380	
10-14세	209,498	34,411	17,614	13,697	13,740	10,139	7,549	2,150	37,351	7,326	6,222	7,563	13,000	10,231	11,658	13,088	3,320	439	
5세~14세	343,420	51,398	27,701	22,448	22,886	16,336	12,445	3,519	61,652	11,920	10,592	12,865	21,721	16,682	19,337	22,128	5,616	819	
⑥+⑦																			
이용율	31.1	21.5	16.8	21.9	19.7	48.8	31.1	36.1	34.2	36.5	46.8	47.4	32.8	59.6	33.2	28.9	30.6	39.4	▼1.7
⑥+⑦																			

자료 :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2017), 통계청 주민등록연령별 인구통계 재구성

<표V-43>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수

구분	시설수	계	교급별						소득별			
			미취학	초등 학교 저학년	초등 학교 고학년	중학생	고등 학생	탈 학교	교육급여 대상 (중위소득 50%이하)	중위소득 50%초과~ 85%이하	중위소득 85%초과~ 100%이하	중위소득 100%초과
전체	4,107	106,668	1,872	41,750	40,390	18,156	4,377	123	27,030	40,741	30,812	8,085
서울	414	11,058	48	3,535	4,229	2,356	882	8	3,002	4,009	3,206	841
부산	204	4,653	22	1,630	1,665	1,069	259	8	1,526	1,711	1,121	295
대구	199	4,905	26	1,975	1,930	799	171	4	1,348	1,685	1,433	439
인천	183	4,498	20	1,698	1,852	797	130	1	1,164	1,737	1,386	211
광주	301	7,970	43	3,096	3,200	1,401	219	11	2,355	2,736	2,242	637
대전	145	3,872	69	1,332	1,414	836	211	10	1,024	1,610	967	271
울산	55	1,271	22	613	491	128	16	1	333	420	370	148
세종	12	323	11	153	118	35	6	0	72	64	145	42
경기	763	21,111	177	8,028	7,997	3,873	1,015	21	4,520	8,387	6,528	1,676
강원	168	4,350	136	1,639	1,616	740	215	4	1,264	1,669	1,065	352
충북	184	4,959	150	2,103	1,867	673	161	5	901	2,198	1,473	387
충남	226	6,098	301	2,478	2,270	822	218	9	1,254	2,458	1,845	541
전북	286	7,125	121	3,105	2,700	966	232	1	2,051	2,279	2,244	551
전남	384	9,944	440	4,221	3,630	1,437	201	15	2,538	3,898	2,864	644
경북	258	6,417	132	2,661	2,461	981	163	19	1,672	2,730	1,550	465
경남	259	6,396	146	2,785	2,269	996	198	2	1,606	2,608	1,754	428
제주	66	1,718	8	698	681	247	80	4	400	542	619	157

자료 : 보건복지부(2017) 2017년 보건복지통계연보 2016년 말 기준

지역아동센터 이용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저학년 이용자가 3,105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2,700명, 중학생 966명 등의 순이었다.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이용자는 대체로 초등학교 저학년이 전체 이용자의 약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소득기준으로 보면, 빈곤층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50% 이하 아동이 2,051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약 28.7%를 차지하고 있고 중위소득 50%에서 중위소득 80%의 구간의 소득을 가진 아동이 2,279명이었다. 대체로 중산층 이상에 해당하는 소득구간인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이용자는 551명으로 전체 지역아동센터 이용자의 7.7%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자는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의 이용자 비율이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IV-44>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현황

구분	오후돌봄			저녁돌봄		
	학교수(개)	교실수(실)	이용학생수(명)	학교수(개)	교실수(실)	이용학생수(명)
전체	5,998	11,920	238,480	1,600	1,847	12,488
서울	571	1,666	33,094	378	393	2,537
부산	303	585	11,773	180	223	1,788
대구	218	425	8,159	90	90	353
인천	246	538	11,168	172	255	1,297
광주	150	313	6,061	146	149	275
대전	147	366	7,737	117	172	1,078
울산	119	273	5,976	31	32	116
세종	37	98	1,821	10	10	111
경기	1,238	2,760	54,171	204	227	2,065
강원	357	617	10,449	11	11	178
충북	260	431	8,835	58	71	426
충남	416	706	14,394	14	15	150
전북	416	720	15,192	61	67	814
전남	422	621	13,035	71	71	770
경북	487	802	14,952	32	35	240
경남	506	818	17,689	25	26	290
제주	105	181	3,974	-	-	-

자료 : 교육부(2016) 내부자료

중앙정부는 안전한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3년부터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아동센터와 교육부 주관 초등돌봄교실 그리고 여성가족부 주관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중에 있다. 초등돌봄교실은 2004년 도입된 이후 2016년 기준 약 5,998개 초등학교에서 24만명의 초등학생이 이용중에 있다.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를 살펴보면, 전라북도의 경우 오후돌봄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총 416개소, 720개실이고, 저녁돌봄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61개소, 총 67개실이다. 전라북도의 경우 오후돌봄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아동은 15,192명이고 저녁돌봄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수는 814명에 이른다.

<표IV-45>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 학교 대상 및 서비스 내용

유형	대상 및 서비스
오후돌봄	1-2학년을 대상으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 1-2학년 우선선정 후 추가수용이 가능한 경우 3학년 이상은 학교여건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대상자 선정
자녀돌봄	오후돌봄에 참여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추가돌봄 필요학생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별도의 공간에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306학년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학생이면서 오후돌봄을 이용하지 않은 학생

<표V-46>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현황

구분	이용대상			운영개소수				형태		
	계(명)	초등학생	중학생	계 (개소)	초등학교	중학교	초+중	지원형	혼합형	특별형
전체	10,021	5,758	4,263	250	122	89	39	240	1	9
서울	1,000	730	270	25	15	5	5	22	0	3
부산	600	360	240	15	9	6	-	15	0	0
대구	470	380	90	12	9	2	1	12	0	0
인천	360	160	200	9	4	5	-	9	0	0
광주	260	110	150	7	2	3	2	6	0	1
대전	220	180	40	6	5	1	-	6	0	0
울산	240	-	240	6	-	6	-	6	0	0
세종	120	40	80	3	1	2	-	2	1	0
경기	1,770	950	820	43	17	15	11	40	0	3
강원	610	330	280	16	8	7	1	16	0	0
충북	490	390	100	12	9	2	1	11	0	1
충남	640	240	400	16	6	10	-	16	0	0
전북	640	320	320	15	6	7	2	15	0	0
전남	921	408	513	24	8	11	5	23	0	1
경북	560	360	200	13	7	3	3	13	0	0
경남	760	540	220	19	11	3	5	19	0	0
제주	360	260	100	9	5	1	3	9	0	0

자료 : 여성가족부(2016) 청소년백서

여성가족부 방과후 아카데미사업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체험 및 학습을 통한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기준 총 250개소에 9,736명이 참여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15개소를 운영중에 있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 6개소, 중학교 7개소, 그리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2개소 등이다. 이용학생은 초등학생 320명, 중학생 320명을 포함하여 총 640명이 이용하고 있다. 운영형태로는 전라북도의 경우 총 15개소 중 모두 지원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원형의 경우 우선순위 지원에서 저소득층(중위소득 60%), 한부모, 조손, 다문화, 장애, 3자녀 가구 등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형은 장애형과 다문화형으로 운영되고 혼합형은 일반지원형과 특별형의 혼합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모두 지원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은 대부분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일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단체, 복지관 등에서도 운영되고 있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중요한 급식지원과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약 11,747개의 학교에서 모두 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급식비 지원도 전체 학생 592만명의 학생에게 모두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표IV-47> 학교급식 현황

시도	학교수(교)							학생수(명)						
	전체	급 식					%	전체	급 식					%
		초	중	고	특수	계			초	중	고	특수	계	
서울	1,327	599	384	318	26	1,327	100	967,559	435,516	238,905	288,966	4,172	967,559	100.0
부산	638	307	172	144	15	638	100	352,119	155,713	87,879	106,302	1,990	351,884	99.9
대구	452	226	125	92	9	452	100	292,522	126,053	73,859	91,073	1,537	292,522	100.0
인천	514	248	134	125	7	514	100	344,544	164,024	82,684	93,672	1,249	341,629	99.2
광주	316	153	91	67	5	316	100	204,313	89,095	51,934	62,357	927	204,313	100.0
대전	302	146	88	63	5	302	100	195,881	87,363	47,637	58,981	978	194,959	99.5
울산	240	117	63	56	4	240	100	146,197	65,519	35,251	43,689	662	145,121	99.3
세종	71	38	18	14	1	71	100	32,591	18,269	7,495	6,762	65	32,591	100.0
경기	2,361	1,233	624	470	34	2,361	100	1,568,408	735,004	382,613	446,293	4,498	1,568,408	100.0
강원	637	351	162	117	7	637	100	175,225	76,770	43,996	53,523	936	175,225	100.0
충북	480	260	128	83	9	480	100	186,514	84,278	46,329	53,740	1,162	185,509	99.5
충남	714	405	186	117	6	714	100	249,359	115,423	60,157	72,918	861	249,359	100.0
전북	769	416	209	133	11	769	100	226,759	98,593	56,926	70,075	1,165	226,759	100.0
전남	829	428	250	143	8	829	100	213,610	92,359	53,197	66,999	1,055	213,610	100.0
경북	940	469	271	192	8	940	100	287,975	128,688	70,482	87,311	1,494	287,975	100.0
경남	967	500	267	191	9	967	100	402,514	187,974	100,215	112,847	1,478	402,514	100.0
제주	190	112	45	30	3	190	100	82,325	38,269	20,629	22,983	444	82,325	100.0
계	11,747	6,008	3,217	2,355	167	11,747	100	5,928,415	2,698,910	1,460,188	1,738,491	24,673	5,922,262	99.9

한편, 5세 미만 자녀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정도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영유아 양육가구의 경우 부담된다는 의견이 35.48%였고, 부담되지 않는다는 의견은 41.94%였다. 전국 평균과 비교해 보면, 전라북도의 5세 미만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또한 6세 이상 고등학교 자녀의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정도를 분석해 보면, 부담된다는 의견이 19.57%, 부담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73.92%, 부담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6.52%로 부담된다는 가정이 절대적으로 많았다.

<표IV-48> 5세 미만 자녀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정도

구분	매우 부담된다[가]	약간 부담된다[나]	보통 이다[다]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라]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마]	부담된다 [가+나]	부담되지 않는다 [라+마]
서울	2.04	14.97	27.89	22.45	32.65	17.01	55.10
부산	1.54	20.00	41.54	20.00	16.92	21.54	36.92
대구	14.63	21.95	19.51	19.51	24.39	36.59	43.90
대전			66.67	23.81	9.52		33.33
인천	5.45	34.55	40.00	12.73	7.27	40.00	20.00
광주		40.91	18.18	40.91		40.91	40.91
울산	2.17	8.70	71.74	4.35	13.04	10.87	17.39
경기	5.66	27.83	42.92	14.15	9.43	33.49	23.58
강원		14.29	42.86	28.57	14.29	14.29	42.86
충북	4.55	13.64	68.18		13.64	18.18	13.64
충남	2.04	14.29	34.69	22.45	26.53	16.33	48.98
전북	3.23	32.26	22.58	29.03	12.90	35.48	41.94
전남	4.00	12.00	44.00	16.00	24.00	16.00	40.00
경북	6.38	23.40	12.77	29.79	27.66	29.79	57.45
경남		34.38	51.56	6.25	7.81	34.38	14.06
제주		33.33	16.67	16.67	33.33	33.33	50.00
전체	3.79	22.41	38.85	17.82	17.13	26.21	34.94
전체 전북	▼0.56	▲9.85	▼16.27	▲11.21	▼4.23	▲9.27	▲7.00

자료 : 한국노동패널(18차) 원자료 분석

<표IV-49> 6세 이상~고등학생 자녀의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정도

구분	매우 부담된다 [가]	약간 부담된다 [나]	보통 이다[다]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라]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마]	부담된다 [가+나]	부담되지 않는다 [라+마]
서울	28.63	48.13	17.01	4.98	1.24	76.76	6.22
부산	19.70	50.00	19.70	6.06	4.55	69.70	10.61
대구	40.24	23.17	12.20	12.20	12.20	63.41	24.39
대전	20.00	33.33	31.11	6.67	8.89	53.33	15.56
인천	25.26	47.37	22.11	4.21	1.05	72.63	5.26
광주	29.41	44.12	14.71	11.76		73.53	11.76
울산	23.68	42.11	31.58	2.63		65.79	2.63
경기	25.71	51.93	19.79	2.31		77.64	2.31
강원	31.25	40.63	21.88	3.13	3.13	71.88	6.25
충북	23.26	44.19	27.91	2.33	2.33	67.45	4.65
충남	17.65	20.59	48.53	8.82	4.41	38.24	13.24
전북	26.09	47.83	19.57	6.52		73.92	6.52
전남	10.00	45.00	42.50		2.50	55.00	2.50
경북	37.74	39.62	11.32	7.55	3.77	77.36	11.32
경남	32.69	51.92	11.54	0.96	2.88	84.61	3.85
제주	60.00	40.00				100.00	0
전체	26.92	45.22	20.91	4.56	2.32	72.14	6.87
전체-전북	▼0.83	▲2.61	▼1.34	▲1.96	▼2.32	▲1.78	▼0.35

자료 : 한국노동패널(18차) 원자료 분석

<표IV-50> 학교급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단위 : 만원)

시도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전북	
2010	평균	240	321	208	250	220	213	238	231	-	271	184	174	178	164	168	187	204	186	▼7.6
	초등	245	296	195	232	233	234	254	234	-	291	183	177	203	159	175	217	218	188	▼8.6
	중학	255	309	228	312	220	236	221	240	-	279	231	210	192	200	207	210	232	245	▼5.5
	고등	218	372	207	218	198	152	227	216	-	227	137	130	117	135	116	115	148	122	▼8.3
	일반고	265	420	260	240	245	181	269	267	-	277	174	167	142	177	133	151	179	165	▼8.8
2011	평 균	240	328	207	244	214	216	234	229	-	269	180	174	179	155	167	190	202	198	▼8.5
	초등	241	304	191	220	218	229	243	223	-	284	181	171	192	145	169	216	211	201	▼9.6
	중학	262	318	239	304	219	252	223	272	-	288	225	223	213	198	217	213	228	258	▼6.4
	고등	218	374	198	222	202	159	230	196	-	225	130	130	124	127	114	127	160	131	▼9.1
	일반고	259	427	240	241	237	190	273	236	-	264	166	169	142	162	145	160	184	168	▼9.7
2012	평 균	236	312	230	248	203	231	243	224	-	249	182	177	177	179	172	195	212	203	▼5.7
	초등	219	261	213	240	183	252	230	210	-	219	188	186	189	168	176	203	221	227	▼5.1
	중학	276	340	281	285	227	273	265	257	-	299	223	214	217	223	223	242	248	239	▼5.3
	고등	224	361	208	225	209	158	244	214	-	248	131	126	117	154	118	140	163	127	▼7.0
	일반고	265	411	256	268	247	183	280	243	-	285	165	164	135	191	151	174	186	160	▼7.4
2013	평 균	239	328	229	242	208	239	259	224	-	253	172	188	174	175	168	187	208	196	▼6.4
	초등	232	284	193	219	203	259	257	215	-	247	175	215	200	171	169	199	231	221	▼6.1
	중학	267	349	270	267	219	280	290	262	-	281	211	204	195	218	213	223	232	224	▼4.9
	고등	223	371	240	249	206	173	232	202	-	234	130	131	111	139	125	135	150	126	▼8.4
	일반고	262	427	295	299	252	203	269	240	-	264	150	171	130	167	162	159	172	150	▼9.5
2014	평 균	242	335	227	242	211	231	257	222	186	260	167	188	181	183	164	191	203	199	▼5.9
	초등	232	300	201	221	204	236	261	212	184	245	161	204	217	179	163	203	206	218	▼5.3
	중학	270	349	268	267	226	273	271	254	215	291	204	216	202	234	213	225	233	228	▼3.6
	고등	230	371	225	249	209	185	237	206	160	253	141	137	105	141	121	141	168	138	▼8.9
	일반고	269	421	274	304	258	214	283	246	190	285	167	175	122	171	159	168	193	160	▼9.8
2015	평 균	244	338	234	244	213	228	254	219	196	265	171	190	180	186	165	190	204	201	▼5.8
	초등	231	296	209	218	203	233	253	205	191	246	166	207	216	182	163	200	202	212	▼4.9
	중학	275	355	276	268	229	272	273	262	221	300	212	214	199	240	212	226	240	236	▼3.5
	고등	236	383	232	258	216	182	240	202	182	263	143	142	107	144	125	146	174	149	▼9.2
	일반고	276	436	282	314	268	208	285	243	199	295	169	182	124	174	163	175	199	172	▼10.2
2016	평 균	256	352	256	265	232	228	257	239	237	279	184	197	177	194	162	193	209	226	▼6.2
	초등	241	299	237	254	235	226	253	236	242	259	186	206	192	195	145	216	204	228	▼4.6
	중학	275	370	292	263	236	251	290	255	241	297	216	226	188	214	191	225	222	269	▼6.1
	고등	262	417	255	281	223	212	234	229	217	296	155	158	146	175	164	135	206	183	▼8.7
	일반고	304	470	317	339	269	247	278	270	232	327	185	201	174	209	212	161	233	215	▼9.5

자료 : 통계청(각연도) 초·중고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

학교급별 월평균 사교육비 현황을 보면 2016년도 기준 전북은 평균 19.4만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었으며 전국 평균 25.6만원 보다 6.2만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라북도의 학교급별 사교육비는 중학생 자녀 대상 사교육비가 21.4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다.

<표IV-51> 아동학대 발생현황

(단위 : 건)

구분	18세 미만 전체 아동 수	전체 아동학대 발생	아동 학대 경험율	아동학대유형(건)				
				중복학대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전체	10,047,206	18,700	0.186	8,980	2,715	3,588	493	2,924
서울	1,695,519	2,268	0.134	1,075	348	413	32	400
부산	592,297	880	0.149	388	180	187	27	98
대구	481,163	736	0.153	388	83	135	8	122
인천	581,003	1,190	0.205	503	250	215	31	191
광주	328,561	346	0.105	149	81	37	4	75
대전	317,992	359	0.113	139	98	50	9	63
울산	248,633	685	0.276	406	31	174	21	53
세종	62,036	4,353	7.017	2,141	772	733	110	597
경기	2,690,625	981	0.036	468	138	211	20	144
강원	284,782	948	0.333	399	101	168	27	253
충북	313,340	824	0.263	423	107	119	31	144
충남	419,565	1,446	0.345	747	112	324	34	229
전북	364,993	1,229	0.337	503	139	289	90	208
전남	356,630	1,040	0.292	480	125	271	17	147
경북	486,930	1,139	0.234	636	102	220	27	154
경남	683,138	276	0.040	135	48	42	5	46
전체 전북			▲0.151					

자료 : 보건복지부(2017) 2017 보건복지통계연보 2016년 말 통계

아동학대 발생현황을 보면, 전라북도의 경우 2016년 말 기준 총 1,229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하였고, 이는 전체 아동학대발생 건수인 18,700건의 6.6% 수준이다. 아동학대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연령대인 18세 미만 아동 대비 아동학대 발생건수를 분석해 보면, 전라북도의 경우 전체 아동의 약 0.337%의 아동이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전국 평균 아동학대 경험율인 0.186%에 비해서는 약 두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한편, 전라북도 아동학대의 발생유형을 보면, 중복학대가 50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서적 학대 289건, 방임 및 유기 208건, 신체적 학대 139건, 그리고 성학대 90건 등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복학대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다음으로 정서적 학대, 방임 그리고 신체적 학대순인 점을 감안하면 전라북도의 아동학대 유형도 대체로 이 같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정서적 학대의 경우 학대의 실체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예방적 조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IV-52> ADL 도움필요정도(장애인)

구분	옷입기		세수하기		양치질		목욕하기		식사하기		체위변경하기	
	부분 도움	완전 도움	부분 도움	완전 도움	부분 도움	완전 도움	부분 도움	완전 도움	부분 도움	완전 도움	부분 도움	완전 도움
서울	18.1	4.4	9.5	3.9	9.6	3.9	19.4	7.6	11.3	3.0	6.0	2.3
부산	11.3	5.6	6.3	4.9	4.9	4.7	17.3	8.8	6.4	4.4	5.5	3.5
대구	9.4	3.1	3.6	3.1	4.4	2.4	14.1	4.4	6.1	1.4	3.4	.4
인천	10.8	5.1	4.2	4.7	4.4	4.9	11.4	8.0	8.1	2.7	4.1	1.8
광주	16.2	3.5	11.6	5.5	10.5	7.0	19.1	6.7	9.1	1.9	5.2	3.1
대전	31.1	7.7	14.3	6.9	13.6	6.9	35.0	10.9	20.6	4.6	9.2	6.2
울산	17.0	1.1	5.8	1.1	6.7	1.1	20.3	4.1	10.9	.8	1.7	.8
경기	15.2	3.9	7.8	3.5	8.2	3.1	18.8	6.9	9.8	1.7	6.1	1.5
강원	13.4	4.3	10.1	3.4	10.1	2.6	20.5	6.5	10.3	1.2	10.1	1.5
충북	21.1	2.9	5.5	2.2	6.5	1.7	24.7	4.5	10.1	.8	3.9	1.1
충남	22.0	3.2	8.5	2.4	7.8	2.4	22.4	6.0	12.8	2.1	7.1	1.8
전북	12.7	3.3	4.6	2.2	4.4	2.3	14.2	5.8	5.9	1.6	3.4	1.5
전남	12.8	2.8	6.9	2.3	8.1	2.0	14.6	4.9	7.8	.9	3.9	.9
경북	10.7	1.3	4.8	.8	5.1	.8	15.3	4.2	6.2	.6	2.9	.4
경남	13.8	2.6	5.4	2.2	6.8	2.3	18.0	5.8	9.1	1.5	3.8	1.5
제주	14.9	3.8	6.6	3.8	6.6	3.8	12.4	6.2	7.2	2.4	8.0	3.1
평균	15.2	3.7	7.2	3.3	7.4	3.1	18.3	6.5	9.4	2.0	5.3	1.8
전북 평균	▼2.5	▼0.4	▼2.6	▼1.1	▼3.0	▼0.8	▼4.1	▼0.7	▼3.5	▼0.4	▼1.9	▼0.3

자료 : 장애인실태조사(2015) 원자료

한편, 전라북도 장애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을 분석해 보면, 옷입기의 경우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은 12.7%, 완전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은 3.3%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은 전체적으로 약 16.0%수준이었다. 세수하기와 양치질의 경우 부분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 각각 4.6%, 4.4%, 완전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2.2%, 2.3%로 약 6.8%의 장애인이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이는 전국 평균과 비교시 약 3.7%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식사하기 경우 또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전북이 약 7.5%, 체위변경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 약 4.9%로 이는 전국평균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목욕하기의 경우 다른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비해 부분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 14.2%, 완전도움 필요 장애인 5.8%로 약 20.0%의 장애인이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국평균 24.8%보다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 약 4.8%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IV-53> ADL 도움필요정도(장애인)

구분	일어나 앉기		움거앉기		방밖으로 나가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조절하기		소변조절하기	
	부분 도움	완전 도움	부분 도움	완전 도움	부분 도움	완전 도움	부분 도움	완전 도움	부분 도움	완전 도움	부분 도움	완전 도움
서울	8.8	2.8	12.8	3.0	15.4	4.6	12.4	4.4	4.6	3.9	4.4	4.4
부산	7.0	3.6	8.1	5.0	12.6	6.9	6.1	6.8	2.0	6.0	2.1	6.1
대구	2.2	2.4	3.6	2.8	6.4	3.2	4.3	2.8	2.5	2.4	3.7	2.1
인천	7.3	1.8	7.3	3.3	11.1	3.0	7.7	4.3	1.9	4.8	2.8	4.2
광주	9.0	3.1	10.8	3.1	16.7	3.1	8.2	5.2	5.4	3.9	3.8	4.5
대전	10.1	6.2	13.0	6.2	17.2	6.6	15.3	6.2	4.2	5.6	6.4	4.7
울산	6.9	1.1	7.9	1.4	8.0	1.1	9.8	2.4	4.6	1.8	5.6	2.5
경기	6.6	2.0	8.6	2.7	14.3	4.1	9.8	3.9	4.2	3.6	4.4	3.0
강원	9.9	1.6	12.5	1.7	17.3	3.3	12.8	1.7	6.0	1.3	5.3	1.4
충북	4.3	1.3	8.5	1.3	13.1	2.4	7.4	2.6	2.0	2.5	3.7	2.0
충남	9.7	1.8	11.7	2.8	15.5	2.5	8.1	2.7	3.3	1.7	2.8	1.9
전북	6.5	1.6	6.5	1.6	10.7	3.0	4.4	3.6	2.0	3.5	2.8	3.0
전남	5.1	1.5	6.3	1.6	8.0	3.0	5.3	3.6	2.3	2.9	2.4	3.1
경북	5.6	.4	8.0	.6	10.7	1.7	7.7	1.5	1.3	1.5	2.8	1.2
경남	5.3	1.4	6.3	1.9	13.4	2.7	7.7	3.5	3.7	3.0	5.2	1.8
제주	8.6	2.4	8.4	2.4	16.7	5.3	9.1	3.8	2.3	4.6	3.0	3.8
평균	7.0	2.1	8.9	2.6	13.1	3.7	8.8	3.8	3.4	3.4	3.8	3.2
전북 평균	▼0.5	▼0.5	▼2.4	▼1.0	▼2.4	▼0.7	▼4.4	▼0.2	▼1.4	▲0.1	▼1.0	▼0.2

자료 : 장애인실태조사(2015) 원자료

일어나 앉기의 경우 부분도움이 필요한 전라북도의 장애인은 6.5%, 완전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 1.6%로 약 8.1%의 장애인이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움거앉기의 수행능력 또한 부분도움 6.5%, 완전도움필요 1.6%로 일어나 앉기의 도움필요장애인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방 밖으로 나가는데 있어서는 부분도움이 필요한 전북의 장애인은 10.7%로 전국 평균 13.1%보다 약 2.4%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완전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3.0%로 전국 평균 3.7%와 유사한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대소변조절하기 등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은 대체로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 2%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완전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은 3% 수준으로 전국평균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IV-54> IADL 도움필요정도(장애인)

구분	전화사용하기		물건사기		식사준비		집안일		빨래하기		약챙겨먹기		금전관리		교통수단이용	
	부분 도움	완전 도움	부분 도움	완전 도움	부분 도움	완전 도움	부분 도움	완전 도움	부분 도움	완전 도움	부분 도움	완전 도움	부분 도움	완전 도움	부분 도움	완전 도움
서울	17.8	8.2	16.9	11.9	22.9	11.6	25.3	11.9	24.9	11.4	12.6	6.4	10.9	15.1	28.8	13.8
부산	12.8	9.8	9.9	12.2	17.8	11.6	18.2	12.6	16.4	14.7	9.3	7.6	9.7	12.8	22.1	14.8
대구	16.2	4.3	14.9	4.9	19.2	5.7	20	5.6	16.7	5.6	5.5	3.8	10.6	6.3	19.8	6.8
인천	13.8	5.9	13.1	7.6	16.6	8.3	20	7.8	17.7	8.2	9.3	5.4	4.6	12.5	20.7	12.7
광주	16.7	4.4	14.7	7.8	14.4	10.1	15	8.8	14.3	9.2	9.4	6.4	8.2	15	22.5	11.8
대전	32.9	11.1	40.8	13.4	40.7	15.3	42.4	15.8	38.6	14.6	11.3	11.5	17.1	20.2	54.2	17.2
울산	22.3	4.5	26.8	9.1	24.1	14.2	24.6	12.2	24.1	14.8	13.4	2.6	21	11.5	35.9	16.2
경기	16.3	8.6	15.9	11	23	11.7	26.2	10.9	22.1	11.2	12.9	6.3	14.2	13.1	26.9	14.2
강원	29.4	10.2	20.4	13.5	24.2	12.5	26.7	10.8	22.7	12.6	17.6	5.1	16.7	15.9	33.9	13.4
충북	21.7	3.8	17.4	9.9	28.7	9.9	30	10.3	24.2	10.4	13	4.3	16.2	13.3	27.3	9.1
충남	22	5.8	24.2	9.8	30.6	8.5	36.6	8.7	31.3	8.2	10	5.3	15	10.2	34	8.9
전북	20.1	6.6	17.2	10.6	20.9	10.8	25.1	8.9	21.3	10.7	6.5	5.1	15.1	12	27.8	11.4
전남	17.9	10.2	14.1	11.7	13.6	10	14.8	10.3	13.2	10.2	8.1	6	12.6	13.5	25.8	12
경북	17.4	4.4	14.1	7.7	21.8	6.7	23.4	6.5	18	6.6	9.2	2.3	10.7	12.2	21.8	10.6
경남	15.3	7.4	14.5	10.1	20.2	9.6	25.5	9.6	21.8	9.8	7.5	5.1	14.2	11.1	24.6	11.5
제주	22	9.5	12.1	11	13.3	11.6	14.5	8.9	12.9	11.3	8.6	8.3	12.4	13	23.1	15.7
평균	18.1	7.5	16.7	10.4	22	10.5	24.6	10.2	21.6	10.5	10.7	5.7	12.7	13	27.1	12.6
전북	▲	▼	▲	▲	▼	▲	▲	▼	▼	▲	▼	▼	▲	▼	▲	▼
평균	2.0	0.9	0.5	0.2	1.1	0.3	0.5	1.3	0.3	0.2	4.2	0.6	2.4	1.0	0.7	1.2

자료 : 장애인실태조사(2015) 원자료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인 IADL의 도움필요정도를 분석한 결과 전라북도의 장애인은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 27.8%, 완전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은 11.4%로 약 39.2%의 장애인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빨래도 부분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은 21.3%, 완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은 10.7%로 약 32.0%의 장애인이 타인의 일정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화사용하기의 경우 또한 부분도움 필요가 20.1%, 완전도움필요 6.6%로 약 26.7%의 장애인이 도움이 필요하였다.

약챙겨먹기의 경우 부분도움과 완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약 6% 안팎 수준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외에도 물건사기의 경우 완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은 10.6%, 식사준비의 완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은 10.8% 등으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IV-55>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현황

구분	월별 이용자												1-2급 등록 장애인	이용 율 (%)	전북 평균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	11,523	11,707	11,807	11,899	11,970	12,099	12,191	12,309	12,406	12,535	12,643	85,766	14.74	▲3.4	
부산	4,213	4,269	4,292	4,324	4,364	4,412	4,441	4,483	4,514	4,542	4,593	36,428	12.61	▲1.3	
대구	2,895	2,963	2,996	3,000	3,025	3,062	3,077	3,118	3,139	3,152	3,173	25,640	12.38	▲1.0	
인천	3,270	3,347	3,398	3,409	3,433	3,480	3,508	3,579	3,619	3,643	3,670	27,851	13.18	▲1.8	
광주	2,392	2,416	2,444	2,475	2,501	2,532	2,560	2,582	2,599	2,628	2,647	15,254	17.35	▲6.0	
대전	2,495	2,547	2,595	2,611	2,629	2,646	2,676	2,711	2,735	2,746	2,759	15,739	17.53	▲6.2	
울산	720	738	752	764	764	771	776	789	801	819	816	10,032	8.13	▼3.2	
세종	128	138	150	153	156	156	155	161	168	172	176	2,108	8.35	▼3.0	
경기	10,642	10,944	11,125	11,225	11,329	11,494	11,640	11,805	12,010	12,160	12,287	111,545	11.02	▼0.3	
강원	1,402	1,434	1,462	1,466	1,499	1,521	1,540	1,548	1,566	1,582	1,604	20,577	7.80	▼3.5	
충북	1,657	1,682	1,709	1,710	1,726	1,751	1,770	1,794	1,818	1,825	1,847	20,459	9.03	▼2.3	
충남	2,026	2,112	2,155	2,180	2,211	2,257	2,308	2,350	2,380	2,430	2,439	26,399	9.24	▼2.1	
전북	1,858	1,883	1,901	1,908	1,936	1,950	1,957	1,973	1,995	1,996	2,022	26,449	7.64	▼3.7	
전남	2,194	2,234	2,288	2,296	2,333	2,344	2,388	2,423	2,444	2,473	2,500	28,501	8.77	▼2.6	
경북	2,295	2,356	2,415	2,441	2,475	2,494	2,507	2,551	2,575	2,603	2,633	35,841	7.35	▼4.0	
경남	3,553	3,625	3,675	3,685	3,713	3,834	3,881	3,926	3,963	4,010	4,024	38,318	10.50	▼0.8	
제주	696	726	730	734	741	751	758	768	768	775	781	7,774	10.05	▼1.3	
합계	53,959	55,121	55,894	56,280	56,805	57,554	58,133	58,870	59,500	60,091	60,614	534,681	11.34	-	

자료 : 보건복지부(2016) 2016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한편,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만6세 이상 65세 미만의 1급과 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가구의 소득과 관계없이 장애의 정도에 따라 지원하고 있고, 장애인정점수에 따라 4개의 등급별로 최대 104만원에서 최소 42.2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전라북도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이용자가 2015년 12월 기준으로 2,022명으로 이용대상 장애인(1급-2급)의 7.64%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이용율은 전국 평균이용율인 11.34%보다도 낮을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이용율을 재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이용자는 2015년 하반기부터 3급 장애인까지 이용대상이 확대되어 이용대상자도 증가하였다.

<표IV-56>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재판정 현황

구분	등급재심사 (전체)	상승		하락		유지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서울	5,538	214	3.86	332	5.99	4,992	90.14
부산	1,860	59	3.17	19	1.02	1,782	95.81
대구	1,301	28	2.15	14	1.08	1,259	96.77
인천	1,336	49	3.67	43	3.22	1,244	93.11
광주	1,087	24	2.21	18	1.66	1,045	96.14
대전	1,080	78	7.22	76	7.04	926	85.74
울산	347	3	0.86	12	3.46	332	95.68
세종	52	3	5.77	1	1.92	48	92.31
경기	4,326	193	4.46	182	4.21	3,951	91.33
강원	556	33	5.94	10	1.80	513	92.27
충북	595	42	7.06	7	1.18	546	91.76
충남	740	37	5.00	19	2.57	684	92.43
전북	749	66	8.81	22	2.94	661	88.25
전남	818	54	6.60	66	8.07	698	85.33
경북	92	57	61.96	17	18.48	818	889.13
경남	979	40	4.09	28	2.86	911	93.05
제주	264	1	0.38	2	0.76	261	98.86
총계	22,520	981	4.36	868	3.85	20,671	91.79
전국-전북			▲4.5		▼0.9		▼3.5

자료 : 국민연금공단(2016)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재심사결과 2016. 1-5월 현황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재판정 현황을 보면, 전체 재판정 심사는 2016년 기준 (1월~5월) 총 22,520건이었고, 재판정 결과 등급심사가 상승한 건수는 981건(전체 심사건수의 4.36%) 그리고 하락 868건(전체 심사건수의 3.85%) 그리고 유지 20,671건(전체 심사건수의 91.79%)이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재심사의 90%이상은 당초 등급이 유지되었다.

전라북도의 경우 재심사 건수는 749건이었고, 이중 당초 등급에서 증가한 건수는 66건(8.81%), 하락 22건(2.94%) 그리고 유지 661건(88.25%)였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장애인의 이동권과 생활권을 보호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지원등급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차등은 이용과 접근에 상당한 제약을 둘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이용대상자의 확대와 함께 본인부담금의 축소 등의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

<표IV-57>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현황

구분	활동지원 서비스 실인원수 (명)	만6세이상 65세 미만 1-3급 장애인(명)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비율 (%)	활동지원 서비스 총급여액 (천원)	만6세 이상 65세 미만 1-3급 장애인(명)	활동지원 서비스 평균 급여 (원)
서울	15,135	101,151	14.96	197,558,940	101,151	1,953,109
부산	4,592	44,565	10.3	60,211,037	44,565	1,351,084
대구	4,286	31,929	13.42	42,336,096	31,929	1,325,945
인천	4,076	34,796	11.71	44,616,634	34,796	1,282,235
광주	2,600	18,680	13.92	35,699,605	18,680	1,911,114
대전	3,016	19,156	15.74	35,306,207	19,156	1,843,089
울산	941	12,452	7.56	8,972,277	12,452	720,549
세종	220	2,022	10.88	1,578,444	2,022	780,635
경기	28,425	131,347	21.64	299,396,878	131,347	2,279,434
강원	1,789	24,838	7.2	17,869,832	24,838	719,455
충북	1,780	25,426	7.00	24,348,681	25,426	957,629
충남	2,645	31,044	8.52	28,429,459	31,044	915,780
전북	2,050	31,848	6.44	24,397,174	31,848	766,050
전남	3,735	32,458	11.51	31,952,904	32,458	984,438
경북	2,467	42,681	5.78	27,788,986	42,681	651,086
경남	4,435	46,132	9.61	51,775,784	46,132	1,122,340
제주	835	8,784	9.51	9,006,986	8,784	1,025,385
전국	83,027	639,309	12.99	941,245,926	639,309	1,472,286
전국-전북			▼6.55			

자료 : 한국장애인총연맹(2017). 2016 장애인복지보고

한편, 전라북도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지원정도를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활동지원서비스의 실인원은 2,050명으로 활동지원서비스의 이용율은 6.44%수준이다. 전라북도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지원율은 전국 평균인 12.99%보다도 약 두배정도 낮은 수준이다. 전라북도는 활동지원서비스의 이용율이 경북 5.78%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전라북도의 활동지원서비스의 지원급여액은 총 243.9억원으로 장애인 1인당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액은 76.6만원으로 전국 평균 1인당 지원액인 147.2만원보다도 약 두배 정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추가지원에 대해서는 그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두고 있어 재정여건이 좋은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간의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전라북도는 높은 복지수요와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장애인추가급여에 요구되는 재원을 마련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원대상과 지원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IV-58> 장애인 특별교통도입현황

구분	장애인	법정기준대수	운행대수	보급률
합계	543,659	2,731	2,820	103.3
서울	86,241	431	437	101.4
부산	36,317	182	201	110.4
대구	25,518	128	128	100
인천	27,765	139	140	100.7
광주	15,195	76	97	127.6
대전	15,661	78	82	105.1
울산	9,937	50	51	102
세종	2,038	10	10	100
경기	113,423	578	651	112.6
강원	20,655	103	98	95.1
충북	22,972	115	112	97.4
충남	26,409	131	100	76.3
전북	26,510	134	139	103.7
전남	29,138	146	100	68.5
경북	35,895	180	115	63.9
경남	42,243	211	319	151.2
제주	7,742	39	40	102.6
전국-전북				▲0.4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6) 2017 장애인통계집, 국토교통부(2017)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

한편, 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 도입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라북도의 2016년 기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은 139대로 법정 기준인 134대를 초과한 103.7%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전라북도의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은 광역도지역에서는 경남과 경기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고 전국 평균 도입율인 103.3%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장애인특별교통 수단이 대부분 도시 중심으로 운행되고 있어 농촌지역의 장애인 이동권 보호를 위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돌봄기준선 설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고령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향후에도 이 같은 추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노인의 돌봄을 위한 사회적 비용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노인돌봄과 관련하여 복지기준선 설정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급증하는 노인의 증가에 따른 적정수준의 범위라고 할 수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돌봄수요의 예측에 기초하여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적정기준선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IV-59> 노인인구 추계

	2017	구성비	순위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전국	7,075,518	13.8	-	8,133,668	10,507,986	12,955,095	15,175,901	17,120,010	18,179,045
서울	1,295,490	13.3	11	1,480,008	1,860,050	2,212,394	2,519,307	2,788,590	2,920,850
부산	539,799	15.7	6	623,941	789,710	927,233	1,032,252	1,112,157	1,140,494
대구	336,721	13.7	10	387,543	494,331	602,119	695,280	765,550	791,149
인천	333,496	11.4	14	397,802	551,823	717,540	863,113	991,564	1,067,763
광주	178,397	11.9	12	202,500	259,915	318,982	376,480	425,721	450,247
대전	176,429	11.5	13	205,668	272,661	341,461	404,744	461,594	494,119
울산	112,201	9.6	16	137,245	193,524	252,505	303,559	339,641	356,634
세종	25,456	9.2	17	35,382	53,884	77,000	103,398	134,178	162,009
경기	1,420,696	11.1	15	1,697,643	2,310,498	2,964,068	3,556,632	4,074,426	4,360,915
강원	268,292	17.6	4	303,989	391,606	480,479	563,194	638,010	680,658
충북	244,713	15.2	7	278,170	360,787	451,182	537,966	615,379	662,048
충남	350,909	16.3	5	392,301	494,951	614,261	727,068	839,221	914,879
전북	339,261	18.5	2	371,521	450,204	534,129	614,682	689,519	729,690
전남	385,604	21.5	1	410,963	486,167	571,164	658,048	738,315	785,226
경북	494,515	18.4	3	551,840	684,109	825,402	955,183	1,066,264	1,123,638
경남	484,251	14.4	8	553,813	716,544	888,245	1,046,180	1,179,117	1,248,435
제주	89,288	14.1	9	103,339	137,222	176,931	218,815	260,764	290,291

자료 : 통계청(2017). 고령자 인구통계 2017년 말 기준

따라서 노인복지기준선 설정은 동거가족 유무(돌봄제공자 유무)와 건강정도를 기준으로 홀로생활하고 있으면서 절대적 의존의 건강상태를 가진 노인에 대한 보호를 최저선으로 설정하고 소득이 중산층 이상으로 일상적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 에 대한 예방적 돌봄서비스의 구축을 돌봄서비스의 적정선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IV-60> 고령인구의 비율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전북
2017	13.8	13.3	15.7	13.7	11.4	11.9	11.5	9.6	9.2	11.1	17.6	15.2	16.3	18.5	21.5	18.4	14.4	14.1	▲4.7
순위	11	6	10	14	12	13	16	17	15	4	7	5	2	1	3	8	9		
2020	15.6	15.4	18.4	15.8	13.4	13.5	13.5	11.7	9.4	12.8	19.8	17.1	17.8	20.4	22.9	20.6	16.4	15.3	▲4.8
순위	10	5	9	14	12	13	16	17	15	4	7	6	3	1	2	8	11		
2025	20.0	19.5	23.6	20.5	17.9	17.4	17.7	16.3	12.6	16.9	25.3	21.6	21.6	24.8	27.2	25.4	21.0	19.0	▲4.8
순위	10	5	9	12	14	13	16	17	15	3	7	6	4	1	2	8	11		
2030	24.5	23.5	28.3	25.4	22.8	21.6	21.9	21.3	16.3	21.3	30.6	26.4	26.0	29.5	32.0	30.6	25.9	23.3	▲5.0
순위	10	5	9	12	14	13	16	17	15	3	6	7	4	1	2	8	11		
2035	28.7	27.2	32.2	30.0	27.1	25.8	26.0	25.8	20.2	25.5	35.6	31.0	30.2	34.1	36.9	35.6	30.7	27.9	▲5.4
순위	11	5	9	12	14	13	15	17	16	3	6	8	4	1	2	7	10		
2040	32.8	30.8	35.8	34.1	31.2	29.9	29.8	29.5	24.8	29.4	40.3	35.4	34.5	38.8	41.7	40.3	35.2	32.6	▲6.0
순위	12	5	9	11	13	14	15	17	16	2	6	8	4	1	3	7	10		
2045	35.6	33.1	38.3	36.7	34.0	32.7	32.4	32.1	28.8	32.2	43.4	38.5	37.8	41.9	45.1	43.4	38.4	36.1	▲6.3
순위	12	7	9	11	13	14	16	17	15	2	5	8	4	1	3	6	10		

자료 : 통계청(2017) 고령자 통계

<표IV-61> 독거노인 비율

지역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전북
2010	5.7	3.6	5.9	5.2	3.9	4.8	3.9	3.5	-	3.6	7.9	7.2	8.0	9.8	13.4	10.0	8.0	7.2	▲4.1
2011	5.7	3.7	6.0	5.3	3.9	4.9	4.0	3.5	-	3.6	8	7.3	8.0	9.8	13.4	10.0	8.0	7.1	▲4.1
2012	5.9	3.8	6.3	5.5	4.1	5.1	4.1	3.6	6.4	3.7	8.2	7.4	8.1	10.0	13.6	10.1	8.1	7.1	▲4.1
2013	6	4.0	6.6	5.7	4.3	5.3	4.3	3.7	5.8	3.9	8.3	7.6	8.3	10.2	13.8	10.3	8.2	7.1	▲4.2
2014	6.2	4.1	6.9	6	4.5	5.5	4.5	3.9	4.8	4	8.5	7.8	8.4	10.4	14.0	10.5	8.4	7.1	▲4.2
2015	6.3	4.8	7.2	6.1	4.8	5.4	4.8	4.2	4.5	4.4	8.6	7.7	8.2	10.1	12.8	10	8.2	6.2	▲3.8
2016	6.6	5.1	7.5	6.4	5	5.7	5.1	4.4	4.1	4.6	8.8	7.9	8.4	10.4	13.1	10.2	8.4	6.3	▲3.8

자료 : 통계청(2017) 노인1인가구 현황

노인학대 신고 접수건수를 보면, 2016년 기준 총 12,009건의 노인학대 건수가 신고 되었고 이는 노인인구 100명당 약 1.70건에 해당한다. 전라북도의 경우 2016년 한해 515건의 노인학대가 신고 되었고, 전체 노인인구 34.1만명 중 인구천명당 약 1.50건의 노인학대 건수가 신고 되었다. 전라북도의 노인인구 천명당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전국 평균인 1.70명보다도 다소 낮은 수치이다.

<표IV-62>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 및 접수율

	총인구수 (명)	65세이상 총인구수 (명)	총 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인구수 비율 (%)	신고접수 건수 (건)	지역별 신고접수율 (노인인구천명당) (%)
계	51,696,216	6,995,652	13.5	12,009	1.70
서울	9,930,616	1,295,899	13.0	1,117	0.90
부산	3,498,529	536,064	15.3	753	1.40
대구	2,484,557	328,901	13.2	497	1.50
인천	2,943,069	324,255	11.0	868	2.70
광주	1,469,214	172,572	11.7	485	2.80
대전	1,514,370	171,568	11.3	405	2.40
울산	1,172,304	108,768	9.3	406	3.70
경기	12,716,780	1,374,475	10.8	1,638	1.20
강원	1,550,806	266,152	17.2	895	3.40
충북	1,591,625	240,690	15.1	589	2.40
충남	2,339,775	374,305	16.0	862	2.30
전북	1,864,791	341,203	18.3	515	1.50
전남	1,903,914	398,916	21.0	678	1.70
경북	2,700,398	492,417	18.2	1,052	2.10
경남	3,373,871	480,278	14.2	1,097	2.30
제주	641,597	89,189	13.9	152	1.70
전국-전북			▲4.8		▼0.20

자료 : 보건복지부(2016) 노인학대현황

<표IV-63> ADL 도움필요정도(노인)

구분	옷입기		세수, 양치질		대소변 조절하기		음식먹기		방밖으로 이동하기		대소변 조절	
	부분 도움	완전 도움	부분 도움	완전 도움	부분 도움	완전 도움	부분 도움	완전 도움	부분 도움	완전 도움	부분 도움	완전 도움
서울	2.58	0.97	2.96	0.91	0.59	0.43	1.24	0.81	1.07	0.81	1.40	0.59
부산	2.82	0.38	3.33	0.51	0.51	0.13	0.26	0.64	1.66	0.77	1.02	0.38
대구	3.51	0.41	2.89	1.44	1.03	0.62	2.06	0.21	2.89	1.03	3.92	0.41
대전	1.49	1.06	2.34	1.28	0.00	0.85	1.06	0.85	0.85	0.85	2.97	0.85
인천	0.38	0.77	0.77	0.77		0.77	1.15	0.77	0.77	0.77	0.38	0.77
광주	3.53	1.57	5.10	1.18	4.31	0.00	1.18	0.78	3.52	1.17	1.17	1.56
울산	0.65		1.32						0.65		0.66	
경기	1.74	0.25	3.09	0.55	0.65	0.05	0.50	0.35	1.19	0.30	1.69	0.15
강원	0.97	0.48	1.21	0.72	0.48	0.24	0.48	0.72	0.96	0.48	4.83	0.24
충북	1.83	0.52	2.09	0.00	0.26	0.00	0.52	0.00	0.79	0.52	1.31	0.52
충남	3.29	0.00	2.60	0.17	1.04	0.00	0.35	0.17	0.69	0.17	1.73	0.00
전북	2.26	0.38	2.25	0.75	0.38	0.19	1.32	0.38	1.69	0.38	3.01	0.38
전남	1.12	0.32	1.91		0.48		0.96	0.32	1.28	0.32	1.28	0.48
경북	1.68	0.13	2.83	0.26	0.52	0.13	0.39	0.26	0.39	0.26	1.03	0.26
경남	1.77	0.82	2.72	0.95	0.55	0.41	0.95	0.54	1.23	0.82	1.23	0.68
제주	2.27	2.27	3.03	1.52	2.27	0.76	2.27	1.52	2.27	1.52	3.05	0.76
전체	2.09	0.55	2.71	0.66	0.66	0.25	0.84	0.50	1.24	0.57	1.78	0.43
평균	▲0.17	▼0.17	▼0.46	▲0.09	▼0.28	▼0.06	▲0.48	▼0.12	▲0.45	▼0.19	▲1.23	▼0.05
전북												

자료 : 노인생활실태조사(2015) 원자료

한편, 전라북도 65세 이상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을 분석해 보면, 옷입기의 경우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2.26%, 완전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0.38%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전체적으로 약 2.64%수준이었다. 옷입기의 경우 전국 평균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 2.64%로 전라북도와 전국평균은 유사한 수준이었다. 세수와 양치질의 경우도 전북은 부분도움이 필요한 노인이 2.25%, 완전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0.75%로 약 3.0%의 노인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외에도 대소변조절이나 식사, 방밖으로의 이동과 대소변 조절 등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대체로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 2% 안팎이었고, 완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은 1% 이내였다. 전라북도와 전국을 비교해 보면, 세수 및 양치질하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일상생활 영역에서 완전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의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표IV-64> IADL 도움필요정도(노인)

구분	몸단장		집안일		식사준비		빨래		약챙겨먹기	
	부분 도움	완전 도움	부분 도움	완전 도움	부분 도움	완전 도움	부분 도움	완전 도움	부분 도움	완전 도움
서울	4.0	1.4	7.4	3.4	6.9	3.0	5.7	3.4	2.7	1.0
부산	5.5	.1	7.2	2.7	5.0	2.8	5.1	2.6	1.9	1.5
대구	5.4	1.9	7.4	4.9	7.4	4.5	6.4	4.1	3.3	.8
대전	3.2	1.1	8.3	1.5	6.8	1.5	5.5	1.7	.8	1.3
인천	2.3	.8	6.5	2.3	6.9	3.1	6.5	2.3	.4	.8
광주	5.5	1.2	12.5	3.1	13.7	3.1	7.8	3.1	3.1	1.2
울산	1.3		2.0		2.0		2.6			
경기	2.9	.5	6.5	2.3	6.2	2.1	5.4	2.2	1.7	.5
강원	1.4	1.0	11.6	1.7	8.0	1.5	10.8	1.7	.5	1.0
충북	1.6	.5	3.7	1.3	4.4	1.3	3.9	1.0	1.8	.5
충남	4.8	.0	9.2	1.4	11.2	.9	5.5	1.4	2.2	.3
전북	4.7	.6	8.4	2.1	7.9	2.4	7.1	2.3	1.3	.8
전남	1.9	.8	4.0	1.9	4.1	1.4	3.2	1.9	1.6	
경북	3.9	.3	6.4	.9	6.7	.9	5.3	.8	1.2	.1
경남	3.7	.7	7.4	2.5	6.8	2.3	6.1	2.2	2.2	.8
제주	2.3	3.0	3.8	4.5	2.3	4.5	3.8	3.8	4.5	1.5
전체	3.6	.8	7.1	2.4	6.7	2.2	5.7	2.3	1.9	.7
평균 전북	▲1.1	▼0.2	▲1.3	▼0.3	▲1.2	▲0.2	▲1.4	-	▼0.6	▲0.1

자료 : 노인생활실태조사(2015) 원자료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인 IADL의 도움필요정도를 분석한 결과 전라북도는 집안일의 경우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8.4%, 완전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2.1%로 약 10%의 노인은 집안일을 수행하는데 일정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준비 역시 부분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은 7.9%, 완전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 2.4%였다. 빨래도 부분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은 7.1%, 완전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은 2.3%로 약 9.4%의 노인은 타인의 일정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챙겨먹기의 경우 부분도움과 완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은 약 2.1% 수준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외에도 금전관리의 경우 완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은 4.7%, 부분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은 2.3%로 전체 노인의 약 6.0%의 노인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IV-65> IADL 도움필요정도(노인)

구분	금전관리		근거리 외출		물건구매			전화송수신			교통이용		
	부분 도움	완전 도움	부분 도움	완전 도움	적은 부분 도움	많은 부분 도움	전혀 할수 없음	적은 부분 도움	많은 부분 도움	전혀 할수 없음	적은 부분 도움	많은 부분 도움	전혀 할수 없음
서울	6.6	3.1	4.4	1.7	2.7	2.3	1.0	2.4	1.6	.8	4.1	4.3	1.0
부산	2.7	1.8	3.2	1.5	1.3	1.2	.6	9.4	1.5	.6	3.7	4.9	
대구	13.4	4.7	4.7	2.7	4.7	3.7	.6	3.1	2.9	2.1	6.8	6.8	.6
대전	10.2	2.1	3.2	1.1	2.3	.9	.9	3.8	1.3	.6	3.8	1.9	.8
인천	2.7	1.5	3.4	2.3	3.1	.8	.4	.8	1.1	.4	3.4	2.3	.8
광주	7.1	2.7	4.3	.4	11.8	1.2	1.6	4.3	2.0	.8	5.1	5.1	
울산	2.0		1.3		.7			.7			3.3		
경기	6.7	3.4	3.4	1.2	1.9	2.7	.4	2.1	2.2	.2	4.2	4.6	.3
강원	5.6	2.4	2.4	1.7	1.0	.5	.5	1.7	1.2	.5	4.3	1.7	1.4
충북	33.9	2.1	2.1	.5	6.0	.8	.5	21.9	1.6	.5	2.9	3.9	
충남	21.9	1.2	3.6		10.0	1.9	.3	11.9	1.9	.7	8.3	3.8	
전북	4.7	2.3	4.3	2.1	3.0	1.7	.8	2.6	1.7	.6	4.7	4.1	1.1
전남	1.6	.6	2.7	1.3	1.6	.5	.3	.6	.3	.2	3.7	1.6	.3
경북	10.2	2.1	1.5	1.3	1.3	1.2	.4	4.5	1.8	.4	5.0	1.4	1.0
경남	13.9	1.5	3.5	2.2	2.9	1.4	.4	11.7	3.5	.4	6.3	4.5	.4
제주	16.8	4.6	3.8	4.5	2.3	3.8	2.3	15.2	2.3	1.5	3.8	4.5	2.3
전체	9.0	2.5	3.4	1.5	3.0	1.8	.6	5.0	1.8	.6	4.6	3.8	.6
평균 전북	▼4.3	▼0.2	▲0.9	▲0.6	-	▼0.1	▲0.2	▼2.4	▼0.1	-	▲0.1	▲0.3	▲0.5

자료 : 노인생활실태조사(2015) 원자료

근거리 외출의 경우 부분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은 4.3%, 완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은 2.1%로 약 6.4%의 노인이 타인의 일정정도 이상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건구매는 적은 부분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 3.0%, 많은 부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17%, 그리고 전혀 할 수 없다는 노인은 0.8%였다. 전체적으로 약 5.5%의 노인이 물건을 구매하는데 있어서는 타인의 일정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송수신의 경우는 적은 부분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 2.6%, 많은 부분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 1.7% 그리고 전혀 할 수 없는 노인은 0.6%로 전라북도 전체 노인의 약 5.0%의 노인은 타인의 일정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의 경우 전체 노인의 10%내외는 타인의 일정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었고, 이중 2% 내외의 노인이 타인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으로 분류되고 있다.

<표IV-66> 일상생활 도움 여부(노인)

구분	도움 여부	도움받는 대상				
		가족원	친척 이웃 친구 지인	간병인 가사도우미	장기요양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서울	14.6	91.9	7.4	1.8	16.2	5.1
부산	14.0	95.4	10.1	.9	14.7	4.6
대구	18.4	96.6	3.4	1.1	12.4	2.2
인천	16.8	94.9	1.3		19.0	6.3
광주	11.5	83.3		3.3	26.7	10.0
대전	15.7	92.5	4.9	5.0	15.0	7.3
울산	3.3	100.0	.0		25.0	
경기	13.4	92.2	6.0	1.5	17.1	4.8
강원	14.7	86.9	1.6		19.7	1.6
충북	22.0	92.9	4.8	1.2	10.7	7.1
충남	22.3	94.6	9.3	.8	7.0	8.5
전북	16.3	93.1	10.3	3.4	5.7	8.0
전남	8.6	72.7	7.3		11.1	27.3
경북	13.9	89.8	19.4		22.0	9.2
경남	16.6	92.6	5.0		18.0	4.9
제주	13.6	94.4	16.7		23.5	5.6
전체	14.9	91.9	7.3	1.2	15.3	6.5
전국-전북	▲1.4	▲1.2	▲3.0	▲2.2	▼9.6	▲1.5

자료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노인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한편, 전라북도의 노인의 일상생활 도움여부 및 도움받는 대상을 분석한 결과, 일상생활의 도움을 받고 있는 노인은 16.3%였고, 나머지 약 84%의 노인은 도움을 받고 있지 않고 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움을 받고 있는 노인의 경우 대체로 가족구성원의 도움을 받는 비율이 약 90%를 상회하였고, 친구나 이웃, 혹은 친지의 도움을 받고 있는 비율도 약 10%수 준이었다. 이외에도 장기요양서비스의 도움을 받고 있는 노인은 5.7% 그리고 노인 돌봄서비스의 지원을 받고 있는 노인은 8.0%였다. 타지역과 비교시 일상생활의 도움을 받고 있는 노인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 전라북도의 노인이 약 1.4%p 높은 수준이었고, 제도적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와 노인돌봄서비스의 도움을 받고 있는 노인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노인돌봄의 경우 건강한 노인보다는 건강하지 않는 노인을 대상으로 그 수요가 추정되어야 하는 만큼 건강하지 않는 노인 특히,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노인 중 돌봄을 받고 있지 않은 노인에 대한 보호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표V-67> 지역별 장기요양보험 신청자 현황

구분	신청자								신청자 비율				
	계	65세 미만	65세~ 69세	70세~ 74세	75세~ 79세	80세~ 84세	85세 이상	전체	65세~ 69세	70세~ 74세	75세~ 79세	80세~ 84세	85세 이상
합계	848,829	45,389	69,223	122,269	190,257	207,238	214,453	12.13	3.09	6.86	13.05	22.80	35.15
서울	122,327	7,474	10,596	17,786	25,550	27,964	32,957	9.44	2.36	5.07	10.14	19.74	32.07
부산	52,955	3,284	5,384	8,816	12,396	12,232	10,843	9.88	2.81	6.28	11.67	20.61	28.23
대구	36,082	2,288	3,081	5,492	8,173	8,873	8,175	10.97	2.72	6.64	12.06	21.72	33.94
인천	42,598	3,001	3,638	6,125	9,118	9,996	10,720	13.14	3.37	7.32	14.26	24.87	37.70
광주	25,577	1,181	2,432	4,204	6,133	5,886	5,741	14.82	4.16	9.39	17.76	28.67	40.15
대전	24,093	1,435	2,033	3,635	5,368	5,784	5,838	14.04	3.51	8.32	15.76	26.87	40.61
울산	11,700	837	1,133	1,826	2,682	2,700	2,522	10.76	2.71	6.65	13.48	22.78	32.76
세종	3,139	142	227	447	688	792	843	12.97	3.05	7.76	13.68	22.62	34.31
경기	167,100	10,206	13,539	23,918	36,579	39,789	43,069	12.16	3.08	6.70	12.93	22.72	36.19
강원	35,663	1,953	2,724	5,085	8,190	8,202	9,509	13.40	3.85	7.20	13.18	22.59	36.27
충북	30,382	1,568	2,230	4,145	6,858	7,745	7,836	12.62	3.29	6.87	12.75	21.34	34.91
충남	47,509	1,915	3,325	6,294	10,615	12,762	12,598	13.57	3.34	7.68	13.81	22.54	35.75
전북	52,546	2,190	4,476	7,588	12,153	13,397	12,742	15.40	4.48	9.21	16.52	26.12	37.47
전남	58,268	1,780	4,192	8,042	14,057	14,882	15,315	14.61	3.83	8.36	14.99	25.24	37.79
경북	65,161	2,794	4,570	8,797	15,034	17,166	16,800	13.23	3.15	7.58	13.70	23.11	35.51
경남	62,657	2,820	4,927	8,844	14,597	16,232	15,237	13.05	3.28	7.67	14.17	23.90	34.92
제주	11,072	521	716	1,225	2,066	2,836	3,708	12.41	2.71	5.54	11.12	21.97	40.47
전국								▲3.3	▲1.4	▲2.4	▲3.5	▲3.3	▲2.3
전북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2016) 장기요양통계

전라북도의 장기요양서비스의 신청자는 2016년 기준 52,268명이었다. 장기요양서비스의 신청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은 5,0356명이었다. 신청자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전북의 경우 80세 이상 신청자가 13,397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80세~84세 12,153명, 70세~74세 7,588명 등의 순이었다.

전체 인구대비 장기요양서비스의 신청자 비율을 분석해 보면, 2016년말 기준 장기요양서비스의 신청자는 전체 노인인구의 15.4%에 해당한다. 연령대별로 보면, 85세 이상 신청자가 전체 85세 이상 노인인구의 37.47%로 가장 많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80세~84세 26.12%, 75세~79세 16.52% 등의 순이었다.

전국과 비교할 경우 85세 이상 노인의 신청비율은 전라북도가 다소 높았고, 80세~84세 신청자의 비율도 전국 평균보다도 높은 수준이었다. 이외에도 65세 이상 전체 연령대에서 장기요양서비스의 신청자의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도 높은 수준이었다.

<표IV-68> 장기요양 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구분	신청자수		등급판정자수		전체 노인인구	인정자수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합계	848,829	12.4	681,006	9.9	6,869,011	519,850	40,917	74,334	185,800	188,888	29,911
서울	122,327	9.8	97,515	7.8	1,252,563	82,178	8,262	12,841	30,481	26,374	4,220
부산	52,955	9.7	40,125	7.3	546,797	29,347	2,494	4,186	10,361	10,997	1,309
대구	36,082	11.2	28,213	8.8	320,834	21,477	1,687	3,301	7,987	7,001	1,501
인천	42,598	13.6	35,275	11.3	312,871	28,367	2,097	4,133	10,621	10,314	1,202
광주	25,577	15.4	20,616	12.4	166,389	13,707	826	1,416	4,472	6,168	825
대전	24,093	14.6	19,289	11.7	165,528	14,655	1,054	1,888	5,115	5,546	1,052
울산	11,700	11.4	8,675	8.5	102,503	6,930	630	1,034	2,787	2,189	290
세종	3,139	14.2	2,371	10.7	22,168	1,920	180	295	686	687	72
경기	167,100	12.0	134,709	9.7	1,394,655	110,494	9,110	15,792	41,786	36,768	7,038
강원	35,663	13.6	29,377	11.2	261,785	22,800	2,447	3,972	8,647	6,882	852
충북	30,382	13.1	23,995	10.3	232,592	18,641	1,616	3,235	6,820	5,914	1,056
충남	47,509	13.9	37,718	11.1	341,214	28,587	2,017	4,423	9,675	10,649	1,823
전북	52,546	15.9	43,067	13.0	331,268	27,625	1,443	2,935	8,597	12,611	2,039
전남	58,268	14.9	48,324	12.3	391,837	32,452	1,705	4,273	10,090	14,584	1,800
경북	65,161	13.6	53,023	11.1	479,634	38,801	2,384	5,021	13,655	15,364	2,377
경남	62,657	13.6	49,533	10.8	460,480	34,572	2,102	4,473	11,508	14,488	2,001
제주	11,072	12.9	9,181	10.7	85,893	7,297	863	1,116	2,512	2,352	454
전국		▲		▲							
전북		3.5		3.1							

자료 : 보건복지부(2017) 보건복지통계연보 2016년 말 기준

전라북도의 장기요양 신청자는 2016년 말 기준으로 52,546명이다. 전체 노인인구의 15.9%에 해당된다. 이중 등급판정을 받은 노인은 2016년 기준 43,067명으로 전체 노인의 13.0%이다.

전라북도의 장기요양 신청자의 비율은 전국 평균인 12.4%보다도 높은 수준이고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도 가장 신청자의 비율이 높다. 또한 등급판정자 비율도 전국 평균인 9.9%보다도 3.1%p 높은 순이고 전체 17개 시도 중에서 등급판정자의 비율이 가장 높다.

<표IV-69> 장기요양 등급별 현황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전북
1등급	7.9	10.1	8.5	7.9	7.4	6.0	7.2	9.1	9.4	8.2	10.7	8.7	7.1	5.2	5.3	6.1	6.1	11.8	▼2.7
2등급	14.3	15.6	14.3	15.4	14.6	10.3	12.9	14.9	15.4	14.3	17.4	17.4	15.5	10.6	13.2	12.9	12.9	15.3	▼3.7
3등급	35.7	37.1	35.3	37.2	37.4	32.6	34.9	40.2	35.7	37.8	37.9	36.6	33.8	31.1	31.1	35.2	33.3	34.4	▼4.6
4등급	36.3	32.1	37.5	32.6	36.4	45.0	37.8	31.6	35.8	33.3	30.2	31.7	37.3	45.7	44.9	39.6	41.9	32.2	▲9.4
5등급	5.8	5.1	4.5	7.0	4.2	6.0	7.2	4.2	3.8	6.4	3.7	5.7	6.4	7.4	5.5	6.1	5.8	6.2	▲1.6

자료 : 보건복지부(2017) 보건복지통계연보 2016년 말 기준

<표IV-70> 돌봄 및 교육영역 주요지표 비교

시도별	보육 시설 정원 대비 입소율	영유아 대비 입소율	보육 시설 공급률	국공립 어린이 집 비율	보육 시설 인증 비율	공공형 어린이 집 비율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률	지역 아동 센터 이용률	1인당 월평균 사교육 비 (만원)	아동 학대 경험률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률	독거 노인 비율	노인 학대 신고 접수율	노인 일상 도움 정도	장기 요양 등급 판정 비율
전국	74.9	42.2	56.3	7.0	79.11	6.05	1.31	31.1	25.6	0.186	12.99	6.6	1.70	14.9	9.9
서울	83.1	42.6	51.2	16.8	78.11		1.31	21.5	35.2	0.134	14.96	5.1	0.90	14.6	7.8
부산	76.6	36.9	48.1	8.4	81.36	6.40	1.45	16.8	25.6	0.149	10.3	7.5	1.40	14.0	7.3
대구	69.2	36.9	53.4	3.6	84.09	6.95	1.08	21.9	26.5	0.153	13.42	6.4	1.50	18.4	8.8
인천	78.4	40.1	51.1	6.7	88.17	4.98	0.86	19.7	23.2	0.205	11.71	5.0	2.70	16.8	11.3
광주	65.5	43.6	66.6	2.7	70.27	6.06	1.23	48.8	22.8	0.105	13.92	5.7	2.80	11.5	12.4
대전	72.8	40.9	56.2	2.1	71.09	8.59	1.32	31.1	25.7	0.113	15.74	5.1	2.40	15.7	11.7
울산	79.6	39.6	49.8	4.0	78.66	9.27	1.79	36.1	23.9	0.276	7.56	4.4	3.70	3.3	8.5
세종	77.9	42.1	54.1	5.6	66.80	5.60	1.25	39.4	23.7	7.017	10.88	4.1			10.7
경기	76.6	41.7	54.4	5.2	78.63	4.87	0.96	34.2	27.9	0.036	21.64	4.6	1.20	13.4	9.7
강원	68.7	46.1	67.0	7.4	79.41	9.24	2.76	36.5	18.4	0.333	7.2	8.8	3.40	14.7	11.2
충북	72.1	47.0	65.2	4.9	81.37	6.95	1.44	46.8	19.7	0.263	7.00	7.9	2.40	22.0	10.3
충남	71.6	46.0	64.3	3.9	84.70	5.22	1.41	47.4	17.7	0.345	8.52	8.4	2.30	22.3	11.1
전북	66.1	44.7	67.5	3.6	88.92	6.72	1.99	32.8	19.4	0.337	6.44	10.4	1.50	16.3	13.0
전남	69.1	45.7	66.1	7.8	71.86	5.12	2.05	59.6	16.2	0.292	11.51	13.1	1.70	8.6	12.3
경북	67.1	40.9	60.9	6.5	82.02	6.61	1.81	33.2	19.3	0.234	5.78	10.2	2.10	13.9	11.1
경남	73.3	42.9	58.5	4.4	71.44	4.69	1.26	28.9	20.9	0.040	9.61	8.4	2.30	16.6	10.8
제주	82.8	57.9	69.8	5.0	88.58	20.81	1.25	30.6	22.6		9.51	6.3	1.70	13.6	10.7
전국 전북	▼8.8	▲2.5	▲11.2	▼3.4	▲9.81	▲0.67	▲0.68	▲1.7	▼6.2	▲0.150	▼6.55	▲3.8	▼0.20	▲1.4	▲3.1

전라북도 돌봄 및 교육영역의 주요 지표 중 전국평균보다 낮은 지표로는 보육 시설정원대비 충족율이 전북은 66.1%로 전국 평균 74.9%보다 약 8.8% 낮았고,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3.6%로 전국 평균 7.0%보다 약 3.4% 낮게 나타났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전국평균 보다 6.2만원 적은 19.4만원으로 나타났고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의 경우 전북이 6.44%의 이용률로 전국 평균 12.99%보다 6.55% 낮게 나타나 전국평균 이용률의 절반가량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

한편, 보육시설인증비율의 경우 전북이 88.92%로 전국평균 79.11%보다 약 9.81%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보육시설의 공급률 또한 전북이 67.5%로 전국평균 56.3%보다 약 11.2%가 높게 분석되고 있어 보육시설의 전문성과 관련된 인프라에 있어서는 전국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건강분야 복지기준선 욕구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 이후부터 71개월까지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등 총 4가지 영역에서 총 7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영유아 검진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사업으로 건강보험가입자는 공단이 전액부담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6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일반검진을 포함하여 구강검진 3회 등 총 10회 진행되고 비용은 영유아 1인당 약 4.6만원 정도로 검진비의 전액이 지원된다. 전라북도의 영유아 검진은 2016년 말 기준 대상인원 101,146명으로 이중 건강검진 수검자는 68,857명으로 수검율은 약 68.08% 수준이다. 전액무료로 지원되는 건강검진제도에서 미수검자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점은 향후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는 점에서 수검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표V-71>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인원 현황

계	계		수검인원							
	대상인원	수검인원	4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42개월 -48개월	54개월 -60개월	66개월 -71개월	
계	3,128,947	2,249,928	340,351	339,289	351,835	333,985	342,381	291,182	250,905	
서울	625,554	452,696	69,936	67,227	69,099	64,747	71,438	63,574	46,675	
부산	182,694	135,753	20,736	20,735	21,381	20,180	20,115	17,298	15,308	
대구	135,299	93,184	14,480	14,694	15,202	14,119	13,945	11,227	9,517	
인천	175,479	130,502	19,629	19,848	20,558	19,853	19,691	16,140	14,783	
광주	90,195	63,443	8,918	9,119	9,787	9,614	9,892	8,358	7,755	
대전	97,981	72,340	10,491	10,788	11,510	10,824	11,163	9,406	8,158	
울산	80,512	59,295	9,188	9,506	9,556	9,025	8,801	7,099	6,120	
세종	11,530	8,741	2,405	2,057	1,208	880	954	719	518	
경기	810,041	573,257	88,358	89,235	91,877	86,296	85,267	69,296	62,928	
강원	78,519	57,796	8,173	8,336	8,588	8,426	8,766	8,022	7,485	
충북	95,477	69,748	9,791	9,718	10,236	10,129	10,729	9,682	9,463	
충남	133,021	94,294	14,394	14,110	14,793	13,924	14,190	12,126	10,757	
전북	101,146	68,857	9,927	9,998	10,807	10,450	10,537	9,146	7,992	
전남	104,692	73,658	9,725	9,801	11,054	11,097	11,812	10,476	9,693	
경북	154,789	111,578	16,819	16,623	17,291	16,883	16,996	14,366	12,600	
경남	213,203	156,046	23,237	23,302	24,420	23,308	23,814	20,329	17,636	
제주	38,815	28,740	4,144	4,192	4,468	4,230	4,271	3,918	3,517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2016) 건강검진통계연보 자료 재구성

<표V-72> 영유아 건강검진 미수검자 현황

구분		전체	4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42개월 -48개월	54개월 -60개월	66개월 -71개월
계	미수검자	879,019	83,630	97,314	80,373	100,010	135,707	464,175	208,974
	수검율	71.91	80.28	77.71	81.40	76.96	71.61	62.73	54.56
서울	미수검자	172,858	12,377	18,251	16,319	20,175	29,666	99,738	39,888
	수검율	72.37	84.96	78.65	80.90	76.24	70.66	63.73	53.92
부산	미수검자	46,941	4,975	5,477	4,152	5,082	7,177	26,373	10,985
	수검율	74.31	80.65	79.10	83.74	79.88	73.70	65.55	58.22
대구	미수검자	42,115	4,146	4,365	3,722	4,752	6,632	19,427	10,280
	수검율	68.87	77.74	77.10	80.33	74.82	67.77	57.74	48.07
인천	미수검자	44,977	4,673	5,106	4,242	5,062	6,316	24,652	11,048
	수검율	74.37	80.77	79.54	82.90	79.68	75.71	65.42	57.23
광주	미수검자	26,752	3,112	3,221	2,718	2,890	3,916	13,178	6,057
	수검율	70.34	74.13	73.90	78.26	76.89	71.64	63.34	56.15
대전	미수검자	25,641	2,487	2,934	2,276	3,171	3,657	14,463	6,041
	수검율	73.83	80.84	78.62	83.49	77.34	75.32	64.95	57.45
울산	미수검자	21,217	2,201	2,152	1,990	2,235	3,163	11,299	5,258
	수검율	73.65	80.67	81.54	82.76	80.15	73.56	62.73	53.79
세종	미수검자	2,789	551	451	148	326	498	1,095	421
	수검율	75.81	81.36	82.02	89.09	72.97	65.70	64.60	55.17
경기	미수검자	236,784	21,872	24,308	20,525	26,286	35,576	117,301	60,194
	수검율	70.77	80.16	78.59	81.74	76.65	70.56	59.07	51.11
강원	미수검자	20,723	2,159	2,378	1,956	2,424	3,193	11,840	4,777
	수검율	73.61	79.10	77.80	81.45	77.66	73.30	67.65	61.04
충북	미수검자	25,729	3,235	3,460	2,862	3,282	3,718	13,939	4,897
	수검율	73.05	75.17	73.74	78.15	75.53	74.26	69.37	65.90
충남	미수검자	38,727	3,676	4,540	3,449	4,719	5,934	19,605	8,912
	수검율	70.89	79.66	75.66	81.09	74.69	70.51	61.79	54.69
전북	미수검자	32,289	3,272	3,695	2,965	3,698	4,893	15,264	7,630
	수검율	68.08	75.21	73.02	78.47	73.86	68.29	59.85	51.16
전남	미수검자	31,034	4,093	4,468	2,920	3,856	4,281	15,801	6,073
	수검율	70.36	70.38	68.69	79.10	74.21	73.40	66.22	61.48
경북	미수검자	43,211	4,120	5,136	3,946	4,913	6,614	22,712	10,118
	수검율	72.08	80.32	76.40	81.42	77.46	71.99	63.20	55.46
경남	미수검자	57,157	5,278	6,070	5,248	6,018	8,903	31,629	14,322
	수검율	73.19	81.49	79.33	82.31	79.48	72.79	64.24	55.18
제주	미수검자	10,075	1,403	1,302	935	1,121	1,570	5,571	2,073
	수검율	74.04	74.71	76.30	82.69	79.05	73.12	70.10	62.92
전국-전북		▼3.8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2016) 건강검진통계연보 자료 재구성

전라북도의 영유아 건강검진수검율은 전국 평균보다도 낮을뿐만 아니라 타지역과 비교시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전라북도의 경우 연령대별 수검율을 보면, 66개월에서 71개월의 수검율이 51.16%로 가장 낮고 다음으로 54개월~60개월이 59.85%로 뒤이어 낮은 수준이다. 9개월에서 35개월의 연령대에서 건강검진 수검율이 70%를 상회하고 있을 뿐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건강검진 수검률이 60% 이하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4개월에서 6개월과 18개월에서 24개월 연령대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전국 평균은 80%를 상회하고 있지만 전북은 70%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전라북도는 건강검진을 한번도 받지 않은 미수검자의 비율이 6.2%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7년 7월 기준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대상자는 43,155명에 이르지만 한번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미수검자만 2,674명이다. 한번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미수검자의 비율은 서울이 8.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구 7.2%, 충남 6.7%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비용부담이 없는 영유아 건강검진의 수검율이 매우 낮은 것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좋지 않다는 점에서 수검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

<표IV-73> 한번도 검진을 받지 않은 건강검진 미수검자 현황

계	대상인원	미수검인원	비율
계	998,941	58,452	5.8
서울	116,267	9,744	8.4
부산	53,017	2,168	4.1
대구	48,071	3,450	7.2
인천	60,052	2,909	4.8
광주	37,540	2,109	5.6
대전	32,418	1,348	4.1
울산	25,668	953	3.7
세종	7,937	279	3.5
경기	258,689	16,678	6.4
강원	32,214	1,576	4.9
충북	36,940	2,010	5.4
충남	50,629	3,372	6.7
전북	43,155	2,674	6.2
전남	43,339	1,922	4.4
경북	57,095	3,068	5.4
경남	79,071	3,572	4.5
제주	16,839	622	3.7
전국-전북			▲0.4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2016) 건강검진통계 2017. 8월 기준

<표IV-74>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현황

검진시기			취학 전 준비
1차	건강검진	생후 4~6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2차	건강검진	생후 9~12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3차	건강검진	생후 18~24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검진	생후 18~29개월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4차	건강검진	생후 30~36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5차	건강검진	생후 42~48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검진	생후 42~53개월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6차	건강검진	생후 54~60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검진	생후 54~65개월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7차	건강검진	생후 66~71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자료 : 건강보험공단(2017) 영유아 건강검진 자료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총 7차에 걸쳐 진행하고 있고, 검진비는 전액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건강검진비는 건강보험가입자는 공단이 전액부담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다. 영유아 건강검진의 항목은 신체, 발달선별검사, 구강보건 등으로 이루어진다. 문진 및 진찰의 경우 청각 및 시각 등에 대한 검진이 주 가 되고 신체계측은 발달단계에 따른 키, 몸무게, 머리 둘레 등이다.

건강교육은 안전사고 예방, 영양, 개인위생, 정서 및 사회성 발달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마지막으로 발달평가는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를 통한 평가와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표IV-75>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

검진항목	검진방법
문진 및 진찰	문진표, 진찰, 청각 및 시각문진, 시력검사
신체계측	키, 몸무게(체질량지수), 머리둘레
건강교육	안전사고예방, 영양,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구강, 대소변 가리기, 전자미디어노출, 정서 및 사회성, 개인위생, 취학전 준비
발달평가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를 통한 평가 및 상담

자료 : 건강보험공단(2017) 영유아 건강검진 자료

<표IV-76> 영유아 건강검진 종합판정 결과

구분	전체	전주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계	13,782	24191	11342	3484	2542	2660	4162	883	709	667	778	799	1499	1359
양호	12,078	21396	10051	3022	2323	2313	3783	754	591	576	620	702	1336	1034
주의	1,170	1834	777	357	156	236	246	74	95	37	94	57	114	276
정밀평가 필요	534	961	514	105	63	111	133	55	23	54	64	40	49	49

자료 : 통계청(2016) 보건분야 통계

영유아 건강검진결과를 보면, 전체 검진대상자 중 8.4%에 해당하는 1,170명은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정밀평가가 필요한 영유아는 3.9%인 53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영유아 건강검진과 관련해서는 정밀평가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2차 정밀검진비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예방접종율을 보면, 전라북도는 2016년도 기준 생후 12개월은 95.6%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고 생후 24개월의 예방접종률은 92.1%로 전국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다. 생후 36개월의 예방접종률은 88.6%로 전국 평균인 89.2%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전라북도는 생후 36개월 이후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위해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표IV-77> 예방접종률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전북
생후 12개월	95.9	93.9	95.8	95.9	95.9	97.1	97.0	97.3	96.2	95.6	97.3	97.1	97.2	95.6	97.3	96.6	96.7	96.2	▼ 0.3
생후 24개월	92.7	91.1	92.7	92.5	92.9	93.1	93.6	94.5	93.6	92.4	94.6	94.2	94.3	92.1	93.5	93.2	93.0	91.7	▼ 0.6
생후 36개월	89.2	88.2	88.3	88.4	90.1	88.2	90.4	90.6	90.4	89.3	91.8	91.2	91.5	88.6	89.2	89.4	88.8	87.7	▼ 0.6

자료 : 통계청(2016) 보건분야 통계

<표IV-78> 영유아 예방접종 일정표

대상감염병	백신종류및방법	0개월	1개월	2개월	4개월	6개월	12개월	15개월	18개월	24개월	36개월
결핵	BCG(피내용)	1회									
B형간염	HepB	1차	2차			3차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1차	2차	3차			추4차		
	Td/Tdap										
폴리오	IPV			1차	2차	3차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PRP-T/HbOC			1차	2차	3차	추4차				
	PCV(단백결합)			1차	2차	3차	추4차				
폐렴구균	PPSV(다당질)										고위험군에 한하여 접종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MMR						1차				
수두	Var						1회				
A형간염	HepA								1~2차		
일본뇌염	JE(사백신)								1~3차		
	JE(생백신)								1~2차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HPV4(가다실)										
	HPV2(서바릭스)										
인플루엔자	Flu(사백신)								매년접종		
	Flu(생백신)									매년접종	

자료 : 질병관리본부(2018) 예방접종 일정표

지역별 보건기관 이용율을 보면, 전북은 34.6%로 광역도지역에서는 전남 다음으로 가장 높은 이용율을 보이고 있다.

<표IV-79> 보건기관 이용율

구분	응답자수 (명)	조율 (%)	조율표준오차	표준화율 (%)	표준화율표준오차
서울	22,944	19.5	0.3	18.4	0.3
부산	14,525	20.9	0.4	19.9	0.4
대구	7,301	20.5	0.6	19.7	0.5
인천	8,982	21.3	0.5	21.0	0.5
광주	4,595	18.8	0.6	18.3	0.6
대전	4,569	17.0	0.6	16.9	0.6
울산	4,553	24.2	0.7	24.9	0.7
세종	922	27.5	1.7	26.8	1.6
경기	41,026	21.4	0.2	21.1	0.2
강원	15,823	39.4	0.6	35.3	0.6
충북	12,463	34.3	0.6	30.6	0.5
충남	13,528	35.5	0.6	30.6	0.5
전북	12,427	40.1	0.6	34.6	0.6
전남	19,607	44.1	0.6	37.4	0.6
경북	22,175	34.6	0.5	29.5	0.4
경남	17,933	35.0	0.5	32.7	0.5
제주	5,039	29.6	1.1	26.2	0.9

자료 : 통계청(2016) 보건분야 통계

<표Ⅳ-80> 치매환자 등록현황

구분	만60세 이상 노인수		2016년도 등록자	2015년도		전년대비 변동사항		성별		60세 이상 노인 등록률
	60-64세	65세 이상		전체	전년도 등록자	신규 등록자	퇴득자	남자	여자	
전체	2,948,004	6,869,011	323,858	302,492	279,294	51,588	28,390	82,498	219,994	3.08
서울	574,259	1,252,563	52,652	47,968	42,141	9,363	3,536	14,671	33,297	2.63
부산	238,034	546,797	13,578	11,519	10,031	2,769	1,281	3,267	8,252	1.47
대구	146,287	320,834	13,449	12,088	10,258	2,968	1,138	3,430	8,658	2.59
인천	147,983	312,871	14,548	12,901	11,671	2,191	961	3,456	9,445	2.80
광주	69,968	166,389	5,927	5,585	5,343	921	679	1,375	4,210	2.36
대전	78,093	165,528	6,974	6,904	6,068	1,316	480	1,965	4,939	2.83
울산	60,489	102,503	4,148	3,714	3,476	963	725	971	2,743	2.28
세종	8,744	22,168	903	768	768	34	34	222	546	2.48
경기	695,155	1,394,655	49,973	47,077	43,884	7,534	4,341	13,242	33,835	2.25
강원	93,260	261,785	12,567	11,964	10,896	2,089	1,021	3,371	8,593	3.37
충북	88,322	232,592	10,010	9,636	8,855	1,596	815	2,539	7,097	3.00
충남	116,878	341,214	19,377	18,822	17,694	3,751	2,623	5,325	13,497	4.11
전북	111,087	331,268	29,493	29,843	28,257	4,139	2,553	7,889	21,954	6.75
전남	117,055	391,837	21,926	20,220	20,124	2,915	2,819	4,707	15,513	3.97
경북	178,237	479,634	34,180	29,990	28,034	4,765	2,809	8,017	21,973	4.56
경남	192,434	460,480	29,449	28,905	27,427	3,809	2,331	7,044	21,861	4.43
제주	31,719	85,893	4,704	4,588	4,367	465	244	1,007	3,581	3.90
전국										▲3.67
전북										

자료 : 보건복지부(2016) 2015년도 보건소 치매환자 등록자 현황 재구성

전라북도의 치매환자 등록현황을 보면, 60세 이상 노인 약 45만명 중 치매환자 등록자는 3.0만명으로 60세 이상 전체 노인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다. 등록 치매환자 수를 보면, 전년도(2014년도) 말 등록자가 28,257명으로 2015년에 약 1,586명이 새롭게 등록하였고, 등록된 치매환자 중 퇴득한 노인은 2,553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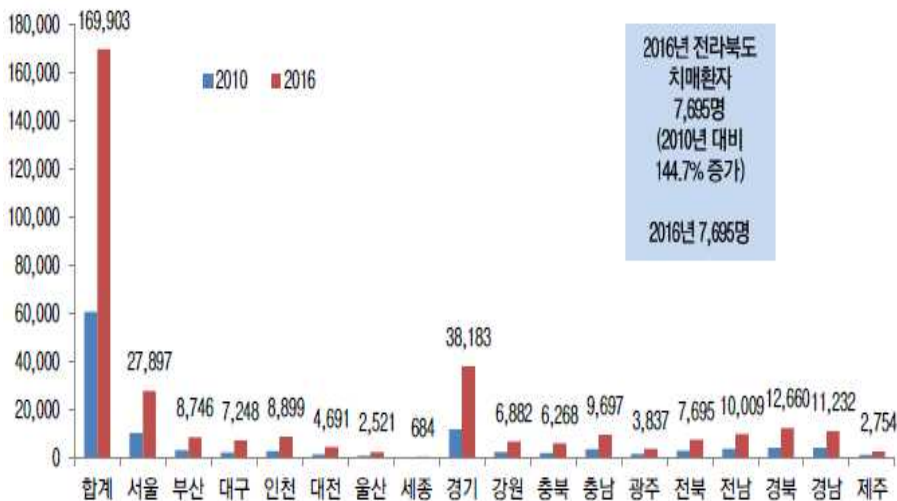
전라북도 노인 중 치매환자 등록율은 전술한 바와 같이 6.75%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라북도 치매노인등록율은 전국 평균인 3.08%보다도 약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북 4.56%, 경남 4.43%, 충남 4.11%, 전남 3.97%, 제주 3.90%, 강원 3.37% 등의 순이다. 주로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은 광역도 지역이 광역시보다는 치매노인 등록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IV-81> 주요 질병 현황(단위 :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치매	치매 + 중풍	치매	치매 + 중풍	치매	치매 + 중풍	치매	치매 + 중풍	치매	치매 + 중풍	치매	치매 + 중풍	치매	치매 + 중풍
합계	60,816	16,461	76,965	21,113	86,798	22,249	102,461	24,950	123,759	28,411	141,385	31,537	169,903	37,656
서울	10,458	2,738	13,661	3,573	15,181	3,810	17,759	4,155	21,406	4,691	23,964	4,997	27,897	5,864
부산	3,415	948	4,059	1,152	4,500	1,180	5,310	1,430	6,476	1,699	7,270	1,945	8,746	2,358
대구	2,330	773	3,170	1,050	3,772	1,220	4,538	1,420	5,541	1,573	6,097	1,642	7,248	1,914
인천	3,011	760	4,129	1,036	4,871	1,175	5,688	1,285	6,574	1,350	7,421	1,481	8,899	1,801
광주	1,827	512	1,991	524	2,119	522	2,474	529	2,906	555	3,288	663	3,837	784
대전	1,604	474	2,077	661	2,429	701	3,048	778	3,537	851	3,973	977	4,691	1,200
울산	1,026	307	1,161	297	1,238	298	1,414	345	1,732	468	2,072	531	2,521	641
세종	-	-	-	-	283	84	321	79	409	79	529	107	684	124
경기	11,895	3,146	15,675	4,336	18,188	4,607	21,498	5,242	26,341	6,027	31,013	6,992	38,183	8,568
강원	2,553	674	3,369	981	3,700	1,046	4,356	1,174	5,149	1,363	5,832	1,491	6,882	1,761
충북	2,152	672	2,704	912	3,041	997	3,657	1,133	4,509	1,314	5,130	1,401	6,268	1,592
충남	3,630	952	4,609	1,237	4,931	1,170	6,007	1,365	7,162	1,478	8,172	1,639	9,697	1,826
전북	3,144	1,041	3,549	1,139	3,788	1,090	4,327	1,133	5,292	1,380	6,168	1,567	7,695	1,904
전남	3,960	768	4,577	952	5,043	982	5,835	1,015	7,132	1,115	8,139	1,160	10,009	1,435
경북	4,305	1,237	5,611	1,555	6,262	1,600	7,327	1,893	8,845	2,233	10,447	2,428	12,660	2,803
경남	4,254	1,202	5,057	1,387	5,736	1,422	6,970	1,573	8,593	1,844	9,582	2,049	11,232	2,493
제주	1,252	257	1,566	321	1,716	345	1,932	401	2,155	391	2,288	467	2,754	588

자료 : 통계청(2016) 지역별 주요질병현황

<그림IV-3> 전라북도 치매환자 비교



<표IV-82> 노인 우울증 추정

구분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전국 전북
정상	68.9	64.3	77.3	64.1	85.2	70.6	68.4	66.0	67.3	73.3	71.0	72.9	83.9	70.1	63.5	70.6	69.7	▲3.2
우울	31.1	35.7	22.7	35.9	14.8	29.4	31.6	34.0	32.7	26.7	29.0	27.1	16.1	29.9	36.5	29.4	30.3	▼3.2

자료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노인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노인의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중요한 지표인 노인우울증의 경우 전체 노인 중 27.1%의 노인은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노인의 30.3%가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라북도의 노인우울증 경험 노인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전라북도의 전체 자살자 수는 2016년 기준 528명으로 2010년 615명에서 다소 감소하였다. 다만, 전라북도의 자살자 수는 2016년도 기준 인구규모가 비슷한 다른 지역과 비교 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표IV-83> 자살자 수(단위 : 명)

시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15,566	15,906	14,160	14,427	13,836	13,513	13,092
서울	2,668	2,722	2,391	2,560	2,467	2,301	2,261
부산	1,163	1,123	1,050	1,013	1,000	1,009	943
대구	740	735	601	666	624	662	596
인천	875	903	872	868	834	791	769
광주	442	384	370	331	349	313	339
대전	435	445	382	363	408	409	374
울산	272	288	263	284	293	283	274
세종	-	-	43	23	25	41	54
경기	3,408	3,580	3,215	3,369	3,139	3,123	2,879
강원	672	687	583	587	563	541	495
충북	550	601	567	543	493	477	517
충남	914	931	746	757	746	721	665
전북	615	694	544	553	535	495	528
전남	646	645	595	583	556	583	562
경북	945	938	871	833	762	737	773
경남	1,044	1,054	886	902	880	877	912
제주	177	176	181	192	162	150	151
국외	41	36	29	44	43	15	5

자료 : 통계청(2016) 사망원인통계

<표IV-84> 공공의료기관 현황(단위 : 개소, %)

구분	의료기관 수			병상수			전체 인구	인구당	인구당
	전체의료 기관(수)	공공의료 기관(수)	공공의료 기관 비중(%)	전체의료 병상(수)	공공의료 병상(수)	공공의료 병상 비중(%)		공공의료 기관수 (십만명당)	공공의료 병상수 (천명당)
전국	3,803	220	5.80	614,123	64,735	10.54	51,696,216	0.426	1.252
서울	495	21	4.20	72,865	8,553	11.70	9,930,616	0.211	0.861
부산	396	10	2.50	66,059	4,117	6.20	3,498,529	0.286	1.177
대구	207	9	4.30	33,259	3,669	11.00	2,484,557	0.362	1.477
인천	167	7	4.20	26,358	1,196	4.50	2,943,069	0.238	0.406
광주	255	9	3.50	36,134	2,951	8.20	1,469,214	0.613	2.009
대전	113	7	6.20	19,821	3,179	16.00	1,514,370	0.462	2.099
울산	99	1	1.00	14,065	100	0.70	1,172,304	0.085	0.085
세종	8	0	0.00	1,030	0	0.00	243,048	0.000	0.000
경기	711	30	4.20	111,229	9,547	8.60	12,716,780	0.236	0.751
강원	101	20	19.80	16,171	4,162	25.70	1,550,806	1.290	2.684
충북	104	10	9.60	18,161	2,838	15.60	1,591,625	0.628	1.783
충남	157	14	8.90	23,974	3,587	15.00	2,096,727	0.668	1.711
전북	209	12	5.70	34,710	3,508	10.10	1,864,791	0.644	1.881
전남	209	20	9.60	38,018	4,933	13.00	1,903,914	1.050	2.591
경북	231	23	10.00	41,007	4,670	11.40	2,700,398	0.852	1.729
경남	316	22	7.00	56,842	6,437	11.30	3,373,871	0.652	1.908
제주	25	5	20.00	4,420	1,288	29.10	641,597	0.779	2.007
전국			▼0.10			▼0.44		▲0.218	▲0.629
전북									

자료 :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2017). 2016년 공공의료기관 현황

전라북도의 의료기관은 총 209개소가 있으며 이중 공공의료기관은 12개소 전체 의료기관대비 약 5.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 병상수는 총 3,508개로 전라북도 전체의료기관 병상수 34,710개의 약 10.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평균비중과 비교시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은 전국평균 5.80%보다 약 0.1%가 낮았고, 병상수의 비중은 전국평균 10.54%보다 약 0.44%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전국평균수준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한편 인구 십만명당 공공의료기관의 수는 전북이 0.644개소로 전국 평균 0.426개소보다 약 0.218개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공공의료 병상수는 인구 천명당 전북이 1.881개로 전국 평균 1.252개보다 약 0.629개의 병상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IV-85> 건강보험 연체자 현황(단위 : 명, %)

구분	2014년			2015년		
	건강보험 적용인구	급여제한자	급여제한자 비율	건강보험 적용인구	급여제한자	급여제한자 비율
전체	50,226,277	1,373,481	2.70%	50,447,423	1,449,780	2.90%
서울	9,965,550	262,566	2.60%	9,900,701	275,266	2.80%
부산	3,384,282	101,031	3.00%	3,377,912	107,280	3.20%
대구	2,396,082	55,293	2.30%	2,394,055	58,236	2.40%
인천	2,844,202	92,228	3.20%	2,859,907	93,855	3.30%
광주	1,413,642	39,268	2.80%	1,410,270	41,518	2.90%
대전	1,491,905	35,131	2.40%	1,476,098	36,426	2.50%
울산	1,158,128	25,844	2.20%	1,167,265	27,177	2.30%
세종	135,821	2,709	2.00%	195,856	3,490	1.80%
경기	12,284,570	377,672	3.10%	12,454,302	397,176	3.20%
강원	1,479,289	44,543	3.00%	1,484,614	48,624	3.30%
충북	1,545,115	35,942	2.30%	1,548,505	38,233	2.50%
충남	2,028,998	51,295	2.50%	2,044,774	55,072	2.70%
전북	1,784,795	43,952	2.50%	1,781,543	47,462	2.70%
전남	1,824,250	48,491	2.70%	1,826,650	52,053	2.80%
경북	2,619,069	54,749	2.10%	2,617,908	58,731	2.20%
경남	3,285,942	82,266	2.50%	3,305,010	87,813	2.70%
제주	584,637	20,501	3.50%	602,053	21,368	3.50%
전국-전북			▼0.2%			▼0.2%

자료 :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2016) 공공보건의료 통계집

전라북도의 건강보험 급여제한자 현황은 2015년 기준 47천명으로 건강보험 적용인구 대비 2.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평균 2.9%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4년도 기준 전북의 급여제한자 비중이 2.5%에서 2015년 2.7%로 약 0.2%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 급여제한자의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2015년 기준으로 세종시가 1.80%로 가장 낮았고 이어서 경북 2.2%, 울산 2.3%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북은 2.7%로 17개 시도 중 8번째로 급여제한자의 비중이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표IV-86> 공공보건의료기관 수

단위	총계		일반진료중심 (광역이상)		일반진료중심 (단일 혹은 복수기초지자체)		특수대상중심		특수질환중심		노인병원	
	개소	100.00	개소	100.00	개소	100.00	개소	100.00	개소	100.00	개소	100.00
전국	212	100.00	17	100.00	43	100.00	36	100.00	38	100.00	78	100.00
서울	21	9.90	2	11.80	5	11.60	3	8.30	8	21.10	3	3.80
부산	10	4.70	1	5.90	1	2.30	2	5.60	2	5.30	4	5.10
대구	8	3.80	2	11.80	1	2.30	2	5.60	1	2.60	2	2.60
인천	7	3.30	0	0.00	3	7.00	1	2.80	1	2.60	2	2.60
광주	8	3.80	2	11.80	0	0.00	1	2.80	3	7.90	2	2.60
대전	7	3.30	1	5.90	0	0.00	3	8.30	1	2.60	2	2.60
울산	1	0.50	0	0.00	0	0.00	0	0.00	0	0.00	1	1.30
세종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경기	30	14.20	2	11.80	6	14.00	7	19.40	7	18.40	8	10.30
강원	19	9.00	1	5.90	5	11.60	8	22.20	3	7.90	2	2.60
충북	9	4.20	1	5.90	2	4.70	1	2.80	0	0.00	5	6.40
충남	14	6.60	0	0.00	4	9.30	2	5.60	2	5.30	6	7.70
전북	11	5.20	1	5.90	3	7.00	0	0.00	1	2.60	6	7.70
전남	21	9.90	1	5.90	3	7.00	2	5.60	3	7.90	12	15.40
경북	21	9.90	0	0.00	5	11.60	2	5.60	0	0.00	14	17.90
경남	21	9.90	2	11.80	3	7.00	2	5.60	5	13.20	9	11.50
제주	4	1.90	1	5.90	2	4.70	0	0.00	1	2.60	0	0.00

주. 일반진료중심(광역이상) 의료기관(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병원분원, 공단일산병원을 포함), 일반진료중심(단일 혹은 복수기초지자체)(지방의료원, 지방의료원분원, 적십자병원, 시립일반병원을 포함), 특수대상중심 의료기관(경찰병원, 보훈병원, 군병원, 근로복지공단병원을 포함), 특수질환중심 의료기관(국립결핵병원, 국립정신병원, 국립법무병원, 국립재활원, 교통재활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소록도병원, 국립대치대병원, 시립장애인치과병원, 시립서북병원, 시립어린이병원, 도립재활병원, 원자력병원, 도립정신병원, 국립대한방병원 포함), 노인병원(시도립노인병원, 시군구립노인병원을 포함)

자료 :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2016) 공공보건의료 통계집

전라북도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수는 전체적으로 11개소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중 노인병원이 6개소로 가장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일반진료중심의 공공보건의료기관, 특수질환중심 의료기관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는 경기도가 30개소로 전국대비 14.2%를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서울과 전남, 경북, 경남이 21개소, 강원 19개소, 충남 14개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전북은 11개소로 바로 뒤이어 나타났다.

<표Ⅳ-87> 공공보건의료기관 병상 수

단위	총계		일반진료중심 (광역이상)		일반진료중심 (단일 혹은 복수기초지자체)		특수대상중심		특수질환중심		노인병원	
	개소	병상	개소	병상	개소	병상	개소	병상	개소	병상	개소	병상
전국	63,476	100.0	15,271	100.0	10,931	100.0	11,817	100.0	11,810	100.0	13,647	100.0
서울	8,672	13.70	2,278	14.90	1,887	17.30	1,530	12.90	2,136	18.10	841	6.20
부산	4,078	6.40	1,248	8.20	562	5.10	806	6.80	607	5.10	855	6.30
대구	3,514	5.50	1,428	9.40	544	5.00	689	5.80	360	3.00	493	3.60
인천	1,286	2.00	0	0.00	480	4.40	408	3.50	150	1.30	248	1.80
광주	2,675	4.20	1,226	8.00	0	0.00	584	4.90	483	4.10	382	2.80
대전	3,180	5.00	1,354	8.90	0	0.00	1,296	11.00	220	1.90	310	2.30
울산	100	0.20	0	0.00	0	0.00	0	0.00	0	0.00	100	0.70
세종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경기	9,862	15.50	2,072	13.60	1,010	9.20	2,628	22.20	2,335	19.80	1,817	13.30
강원	4,044	6.40	576	3.80	887	8.10	1,791	15.20	500	4.20	290	2.10
충북	2,548	4.00	677	4.40	943	8.60	100	0.80	0	0.00	828	6.10
충남	3,562	5.60	0	0.00	1,108	10.10	136	1.20	1,570	13.30	748	5.50
전북	3,365	5.30	1,047	6.90	777	7.10	0	0.00	631	5.30	910	6.70
전남	5,060	8.00	684	4.50	751	6.90	770	6.50	1,387	11.70	1,468	10.80
경북	4,352	6.90	0	0.00	1,050	9.60	620	5.20	0	0.00	2,682	19.70
경남	5,955	9.40	2,051	13.40	437	4.00	459	3.90	1,333	11.30	1,675	12.30
제주	1,223	1.90	630	4.10	495	4.50	0	0.00	98	0.80	0	0.00

주. 일반진료중심(광역이상) 의료기관(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병원분원, 공단일반병원을 포함), 일반진료중심(단일 혹은 복수기초지자체)(지방의료원, 지방의료원분원, 적십자병원, 시립일반병원을 포함), 특수대상중심 의료기관(경찰병원, 보호병원, 군병원, 근로복지공단병원을 포함), 특수질환중심 의료기관(국립결핵병원, 국립정신병원, 국립법무병원, 국립재활원, 교통재활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소록도병원, 국립대치대병원, 시립장애인치과병원, 시립서북병원, 시립어린이병원, 도립재활병원, 원자력병원, 도립정신병원, 국립대한방병원 포함), 노인병원(시도립노인병원, 시군구립노인병원을 포함)

자료 :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2016) 공공보건의료 통계집

전라북도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병상 수는 총 33,665개로 이중 일반진료중심(광역 이상)기관의 병상수가 1,047개로 가장 많고 이어서 단일 일반진료중심기관 병상수 777개, 노인병원 병상수 910개 등의 순으로 많았다.

전국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병상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총 9,862개였고, 이어서 서울 8,672개, 경남 5,955개 등의 순으로 병상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 3,365개로 17개 시도 중 10번째로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IV-88> 공공의료기관 취약계층 진료 비중(단위 : 개소, %)

구분	건강보험						의료급여	5분위 이하 인구(추정)
	5분위	4분위	3분위	2분위	1분위	전체		
전국	29.00	17.50	12.50	9.70	11.30	80.10	19.90	23,573,474
서울	31.60	17.30	11.70	9.70	10.20	80.60	19.40	4,578,014
부산	29.60	18.30	12.40	9.60	10.40	80.20	19.80	1,710,781
대구	29.20	19.60	12.90	9.40	10.40	81.50	18.50	1,346,630
인천	23.00	15.40	12.80	9.10	10.00	70.40	29.60	1,324,381
광주	29.50	17.50	13.10	9.60	11.40	81.10	18.90	652,331
대전	30.60	18.80	13.20	10.00	10.80	83.50	16.50	610,291
울산	42.00	12.00	4.80	1.50	14.10	74.30	25.70	361,070
세종								
경기	32.10	17.80	12.10	9.50	10.40	82.00	18.00	4,997,695
강원	23.90	17.00	13.60	11.00	12.70	78.10	21.90	862,248
충북	27.00	18.30	12.80	9.50	10.50	78.00	22.00	751,247
충남	25.30	17.30	12.90	9.70	12.70	77.90	22.10	1,084,008
전북	25.50	16.50	12.50	10.00	13.40	77.80	22.20	1,010,717
전남	24.30	15.00	13.40	11.30	14.90	78.80	21.20	913,879
경북	28.00	13.40	9.50	7.70	12.90	71.50	28.50	1,312,393
경남	28.50	19.10	13.30	9.60	11.00	81.60	18.40	1,531,737
제주	26.30	17.40	15.40	10.70	12.80	82.60	17.40	390,733
전국-전북	▼3.50	▼1.00	-	▲0.30	▲2.10	▼2.30	▲2.30	

주. 5분위 이하 인구추정은 한국노동패널 원자료분석에 따른 추정치임

자료 :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2017). 2016년 공공의료기관 현황

전라북도 취약계층의 건강보험 진료비중으로는 건강보험의 경우 1분위~5분위의 저소득계층의 비중이 전체적으로 77.80%로 나타났고, 의료급여의 비중은 22.20%로 나타나 건강보험의 진료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전국평균 80.10%에 비해 약 2.30% 낮았고, 의료급여의 비중은 전국평균 19.9%보다 2.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적으로 보게되면 건강보험 진료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이 83.5%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제주 82.6%, 경기 82.0% 등의 순으로 많았고 전북은 77.8%로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 중 13번째로 다소 낮은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전북보다 비중이 낮은 지역은 울산 74.3%, 경북 71.5%, 인천 70.4% 등이다.

<표IV-89> 공공의료기관 진료과목 현황(개소수)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공공의료기관	219	21	10	9	7	9	7	1	0	30	20	10	13	12	20	23	22	5
내과	176	18	9	8	4	7	6	1	0	26	17	9	11	5	15	18	19	3
신경과	144	16	8	7	5	5	7	0	0	24	9	4	10	4	6	16	19	4
정신건강의학과	110	17	10	6	3	3	6	0	0	18	11	3	2	7	7	5	8	4
외과	131	13	7	5	4	4	4	0	0	18	15	8	8	5	9	15	13	3
정형외과	115	13	6	6	3	3	5	0	0	16	14	5	8	4	7	10	11	4
신경외과	106	10	8	5	4	4	5	0	0	12	12	5	6	4	7	11	8	5
흉부외과	52	8	3	3	0	3	2	0	0	6	1	1	3	3	5	3	7	4
성형외과	40	7	1	2	1	2	2	0	0	4	4	1	1	2	2	3	6	2
마취통증의학과	107	14	5	4	4	4	4	0	0	16	11	4	4	5	8	8	13	3
산부인과	88	12	4	4	4	2	3	0	0	15	9	5	4	4	5	7	7	3
소아청소년과	78	14	4	4	4	2	2	0	0	11	9	3	4	5	2	4	7	3
안과	73	11	4	4	1	2	3	0	0	12	5	4	5	3	7	6	4	2
이비인후과	78	12	5	4	1	2	3	0	0	12	7	4	4	3	4	7	7	3
피부과	66	9	4	4	0	2	3	0	0	10	7	3	5	2	3	4	8	2
비뇨기과	86	12	5	4	4	2	4	0	0	15	7	4	5	3	4	7	7	3
영상의학과	108	16	5	5	3	3	4	0	0	17	14	4	5	4	7	7	10	4
방사선종양학과	23	5	2	2	0	1	1	0	0	3	1	1	0	1	1	0	3	2
병리과	43	10	4	2	0	3	2	0	0	5	1	3	2	3	1	0	5	2
진단검사의학과	88	13	5	4	3	3	4	0	0	14	11	4	3	2	5	6	8	3
결핵과	4	2	0	0	0	0	0	0	0	0	0	0	0	0	1	0	1	0
재활의학과	133	15	7	7	5	6	6	1	0	16	10	5	9	10	8	11	12	5
핵의학과	28	6	2	3	0	2	2	0	0	4	1	1	0	1	1	0	3	2
가정의학과	135	17	9	6	4	6	6	1	0	16	5	6	7	9	10	17	13	3
응급의학과	79	10	3	4	4	2	4	0	0	13	12	4	4	4	4	3	5	3
작업환경의학과	22	1	1	1	2	1	2	0	0	1	3	3	2	0	2	1	2	0
예방의학과	6	0	1	1	0	0	0	0	0	0	1	2	0	0	1	0	0	0
치과진료과목	55	11	2	2	4	2	3	0	0	5	6	3	4	2	2	3	5	1
한방진료과목	84	6	5	1	1	2	3	1	0	10	2	6	5	7	12	14	9	0

자료 :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2017). 2016년 공공의료기관 현황

전라북도의 공공의료기관 진료과목 중 가장 많은 진료과목은 공공의료기관 12개소로 가장 많고 이어서 재활의학과 10개소, 가정의학과 9개소, 한방진료과목과 정신건강의학과 각각 7개소 등의 순으로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진료과목으로는 공공의료기관이 219개소로 가장 많고 이어서 내과 176개소, 신경과 144개소, 가정의학과 135개소 등의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표V-90> 공공의료기관 전문의 현황(개소수)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내과	1,570	370	117	104	17	92	89	0	0	266	66	63	22	72	62	39	148	43
신경과	300	76	16	19	6	14	17	0	0	55	12	9	4	11	6	10	36	9
정신건강의학과	386	106	19	13	5	16	17	0	0	71	24	11	18	20	18	5	33	10
외과	546	122	42	43	7	20	23	0	0	107	25	26	9	20	27	18	44	13
정형외과	461	94	28	26	6	19	24	0	0	91	40	20	15	20	15	19	32	12
신경외과	285	55	27	17	3	11	13	0	0	50	22	13	6	11	10	12	26	9
흉부외과	185	39	20	13	2	10	8	0	0	29	5	6	5	10	8	3	22	5
성형외과	90	19	6	10	1	7	6	0	0	16	4	2	0	5	1	3	7	3
마취통증의학과	398	87	23	20	5	18	18	0	0	79	25	16	6	16	14	13	48	10
산부인과	256	57	17	14	3	9	9	0	0	43	16	11	6	19	12	9	25	6
소아청소년과	308	93	14	27	4	13	12	0	0	39	16	10	5	13	6	3	44	9
안과	202	50	14	13	2	10	14	0	0	33	9	10	4	8	5	5	20	5
이비인후과	219	47	21	13	0	9	11	0	0	37	11	10	4	8	9	9	24	6
피부과	118	30	11	9	0	4	8	0	0	20	8	4	4	5	4	2	7	2
비뇨기과	212	45	17	15	4	9	11	0	0	32	9	11	6	10	9	7	22	5
영상의학과	493	138	29	23	5	16	24	0	0	102	25	21	10	16	20	9	41	14
방사선종양학과	71	19	7	6	0	0	4	0	0	14	2	2	0	3	5	0	7	2
병리과	148	39	11	10	0	9	8	0	0	29	4	6	1	8	5	0	14	4
진단검사의학과	145	36	9	8	3	6	8	0	0	23	7	5	3	6	7	5	15	4
결핵과	11	4	0	0	0	0	0	0	0	1	2	0	0	0	2	0	2	0
재활의학과	243	53	12	16	9	13	15	1	0	37	14	9	5	14	9	9	18	9
핵의학과	60	17	5	7	0	4	3	0	0	9	1	1	0	4	4	0	4	1
가정의학과	241	47	18	14	6	6	12	1	0	39	9	11	11	15	12	19	16	5
응급의학과	287	62	15	7	3	9	15	0	0	62	28	10	10	14	7	11	18	16
작업환경의학과	42	3	1	1	5	1	4	0	0	4	3	5	3	0	4	1	7	0
예방의학과	36	4	2	5	0	2	1	0	0	9	3	3	0	0	3	0	4	0
치과진료과목	154	43	10	7	1	10	1	0	0	23	19	1	6	5	1	9	16	2
한방진료과목	41	6	2	0	0	0	0	0	0	3	1	0	0	3	3	2	21	0

자료 :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2017). 2016년 공공의료기관 현황

전라북도의 공공의료기관 진료과목 중 가장 많은 전문의가 있는 진료과는 내과로 총 72명 이었고 이어서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가 각각 20명, 산부인과 1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전문의가 있는 진료과목으로는 내과 전문의가 1,57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외과 546명, 영상의학과 493명, 정형외과 461명 등의 순으로 전문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IV-91> 건강영역 주요지표 비교

시도별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율	생후36개월 예방접종률	치매환자 등록률	노인우울증	인구당 공공의료 기관수 (십만명당)	인구당 공공의료 병상수 (천명당)	건강보험 급여제한자 비율	공공 의료기관 건강보험 진료비중	공공 의료기관 의료급여 진료비중
전국	71.91	89.2	3.08	30.3	0.426	1.252	2.9	80.1	19.9
서울	72.37	88.2	2.63	31.1	0.211	0.861	2.8	80.6	19.4
부산	74.31	88.3	1.47	35.7	0.286	1.177	3.2	80.2	19.8
대구	68.87	88.4	2.59	22.7	0.362	1.477	2.4	81.5	18.5
인천	74.37	90.1	2.80	14.8	0.238	0.406	3.3	70.4	29.6
광주	70.34	88.2	2.36	29.4	0.613	2.009	2.9	81.1	18.9
대전	73.83	90.4	2.83	35.9	0.462	2.099	2.5	83.5	16.5
울산	73.65	90.6	2.28	31.6	0.085	0.085	2.3	74.3	25.7
세종	75.81	90.4	2.48				1.8		
경기	70.77	89.3	2.25	34.0	0.236	0.751	3.2	82.0	18.0
강원	73.61	91.8	3.37	32.7	1.290	2.684	3.3	78.1	21.9
충북	73.05	91.2	3.00	26.7	0.628	1.783	2.5	78.0	22.0
충남	70.89	91.5	4.11	29.0	0.668	1.711	2.7	77.9	22.1
전북	68.08	88.6	6.75	27.1	0.644	1.881	2.7	77.8	22.2
전남	70.36	89.2	3.97	16.1	1.050	2.591	2.8	78.8	21.2
경북	72.08	89.4	4.56	29.9	0.852	1.729	2.2	71.5	28.5
경남	73.19	88.8	4.43	36.5	0.652	1.908	2.7	81.6	18.4
제주	74.04	87.7	3.90	29.4	0.779	2.007	3.5	82.6	17.4
전국-전북	▼3.83	▼0.6	▲3.67	▼3.2	▲0.218	▲0.629	▼0.2	▼2.3	▲2.3

전라북도 건강영역의 주요 지표 중 전국평균보다 낮은 지표로는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이 전북이 68.08%로 전국평균 71.91%보다 약 3.83%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노인의 우울증 정도가 전북이 27.1%로 전국평균 30.3%보다 약 3.2%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평균보다 수치가 높은 지표로 인구 십만명당 공공의료기관 수 와 인구 천명당 공공의료병상수의 경우 각각 전국평균대비 0.218개소, 0.629개의 병상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치매환자 등록율의 경우 전북이 6.75%로 전국 평균 3.08%보다 약 3.67%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로 높은 경북의 4.56%보다 약 2.19%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라북도의 치매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마련이 필요하다.

(4) 일자리분야 복지기준선 욕구

전라북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6년 기준 64.0%로 전국 평균인 70.1%에 비해서는 약 6.1%p 낮은 수준이다. 전라북도의 경제활동참여율은 2010년 62.2%에서 2016년 64.0%로 1.8%p 증가하였다. 전라북도의 경제활동참가자 수는 2010년 835천명에서 2016년 928천명으로 93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라북도의 실업률은 2016년 기준 2.1%로 전국 평균 3.7%에 비해서 다소 낮은 편이고 고용율은 59.4%로 전국 평균 고용률인 60.4%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편이다. 전라북도의 2016년 기준 취업자는 909천명이고 실업자는 28천명으로 취업자와 실업자는 2010년보다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IV-92>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 천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경제 활동 참가율	경제 활동 인구	경제 활동 참가율	경제 활동 인구	경제 활동 참가율	경제 활동 인구	경제 활동 참가율	경제 활동 인구	경제 활동 참가율	경제 활동 인구	경제 활동 참가율	경제 활동 인구	경제 활동 참가율	경제 활동 인구
서울	61.0	5,180	61.1	5,252	61.3	5,258	61.5	5,307	62.4	5,386	62.6	5,362	62.8	5,353
부산	61.8	1,633	62.5	1,633	62.3	1,693	62.3	1,710	63.2	1,733	62.6	1,728	62.8	1,728
대구	56.3	1,218	56.4	1,214	57.9	1,245	58	1,237	58.6	1,264	58.3	1,279	58.3	1,288
대전	59.4	1,390	59	1,429	60.2	1,480	59.6	1,505	60.7	1,541	61.3	1,568	61.7	1,600
인천	62.5	688	63.3	692	64.2	704	63.7	729	64.0	758	64.2	763	64.8	762
광주	59.0	728	58.4	739	57.8	753	58.7	759	60.4	792	60.1	805	59.9	801
울산	59.1	553	59.4	559	59.7	561	59.5	558	61.5	561	62.2	578	62.4	593
경기	60.5	5,913	60.7	6,045	60.8	6,126	60.0	6,172	59.5	6,442	60.4	6,626	61.0	6,785
강원	61.5	685	61.2	691	61.6	711	61.8	715	63.4	734	64.0	756	64.0	765
충북	57.6	753	57.6	764	58.2	766	57.3	792	58.3	835	59.4	850	59.7	852
충남	61.0	1,003	61.1	1,025	59.9	1,080	61.0	1,170	63.7	1,198	63.9	1,237	63.6	1,268
전북	62.2	835	62.4	849	62.9	864	64.6	893	64.6	897	64.6	909	64.0	928
전남	58.5	904	59.1	904	58.6	926	59.3	934	59.1	936	59.5	948	60.7	957
경북	63.4	1,400	63.3	1,393	63.6	1,413	63.0	1,430	62.8	1,463	63.1	1,457	63.4	1,466
경남	64.3	1,576	63.6	1,617	63.6	1,618	63.7	1,653	64.7	1,673	63.9	1,708	64.1	1,740
제주	60.8	289	61.5	296	60.7	301	61.1	310	61.2	323	61.6	340	62.2	361
전국	66.0	24,748	66.9	25,099	67.3	25,501	67.1	25,873	68.0	26,536	69.2	26,913	70.1	27,247
전국 전북	▼3.8	-	▼4.5	-	▼4.4	-	▼2.5	-	▼3.4	-	▼4.6	-	▼6.1	-

자료 : 통계청(2016) 각연도 행정구역별 경제활동인구 현황

<표IV-93> 경제활동인구현황

(단위 : 천명, %)

시도별	15세이상인구 (천명)	경제활동인구 (천명)	취업자 (천명)	실업자 (천명)	비경제 활동인구 (천명)	경제활동참 가율 (%)	실업률 (%)	고용률 (%)	15-64세 고용률 (%)
전체	43,931	27,748	26,725	1,023	16,183	63.2	3.7	60.8	66.6
서울	8,557	5,396	5,152	244	3,161	63.1	4.5	60.2	66.4
부산	2,992	1,766	1,685	81	1,226	59.0	4.6	56.3	63.4
대구	2,108	1,291	1,239	52	817	61.2	4.0	58.8	65.0
대전	2,485	1,607	1,533	75	878	64.7	4.6	61.7	67.3
인천	1,260	766	744	22	494	60.8	2.9	59.0	63.8
광주	1,296	791	764	27	505	61.0	3.4	58.9	64.0
울산	976	605	584	21	372	61.9	3.5	59.8	63.9
세종	211	132	129	3	79	62.7	2.3	61.2	64.8
경기	10,760	6,953	6,685	269	3,806	64.6	3.9	62.1	67.9
강원	1,295	811	790	21	484	62.6	2.6	61.0	67.1
충북	1,376	880	861	20	495	64.0	2.2	62.6	69.1
충남	1,831	1,174	1,140	33	657	64.1	2.8	62.3	67.9
전북	1,571	944	921	24	627	60.1	2.5	58.6	64.4
전남	1,541	988	957	31	553	64.1	3.2	62.1	66.8
경북	2,316	1,488	1,447	41	828	64.2	2.8	62.5	67.9
경남	2,830	1,775	1,723	52	1,055	62.7	2.9	60.9	66.4
제주	528	382	374	7	146	72.3	1.9	70.9	76.0
전국·전북	-	-	-	-	-	▼3.1	▼1.2	▼2.2	▼2.2

자료 : 통계청(2017) 각연도 행정구역별 경제활동인구 현황

전라북도의 경제활동인구 현황을 종합해보면, 전라북도의 15세 이상 경제활동가능 인구는 157만명이고 이중 경제활동인구는 94.4만명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은 60.1%로 부산광역시 59.0%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라북도의 실업률은 2.5%로 전국 평균 실업율인 3.7%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다만, 전라북도의 고용률은 58.6%로 전국 평균인 60.8%보다도 낮을뿐만 아니라 광역도에서는 부산광역시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15세에서 54세의 고용율도 전북은 64.4%로 전국 평균인 66.6%보다도 낮고 광역도 지역에서는 부산과 광주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체적으로 전라북도의 고용환경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열악한 수준이고 특히 고용율과 경제활동참여율에서는 다른 지역보다도 열악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표V-94> 연령별 경제활동참여 인원

(단위 : 천명)

구분	계	연령별						세대별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15~64세	15~24세	15~29세
전체	27,247	266	4,153	5,824	6,785	6,229	3,989	25,067	1,855	4,420
서울	5,353	48	931	1,300	1,256	1,155	663	5,030	355	979
부산	1,728	12	269	350	397	416	284	1,590	113	282
대구	1,288	11	190	265	332	314	176	1,199	85	201
대전	1,600	17	259	356	409	373	188	1,514	123	275
인천	762	7	113	173	205	167	97	708	50	120
광주	801	7	144	171	202	181	96	754	57	151
울산	593	5	82	132	158	148	68	559	37	87
경기	6,785	82	1,080	1,560	1,832	1,504	728	6,437	496	1,162
강원	765	7	99	131	182	193	152	676	46	106
충북	852	8	126	166	203	207	144	773	62	134
충남	1,268	14	195	267	296	276	221	1,131	90	209
전북	928	8	111	157	225	223	205	792	54	119
전남	957	11	94	138	213	229	273	763	58	105
경북	1,466	11	191	248	336	343	338	1,247	91	201
경남	1,740	13	223	341	448	424	293	1,576	109	236
제주	361	5	49	69	94	78	66	320	29	54

통계청(2016) 경제활동참여인구 현황(2016년 기준)

전라북도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자 수를 보면, 2016년 전체 경제활동참가자 중 15세에서 19세 경제활동참가자는 11천명, 20세에서 29세의 경제활동참가자는 111천명이었다. 그리고 60세 이상의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자는 205천명이었다.

<표V-95> 연령별 경제활동 참여인구 현황

구분	15세 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천명)	비경제활동인구 (천명)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계	1,530	928	602	60.7	59.4
15 - 19세	114	8	105	7.2	6.9
20 - 29세	202	111	91	54.8	49.4
30 - 39세	208	157	51	75.5	74.0
40 - 49세	271	225	46	83.0	82.4
50 - 59세	281	223	59	79.2	78.6
60세이상	455	205	250	45.1	44.8
60~64세	110	69	41	62.5	62.2
65세이상	345	136	208	39.5	39.2
15 - 64세	1,185	792	394	66.8	65.3
15 - 24세	222	54	168	24.2	22.2
15 - 29세	315	119	197	37.6	34.1

자료 : 통계청(2016) 경제활동인구 조사

종합해 보면, 전라북도의 15세 이상 인구는 약 1,530천명이고 이중 경제활동참여 인구는 928천명 비경제활동인구는 602천명으로 경제활동참여율은 60.7%이고 고용율은 59.4%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15세에서 24세까지의 청년층의 경제활동참여율은 24.2%이고 고용율은 22.2%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참여율은 39.5%이고 고용율은 39.2%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라북도의 15세에서 24세까지의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전국과 비교 시 전라북도의 청년 경제활동참여율이 약 5%p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60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참여율은 전국 평균인 40.4%에 비해서 전라북도는 4.7%p 높은 45.1%였다.

결국, 전라북도의 청장년층의 경제활동참여율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전라북도의 노인의 경제활동참여율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IV-96> 연령별 경제활동참여율

(단위 : %)

구분	계	연령별						세대별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15~64세	15~24세	15~29세
전체	62.8	8.9	64.7	77.1	81.0	76.2	40.4	68.7	30.5	46.9
서울	62.8	9.3	66.0	78.4	79.6	74.8	36.5	68.9	32.0	50.8
부산	58.3	6.7	62.6	75.8	76.1	70.5	36.5	65.4	28.8	45.9
대구	61.7	7.4	62.7	79.8	80.6	76.3	36.9	68.1	27.8	44.1
대전	64.8	9.6	69.0	77.4	82.3	75.9	39.6	70.4	34.8	50.3
인천	59.9	6.6	55.6	75.8	80.3	73.8	38.2	64.6	23.9	38.8
광주	62.4	7.1	65.6	75.5	80.5	77.0	37.7	67.8	28.8	47.7
울산	61.0	6.5	60.8	72.9	76.6	72.5	39.9	64.7	25.7	41.5
경기	64.0	10.6	67.4	77.5	81.6	75.7	36.7	69.6	32.2	48.9
강원	59.7	8.0	58.3	77.8	80.6	75.3	41.2	66.6	25.5	40.7
충북	63.6	8.3	64.2	79.0	82.8	80.8	42.2	70.4	32.4	46.1
충남	64.0	10.7	65.9	77.2	81.8	81.1	43.5	70.5	33.4	48.8
전북	60.7	7.2	54.8	75.5	83.0	79.2	45.1	66.8	24.2	37.6
전남	63.4	10.3	58.5	74.9	82.8	80.5	53.2	68.9	28.1	38.8
경북	64.1	7.4	64.2	75.2	84.8	78.9	49.5	70.0	30.7	45.4
경남	62.2	6.4	63.2	72.9	81.0	77.9	42.9	68.1	28.2	42.5
제주	70.1	11.2	70.2	82.4	88.0	83.4	55.4	74.9	37.0	48.4
전국-전북	▼2.1	▼1.7	▼9.9	▼1.6	▲2.0	▲3.0	▲4.7	▼1.9	▼6.3	▼9.3

통계청(2016) 경제활동참여인구 현황(2016년 기준)

<표IV-97> 장애인경제활동 상태

구분	15세 이상인구(명)	취업자(명)	비경제활동 인구(명)	고용율(%)
전체	2,441,166	880,090	1,500,115	36.1
서울	385,319	129,027	247,805	33.5
부산	165,179	53,671	107,780	32.5
대구	113,560	42,626	68,620	37.6
인천	131,284	43,379	78,791	36.1
광주	66,462	17,433	46,680	26.2
대전	69,126	25,015	42,576	36.2
울산	48,203	16,853	30,721	35.0
경기	500,347	197,690	286,240	39.5
강원	96,815	33,719	62,557	34.8
충북	91,838	33,561	57,063	36.5
충남	131,618	52,972	78,364	40.2
전북	127,736	42,229	83,000	33.1
전남	140,086	55,959	79,942	39.9
경북	165,457	51,809	111,526	31.3
경남	175,807	66,241	100,807	37.7
제주	32,627	13,905	17,641	42.6
전국-전북				▼3.0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연구원(2016) 2016 장애인통계

다음으로 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보면, 전라북도의 경우 2016년 기준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은 128만명이고 이중 취업자는 4.2만명, 비경제활동인구는 8.3만명으로 33.1%의 고용율을 보이고 있다. 전라북도 장애인의 고용율은 전국 평균 장애인고용율인 36.1%보다도 3.0%p 낮은 수준이다.

한편,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기준 장애인의 경제활동 상태를 보게되면 전라북도의 경제활동 장애인은 35.8%로 나타났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장애인은 심신장애나 연로로 인한 경우가 20% 수준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의 경제활동분야로는 자영업 장애인이 22.0%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일반사업체 근무 9.8%, 정부 및 정부관련기관에서 근무 1.9% 등의 순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장애인의 경우 전북이 22.0%로 전국평균 8.7%보다 13.3% 더 높았고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IV-98> 장애인경제활동 상태

구분	일하 였음	일시 휴직	구직 활동	육아	가사	정규 교육 기관 통학	입시 학원 통학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통학	취업 준비	진학 준비	연로	심신 장애	쉬었음	기타
전체	29.1	.2	2.2	.4	9.3	1.5	.1	.3	.8	.2	14.4	16.4	22.6	.5
서울	33.5	.4	1.5	.6	5.8	.8		.6	.4		16.0	17.1	21.0	
부산	31.5	.5	.2	.2	7.4	2.1		.5	.3		23.0	10.1	21.7	.8
대구	34.9		1.5		6.7	1.6					18.4	12.9	22.3	
인천	28.7	1.1			4.9	1.5					32.2	8.6	20.5	
광주	31.2		1.3	.4	11.2	.6		.4			17.7	14.9	20.4	1.2
대전	35.5		.3	.4	8.2	2.2		.7			22.8	16.3	12.7	
울산	34.0	.3	1.7	.3	5.8	2.7		.2	.5	.2	17.5	21.4	13.2	.4
경기	44.7		.1		3.8	1.1		.3	.2		26.0	7.1	15.0	
강원	43.5		1.0	.5	6.8	.5		.1	.1		13.7	21.9	10.4	.7
충북	43.5		1.1	.2	8.5	.8		.1	.3		20.5	13.6	10.4	.3
충남	39.1		.2		4.0	2.0			.3		20.2	21.5	10.2	.4
전북	35.8	.2	.0	.2	6.3	1.4	.1		.1		20.5	22.7	11.0	.1
전남	40.1		1.9	.3	6.7	1.0		.1	.4	.2	17.5	18.7	11.1	
경북	42.2	.4	1.8	.3	6.1	.6		.5			13.4	23.2	9.9	.4
경남	43.7	.3			8.5	.8		.9			13.6	20.9	9.1	
제주	35.7	.2	1.3	.3	6.8	1.5	.0	.2	.4	.1	18.0	17.8	15.6	.3
전국 전북	▲6.7	-	▼2.2	▼0.2	▼3.0	▼0.1	-	▼0.3	▼0.7	▼0.2	▲6.1	▲6.3	▼11.6	▼0.4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표IV-99> 장애인경제활동 상태

구분	해당없음	자영업	일반 사업체	정부 및 정부관련 기관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	장애인 관련 기관	기타
전체	70.3	8.7	15.4	2.4	.7	.3	.7	1.5
서울	66.4	14.4	15.0	2.4	.9			.8
부산	67.7	7.3	20.9	2.3		.4		1.4
대구	65.0	10.2	18.2	3.5		.6	1.0	1.6
인천	70.3	9.7	15.1	1.9		.9	1.3	.9
광주	68.4	7.4	12.8	7.8	.5	.5		2.5
대전	64.5	9.3	20.2	2.3	3.6			
울산	66.0	9.3	19.2	3.6		.2	.2	1.4
경기	54.9	27.1	11.8	1.8	.6	.4	.4	3.0
강원	57.0	21.1	15.7	2.0	.8	.1	1.3	1.9
충북	56.6	24.5	15.0	3.0		.2	.4	.4
충남	60.8	18.7	14.8	2.7		1.0	1.1	.9
전북	63.5	22.0	9.8	1.9	.8	.5	.2	1.3
전남	60.0	20.3	14.0	1.8	.4	.5	.6	2.4
경북	57.6	17.7	20.2	2.3		1.1	.2	1.0
경남	56.0	18.7	17.8	4.9			.8	1.7
제주	64.1	14.1	16.3	2.8	.4	.4	.5	1.4
전국-전북	▼6.8	▲13.3	▼5.6	▼0.5	▲0.1	▲0.2	▼0.5	▼0.2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표IV-100> 시도 장애인 고용율 현황

행정구역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국	1.53	1.72	1.86	2.22	2.25	2.32	2.46	2.53	2.59	2.66
서울특별시	1.31	1.48	1.6	1.97	1.97	2.06	2.22	2.26	2.31	2.38
부산광역시	1.92	2.21	2.42	2.8	2.92	2.94	3.11	3.2	3.28	3.38
대구광역시	1.93	2.07	2.21	2.5	2.59	2.62	3.01	3.02	3.2	3.19
인천광역시	2.05	2.34	2.55	2.96	2.96	3.01	3.13	3.08	3.11	3.18
광주광역시	1.86	2.09	2.29	2.96	2.93	2.97	3.03	3.37	3.35	3.25
대전광역시	2	2.11	2.2	2.4	2.47	2.7	2.85	2.88	2.98	2.97
울산광역시	1.87	1.98	2.16	2.55	2.6	2.47	2.43	2.52	2.61	2.56
세종특별자치시	-	-	-	-	-	2.35	2.77	2.66	2.45	2.67
경기도	1.57	1.77	1.96	2.22	2.28	2.3	2.37	2.46	2.51	2.59
강원도	1.97	2.3	2.46	2.83	2.76	3	3	3.32	3.5	3.52
충청북도	1.75	1.91	2.01	2.53	2.68	2.55	2.72	2.86	2.93	2.81
충청남도	1.55	1.69	1.78	2.18	2.28	2.36	2.51	2.51	2.65	2.62
전라북도	2.14	2.32	2.44	2.68	2.64	2.9	3.08	3.3	3.26	3.28
전라남도	1.77	1.92	2.04	2.38	2.28	2.37	2.56	2.9	2.84	2.88
경상북도	1.6	1.88	1.96	2.46	2.52	2.42	2.55	2.58	2.72	2.76
경상남도	1.62	1.85	1.95	2.18	2.29	2.35	2.48	2.48	2.56	2.86
제주특별자치도	2.17	2.69	2.59	2.8	2.87	3.35	3.38	3.42	3.19	3.16
전국-전북	▲0.6	▲0.6	▲0.6	▲0.5	▲0.4	▲0.6	▲0.6	▲0.8	▲0.7	▲0.6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6) 장애인고용율

한편, 시도의 장애인 고용율을 보면, 전라북도는 2007년 2.14%에서 2016년 3.28%로 증가하였다. 2016년 기준 전라북도의 장애인고용율은 전국 평균 장애인고용율인 2.66%에 비해서 다소 높은 편이다. 전라북도의 장애인 고용율은 부산광역시(3.3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한편, 장애인의무고용율의 경우 공무원은 2018년 정원 기준 3.2%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표IV-101> 장애인 의무고용율

적용대상		연도		'91~'08	'09	'10~'11	'12~'13	'14~'16	'17~'18	'19	비고
국가 자치 단체	공무원	2.0%	3.0%					3.2%	3.4%	정원기준	
	근로자	미적용		2.3%	2.5%	2.7%	2.9%	3.4%	상시 근로자 기준		
공공 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2.0%		3.0%	3.0%	3.0%	3.2%	3.4%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2.3%	2.5%						
민간기업						2.7%	2.9%	3.1%			

자료 : 고용노동부(2017) 장애인고용현황 발표자료

<표IV-102> 장애인취업자 현황

(단위 : 명, %)

지역별(1)	합계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대전 충남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	제주	미분 류	전국 전북
2015 취업자수	4,838	613	1,314	309	133	138	392	139	303	381	1,075	41	-	
1/4 취업률	46.2	41.0	42.9	51.6	35.5	47.6	50.1	42.5	41.6	37.9	62.8	48.8	-	▼3.7
2015 취업자수	5,320	834	1,418	330	236	193	429	163	427	489	698	103	-	
2/4 취업률	50.2	44.8	43.2	50.5	93.7	56.3	56.9	54.7	76.9	47.3	48.6	85.1	-	▲4.5
2015 취업자수	5,467	951	1,440	442	167	182	474	160	394	380	806	69	2	
3/4 취업률	53.5	64.2	45.8	53.8	65.2	55.7	58.8	50.6	59.4	40.3	60.0	60.0	40.0	▼2.9
2015 취업자수	5,962	990	1,572	481	99	215	488	182	409	554	798	173	1	
4/4 취업률	54.6	59.7	45.0	80.4	42.3	69.1	61.2	35.9	65.1	54.3	53.7	94.5	7.7	▼18.7
2016 취업자수	4,908	735	1,471	395	101	141	419	161	348	441	633	58	5	
1/4 취업률	36.9	41.6	40.5	39.3	28.3	36.5	39.7	44.0	31.9	38.3	28.6	45.3	3.7	▲7.1
2016 취업자수	6,249	965	1,586	409	251	265	502	215	541	483	914	118	-	
2/4 취업률	51.9	56.8	43.9	52.1	97.3	67.6	48.1	63.0	66.8	31.9	53.9	99.2	-	▲11.1
2016 취업자수	5,541	857	1,626	341	111	197	394	275	338	450	789	92	71	
3/4 취업률	47.0	48.9	47.5	46.2	43.9	64.0	45.5	62.1	42.6	43.8	47.1	56.8	19.9	▲15.1
2016 취업자수	5,781	945	1,486	367	206	122	528	172	428	487	890	143	7	
4/4 취업률	49.9	55.2	42.3	52.7	83.4	44.2	60.0	57.1	47.9	48.4	49.0	77.3	13.0	▲7.2
2017 취업자수	5,213	745	1,622	467	124	124	371	160	342	439	717	102	-	
1/4 취업률	33.3	32.1	38.2	37.7	26.4	28.4	33.0	28.0	31.1	28.4	29.4	58.3	-	▼5.3
2017 취업자수	8,099	1,292	2,250	493	257	257	591	335	513	720	1,244	144	3	
2/4 취업률	56.4	62.9	53.5	51.8	85.1	58.9	48.6	71.9	59.8	49.4	56.9	68.2	100.0	▲15.5
2017 취업자수	7,103	1,079	1,832	511	180	240	619	255	435	641	1,191	120	-	
3/4 취업률	50.1	48.9	49.1	47.4	57.1	48.7	52.8	50.0	43.3	50.4	53.8	67.8	-	▼0.1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각연도) 장애인인구 및 취업동향

다음으로 장애인취업자는 2017년 3분기 기준으로 255명으로 장애인의 취업률은 50.0% 수준이다. 전라북도의 장애인취업자는 2017년 3분기 기준으로 전국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다. 장애인취업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로 67.8%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 강원도 57.1%, 부산·울산·경남 53.8%, 대전·충남 52.8%, 대구경북 50.4%, 다음으로 전북 50.0% 등의 순이다.

전라북도의 장애인 취업자수는 2015년 1분기 139명에서 2017년 1분기 160명으로 약 21명 증가하였고, 2017년 3분기 기준으로는 116명 증가하여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IV-103> 장애인취업자 현황

(단위 : 명)

지역별(1)	합계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대전 충남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	제주	미분 류
2015 구인수	17,748	4,304	4,304	850	502	755	1,103	527	920	1,217	2,977	285	4
4/4 구직자수	10,923	1,657	3,490	598	234	311	797	507	628	1,020	1,485	183	13
2016 구인수	21,441	5,908	5,021	911	635	539	1,351	680	1,193	1,432	3,460	310	1
1/4 구직자수	13,284	1,767	3,628	1,005	357	386	1,055	366	1,092	1,152	2,212	128	136
2016 구인수	20,398	5,270	4,528	786	586	639	1,376	414	1,759	1,266	3,461	313	-
2/4 구직자수	12,036	1,698	3,613	785	258	392	1,044	341	810	1,273	1,696	119	7
2016 구인수	18,556	5,778	4,335	646	528	557	1,173	655	944	1,055	2,287	313	285
3/4 구직자수	11,796	1,752	3,422	738	253	308	866	443	794	1,027	1,674	162	357
2016 구인수	17,424	5,262	4,466	544	625	399	1,107	416	810	1,094	2,381	320	-
4/4 구직자수	11,586	1,712	3,517	697	247	276	880	301	894	1,006	1,817	185	54
2017 구인수	24,667	6,939	5,779	1,111	577	988	1,711	611	1,329	1,749	3,538	335	-
1/4 구직자수	15,669	2,319	4,247	1,240	469	436	1,123	572	1,101	1,547	2,437	175	3
2017 구인수	23,643	7,254	6,079	946	554	655	1,509	623	1,053	1,714	3,004	252	-
2/4 구직자수	14,351	2,055	4,207	952	302	436	1,216	466	858	1,458	2,187	211	3
2017 구인수	22,220	6,763	6,004	940	461	793	1,478	472	1,048	1,612	2,391	258	-
3/4 구직자수	14,172	2,205	3,730	1,078	315	493	1,173	510	1,004	1,273	2,213	177	1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각연도) 장애인인구 및 취업동향

전라북도의 장애인취업자 현황을 보면, 2017년 3분기 기준 구인자 수는 472명 이지만 구직자는 510명으로 구인자보다는 구직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구인자 수는 2015년 4분기 527명에서 2017년 3분기 472명으로 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장애인 구인은 소폭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반해 장애인 구인자는 2015년 4분기 기준 507명에서 2017년 3분기 510명으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라북도의 경우 장애인의 일자리를 찾는 구인자보다는 장애인이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경기도를 포함한 일부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장애인 취업은 구인자보다는 구직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아직까지는 직업을 원하는 장애인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공공형 일자리 중심의 장애인일자리 정책을 시장이 원하는 적합형 일자리 개발을 통해 시장형 일자리의 발굴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연령대별 취업자 현황을 보면, 전라북도의 경우 2016년 기준 909천명이 취업자이고 이중 40세에서 49세가 224천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50-59세 221천명, 60세 이상 204천명, 30-39세 154천명 등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취업자 수도 경제활동참여율과 마찬가지로 40세에서 60세까지의 장년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세대별로 보면, 15세에서 64세까지의 연령대는 총 774천명이 취업자이고 15세에서 24세까지의 청년 취업자는 49천명 그리고 15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층 취업자는 108천명이었다. 전라북도의 취업자는 대체로 20대와 30대의 취업자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60세 이상의 노인층의 취업자의 비중은 다른 연령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연령대별 경제활동참여율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IV-104> 연령별 취업자 현황

(단위 : 천명)

구분	연령별							세대별		
	계	15세 ~ 19세	20세 ~ 29세	30세 ~ 39세	40세 ~ 49세	50세 ~ 59세	60세 이상	15세 ~ 64세	15세 ~ 24세	15세 ~ 29세
계	26,235	240	3,746	5,640	6,640	6,086	3,884	24,105	1,657	3,985
서울	5,124	44	834	1,252	1,228	1,122	644	4,809	320	878
부산	1,660	11	243	339	386	405	276	1,526	100	254
대구	1,234	11	167	256	323	308	170	1,148	75	177
인천	1,522	13	230	343	397	362	177	1,442	108	244
광주	738	6	102	169	202	165	94	685	45	108
대전	775	7	132	166	199	178	93	728	52	139
울산	570	4	72	129	154	145	66	538	33	77
경기	6,518	73	975	1,516	1,789	1,462	704	6,182	439	1,048
강원	743	7	89	127	180	191	149	656	40	95
충북	830	8	118	161	200	203	141	752	59	125
충남	1,228	12	179	260	291	271	216	1,093	78	191
전북	909	8	100	154	224	221	204	774	49	108
전남	929	10	84	135	208	225	267	738	52	94
경북	1,420	10	171	239	330	336	333	1,204	80	181
경남	1,682	12	204	327	437	415	288	1,520	99	216
제주	353	4	46	68	92	78	65	312	28	51

자료 : 통계청(2016) 경제활동인구조사

<표IV-105>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

(단위 : 명)

	계	18세 미만	18~20 세 미만	20~24 세 이하	25~29 세 이하	30~34 세 이하	35~39 세 이하	40~44 세 이하	45~49 세 이하	50~54 세 이하	55~59 세 이하	60세 이상
전체	12,363,063	7,836	103,763	699,394	1,450,369	1,776,295	1,687,191	1,717,392	1,575,541	1,286,809	1,005,845	1,052,628
서울	4,028,833	3,343	39,073	282,452	590,534	672,987	566,850	528,021	445,509	333,935	254,857	311,272
부산	682,336	418	5,734	39,661	73,778	85,487	81,568	84,292	80,870	73,592	69,886	87,050
대구	424,745	261	3,233	24,133	44,346	51,479	51,784	58,857	58,077	49,939	40,197	42,439
인천	523,289	322	4,142	26,349	49,718	64,660	66,303	71,071	71,013	65,382	51,669	52,660
광주	250,768	155	2,224	14,600	26,824	32,897	34,446	36,091	33,631	26,620	20,675	22,605
대전	337,092	126	2,471	18,439	39,485	46,553	46,280	48,941	43,755	35,631	29,283	26,128
울산	322,975	109	1,923	15,666	34,051	42,554	42,790	42,141	44,780	42,409	32,088	24,464
세종	45,812	19	276	2,125	5,219	6,474	6,456	6,653	5,879	4,551	3,679	4,481
경기	2,639,435	1,391	19,863	132,756	288,114	373,562	373,876	384,155	353,165	287,627	212,095	212,831
강원	250,657	113	1,631	11,160	21,603	28,262	31,335	36,491	35,530	30,707	27,274	26,551
충북	329,152	180	3,074	17,114	33,331	41,677	43,045	47,585	46,274	38,560	29,861	28,451
충남	450,497	300	4,554	21,709	47,582	64,235	65,592	66,570	59,211	48,578	36,679	35,487
전북	323,071	91	1,820	14,531	29,058	38,831	42,373	49,223	45,586	38,299	32,069	31,190
전남	323,528	218	2,421	13,293	28,047	39,951	44,180	50,532	47,084	38,545	30,547	28,710
경북	564,802	281	4,338	24,043	52,584	70,112	72,491	80,814	83,999	71,904	56,072	48,164
경남	754,248	467	6,245	34,556	74,106	101,470	102,702	109,124	106,187	88,885	69,882	60,624
제주	111,823	42	741	6,807	11,989	15,104	15,120	16,831	14,991	11,645	9,032	9,521

자료 : 고용정보원(2016) 고용보험가입자 현황

다음으로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라북도의 경우 약 32.3만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가입자는 연령대별로 다소 상이한데 40세에서 44세의 장년층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4.9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4세에서 49세 연령은 4.5만명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60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약 3.1만명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25세에서 29세의 청년층의 경우 약 2.9만명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취업자수와 고용보험가입자와의 비교를 통해 고용보험의 미가입자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IV-106>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단위 : 천명)

구분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고용 보험 가입자	취업자	고용 보험 미가입 자	고용 보험 가입자	취업자	고용 보험 미가입 자	고용 보험 가입자	취업자	고용 보험 미가입 자	고용 보험 가입자	취업자	고용 보험 미가입 자	고용 보험 가입자	취업자	고용 보험 미가입 자
계	2150	3,746	1,596	3463	5,640	2,177	3293	6,640	3,347	2293	6,086	3,793	1053	3,884	2,831
서울	873	834	-39	1240	1,252	12	973	1,228	255	589	1,122	533	311	644	333
부산	113	243	130	167	339	172	165	386	221	143	405	262	87	276	189
대구	68	167	99	103	256	153	1170	323	-847	90	308	218	42	170	128
인천	76	230	154	131	343	212	142	397	255	117	362	245	53	177	124
광주	41	102	61	67	169	102	70	202	132	47	165	118	23	94	71
대전	58	132	74	93	166	73	927	199	-728	65	178	113	26	93	67
울산	50	72	22	85	129	44	870	154	-716	74	145	71	24	66	42
경기	421	975	554	747	1,516	769	737	1,789	1,052	500	1,462	962	213	704	491
강원	33	89	56	59	127	68	72	180	108	58	191	133	26	149	123
충북	50	118	68	85	161	76	94	200	106	68	203	135	28	141	113
충남	69	179	110	130	260	130	126	291	165	85	271	186	35	216	181
전북	44	100	56	81	154	73	95	224	129	70	221	151	31	204	173
전남	41	84	43	84	135	51	98	208	110	69	225	156	29	267	238
경북	77	171	94	143	239	96	165	330	165	128	336	208	48	333	285
경남	109	204	95	204	327	123	215	437	222	159	415	256	61	288	227
제주	19	46	27	30	68	38	32	92	60	21	78	57	9	65	56

자료 : 고용정보원(2016) 고용보험가입자 현황

한편, 전체 취업자와 고용보험가입자를 대비하여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일자리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고용보험 미가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라북도의 경우 연령대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전체 취업자의 절반 이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즉,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20세에서 29세 연령의 취업자는 100천명이지만 고용보험 가입자는 44천명으로 약 56천명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60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도 취업자는 204천명이지만 고용보험 가입자는 31천명으로 173천명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년과 노인이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의 고용환경이 그리 좋지 않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은 40세에서 49세 장년층의 경우도 취업자는 224천명이지만 고용보험 가입자는 95천명으로 약 129천명의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V-107>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현황

(단위 : 개, %, 명)

구분	2016년도						2015년			전년대비 비율(%)		
	창출목표			창출실적			확정 내시 사업량	추진 실적	누적 참여 인원	확정 내시 사업량	추진 실적 (B/E) *100	누적 참여 인원 (C/F) *100
	확정 내시 사업량	배정 사업량	추진 실적 (B)	목표 대비 추진율 (B/A) *100	누적 참여 인원							
계	370,750	(100)	366,891	380,916	(102.7)	416,934	323,691	337,759	381,512	114.5	112.8	109.3
서울	54,913	(14.8)	48,943	49,411	(90)	54,191	48,338	43,603	49,840	113.6	113.3	108.7
부산	25,953	(7)	25,631	28,557	(110)	31,369	23,529	24,793	27,922	110.3	115.2	112.3
대구	18,030	(4.9)	18,045	19,019	(105.5)	20,649	16,143	16,578	18,534	111.7	114.7	111.4
인천	24,530	(6.6)	24,762	26,481	(108)	29,327	20,618	21,043	24,763	119	125.8	118.4
광주	13,902	(3.7)	13,419	14,222	(102.3)	15,396	11,057	11,775	13,230	125.7	120.8	116.4
대전	12,269	(3.3)	12,089	12,211	(99.5)	13,387	12,623	12,258	14,109	97.2	99.6	94.9
울산	7,688	(2.1)	7,729	7,775	(101.1)	8,402	5,849	6,151	7,072	131.4	126.4	118.8
세종	1,821	(0.5)	1,816	1,771	(97.3)	2,232	1,721	1,578	2,092	105.8	112.2	106.7
경기	45,518	(12.3)	39,661	45,494	(99.9)	50,837	41,715	43,792	49,558	109.1	103.9	102.6
강원	19,555	(5.3)	24,097	23,536	(120.4)	26,230	18,218	21,440	24,651	107.3	109.8	106.4
충북	17,222	(4.6)	17,261	17,580	(102.1)	19,268	14,900	16,336	18,330	115.6	107.6	105.1
충남	18,265	(4.9)	18,475	17,395	(95.2)	18,923	15,077	15,025	16,683	121.1	115.8	113.4
전북	24,650	(6.6)	25,772	27,234	(110.5)	29,104	21,062	24,415	26,738	117	111.5	108.8
전남	27,700	(7.5)	25,108	27,780	(100.3)	29,927	23,280	25,799	28,608	119	107.7	104.6
경북	27,875	(7.5)	30,920	31,627	(113.5)	34,239	24,619	28,128	31,102	113.2	112.4	110.1
경남	23,999	(6.5)	20,402	23,976	(99.9)	25,940	19,398	20,063	22,635	123.7	119.5	114.6
제주	6,860	(1.9)	12,761	6,847	(99.8)	7,513	5,544	4,982	5,645	123.7	137.4	133.1
전국 전북					▲7.8						▼1.3	▼0.5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6) 2016년 노인일자리 통계동향

전라북도의 노인일자리는 2016년도 기준 2.7만개 창출하였고, 2016년도 말까지 누적 참여인원은 약 2.9만명 정도이다. 2015년 기준 노인일자리 사업의 누적 참여인원이 2.6만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라북도의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전라북도의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전체 누적 참여이원 41.6만명의 약 7%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노인일자리의 개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의 2016년 노인일자리 사업의 배정량은 2.5만개 정도였지만 실제 일자리 창출 개수는 2.9만개로 목표 대비 추진율이 110.3%로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IV-108> 공익활동 참여인원 누적현황

(단위 : 개, %, 명)

2016	참여인원					참여비율				
	전체	노노케어	취약 계층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 전수활동	전체	노노케어	취약 계층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 전수활동
총계	326,643	92,443	17,417	199,781	17,002	(100)	(28.3)	(5.3)	(61.2)	(5.2)
서울	35,415	12,431	1,868	19,396	1,720	(10.8)	(13.4)	(10.7)	(9.7)	(10.1)
부산	25,415	8,205	1,507	14,178	1,525	(7.8)	(8.9)	(8.7)	(7.1)	(9.0)
대구	16,127	5,709	1,736	8,066	616	(4.9)	(6.2)	(10.0)	(4)	(3.6)
인천	21,013	5,450	2,357	12,088	1,118	(6.4)	(5.9)	(13.5)	(6.1)	(6.6)
광주	10,287	2,593	478	6,793	423	(3.1)	(2.8)	(2.7)	(3.4)	(2.5)
대전	11,208	3,485	714	6,524	485	(3.4)	(3.8)	(4.1)	(3.3)	(2.9)
울산	5,995	1,515	12	4,000	468	(1.8)	(1.6)	(0.1)	(2.0)	(2.8)
세종	2,192	559	235	1,308	90	(0.7)	(0.6)	(1.3)	(0.7)	(0.5)
경기	42,576	9,977	1,739	28,252	2,608	(13.0)	(10.8)	(10.0)	(14.1)	(15.3)
강원	22,773	4,697	544	16,670	862	(7.0)	(5.1)	(3.1)	(8.3)	(5.1)
충북	15,493	7,999	1,661	5,412	421	(4.7)	(8.7)	(9.5)	(2.7)	(2.5)
충남	14,869	4,466	467	8,648	1,288	(4.6)	(4.8)	(2.7)	(4.3)	(7.6)
전북	22,875	4,874	784	15,991	1,226	(7.0)	(5.3)	(4.5)	(8.0)	(7.2)
전남	24,619	6,860	449	15,810	1,500	(7.5)	(7.4)	(2.6)	(7.9)	(8.8)
경북	30,087	7,158	1,395	20,540	994	(9.2)	(7.7)	(8)	(10.3)	(5.8)
경남	19,823	5,021	910	12,759	1,133	(6.1)	(5.4)	(5.2)	(6.4)	(6.7)
제주	5,876	1,444	561	3,346	525	(1.8)	(1.6)	(3.2)	(1.7)	(3.1)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6) 2016년 노인일자리 통계동향

전라북도 노인일자리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익활동의 경우 총 22,875명이 참여하고 있고, 이중 공공시설 봉사가 1.6만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노노케어 4.8천개 그리고 경륜 및 전수활동 1.2천개 등의 순이었다. 참여비율을 보면, 노노케어의 경우 전라북도는 전체 노노케어 일자리의 5.3%를 차지하고 있고, 취약계층 지원의 경우 전체 노인일자리 참여인원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노인일자리 중 공익활동의 경우 공공봉사와 경륜전수활동 참여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공공봉사활동의 경우 전체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경륜전수활동의 경우 전체 경륜전수활동 참여자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정리하자면 전라북도의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공공시설봉사와 경륜전수활동이 다른 공익활동 노인일자리보다도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인다.

<표IV-109> 시장형 사업단 참여인원 누적현황

	참여인원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전문서비스형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계	77,734	(100.0)	10,665	(13.7)	14,093	(18.1)	52,976	(68.2)
서울	16,959	(100.0)	1,044	(6.2)	1,491	(8.8)	14,424	(85.1)
부산	4,834	(100.0)	1,297	(26.8)	1,846	(38.2)	1,691	(35.0)
대구	3,933	(100.0)	333	(8.5)	667	(17.0)	2,933	(74.6)
인천	7,350	(100.0)	1,052	(14.3)	673	(9.2)	5,625	(76.5)
광주	4,661	(100.0)	297	(6.4)	610	(13.1)	3,754	(80.5)
대전	1,818	(100.0)	261	(14.4)	651	(35.8)	906	(49.8)
울산	1,890	(100.0)	83	(4.4)	228	(12.1)	1,579	(83.5)
경기	6,306	(100.0)	1,758	(27.9)	2,149	(34.1)	2,399	(38.0)
강원	3,041	(100.0)	1,039	(34.2)	1,467	(48.2)	535	(17.6)
충북	3,487	(100.0)	408	(11.7)	626	(18.0)	2,453	(70.3)
충남	3,450	(100.0)	657	(19.0)	697	(20.2)	2,096	(60.8)
전북	5,270	(100.0)	689	(13.1)	746	(14.2)	3,835	(72.8)
전남	4,640	(100.0)	508	(10.9)	618	(13.3)	3,514	(75.7)
경북	3,507	(100.0)	519	(14.8)	937	(26.7)	2,051	(58.5)
경남	5,101	(100.0)	531	(10.4)	571	(11.2)	3,999	(78.4)
제주	1,447	(100.0)	177	(12.2)	98	(6.8)	1,172	(81.0)
세종	40	(100.0)	12	(30.0)	18	(45.0)	10	(25.0)
전국-전북				▼0.6		▼3.9		▲4.6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6) 2016년 노인일자리 통계동향

전라북도의 시장형 사업단의 참여인원을 보면, 전라북도의 시장형 일자리 사업의 참여자는 5,270명으로 전체 시장형 사업단 참여인원인 77,734명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시장형 사업단 일자리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전문서비스형이 3,835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제조판매형 746명 그리고 공동작업형 689명 등의 순이었다.

시장형 사업단의 참여 구성비로 보면, 전문서비스형이 72.8%를 차지하고 있고, 제조판매형 14.2%, 그리고 공동작업형 13.1% 등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라북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문서비스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제조판매형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공공형은 재원의 문제로 인해 확대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형 일자리 사업의 확대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전라북도의 시장수요에 맞는 노인 적합 일자리를 창출하여 노인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표IV-110> 원하는 희망근로 종류

구분	취업	창업	사회적 일자리	취미생활을 통한 일자리	기타	관계 없음
서울	11.18	1.07	1.88	3.06	0.11	82.70
부산	12.45	0.77	5.01	4.11	0.26	77.41
대구	5.15	0.41	1.24	1.44		91.75
대전	8.28		0.42	0.42		90.87
인천	6.15		0.38	0.77	0.00	92.69
광주	5.08		0.39	1.95		92.58
울산	7.24	0.66	1.97	0.00		90.13
경기	7.41	0.25	1.49	1.29	0.10	89.45
강원	4.12	0.48	0.73	0.24	0.24	94.19
충북	2.88	0.00	1.05	1.05		95.03
충남	3.11		0.35	0.35		96.20
전북	4.89	0.38	0.56	1.88	0.19	92.11
전남	3.51		0.32	0.32		95.85
경북	3.87	0.90	1.55	0.52		93.16
경남	6.81	0.41	2.04	2.32		88.42
제주	4.55		0.76	0.76		93.94
전체	7.06	0.46	1.52	1.65	0.08	89.23
전국-전북	▼2.17	▼0.08	▼0.96	▲0.23	▲0.11	▲2.88

자료 : 한국노동패널 18차 원자료 분석

한편, 전라북도 노인의 경우 원하는 희망근로의 종류에서는 취업을 통한 경제 활동참여를 가장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취미생활을 통한 일자리 1.88%, 사회적 일자리 0.56% 등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라북도 노인 중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싶은 의향이 있는 노인은 전체 노인의 19.17%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다소 일자리 참여욕구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IV-111> 노인일자리 참여의향

구분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전국 전북
참여하 고 싶다	24.49	25.13	14.43	17.20	12.64	17.58	22.22	16.92	13.56	7.83	9.69	19.17	16.43	14.29	18.50	20.61	17.95	▲ 1.22
참여 하고 싶지 않다	74.54	70.26	82.89	81.10	85.82	80.86	77.78	82.08	84.02	90.08	88.75	80.08	83.41	84.81	78.10	74.81	80.40	▼ 0.32

자료 : 한국노동패널 18차 원자료 분석

<표IV-112> 노인취업알선 실적

구 분	계			장기취업			단기취업		
	알선	취업	비율	알선	취업	비율	알선	취업	비율
전체	54,971	25,264	46.0	38,842	18,951	48.8	16,129	6,313	39.1
서울	7,560	2,372	31.4	5,279	1,779	33.7	2,281	593	26.0
부산	2,783	1,550	55.7	1,949	1,162	59.6	834	388	46.5
대구	2,348	1,063	45.3	1,410	798	56.6	938	265	28.3
인천	1,855	654	35.3	1,600	490	30.6	255	164	64.3
광주	665	329	49.5	473	247	52.2	192	82	42.7
대전	943	490	52.0	683	367	53.7	260	123	47.3
울산	1,257	770	61.3	809	578	71.4	448	192	42.9
세종	305	95	31.1	221	71	32.1	84	24	28.6
경기	16,124	6,362	39.5	11,361	4,772	42.0	4,763	1,590	33.4
강원	2,806	1,454	51.8	2,016	1,090	54.1	790	364	46.1
충북	2,394	1,356	56.6	1,704	1,017	59.7	690	339	49.1
충남	2,463	1,377	55.9	1,860	1,033	55.5	603	344	57.0
전북	2,538	1,101	43.4	1,606	826	51.4	932	275	29.5
전남	3,310	1,872	56.6	2,229	1,405	63.0	1,081	467	43.2
경북	3,655	1,980	54.2	2,723	1,486	54.6	932	494	53.0
경남	3,135	2,055	65.6	2,304	1,542	66.9	831	513	61.7
제주	830	384	46.3	615	288	46.8	215	96	44.7
전국·전북			▼2.60			▲2.60			▼9.60

자료 : 보건복지부(2017) 2017 보건복지통계연보 2016년 12월 기준

전라북도의 노인 취업알선 현황을 보면, 2016년 기준 알선건수는 2,538건이고 이중 취업자는 1,101명이었다. 노인취업자의 취업형태는 장기취업자가 826명, 단기취업자가 275명으로 단기취업자보다는 안정적인 장기취업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의 장기취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75%로 전국 평균수준이다. 노인 취업알선대비 취업성공자의 비율은 전라북도의 경우 43.4%로 전국 평균인 46.0%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한편, 장기취업자의 취업연계율은 51.4%, 단기취업자의 취업연계율은 29.5%로 단기취업보다는 단기취업의 연계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취업알선건수에 비해서 취업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은 향후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전체 취업자 중에서도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단기취업자보다는 적정임금의 안정적인 고용환경이 보장되는 장기취업자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표IV-113>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2016년 기준)

(단위 : 명)

구분	총 참여자 수	보 건 복 지 부											고용 노동부	
		계	자활근로						창업지원		희망 키움 통장 Ⅰ	희망 키움 통장 Ⅱ		희망 키움 통장 Ⅲ
			소계	시장 진입형	사회 서비스 일자리	인턴형	근로 유지형	소계	자활 기업					
전체	99,574	69,925	39,150	7,784	19,771	3,552	8,043	4,662	4,662	3,027	18,460	4,626	29,649	
서울	20,383	12457	8,514	928	4,197	573	2,816	768	768	428	2,211	536	7,926	
부산	9,519	6646	4,059	829	2,062	416	752	509	509	391	1,240	447	2,873	
대구	6,770	3986	2,299	301	1,130	169	699	255	255	222	1,001	209	2,784	
인천	6,390	4820	2,478	684	1,090	345	359	215	215	201	1,520	406	1,570	
광주	6,523	4514	2,670	483	1,301	446	440	304	304	312	852	376	2,009	
대전	2,867	2541	1,263	132	669	252	210	250	250	144	759	125	326	
울산	1,323	1023	419	163	243	6	7	85	85	31	442	46	300	
세종	240	189	105	19	71	6	9	13	13	9	46	16	51	
경기	15,115	10385	4,163	1,124	2,193	345	501	435	435	494	4,595	698	4,730	
강원	3,662	2896	1,812	302	1,181	131	198	115	115	114	538	317	766	
충북	2,685	1921	890	194	570	29	97	208	208	82	603	138	764	
충남	3,028	2250	1,103	310	547	107	139	117	117	104	713	213	778	
전북	5,569	4288	2,412	702	1,082	153	475	514	514	132	926	304	1,281	
전남	4,318	3542	2,388	593	1,014	257	524	224	224	79	571	280	776	
경북	4,915	3421	2,023	409	1,113	122	379	222	222	151	771	254	1,494	
경남	5,047	4027	1,999	522	1,019	154	304	367	367	83	1,373	205	1,020	
제주	1,220	1019	553	89	289	41	134	61	61	50	299	56	201	

자료 : 보건복지부(2017) 2017 보건복지통계연보 2016년 말 통계

근로빈곤층의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자활사업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전라북도의 자활사업 참여자는 4,318명으로 이중 자활근로 참여자는 2,412명, 창업지원으로서 자활기업 참여자는 514명이다. 여기에 희망키움통장은 1,362명이고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취업패키지 사업은 1,281명이 참여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경우 전체 자활사업 중 자활근로 사업자의 참여의 비율이 43.3%를 차지하고 있고 탈빈곤으로 해석되는 자활기업 참여자는 9.2% 수준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라북도의 자활사업 참여자는 대부분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의 취업패키지도 전체 자활참여자의 23.0%정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사업의 경우 탈빈곤이 정책목표인 만큼 자활사업 참여자가 자활기업을 통한 탈빈곤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표IV-114> 일자리영역 주요지표 비교

시도별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장애인 고용률	노인일자리 사업추진율	노인일자리 참여의향	노인취업알선 성공률
전국	63.2	3.7	60.8	2.66	102.7	18.0	46.0
서울	63.1	4.5	60.2	2.38	90	24.5	31.4
부산	59.0	4.6	56.3	3.38	110	25.1	55.7
대구	61.2	4.0	58.8	3.19	105.5	14.4	45.3
인천	60.8	2.9	59.0	3.18	108	12.6	35.3
광주	61.0	3.4	58.9	3.25	102.3	17.6	49.5
대전	64.7	4.6	61.7	2.97	99.5	17.2	52.0
울산	61.9	3.5	59.8	2.56	101.1	22.2	61.3
세종	62.7	2.3	61.2	2.67	97.3		31.1
경기	64.6	3.9	62.1	2.59	99.9	16.9	39.5
강원	62.6	2.6	61.0	3.52	120.4	13.6	51.8
충북	64.0	2.2	62.6	2.81	102.1	7.8	56.6
충남	64.1	2.8	62.3	2.62	95.2	9.7	55.9
전북	60.1	2.5	58.6	3.28	110.5	19.2	43.4
전남	64.1	3.2	62.1	2.88	100.3	16.4	56.6
경북	64.2	2.8	62.5	2.76	113.5	14.3	54.2
경남	62.7	2.9	60.9	2.86	99.9	18.5	65.6
제주	72.3	1.9	70.9	3.16	99.8	20.6	46.3
전국-전북	▼3.1	▼1.2	▼2.2	▲0.62	▲7.8	▲1.2	▼2.6

전라북도 일자리영역의 주요 지표 중 전국평균보다 낮은 지표로는 먼저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북이 60.1%로 전국 평균 63.2% 보다 약 3.1%p 낮게 나타났고 고용률 또한 전북 58.6%로 전국 평균 60.8%에 비해 약 2.2%가 더 낮게 나타났다. 한편, 실업률의 경우 전북이 2.5%로 전국평균 3.7%보다 1.2%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율의 경우 전북이 110.5%로 전국 평균 102.7%보다 약 7.8%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강원 120.4%, 경북 113.5%에 이어 17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추진율과 노인일자리참여의향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전북의 수치가 더 높은 반면 노인의 취업알선 성공률은 43.4%로 전국 평균 46.0%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노인의 취업지원에 대해 정책적으로 보완이 된다면 전라북도의 노인 일자리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5) 복지전달체계 분야 기준선 현황

복지전달체계 분야에서는 무엇보다도 공적 전달체계로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현황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정원 1,133명이고 현원은 1,095명으로 정원대비 현원의 비율은 96.7%이다. 전라북도의 기초생활수급가구가 약 60,394명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명당 55.2가구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명당 담당가구수는 전국 평균인 53.8가구보다 많은 수준이고 광역도 지역에서는 제주(64.0가구) 다음으로 가장 많은 가구수를 담당하고 있다.

<표V-115>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정 원	현 원	기초수급 가구	담당 가구수	사회복지사		
					1급	2급	3급
전체	20,307	19,263	1,035,435	53.8	12,370	6,819	69
서울	3,810	3,614	173,675	48.1	2,225	1,380	9
부산	1,395	1,356	99,909	73.7	882	471	3
대구	956	953.5	66,472	69.7	612	338.5	2
인천	864	844	61,918	73.4	535	302	7
광주	609	582	39,316	67.6	344	238	-
대전	486	474	32,729	69.0	348	126	-
울산	304	299	12,538	41.9	183	116	-
세종	68	68	2,509	36.9	47	21	-
경기	3,341	3,094	168,333	54.4	1,991	1,092	11
강원	928	878	40,244	45.8	549	323	6
충북	674	669	33,112	49.5	455	212	2
충남	1,048	985	39,798	40.4	632	346	7
전북	1,133	1,095	60,394	55.2	783	304	6
전남	1,506	1,338	52,818	39.5	786	548	4
경북	1,495	1,451	68,732	47.4	956	485	10
경남	1,466	1,349	69,276	51.4	936	409	2
제주	224	213.5	13,662	64.0	106	107.5	-
전국·전북				▲1.40			

자료 : 보건복지부(2017) 2017 보건복지통계연보 2016년 말 통계 재구성

<표IV-116> 사회복지자원봉사 현황

(단위 : 명)

구분	관리 센터 (개소)	관리 요원(명)	등록 자원봉사자 (명)	활동 자원봉사자1) (명)	자원봉사 등록률	자원봉사 활동율	봉사 단체수(개)
전체	12,922	44,482	7,381,923	1,401,996	14.3	2.7	17,849
서울	1,854	8,125	1,753,100	385,194	17.7	3.9	2,409
부산	751	2,450	417,343	75,738	11.9	2.2	1,073
대구	508	1,922	307,582	57,186	12.4	2.3	814
인천	651	1,757	315,729	60,630	10.7	2.1	842
광주	889	2,470	410,425	71,872	27.9	4.9	665
대전	677	2,556	310,481	53,527	20.5	3.5	540
울산	331	1,371	231,830	50,438	19.8	4.3	1,430
세종	47	119	25,261	3,430	10.4	1.4	63
경기	1,977	7,006	1,133,079	194,465	8.9	1.5	2,455
강원	532	1,818	248,967	38,305	16.1	2.5	397
충북	502	1,441	197,980	29,360	12.4	1.8	320
충남	776	2,177	351,579	65,800	16.8	3.1	581
전북	566	2,247	269,693	43,371	14.5	2.3	853
전남	932	2,266	411,679	80,497	21.6	4.2	710
경북	862	2,778	388,315	68,445	14.4	2.5	1,553
경남	756	2,657	475,266	94,948	14.1	2.8	1,876
제주	311	1,322	133,614	28,790	20.8	4.5	1,268
전국-전북					▲6.5	▲1.8	

자료 : 보건복지부(2017) 2017 보건복지통계연보 2016년 말 통계 재구성

다음으로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인적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련 자원현황을 보면,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센터는 전북이 566개소이고 이곳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269,693명이다. 자원봉사 등록자 중에서 활동하고 있는 봉사자는 43,371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등록율은 14.5%이고 전체 인구대비 활동율은 2.3%수준이다.

전라북도의 자원봉사 등록율은 전국 평균인 14.3%와 유사한 수준이고 자원봉사 활동율은 2.7%로 전라북도의 자원봉사활동율인 2.3%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전라북도의 사회복지에 대한 민간 자원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복지의 중요한 인적 자원인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지만 활동을 하지 않는 자원봉사 등록자에 대해서는 자원봉사활동 유인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강구되어야 한다.

<표IV-117> 아동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계(현원)		양육시설		보호치료 시설		자립지원 시설		일시보호 시설		종합시설		아동 상담소	전 용 시설	개인양육 시설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계	281	13,689	243	12,448	11	485	12	230	12	356	3	170	5	5	17	132
서울	49	2,975	36	2,453	3	158	3	83	5	134	2	147	0	0	1	8
부산	21	1,242	19	1,214	0	0	1	24	1	4	0	0	0	0	0	0
대구	23	759	18	655	2	46	2	38	1	20	0	0	0	0	0	0
인천	10	571	9	535	0	0	0	0	1	36	0	0	5	1	0	0
광주	12	596	10	537	0	0	1	18	1	41	0	0	0	1	0	0
대전	14	527	12	397	1	116	1	14	0	0	0	0	0	0	0	0
울산	1	121	1	121	0	0	0	0	0	0	0	0	0	0	0	0
세종	1	37	1	37	0	0	0	0	0	0	0	0	0	0	0	0
경기	29	1,457	26	1,315	1	36	0	0	2	106	0	0	0	0	5	53
강원	10	367	8	329	0	0	0	0	1	15	1	23	0	0	3	20
충북	13	577	11	529	1	34	1	14	0	0	0	0	0	2	1	2
충남	14	635	13	617	0	0	1	18	0	0	0	0	0	0	0	0
전북	16	754	14	675	1	65	1	14	0	0	0	0	0	0	0	0
전남	23	1,134	21	1,108	1	19	1	7	0	0	0	0	0	0	2	11
경북	15	744	15	744	0	0	0	0	0	0	0	0	0	0	3	18
경남	25	927	24	916	1	11	0	0	0	0	0	0	0	1	1	3
제주	5	266	5	266	0	0	0	0	0	0	0	0	0	0	1	17

자료 : 보건복지부(2017) 아동복지시설 일람표 2016년 말 기준

<표IV-118> 아동복지시설 정원 및 현원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계(현원)		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일시보호시설		종합시설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계	18,222	13,689	16,188	12,448	643	485	367	230	799	356	225	170
서울	3,942	2,975	2,955	2,453	175	158	100	83	522	134	190	147
부산	1,529	1,242	1,485	1,214	0	0	29	24	15	4	0	0
대구	1,144	759	982	655	72	46	60	38	30	20	0	0
인천	679	571	629	535	0	0	0	0	50	36	0	0
광주	731	596	651	537	0	0	30	18	50	41	0	0
대전	796	527	612	397	150	116	34	14	0	0	0	0
울산	150	121	150	121	0	0	0	0	0	0	0	0
세종	48	37	48	37	0	0	0	0	0	0	0	0
경기	1,664	1,457	1,522	1,315	40	36	0	0	102	106	0	0
강원	550	367	485	329	0	0	0	0	30	15	35	23
충북	832	577	772	529	36	34	24	14	0	0	0	0
충남	825	635	795	617	0	0	30	18	0	0	0	0
전북	892	754	792	675	70	65	30	14	0	0	0	0
전남	1,675	1,134	1,575	1,108	70	19	30	7	0	0	0	0
경북	1,121	744	1,121	744	0	0	0	0	0	0	0	0
경남	1,356	927	1,326	916	30	11	0	0	0	0	0	0
제주	288	266	288	266	0	0	0	0	0	0	0	0

자료 : 보건복지부(2017) 아동복지시설 일람표 2016년 말 기준

전라북도의 아동복지시설은 총 16개소가 있으며 시설유형별로는 양육시설이 14개소로 가장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보호치료시설과 자립지원시설이 각 1개소씩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다.

아동복지시설의 전라북도 정원은 총 892명, 현원은 754명으로 정원대비 현원 충족률이 84.5%로 전국 평균 75.1%보다 9.4%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시설의 정원 충족률은 85.2%, 보호치료시설은 92.9%, 자립지원시설 46.7%의 충족률로 보호치료시설의 충족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표IV-119>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시설수	종사자수	정원	수용인원			아동현황							
				계	남	여	계	미취학		초등재	중재	고재	대재	기타
								0~3세	3~6세					
계	510	1,514	3,513	2,758	1,444	1,314	2,758	60	368	878	701	613	101	37
서울	60	171	411	312	147	165	312	9	37	94	66	79	17	10
부산	35	106	244	176	97	79	176	2	15	57	42	48	7	5
대구	15	46	99	80	53	27	80	0	6	32	13	24	3	2
인천	16	48	112	90	47	43	90	3	8	35	20	17	6	1
광주	28	88	195	169	84	85	169	11	39	60	37	18	4	0
대전	17	53	117	101	56	45	101	2	17	28	26	19	7	2
울산	8	23	53	44	35	9	44	0	7	24	5	7	1	0
세종	1	3	7	5	0	5	5	0	0	3	2	0	0	0
경기	129	386	890	741	402	339	741	9	121	237	193	162	11	8
강원	23	71	158	124	46	78	124	3	14	34	38	26	4	5
충북	27	85	188	135	63	72	135	2	11	49	37	31	5	0
충남	25	74	175	126	66	60	126	3	12	34	40	26	10	1
전북	46	131	310	234	115	119	234	3	18	68	77	62	5	1
전남	36	102	251	187	109	78	187	1	20	55	43	54	13	1
경북	13	40	88	70	38	32	70	4	13	24	18	10	1	0
경남	26	71	182	137	78	59	137	8	23	35	40	25	5	1
제주	5	16	33	27	8	19	27	0	7	9	4	5	2	0

자료 : 보건복지부(2017) 아동복지시설 일람표 2016년 말 기준

전라북도의 아동공동생활가정은 총 46개소로 234명이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에 재학중인 아동이 77명으로 가장 많았다.

<표IV-120> 사회복지관 수

(단위 : 개수)

구분	계	사회복지 법인	비영리 법인	학교 법인	지방자치 단체	전체 인구	인구십만명당 복지관 개수
전체	460	325	79	27	29	51,696,216	0.890
서울	98	76	11	11	-	9,930,616	0.987
부산	53	41	7	5	-	3,498,529	1.515
대구	26	24	2	-	-	2,484,557	1.046
인천	20	12	7	1	-	2,943,069	0.680
광주	18	14	2	-	2	1,469,214	1.225
대전	21	17	3	1	-	1,514,370	1.387
울산	8	5	-	-	3	1,172,304	0.682
세종	2	1	1	-	-	243,048	0.823
경기	77	53	16	7	1	12,716,780	0.605
강원	18	14	1	-	3	1,550,806	1.161
충북	13	9	3	-	1	1,591,625	0.817
충남	19	12	3	-	4	2,096,727	0.906
전북	17	16	1	-	0	1,864,791	0.912
전남	15	4	9	1	1	1,903,914	0.788
경북	16	11	3	-	2	2,700,398	0.593
경남	30	8	9	1	12	3,373,871	0.889
제주	9	8	1	-	-	641,597	1.403
전국·전북							▲0.022

자료 : 보건복지부(2017) 2017 보건복지통계연보 2016년 말 통계 재구성

다음으로 전라북도의 사회복지관은 2016년 말 현재 17개소이고 운영형태를 보면 사회복지법인인 16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비영리 법인 1개소 등이다. 전라북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영을 하고 있는 복지관이 아직까지는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총 460개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중인 복지관은 29개소로 전체 복지관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전라북도는 전체 인구 10만명당 0.912개소로 전국 평균 인구 십만명당 개수인 0.890개수보다도 많다. 광역도의 인구당 복지관 설치 개수를 보면, 제주도가 1.403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강원 1.161개소, 그리고 다음으로 전북 0.912개소로 광역도 지역에서는 인구당 복지관 설치개수가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라북도의 복지관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지만 대부분 복지관이 전주, 군산, 익산 등 대도시에 집중되고 있어 도시와 농촌간 복지관 인프라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표IV-121>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수)

구분	합 계		등록 장애인	장애인 시설 이용율	유형별 현황				
	시설수	이용인원			보호작업	근로사업	직업적응훈련	작업활동	직업훈련
전체	582	17,131	2,511,051	0.68	177	24	-	107	11
서울	124	4,081	391,027	1.04	189	29	-	109	12
부산	32	944	168,950	0.56	212	31	-	108	13
대구	39	1,047	117,111	0.89	250	33	-	90	13
인천	28	854	135,623	0.63	373	44	-	-	-
광주	22	677	68,569	0.99	403	53	-	-	-
대전	19	543	71,425	0.76	422	56	-	-	-
울산	14	289	49,533	0.58	447	64	-	-	-
세종	3	77	9,845	0.78	477	64	-	-	-
경기	98	2,960	522,437	0.57	496	64	-	-	-
강원	33	778	98,928	0.79	516	63	3	-	-
충북	21	760	94,688	0.80	111	12	1	-	-
충남	18	587	126,406	0.46	30	2	-	-	-
전북	19	504	130,345	0.39	33	6	-	-	-
전남	17	402	141,578	0.28	24	4	-	-	-
경북	38	1,136	169,643	0.67	18	4	-	-	-
경남	48	1,142	180,665	0.63	15	3	1	-	-
제주	9	350	34,278	1.02	13	1	-	-	-
전국-전북				▼0.29					

자료 : 보건복지부(2017) 2017 보건복지통계연보 2016년 말 통계 재구성

전라북도의 장애인복지시설은 2016년 말 기준 19개소이고 이중 이용인원은 총 504명이다. 등록장애인의 복지시설 유형별 이용현황을 보면, 보호작업장이 33개소, 근로사업 6개소 등이다.

전라북도의 장애인거주시설의 거주인원은 전체 등록장애인 13.0만명 중 0.39%를 차지하고 있다. 전라북도 장애인거주시설의 이용율은 전국 평균 이용율인 0.68%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광역도 지역만을 놓고 보면, 장애인시설 이용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로 전체 등록장애인의 1.02%가 장애인거주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다음으로 충북 0.80%, 강원도 0.79%, 경북 0.67% 등의 순이다. 전라북도의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인 인구기준으로는 상대적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지만 이용인원은 장애인 인구기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표V-12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현황

(단위 : 개수)

구 분	지역사회재활시설 현황							등록 장애인	등록장애인 천명당 지역재활 시설 수	의료재활 시설
	계	복지관	주간보호 시설	체육관	생활이동 지원센터	수화통역 센터	기타			
전체	1,303	231	663	34	159	194	22	2,511,051	0.519	19
서울	200	46	117	7	1	26	3	391,027	0.511	6
부산	77	14	55	1	1	5	1	168,950	0.456	1
대구	55	6	41	2	1	4	1	117,111	0.470	1
인천	48	10	34	1	1	1	1	135,623	0.354	2
광주	38	7	28	1	1	1	-	68,569	0.554	-
대전	57	7	40	3	1	5	1	71,425	0.798	2
울산	41	4	32	2	1	1	1	49,533	0.828	-
세종	4	1	1	-	1	1	-	9,845	0.406	-
경기	216	32	113	4	31	31	5	522,437	0.413	-
강원	64	10	16	-	19	18	1	98,928	0.647	1
충북	50	12	15	1	11	10	1	94,688	0.528	1
충남	57	14	12	1	15	15	-	126,406	0.451	1
전북	76	12	29	3	15	15	2	130,345	0.583	-
전남	78	18	25	2	15	17	1	141,578	0.551	-
경북	114	20	40	4	24	24	2	169,643	0.672	1
경남	102	13	47	2	20	19	1	180,665	0.565	2
제주	26	5	18	-	1	1	1	34,278	0.759	1
전국·전북									▲0.064	

자료 : 보건복지부(2017) 2017 보건복지통계연보 2016년 말 통계

장애인의 여가문화 및 돌봄과 일상생활 지원 등의 사업을 제공하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총 76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이중 복지관 12개소, 주간보호시설 29개소, 체육관 3개소, 생활지원센터 15개소, 수화통역센터 15개소 등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전국에 총 19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전라북도는 아직까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전라북도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은 등록장애인인구 천명당 0.58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이는 전국 등록장애인 천명당 평균 지역재활시설인 0.519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전라북도의 경우 등록장애인의 인구가 유사한 충남과 비교시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월등히 많이 설치되어 있다.

<표V-123> 아플 때 병원을 미이용 경험

지역	가지못한 경험		가지못한 이유								
	있음	없음	경제적 이유	예약 어려워	교통 불편	진료 시간 안맞음	오랜 대기 싫어서	증상이 가벼움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의사 소통 어려움	기타
서울	20.1	79.9	70.0	1.5	12.0	7.5	1.0	2.5	1.0	1.5	3.0
부산	23.7	76.3	46.2	4.6	10.1	9.7	1.7	14.7	1.3	6.3	5.5
대구	14.0	86.0	61.9	2.9	0.7	12.9	2.9	7.2	0.0	0.0	11.5
인천	20.2	79.8	75.4	4.9	8.9	3.9	1.5	1.0	3.9	0.0	0.5
광주	14.4	85.6	52.1	6.8	14.4	4.8	0.0	2.7	4.8	14.4	0.0
대전	18.5	81.5	85.3	0.0	9.2	0.0	0.0	2.2	0.0	0.0	3.3
울산	23.8	76.2	52.9	0.0	15.1	12.2	2.5	6.3	2.9	1.3	6.7
경기	21.2	78.8	62.7	0.9	14.2	4.7	2.4	6.6	1.4	4.7	2.4
강원	10.5	89.5	44.7	1.0	35.0	3.9	9.7	0.0	5.8	0.0	0.0
충북	20.9	79.1	56.5	0.0	22.2	4.8	0.5	6.8	5.8	1.0	2.4
충남	26.6	73.4	53.9	1.1	27.7	5.2	4.1	2.6	0.0	4.1	1.1
전북	12.6	87.4	43.7	3.2	33.3	8.7	3.2	0.0	0.8	7.1	0.0
전남	12.7	87.3	34.9	0.8	13.5	2.4	5.6	7.9	7.1	25.4	2.4
경북	18.8	81.2	49.2	0.5	14.3	3.7	5.3	20.1	1.1	3.7	2.1
경남	19.6	80.4	54.8	2.5	14.2	8.6	1.5	7.6	1.5	5.6	3.6
제주	12.0	88.0	50.8	0.0	38.3	0.0	0.0	0.0	0.0	10.8	0.0
전체	19.1	80.9	58.3	2.1	15.1	6.3	2.6	6.3	2.1	4.7	2.6
전국-전북	▼6.5	▲6.5	▼14.6	▲1.1	▲18.2	▲2.4	▲0.6	▼6.3	▼1.3	▲2.4	▼2.6

자료 : 보건복지부(2015).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한편, 아플 때 병원을 가지 못한 장애인도 전라북도는 전체 장애인의 약 12.6% 정도 되고 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장애인의 19.1%정도가 아플 때 병원을 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보다는 전라북도의 병원 미이용비율이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아프지만 병원을 미용하지 못한 장애인은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의 경우 아플 때 병원을 이용하지 못한 장애인 중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을 가지 못한 사유가 43.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교통의 불편 33.3%, 진료시간이 맞지 않아서 8.7%, 그리고 의사소통의 어려움 7.1% 등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과 교통의 불편함이 장애인의 병원 이용을 제약하는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경우 일상생활의 장애로 인해 비장애인보다도 의료적인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병원이용의 제약은 향후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IV-124> 최근 1년간 치과진료 가지 못한 경험

지역	가지못한 경험		가지못한 이유								
	있음	없음	경제적 이유	예약 어려워	교통 불편	진료 시간 안맞음	오랜 대기 싫어서	증상이 가벼움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의사 소통 어려움	기타
서울	27.7	72.3	78.0	.2	4.6	3.5	.5	7.3	1.5	1.2	3.3
부산	24.6	75.4	79.8	1.1	5.7	3.0		2.7		3.5	4.2
대구	23.1	76.9	81.0		2.4	.9	1.1	8.7	2.0		4.0
인천	28.3	71.7	87.7			.3	2.0	3.7	4.6		1.6
광주	28.9	71.1	87.2		6.8		1.2		3.6	1.2	
대전	28.2	71.8	87.4	2.9	1.2	1.7		2.5		3.6	.7
울산	27.7	72.3	71.3			9.0		7.2	1.2		11.4
경기	27.8	72.2	85.7	1.1	2.0	2.5	.5	3.3	1.2	2.6	1.3
강원	20.0	80.0	75.3		11.4	4.8	5.4	1.2	1.9		
충북	21.8	78.2	86.0	1.6	5.7	.5	2.3	2.1	1.5	.3	
충남	32.9	67.1	79.1	.3	10.1	1.3	3.3	3.6		2.3	
전북	28.1	71.9	70.0	1.5	4.9	3.7	2.3	10.4	1.0	4.2	2.2
전남	28.2	71.8	66.7	.2	7.2	.3	2.9	12.9		8.3	1.4
경북	28.5	71.5	82.6	.3	6.6	.4	.5	7.9	.5		1.3
경남	26.0	74.0	68.2	2.9	5.4	5.5	4.2	7.0	1.9	1.9	3.0
제주	13.3	86.7	94.6		5.4						
전체	26.9	73.1	79.7	.8	4.6	2.4	1.4	5.6	1.3	2.1	2.1
전국-전북	▲1.2	▼1.2	▼9.7	▲0.7	▲0.3	▲1.3	▲0.9	▲4.8	▼0.3	▲2.1	▲0.1

자료 : 보건복지부(2015).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장애인의 치과진료의 제약은 병원이용의 제약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치과진료를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장애인은 전국 평균 26.9%였고, 전라북도의 장애인은 28.1%였다. 치아가 아플 때 치과치료를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이유가 7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가벼운 증상 10.4%, 교통불편 4.9% 등의 순이었다.

치과진료는 다른 병의원의 이용보다도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이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장애인의 다수가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치과진료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술한 병원이용의 제약과 함께 장애인의 치과진료의 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치과진료의 높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장애인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치료의 지연에 따른 증상악화로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이다.

<표IV-125> 노인복지 이용시설 현황

(단위 : 개수)

구분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인복지관) (a)	노인보호 전문기관 (b)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c)	전체 (d)=(a)+(b)+(c)	전체 노인인구 (e)	노인천명당 이용시설 수 (d/e)	노인재가 복지시설
전체	350	29	136	515	6,869,011	0.075	3,168
서울	76	2	7	85	1,252,563	0.068	507
부산	25	2	16	43	546,797	0.079	195
대구	15	2	8	25	320,834	0.078	163
인천	17	1	1	19	312,871	0.061	123
광주	8	1	5	14	166,389	0.084	197
대전	7	1	5	13	165,528	0.079	113
울산	12	1	4	17	102,503	0.166	52
세종	-	-	-	0	22,168	0.000	8
경기	56	3	16	75	1,394,655	0.054	518
강원	13	3	13	29	261,785	0.111	182
충북	16	2	11	29	232,592	0.125	82
충남	15	2	10	27	341,214	0.079	103
전북	23	2	13	38	331,268	0.115	214
전남	29	2	6	37	391,837	0.094	258
경북	17	2	12	31	479,634	0.065	199
경남	19	2	7	28	460,480	0.061	211
제주	2	1	2	5	85,893	0.058	43
전국-전북						▲0.040	

자료 : 보건복지부(2017) 2017 보건복지통계연보 2016년 말 통계 재구성

한편, 전라북도의 노인복지 이용시설 현황을 보면, 노인복지관이 23개소 설치되어 있고,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13개소 등 총 38개의 노인복지 이용시설이 설치 운영중에 있다. 노인재가복지시설은 총 214개소가 설치 운영중에 있다.

한편, 전라북도의 전체 노인인구 천명당 노인복지 이용시설은 0.115개소로 전국 평균인 0.075개소보다도 많다. 특히 전라북도는 노인복지 이용시설 중에서도 노인복지관과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설치되어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천명당 노인복지 이용시설은 광역도 단위에서는 충청북도가 0.125개소로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고, 다음으로 전라북도(0.115개소), 강원(0.111개소) 등의 순이다. 전라북도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도 전주시에 노인복지관이 6개소가 집중되어 있다.

<표IV-126> 정신요양시설 및 입소자 수(2016. 12월 기준)

구분	시설수	성별 (남)	성별 (여)	연령 (18세 미만)	연령 (18세 이상)	정신 분열증	우울증	간질	정신 지체	노인성 약물 중독 및 기타
서울	3	291	396	0	687	598	0	43	32	14
부산	3	233	287	0	520	437	0	7	30	46
대구	3	236	190	0	426	393	2	4	17	10
인천	2	113	82	0	195	180	0	0	7	8
광주	4	241	345	0	586	469	2	2	90	23
대전	4	350	261	0	611	533	0	0	15	63
울산	1	74	48	0	122	92	0	0	11	19
세종	1	80	77	0	157	150	3	0	0	4
경기	6	821	588	0	1409	1207	5	5	136	56
강원	0	0	0	0	0	0	0	0	0	0
충북	4	452	382	0	834	670	6	6	108	44
충남	10	758	488	1	1245	1141	8	3	25	69
전북	4	454	293	0	747	657	4	1	3	82
전남	4	520	299	0	819	677	0	4	94	44
경북	5	600	350	1	949	503	4	5	56	382
경남	4	434	254	0	688	562	19	4	31	72
제주	1	118	66	0	184	181	1	0	0	2

자료 : 공공데이터 포털(2016. 12 기준)

전라북도의 정신요양시설은 총 4개소가 있으며 입소 인원은 남성이 454명, 여성이 293명으로 총 747명이 입소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입소유형별로는 정신분열 입소자가 657명으로 가장 많았고, 노인성 약물중독 및 기타 입소자가 8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의 사회복지시설을 유형별로 보게되면 아동복지시설이 349개소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노인의료복지시설 238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133개소 등의 순으로 설치되어 있었다.

시군별로 보게되면 전주시가 총 273개소로 가장 많은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익산시 182개소, 군산시 170개소, 정읍시 102개소 등의 순으로 전북의 주요 도심지역 위주로 복지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의 경우 아동복지시설 92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 45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34개소 등의 순으로 많았고, 익산시는 아동복지시설 54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 50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17개소 등의 순으로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V-127> 전라북도 지역사회복지시설 현황

구분	정신 재활 시설	정신 요양시설	재가 노인 복지시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자활시설	아동 복지시설	성폭력 피해보호 시설	다문화 가족 복지시설
전주시	7	1	34	4	22	13	5	92	6	1
군산시	2		18	1	14	3	2	61	4	1
익산시	5	1	17	4	11	12	2	54	1	1
정읍시	1		7	2	7	9	1	31	2	1
남원시	1	1	7		7	4	4	25	2	1
김제시	1		10	2	5	4	1	12	1	1
완주군	1	1	10	4	5	9	1	18		1
진안군	1		6	1	4	1	1	15		1
무주군			2	1	2	1	1	6		1
장수군	1		4	1	4	2	1	7		1
임실군	1		5	1	3	1	1	9		1
순창군			1		2	3	1	4		1
고창군			5		3	3	1	9		1
부안군			7	1	4	1	1	6	1	1
전체	21	4	133	22	93	66	23	349	17	14

<표V-128> 전라북도 지역사회복지시설 현황

구분	노인 주거복지 시설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 여가복지 시설	노숙인 복지시설	기타 복지시설	가정폭력 피해보호 시설	한부모 복지시설	청소년 복지시설
전주시	3	3	45	19	3	4	8	3	
군산시	2	1	30	8	1	16	3	2	1
익산시	4	2	50	8	1	4	4	1	
정읍시	1	1	16	15		7	1		
남원시	1	1	13	3		7	3		
김제시	5	1	20	3		6			
완주군	2	1	17	8		5		1	
진안군			9	6		4			
무주군		1	7	2					
장수군		1	5	3		6			
임실군		1	5	4		1			
순창군			4	2		1			
고창군	1		9	2		1			
부안군	1		8	6		1			
전체	20	13	238	89	5	63	19	7	1

전라북도의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은 2016년 기준 28.10%로 전국평균 31.02%에 비해 약 2.92%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는 전북의 복지예산 비중이 전국평균보다 높았으나 2010년을 기점으로 전국평균보다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전라북도의 복지예산비중은 2004년 17.75%에서 2016년 28.10%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IV-129> 사회복지예산 비율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국	13.58	14.73	16.46	18.14	20.61	23.98	24.55	24.89	25.62	28.21	30.64	31.27	31.02
서울	13.44	15.36	18.60	18.71	22.60	25.28	26.42	29.10	31.65	36.30	37.96	39.45	38.39
부산	19.14	21.48	25.60	28.14	30.12	33.90	33.16	33.08	35.11	35.42	38.52	40.22	40.59
대구	21.20	23.55	24.92	27.10	28.68	34.37	34.89	35.90	35.37	35.30	39.41	38.78	39.83
인천	15.70	16.92	20.36	21.96	23.92	26.84	29.62	30.79	32.16	31.92	36.43	36.59	37.60
광주	19.69	23.64	26.96	28.68	32.71	36.97	38.62	36.88	38.24	39.11	41.39	42.69	45.54
대전	17.95	20.00	22.31	25.41	29.66	32.94	34.34	34.94	36.53	38.76	41.46	41.59	41.10
울산	14.47	14.56	16.75	17.52	18.30	23.18	24.66	24.56	25.16	28.44	29.89	31.09	29.01
세종	-	-	-	-	-	-	-	-	18.89	20.34	17.02	18.81	17.28
경기	11.03	12.64	14.70	16.15	18.85	22.15	23.60	24.26	26.07	31.02	33.45	32.11	31.91
강원	10.47	11.29	9.08	14.34	16.71	19.07	19.07	19.50	19.49	19.92	22.57	22.93	21.68
충북	13.15	15.37	15.49	16.70	19.51	23.06	22.55	22.89	23.28	24.22	26.53	27.25	27.10
충남	11.88	12.27	14.22	15.44	17.72	21.12	20.35	20.56	19.82	22.54	24.12	24.56	24.37
전북	17.75	15.88	19.35	20.71	21.35	24.31	24.27	23.02	23.12	24.31	26.34	27.56	28.10
전남	13.37	13.55	14.95	15.56	17.11	19.06	19.18	18.75	17.57	20.20	22.54	24.06	23.48
경북	12.86	12.97	14.21	15.30	17.40	21.35	21.15	20.39	19.92	21.58	23.37	24.35	23.98
경남	11.49	12.20	13.35	15.31	17.87	21.65	22.06	21.77	22.36	24.27	26.57	27.24	27.12
제주	12.17	13.94	13.46	12.58	12.15	14.07	13.90	12.41	11.67	13.35	14.93	19.29	18.36
전국	▲	▲	▲	▲	▲	▲	▼	▼	▼	▼	▼	▼	▼
전북	4.17	1.15	2.89	2.57	0.74	0.33	0.28	1.87	2.50	3.90	4.30	3.71	2.92

한편, 전라북도의 세입예산규모는 총 97,842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중 지방교부세가 34,571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보조금이 30,706억원, 지방세 수입 17,859억원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IV-130> 지역별 세입예산(순계) 규모

(단위 : 억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99,613	107,917	75,103	93,242	42,364	40,330	41,998	11,957	387,701	95,219	74,264	102,535	97,842	120,359	156,047	142,182	42,859
지방세 수입	169,330	45,789	30,083	40,479	15,280	16,357	19,012	5,560	177,471	16,693	18,617	29,446	17,859	19,763	33,189	44,872	12,090
세외 수입	49,225	11,748	7,270	17,638	4,090	4,628	6,843	1,116	55,204	9,076	5,851	8,300	7,633	7,237	11,367	13,232	2,904
지방 교부세	2,597	8,583	9,755	7,924	6,988	5,910	3,150	905	24,305	37,968	23,469	29,355	34,571	45,087	51,613	33,354	11,849
조정 교부금	-	-	-	-	-	-	-	-	-	-	-	-	-	-	-	-	-
보조금	42,660	28,530	18,981	19,357	12,232	10,167	7,245	2,407	70,247	24,517	18,525	26,960	30,706	38,209	41,032	36,241	12,657
지방채	12,216	4,444	2,170	38	400	180	-	-	640	229	138	305	370	-	1,265	362	-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	23,584	8,822	6,844	7,806	3,375	3,088	5,748	1,969	59,834	6,737	7,663	8,169	6,703	10,065	17,581	14,120	3,358

주. 시도별규모=시도본청+시군구

<표IV-131> 복지전달체계영역 주요지표 비교

시도별	사회복지 공무원 담당가구수	자원봉사 등록률	자원봉사 활동률	인구당 사회복지관수 (십만명당)	장애인시설 이용률	장애인인구당 지역재활시설수 (천명당)	노인인구당 이용시설수 (천명당)	사회복지 예산비율
전국	53.8	14.3	2.7	0.890	0.68	0.519	0.075	31.02
서울	48.1	17.7	3.9	0.987	1.04	0.511	0.068	38.39
부산	73.7	11.9	2.2	1.515	0.56	0.456	0.079	40.59
대구	69.7	12.4	2.3	1.046	0.89	0.470	0.078	39.83
인천	73.4	10.7	2.1	0.680	0.63	0.354	0.061	37.60
광주	67.6	27.9	4.9	1.225	0.99	0.554	0.084	45.54
대전	69.0	20.5	3.5	1.387	0.76	0.798	0.079	41.10
울산	41.9	19.8	4.3	0.682	0.58	0.828	0.166	29.01
세종	36.9	10.4	1.4	0.823	0.78	0.406	0.000	17.28
경기	54.4	8.9	1.5	0.605	0.57	0.413	0.054	31.91
강원	45.8	16.1	2.5	1.161	0.79	0.647	0.111	21.68
충북	49.5	12.4	1.8	0.817	0.80	0.528	0.125	27.10
충남	40.4	16.8	3.1	0.906	0.46	0.451	0.079	24.37
전북	55.2	14.5	2.3	0.912	0.39	0.583	0.115	28.10
전남	39.5	21.6	4.2	0.788	0.28	0.551	0.094	23.48
경북	47.4	14.4	2.5	0.593	0.67	0.672	0.065	23.98
경남	51.4	14.1	2.8	0.889	0.63	0.565	0.061	27.12
제주	64.0	20.8	4.5	1.403	1.02	0.759	0.058	18.36
전국-전북	▲1.4	▲0.2	▼0.4	▲0.022	▼0.29	▲0.064	▲0.040	▼2.92

5

장

전라북도 복지기준선 설정

Jeonbuk Institute

-
1. 전라북도 복지기준선 설정 방향
 2. 소득분야 복지기준선 설정
 3. 돌봄 및 교육분야 복지기준선 설정
 4. 건강분야 복지기준선 설정
 5. 일자리 분야 복지기준선 설정
 6. 복지전달체계 분야 복지기준선 설정

V. 전라북도 복지기준선 설정

1. 전라북도 복지기준선 설정 방향

전라북도의 복지기준선의 분야별 목표를 설정해 보면, 우선 복지기준선은 복지정책이 추구하는 이상적 가치와 지역의 복지수요와 재정여건이라고 하는 현실적 여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다만, 복지기준선 설정과정에서 지역의 여건이 강조될 경우 복지정책의 본연의 가치인 국가책임과 평등의 이념이 배제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기본적인 정책지표로서의 기능이 상실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복지기준선 설정이 필요한 이유는 전라북도의 복지정책의 현실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궁극적으로 전라북도의 복지정책이 추진해야 할 정책의 기본선을 설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기준선은 지역성이라고 하는 현실적 가치 판단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모든 도민이 누려야 할 복지의 적정선을 설정하고 중장기적으로 이 같은 복지기준선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적 조치들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복지정책의 기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논리 때문에 복지기준선은 지역마다 매우 상이한 상태로 설정될 수 없고, 일정정도 국가 및 타지역의 공통분모가 존재할 수 있다. 다만, 복지기준선은 모든 지역이 합의가능한 최저선과 적정선이 있을 수 있지만 최저선에서 적정선을 이행하기 위한 과정이나 절차 그리고 시기는 지역마다 상이할 수 있다.

〈표V-1〉 전라북도 복지기준선의 분야별 목표

5대 분야	목표
소득분야	적정수준의 소득보장으로 인간다운 생활 보장
돌봄 및 교육분야	생애주기별 돌봄안전망 구축으로 행복한 지역사회 건인
건강 분야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건강한 삶 보호
고용 및 일자리 분야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
복지전달체계 분야	수요자 중심 복지전달체계 구축으로 공평한 복지서비스 제공

여기에 최저선과 적정선의 범주에 속하거나 속하지 못한 계층의 규모 역시 지역마다 상이하다. 따라서 복지기준선의 원칙이나 기준점은 일정한 합의가 가능하지만 복지기준선 달성을 위한 정책의 과제나 방향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복지기준선은 설정 이후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지역성이 매우 중요하다. 현실에 대한 진단을 기초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세부적인 실천전략이 마련되는 것이 복지기준선의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된다.

이 같은 원칙을 기초로 전라북도의 복지기준선은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일정한 합의가 가능한 정책목표의 설정이 중요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전라북도의 복지기준선을 분야별 목표로 설정해 보면, 우선 소득분야는 국가의 보호기준선인 최저선 이상의 적정수준의 소득보장을 기준선의 정책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아울러 돌봄분야는 생애주기별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돌봄안전망 구축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되어야 한다. 돌봄의 영역을 단순히 취약계층의 건강상의 문제로 제한하지 않고 생애주기의 발달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사회적 위험에 능동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전망의 구축이 정책목표로 설정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건강분야는 건강한 삶이라고 하는 정책의 이상점을 공공의료의 강화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실현하는 것을 복지기준선의 정책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복지전달체계는 수요자가 중심이 되어 특정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지역주민이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복지기준선의 방향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복지전달체계는 앞선 4개의 영역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복지기준선의 영역은 전라북도의 상황에 맞춰 가장 시급한 정책기준이 필요한 영역 그리고 행정의 전달체계상 복지관련 부서의 책임있는 행정을 견인할 수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5대 영역을 설정하였고, 각각의 영역에서 복지기준선은 세부적인 복지기준의 정책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향후 전라북도의 각각 복지정책의 분야별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표 V-2〉 전라북도 복지기준선의 분야별 주요지표

5대 분야	주요지표
소득분야	· 빈곤율(상대적 빈곤율, 절대빈곤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가구소득) · 분위별 소득(1분위~10분위)
돌봄 및 교육분야	· 공보육수용율(국공립보육시설 이용율),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율 · 지역아동센터 설치율 · 돌봄서비스 이용율(아이돌봄서비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초등돌봄 등)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율 · 노인학대 및 아동학대 신고율 · 장기요양판정 및 이용노인
건강 분야	· 건강검진 수검율 · 예방접종율 · 보건기관 이용율 · 치매환자 등록 및 변동 · 노인우울증 및 자살자
고용 및 일자리 분야	· 경제활동참가율(연령별, 장애유무별, 65세 이상 노인) · 고용율(청년, 장애인, 노인 등) · 취업률(연령, 장애인, 노인 등) · 고용보험 가입 및 미가입율 · 공공부문 일자리 참여율(노인 등) · 자활사업 참여율
복지전달체계 분야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현황 · 사회복지 민간인력(자원봉사 등) · 사회복지 민간지원(푸드뱅크 등) · 사회복지시설 수(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복지기준선의 분야별 주요지표는 제시해 보면, 소득분야에서는 빈곤율을 중심으로 중위소득, 분위별 소득 등이 해당된다. 주로 타시도의 소득기준선은 빈곤율의 일정수준 이하 유지 혹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상 소득유지 등을 기준선으로 설정하였다. 다만, 소득기준선의 경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중위소득 50%를 구간으로 기준선을 설정하고 있는데, 소득분야의 복지기준선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실현하기 어렵다. 따라서 적정선을 중심으로 기준선을 설정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타당하지만 현실정책에서 구현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과 정책화 가능성을 염두해둔다면 적정기준보다는 최소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수 있다.

〈표 V-3〉 전라북도 복지기준선의 분야별 목표

5대 분야	최저수준	적정수준
소득분야	· 중위소득 50%이하 빈곤계층 최저생활보장 · 중위소득 50%이하 사각지대 해소 · 긴급복지지원 수혜율 전국 평균 유지	· 중위소득 50%이상 취약계층 적정생활보장 · 중위소득 50%이상 소득유지 지원 · 긴급복지 수혜율__%
돌봄 및 교육분야	· 공보육수용율 전국 평균 유지 · 빈곤아동 방과후돌봄수혜율 전국 평균유지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률 전국평균 유지 · 장애인 탈시설전환율 전국 평균 유지 · 치매노인 돌봄수용율 전국 평균 유지	· 공보육수용율 40% · 빈곤아동 방과후돌봄 수혜율 100%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률 · 장애인 탈시설 전환율 20% · 치매노인 돌봄수용율 50%
건강 분야	· 영유아 건강검진을 전국 평균 유지 · 영유아 예방접종율 전국 평균 유지 · 노인자살율 전국 평균유지 · 노인우울감 전국 평균 유지	
고용 및 일자리 분야	· 장애인경제활동참여율 전국 평균 유지 · 노인경제활동참여율 전국 평균 유지 · 탈빈곤율 전국 평균 유지 · 청년경제활동참여율 전국 평균 ·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율	
복지전달체계 분야	·	

2. 소득분야 복지기준선 설정

(1) 소득분야 복지기준선 설정(현황과 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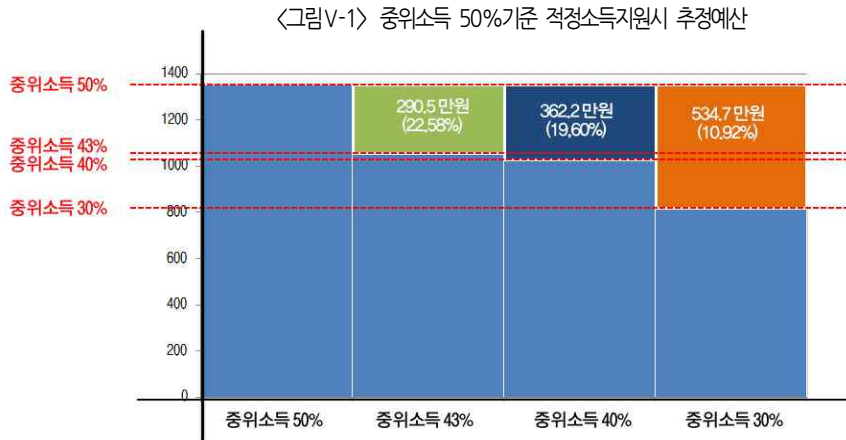
소득분야의 복지기준선의 적정선은 모든 도민이 중위소득 50%이상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상 모든 도민이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을 유지하는 것은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정책의 실현가능성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위소득 50%이상 유지를 위해서는 국가나 전라 북도의 재정적 지원만으로는 어렵고 개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이 창출되어야 한다.

다만, 복지기준선의 정책방향은 상대적 빈곤선인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50%미만의 빈곤가구를 기준으로 적절한 지원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표 V-4〉 중위소득기준 평균소득 및 가구비율

구분	교육급여		주거급여 기준선		의료급여 기준선		생계급여 기준선	
	중위 50%미만	평균소득	중위 43%미만	평균소득	중위 40%미만	평균소득	중위 30%미만	평균소득
서울	18.71	1361.81	14.62	1135.02	13.99	1105.36	8.02	699.24
부산	15.66	1420.94	11.51	1090.10	10.19	1052.44	4.15	673.32
대구	22.48	1432.76	17.58	1244.13	15.27	1086.19	6.63	680.26
인천	14.29	1382.79	12.09	1265.11	9.62	1068.71	4.95	658.33
광주	18.69	1390.10	12.46	1071.38	10.90	962.40	5.92	660.47
대전	14.55	1474.21	10.53	1201.74	8.67	1102.68	4.02	769.38
울산	9.97	1590.47	6.31	1089.47	5.65	1060.00	2.66	727.50
세종	17.72	1506.42	12.45	1173.41	10.98	1087.04	6.59	777.96
경기	35.42	1362.19	27.98	1103.23	24.70	1009.58	15.48	742.98
강원	29.43	1460.49	21.02	1218.06	18.62	1151.68	8.71	764.28
충북	19.86	1622.01	13.64	1348.89	11.96	1253.64	4.78	920.85
충남	31.76	1350.46	22.58	1060.00	19.60	1024.27	10.92	815.77
전북	28.78	1412.23	19.67	1218.00	15.53	1063.84	6.83	702.97
전남	24.30	1338.51	16.67	1055.06	15.26	973.97	7.63	666.61
경북	25.89	1244.34	19.76	1073.53	17.59	1009.29	8.10	768.59
경남	27.27	1522.67	17.68	1173.06	15.15	935.17	8.59	603.94

자료 : 한국노동패널 원자료 분석



실제로 소득분야에서 적정선의 기준점인 중위소득 50%의 소득유지를 목적으로 할 경우 중위소득 43%구간의 빈곤가구에 대한 지원예산으로만 한해 약 5.2천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위소득 30%이하 빈곤가구를 중위소득 50%까지 소득을 지원할 경우 한해에만 약 4.6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타시도가 설정한 적정기준선과 같이 중위소득 50%이상의 소득지원은 현실성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기준선은 적정기준선보다는 최저기준선으로 적용하고 최저기준선 내의 복지사각지대의 일정 비율이상 해소하는 것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라북도의 복지사각지대의 규모를 추정해 보면, 중위소득 50% 미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전라북도는 약 52.9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중위소득 43% 미만 중 정부의 교육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33.5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고, 중위소득 40% 미만에서는 약 27.8만명 정도가 복지사각지대로 추정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위소득 30%미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정부의 생계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약 12.6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들 복지사각지대에 해당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사각지대 해소 및 완화의 적정 비율을 설정하는 것이 복지기준선으로서의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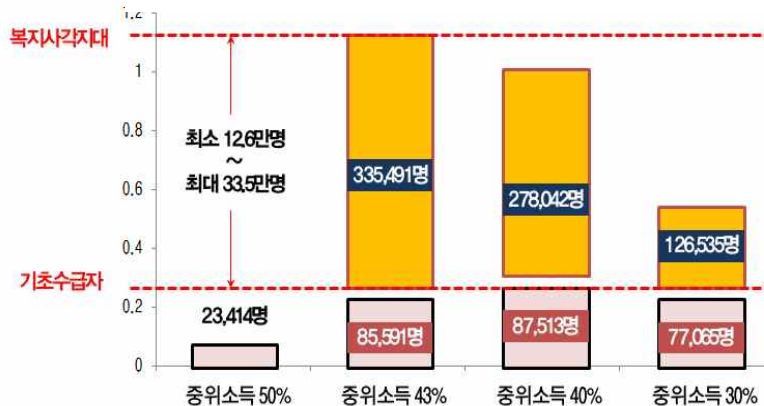
〈표 V-5〉 중위소득기준 평균소득 및 가구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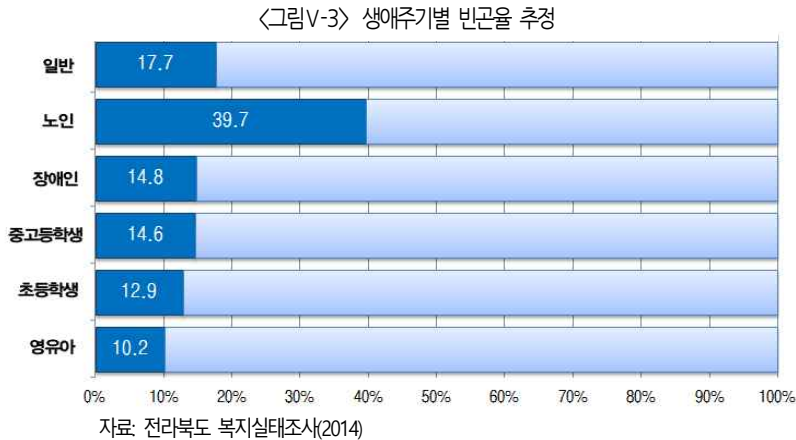
구분	교육급여 (중위50%)		주거급여 기준선 (중위 43%)		의료급여 기준선 (중위 40%)		생계급여 기준선 (중위 30%)	
	수급자 현황	복지 사각지대	수급자 현황	복지 사각지대	수급자 현황	복지 사각지대	수급자 현황	복지 사각지대
서울	60,165	1,797,922	226,801	1,225,317	230,042	1,159,620	203,158	593,165
부산	30,391	517,492	131,702	270,959	133,195	223,259	117,128	28,094
대구	24,518	533,970	94,054	342,713	95,775	283,711	84,438	80,244
인천	25,389	395,049	84,061	271,695	85,181	197,806	72,867	72,669
광주	17,699	256,920	60,411	122,669	61,060	99,135	50,922	36,041
대전	13,686	206,671	46,432	112,975	47,491	83,786	40,783	20,167
울산	3,552	113,289	16,466	57,533	16,651	49,559	14,367	16,791
경기	68,675	2,184,225	215,651	1,366,964	214,587	1,181,838	188,089	649,766
강원	12,850	536,394	54,187	379,669	56,106	326,980	49,896	190,110
충북	12,043	456,363	46,115	288,461	46,933	249,406	42,286	96,324
충남	14,689	401,647	52,961	232,956	54,801	196,004	49,032	51,290
전북	24,314	567,977	85,591	335,491	87,513	278,042	77,065	126,535
전남	18,819	529,098	72,663	301,813	74,584	221,055	66,726	63,355
경북	21,534	634,587	91,451	358,615	93,794	318,315	84,271	121,783
경남	25,439	848,034	86,648	580,125	88,116	505,312	79,626	193,751
제주	6,456	168,525	19,090	94,324	20,010	77,202	16,760	38,327

자료 : 한국노동패널 원자료 분석

정리하자면, 전라북도 소득관련 복지기준선은 전라북도의 중위소득 50%미만의 빈곤가구 중 복지사각지대의 비율을 현재 30.5%에서 전국 평균인 약 20%이하로 낮추는 최저선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V-2〉 복지사각지대 규모 추정





전라북도의 소득복지기준선인 중위소득 50%미만 복지사각지대의 비율인 30.5%를 전국 평균인 20% 이내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의 맞춤형 개별 급여체제와 연동하여 전라북도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 그리고 지역맞춤형 탈빈곤정책의 활성화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한편, 전라북도의 복지기준선 설정시 검토해야 할 사항은 소득관련 복지기준선을 전체로 설정할 것인지 아니면 대상별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전라북도의 각 대상별 빈곤율을 추정해 보면, 영유아 가구의 경우 10.2%, 초등학생 가구의 경우 12.9% 그리고 중고등학생 가구의 경우 14.6%로 추정된다. 또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경우 빈곤율은 14.8%로 추정되고 노인가구는 약 39.7%정도가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빈곤가구로 분류된다. 이처럼 가구의 구성에 따라서 빈곤율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소득기준선 설정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개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복지정책과의 연계성을 찾기는 어려운 단점이 있지만 각 대상별 빈곤이 주로 실업이나 저소득 등의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각 대상별 복지기준선의 설정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차별화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전라북도의 소득분야의 복지기준선 설정 과정에서는 빈곤실태에 대해서는 각 대상별 현황을 점검하되 복지기준선에 대해서는 전체를 대상으로 빈곤율 감소의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이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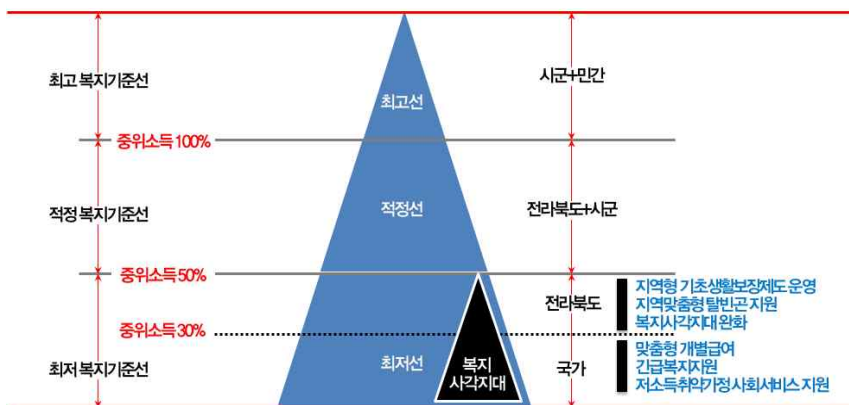
〈표 V-6〉 소득기준 복지기준선

구분	정책목표 및 복지기준선
정책목표	적정수준의 소득보장으로 인간다운 생활 보장
적정기준선	모든 도민이 중위소득 50%이상의 소득을 유지하는 삶을 보장
최저기준선	중위소득 50%미만 복지사각지대를 20%이하로 감소하여 빈곤가구의 안정적인 삶 보장

소득분야의 복지기준선은 최저기준으로 중위소득 50%미만 복지사각지대를 20%이하로 감소하는 것으로 그리고 적정기준선으로 모든 도민이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을 유지하는 삶을 보장하는 것으로 설정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중위소득 50%이상의 소득보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그 소요재원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최저기준보다는 적정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적정기준도 정책의 방향으로는 적합하지만 실제 정책의 이행까지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복지분야뿐만 아니라 일자리 정책의 영역까지 연계한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로드맵이 만들어져야 한다.

결국, 중위소득 50%구간까지의 소득보장은 국가와 함께 지역이 추진할 수 있는 정책범위내에서 전북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복지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 저소득 취약가정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대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그림 V-4〉 전라북도 소득기준 설정의 방향



(2) 소득분야 복지기준선 달성을 위한 정책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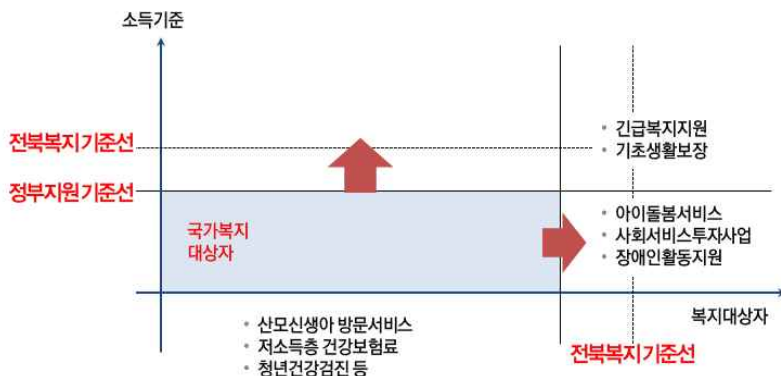
소득분야의 복지기준선 달성을 위해서는 적정기준선으로 중위소득 50% 구간 소득보호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위소득 50%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의 재정력만 가지고서는 어렵다는 점에서 국가정책의 최저생계비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다. 다만, 전라북도에서는 정부의 복지기준선을 전라북도의 상황에 맞게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상향조정하고 복지대상자도 정부 기준선 이상으로 확대하는 조치 등을 통해 일정부분 소득향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 V-7〉 소득기준 복지기준선

구분	정책목표 및 복지기준선	추진과제
정책 목표	적정수준의 소득보장으로 인간다운 생활 보장	
적정 기준선	모든 도민이 중위소득 50%이상의 소득을 유지하는 삶을 보장	㉠ 최저생계비 상향 조정 ㉡ 복지사업 소득구간 조정
최저 기준선	중위소득 50%미만 복지사각지대를 20%이하로 감소하여 빈곤가구의 안정적인 삶 보장	㉢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 ㉤ 읍면동 복지전달체계 개편(방문형 상담강화) ㉥ 지역별, 생애주기별 빈곤정책 차별화

소득기준에서는 정부의 기준선을 시급한 사업 중심으로 전라북도의 상황에 맞춰 상향조정하여 복지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소득이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림 V-5〉 전라북도 소득복지기준선 달성 방향



또한 전라북도에서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추진하고 있는 복지사업의 소득기준선을 상향조정하여 기존 복지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전라북도의 소득기준 복지사업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을 포함하여 총 76개 사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중위소득 50% 미만을 소득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복지사업은 한부모가족 양육비, 생계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등 총 7개 사업에 이른다.

전라북도의 전체 사업이 약 6천개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복지사업의 개수는 많지 않지만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복지사업에 투입되고 있는 재정규모는 약 9,911억원으로 전체 복지사업의 50%에 육박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기준 복지사업의 일부 사업을 중요도를 감안하여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할 경우 복지대상자의 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V-6〉 전라북도 소득기준적용 복지사업 현황

구분	임신	출산이후	건강	생활지원	교육	고용
중위 소득 30%				생계급여		
중위 소득 40%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중위 52%)		·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 · 주거급여		
중위 소득 50%				·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경감	교육급여	
중위 소득 60%			노인실명예방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취업패키지 I · 희망키움통장
중위 소득 80%	영양플러스 사업(임산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영양플러스 사업(영유아)			
중위 소득 100%				장애인자립 자금 대여		취업 패키지 II (미취업 청년)
월평균소득 100%			· 치매검진비 · 치매치료 및 관리비지원	장애인가족 양육지원		
월평균 소득 120%			언어발달지원 (비장애아동)			
월평균 소득 150%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지원 · 발달재활 서비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발달장애공공후견 서비스		
소득 7분위				기초연금		
소득 8분위					· 국가근로장학금 (C학점 이상) · 국가장학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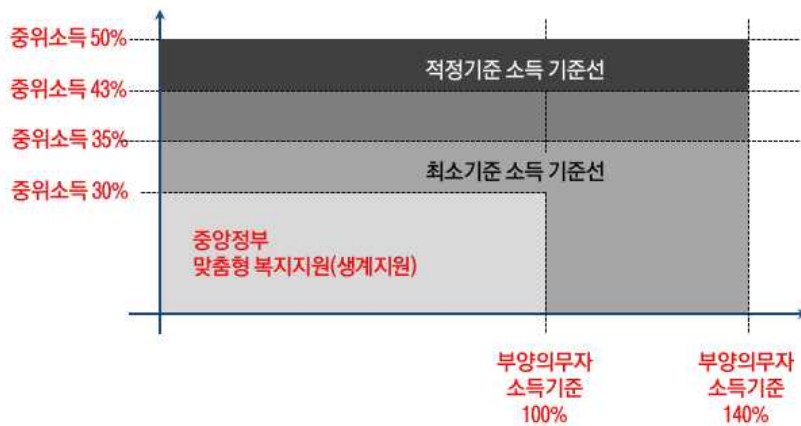
〈표V-8〉 전라북도 소득기준적용 복지사업 현황

용어	사 업 수	예 산
중위소득 기준 (28%~50%)	사회복지과 8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희망키움통장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희망키움통장(차상위), 취학아동 방과후 보육료 232,878
	여성청소년과 3	소년소녀가정지원,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1,179
	노인장애인과 8	노인건강진단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노인돌봄대케어센터 운영, 노인생활시설 지원, 장애수당(기초수급자), 노인일자리 사업지원, 장애수당(차상위), 장애인실비입소료 지원 71,285
	건강안전과 3	저소득층 저저귀조제분유지원, 생애전환기 검진사업, 영유아 검진사업 870
최저생계비 (130%~300%)	사회복지과 1	간급복지지원사업 7,480
	여성청소년과 8	저소득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저소득한부모가정 자녀교육비지원, 연중 아동급식, 방학중 아동급식, 지역아동센터 급식, 학기중 토공휴일 아동급식,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10,792
	노인장애인과 3	기초연금, 장애인자녀 교육비, 장애인신문 보급 493,053
	건강안전과 3	저소득층 금연치료지원사업,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 직접) 6,199
	사회복지과 5	전북광역푸드뱅크 운영, 기부식품뱅크마켓 운영지원,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운영지원, 자활근로사업, 내일키움통장(자활근로자) 27,630
	여성청소년과 2	저소득한부모 가정생활자립지원, 아동보호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5,359
수급자 + 차상위	노인장애인과 7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무료경로식당, 거동불편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장애인연금 지급,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등록진단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785
	보건의료과 2	재가한센인 생계비, 한센인피해사건 생활지원금 1,302
	건강안전과 6	재가암관리사업, 보건소방문 건강관리사업 지원, 아토피천식예방관리(지원 직접), 국가암검진사업, 구강건강관리(노인약차) 1,888
	사회복지과 2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정양육수당지원 61,569
	여성청소년과 1	아이돌봄지원사업 6,404
	노인장애인과 8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언어발달지원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심판, 절차비용 지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서비스지원,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지원 14,392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150%)	보건의료과 1	노인건강관리(치매치료관리비지원) 1,708
	건강안전과 5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산모산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난임부부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지원 4,679
전체	76개	991,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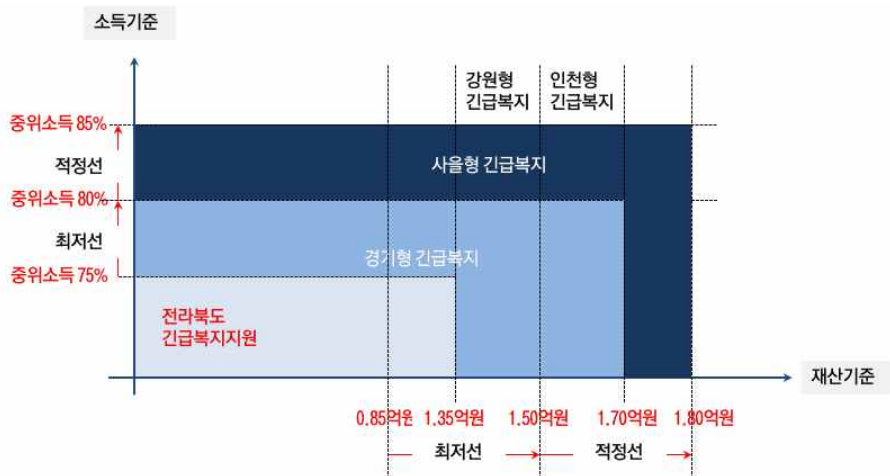
다음으로 전북형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이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미 일부 시도에서는 국가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완화하기 위해 지자체 주도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중에 있고, 이를 통해 다수 복지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있다.

따라서 전라북도도 전북의 취약계층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재정상황에 맞게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중위소득 30%구간을 35%에서 4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사각지대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장기적으로는 중위소득 구간을 확대함으로써 지원대상을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재정적 여건이 용이치 않다는 점에서 1단계에서는 기초생활수급 탈락가구에 대해서 시범적용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그림 V-7〉 전북형 소득보장제도 운영(안)



〈그림 V-8〉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제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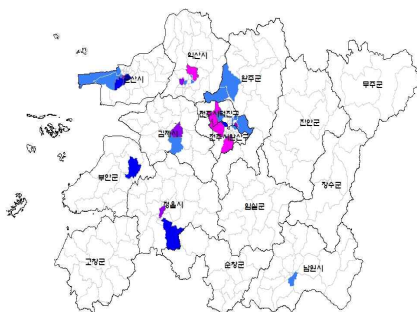
아울러, 기초수급자와 장애연금 등 주요 복지수급자가 특정 지역에 집중→공간 단위 빈곤정책 개발 필요하다. 즉, 왕궁(익산), 대산, 노암(남원), 평화1(전주) 등의 지역은 전체 인구대비 20%가 빈곤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빈곤문화해소를 통한 탈 빈곤 강화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만, 왕궁면은 수급자의 평균연령이 65.4세로 고령인구(수급자의 65.1%가 노인으로 구성)가 다수 차지하고 있어 취약지역 관리 대응 필요하다.

〈표V-9〉 전라북도 복지수급자 인구순위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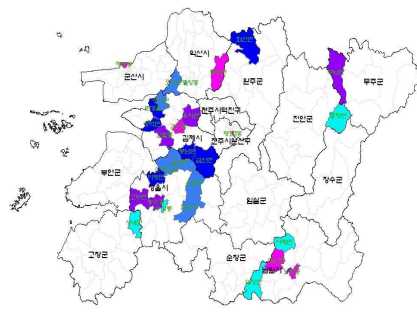
구분	기초수급자			자활참여자			간접복지지원			장애연금			전체			전체인구대비 구성비		
	시군	지역	인구	시군	지역	인구	시군	지역	인구	시군	지역	인구	시군	지역	인구	시군	지역	인구
1위	전주	효자4동	2,556	정읍	수성동	182	정읍	수성동	119	전주	평화2동	455	전주	효자4동	74,417	익산	왕궁면	23.22
2위	전주	평화2동	2,448	전주	효자4동	168	군산	나운2동	108	익산	삼성동	417	전주	평화2동	45,212	남원	대산면	21.41
3위	전주	평화1동	2,435	정읍	내장상동	147	김제	신풍동	104	전주	효자4동	332	익산	삼성동	33,393	남원	노암동	21.21
4위	익산	삼성동	2,402	전주	평화1동	139	김제	검산동	103	익산	왕궁면	329	전주	평화1동	14,302	전주	평화1동	20.91
5위	익산	동산동	2,010	익산	삼성동	130	고창	고창읍	97	전주	평화1동	325	군산	나운2동	26,355	군산	해산동	17.00
6위	군산	나운2동	1,966	전주	평화2동	124	전주	평화1동	92	군산	나운2동	308	익산	동산동	23,494	김제	검산동	16.86
7위	익산	모현동	1,720	익산	동산동	107	전주	인후3동	89	익산	동산동	260	정읍	수성동	19,338	김제	용지면	15.13
8위	정읍	수성동	1,714	익산	모현동	107	정읍	내장상동	85	김제	검산동	251	익산	모현동	41,051	정읍	농소동	14.69
9위	전주	인후3동	1,685	군산	나운2동	106	전주	우아2동	76	부안	부안읍	248	전주	인후3동	35,207	김제	교월동	13.87
10위	김제	검산동	1,541	군산	개정동	104	부안	부안읍	75	익산	모현동	240	김제	검산동	11,795	정읍	고부면	13.59

자료 : 사회보장정보원 전복 수급자 data 통합분석

〈그림V-9〉 기초생활수급자 다수거주지역



〈그림V-10〉 전체 인구대비 복지수급자 구성비



〈표V-10〉 전라북도 빈곤취약지역 특성

구분	평균연령	소득인정액	특징
효자4동, 평화2동, 평화1동	32.8세~50.3세	30만원 전후(전주 평균 50.3만원)	(효자4동) 높은 청장년비율
왕궁면	65.4세	36.6만원(군산 평균 58.2만원)	수급자 중 노인인구 65.1%
대산면, 노암동	47.8세~59.2세	15.5만원~45.6만원(남원 평균 57.8만원)	평균가구원수 1.3명 불과

3. 돌봄 및 교육분야 복지기준선 설정

(1) 돌봄 및 교육분야 복지기준선 설정의 쟁점

전라북도의 돌봄 및 교육분야의 복지기준선 설정의 쟁점은 돌봄의 정책수요가 대부분 저소득과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빈곤층 이상의 중산층은 돌봄보다는 여가나 문화에 대한 복지욕구가 높다는 점에서 돌봄의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령대별로 복지욕구에 따른 돌봄수요를 차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취학 영유아의 경우 보육의 공공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책수요가 된다. 특히, 전라북도는 보육시설 중 국공립보육시설이 적어 공보육수용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다음으로 초등학생을 비롯한 취학아동의 경우 방과후 돌봄에 대한 정책수요가 매우 높다.

〈그림V-11〉 전라북도 생애주기별 돌봄위험주기



방과후 돌봄의 경우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하여 방과후 아카데미 그리고 초등학교 교실의 등에 대한 상호 연계체계 구축도 전달체계 관련해서 촘촘한 방과후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전라북도는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많아 방과후 돌봄 인프라 부족문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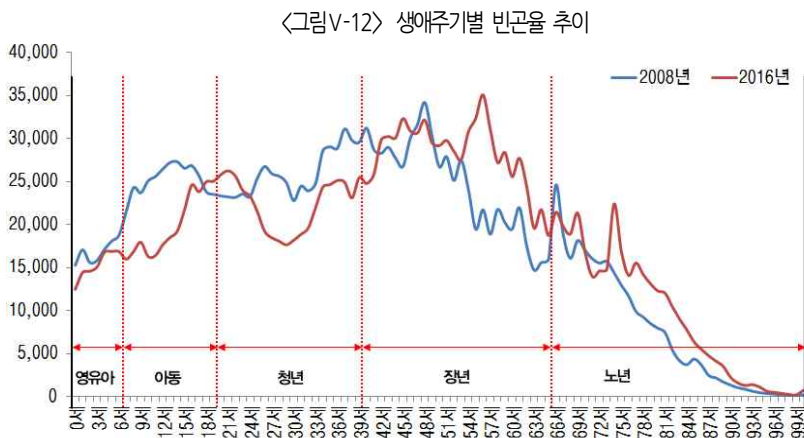
다음으로 청장년 계층에서의 돌봄수요는 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높은 정책수요를 보인다. 장애인의 경우 돌봄서비스는 활동지원서비스가 가장 높은 정책욕구를 보인다. 전라북도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수혜자는 2016년 말 기준 2,178명으로 전체 중증장애인(1급~3급) 49,505명 대비 4.4%정도 수준이다.

〈표V-11〉 생애주기별 돌봄 위험대상 분류

구분	임신출산 (출생아)	영유아 (6세 미만)	아동청소년 (7세~19세)	청년 (20~39세)	장년 (40세~59세)	노년 (60세 이상)
	[12,698명]	[106,715명]	[258,259명]	[444,987명]	[594,859명]	[459,952명]
돌봄		농촌 영유아	농촌 아동청소년			농촌 노인
		저소득 영유아	저소득 청소년	저소득 대학생	저소득 장년	저소득 노인
		맞벌이부부 영유아	맞벌이 청소년			
		한부모 영유아				독거노인
			학교밖청소년 가출청소년			
건강	농촌산모	농촌 영유아				치매노인
	저소득 산모	저소득 영유아	저소득 청소년	저소득 대학생	저소득 장년	빈곤노인
	양양부족산모	영양부족 영유아		미취업 대학생	실직 장년	독거노인
	장애산모	장애영유아				장애노인
	청소년 산모		한부모 청소년			
일상 생활	장애산모		장애 청소년		장애인 장년	빈곤노인
	청소년 산모					저소득노인
	저소득 산모					독거노인
						장애노인
정책 목표	산모가정 출산양육 부담 완화	국공립보육 등 공보육 인프라 확충	방과후 돌봄안전망 구축	실업 및 빈곤청년 구직활동 지원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 강화	지역단위 돌봄

다음으로 65세 이상 노인도 중풍이나 치매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돌봄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은 주로 일상생활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노인이 돌봄정책의 주된 수혜대상이지만 치매나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도 대부분의 돌봄정책의 수요군에 포함되고 있다. 이처럼, 생애주기별로 돌봄수요가 발생하는 집단을 분류해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세부적으로 보면, 영유아의 경우 보육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해 농촌지역의 영유아 그리고 저소득, 맞벌이 영유아가 가장 위험한 집단으로 분류된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방과후아카데미 등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과 저소득 빈곤아동 그리고 학교밖 청소년이나 가출청소년 등이 돌봄수요가 높은 집단으로 분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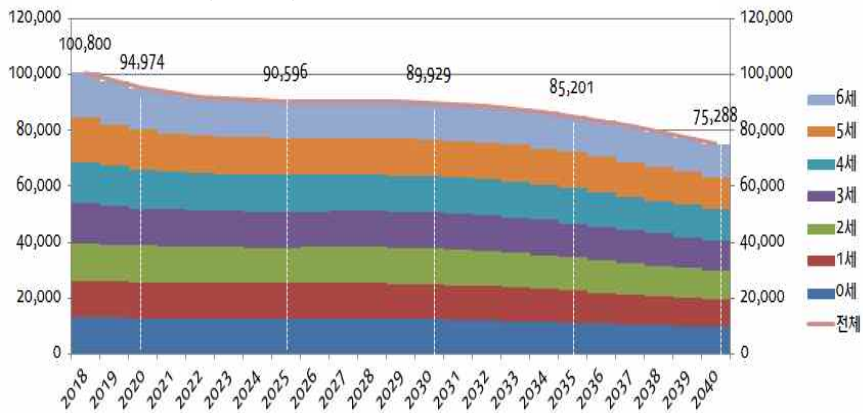


2016년 기준으로 전라북도의 연령별 빈곤율을 분석해보면, 15세에서 19세 아동의 빈곤율이 17.7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다음으로 80세 이상의 노인 10.38%, 그리고 55세에서 59세의 장년이 9.98% 등의 순이다. 따라서 높은 아동의 빈곤율과 노인 그리고 장년의 빈곤율을 돌봄정책과 연계하여 복지기준선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아동돌봄정책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아동인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표V-12〉 생애주기별 돌봄 위험대상 분류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소계	182.9만	182.7만	182.6만	182.4만	182.2만	182.0만	181.8만	181.7만	181.5만	181.4만	181.3만	181.2만	181.1만	180.9만
0세	12,953	13,064	12,904	12,765	12,680	12,623	12,603	12,609	12,628	12,642	12,636	12,597	12,513	12,382
1세	13,445	13,000	13,115	12,956	12,844	12,760	12,706	12,687	12,695	12,715	12,729	12,724	12,684	12,599
2세	14,475	13,514	13,084	13,196	13,053	12,943	12,860	12,807	12,790	12,799	12,820	12,835	12,830	12,789
3세	14,486	14,532	13,587	13,164	13,285	13,140	13,031	12,949	12,897	12,881	12,892	12,914	12,930	12,925
4세	15,791	14,527	14,586	13,650	13,245	13,361	13,216	13,109	13,028	12,978	12,962	12,975	12,997	13,013
5세	16,323	15,819	14,570	14,634	13,726	13,324	13,437	13,291	13,186	13,106	13,056	13,042	13,056	13,078
6세	16,751	16,344	15,852	14,609	14,709	13,808	13,408	13,518	13,372	13,269	13,189	13,140	13,128	13,143
전체	104,224	100,800	97,698	94,974	93,542	91,959	91,261	90,970	90,596	90,390	90,284	90,227	90,138	89,929
0세	0.71	0.71	0.71	0.70	0.70	0.69	0.69	0.69	0.70	0.70	0.70	0.70	0.69	0.68
1세	0.73	0.71	0.72	0.71	0.70	0.70	0.70	0.70	0.70	0.70	0.70	0.70	0.70	0.70
2세	0.79	0.74	0.72	0.72	0.72	0.71	0.71	0.70	0.70	0.71	0.71	0.71	0.71	0.71
3세	0.79	0.80	0.74	0.72	0.73	0.72	0.72	0.71	0.71	0.71	0.71	0.71	0.71	0.71
4세	0.86	0.79	0.80	0.75	0.73	0.73	0.73	0.72	0.72	0.72	0.71	0.72	0.72	0.72
5세	0.89	0.87	0.80	0.80	0.75	0.73	0.74	0.73	0.73	0.72	0.72	0.72	0.72	0.72
6세	0.92	0.89	0.87	0.80	0.81	0.76	0.74	0.74	0.74	0.73	0.73	0.73	0.72	0.73
전체	5.70	5.52	5.35	5.21	5.13	5.05	5.02	5.01	4.99	4.98	4.98	4.98	4.98	4.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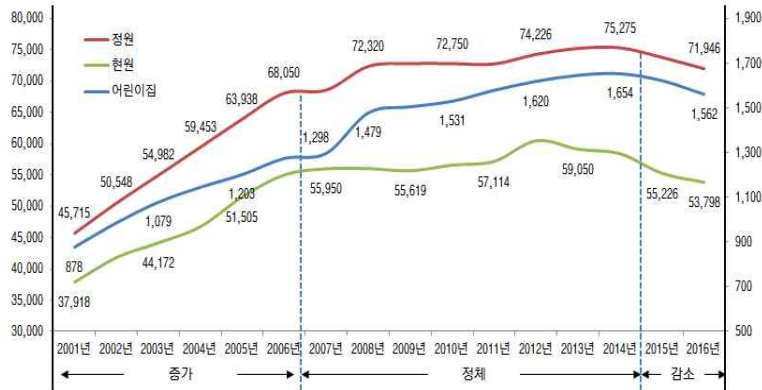
〈그림V-13〉 전라북도 보육대상 아동 연령추계



다음으로 돌봄기준선 설정에서 필요한 주요쟁점은 저출산의 영향으로 인해 보육대상 아동이 급속하게 감소할 것이라는 점이다. 2016년 기준 보육대상 아동은 10만명 정도이지만 2030년에는 8.9만명 그리고 2040년에는 7.5만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육대상 아동의 감소는 돌봄정책의 인프라인 보육시설의 확충이나 개선과 관련하여 기준선 설정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된다. 특히, 보

육시설의 이용아동을 보면 2016년 기준 총 1,562개소의 현원이 5.4만명으로 정원 7.2만명의 74.8%에불과하다. 특히, 전라북도의 보육시설의 현원은 2012년 이후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고, 정원충족율도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그림V-14〉 전라북도 어린이집 정원 및 현원 추이



〈표V-13〉 전라북도 1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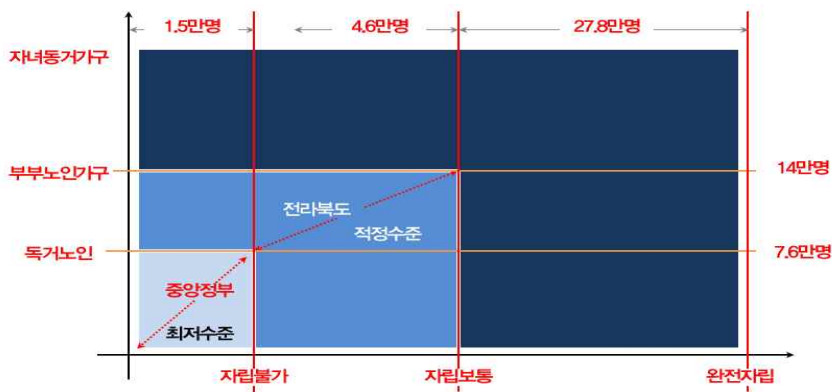
	합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가구	전체	71,515	33,020	36,474	14,279	10,591	11,008	12,182	3,398	3,320	2,941	4,187	3,807	7,931	7,548
	20세 미만	1,113	570	977	60	63	50	629	12	8	8	139	9	31	20
	20~24	6,982	3,092	4,851	264	333	156	1,997	38	21	32	266	40	127	98
	25~29	7,309	2,351	2,954	451	420	264	845	71	83	53	155	71	226	209
	30~34	6,817	2,472	2,095	538	427	341	696	77	87	67	77	80	223	173
	35~39	5,643	2,310	1,979	550	386	368	631	80	105	78	87	96	206	180
	40~44	5,486	2,538	2,158	661	562	443	665	126	127	85	116	121	265	278
	45~49	5,688	2,616	2,429	946	701	568	762	168	202	149	178	187	369	407
	50~54	5,649	2,738	2,694	1,094	756	730	752	235	258	217	239	234	482	516
	55~59	6,175	3,036	3,150	1,343	934	1,005	881	352	307	269	309	262	658	681
	60~64	5,048	2,584	2,890	1,242	832	945	742	297	262	289	300	295	664	689
	65~69	4,552	2,369	2,405	1,228	967	1,074	743	330	306	295	373	358	796	790
	70~74	3,794	2,143	2,341	1,490	1,083	1,243	771	395	381	338	447	527	1,017	886
	75~79	3,408	1,902	2,402	1,750	1,336	1,502	884	489	516	461	637	670	1,238	1,113
	80~84	2,524	1,432	1,938	1,669	1,096	1,390	724	445	416	409	538	519	976	956
	85세 이상	1,327	867	1,211	993	695	929	460	283	241	191	326	338	653	552

	합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0세 미만	1.56	1.73	2.68	0.42	0.59	0.45	5.16	0.35	0.24	0.27	3.32	0.24	0.39	0.26	
20~24	9.76	9.36	13.30	1.85	3.14	1.42	16.39	1.12	0.63	1.09	6.35	1.05	1.60	1.30	
25~29	10.22	7.12	8.10	3.16	3.97	2.40	6.94	2.09	2.50	1.80	3.70	1.86	2.85	2.77	
30~34	9.53	7.49	5.74	3.77	4.03	3.10	5.71	2.27	2.62	2.28	1.84	2.10	2.81	2.29	
35~39	7.89	7.00	5.43	3.85	3.64	3.34	5.18	2.35	3.16	2.65	2.08	2.52	2.60	2.38	
40~44	7.67	7.69	5.92	4.63	5.31	4.02	5.46	3.71	3.83	2.89	2.77	3.18	3.34	3.68	
45~49	7.95	7.92	6.66	6.63	6.62	5.16	6.26	4.94	6.08	5.07	4.25	4.91	4.65	5.39	
50~54	7.90	8.29	7.39	7.66	7.14	6.63	6.17	6.92	7.77	7.38	5.71	6.15	6.08	6.84	
55~59	8.63	9.19	8.64	9.41	8.82	9.13	7.23	10.36	9.25	9.15	7.38	6.88	8.30	9.02	
60~64	7.06	7.83	7.92	8.70	7.86	8.58	6.09	8.74	7.89	9.83	7.17	7.75	8.37	9.13	
65~69	6.37	7.17	6.59	8.60	9.13	9.76	6.10	9.71	9.22	10.03	8.91	9.40	10.04	10.47	
70~74	5.31	6.49	6.42	10.43	10.23	11.29	6.33	11.62	11.48	11.49	10.68	13.84	12.82	11.74	
75~79	4.77	5.76	6.59	12.26	12.61	13.64	7.26	14.39	15.54	15.67	15.21	17.60	15.61	14.75	
80~84	3.53	4.34	5.31	11.69	10.35	12.63	5.94	13.10	12.53	13.91	12.85	13.63	12.31	12.67	
85세 이상	1.86	2.63	3.32	6.95	6.56	8.44	3.78	8.33	7.26	6.49	7.79	8.88	8.23	7.31	

자료 : 통계청(2016). 인구총조사 가구부문 2016년 말 기준

다음으로 돌봄기준선 설정시 검토되어야 할 점은 1인가구의 증가에 따른 취약가구의 돌봄수요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노인 1인가구의 경우 돌봄에 대한 정책수요는 매우 높지만 여전히 국가의 제도적 보호는 최소한에 머무르고 있어 지역차원의 추가적인 지원확대가 필요하다. 전라북도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1인가구는 약 8만명에 육박하고 있고, 이는 전체 노인의 2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그림V-15〉 노인돌봄 기준선 설정 방향



주. 독거노인은 통계청 노인 1인가구(2016년 기준), 자립능력은 2014년 노인생활실태조사 전국노인가구 평균을 기준으로 추정

특히 노인돌봄의 경우 건강과 소득 그리고 주부양자의 존재유무에 따라 돌봄에 대한 정책수요는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노인의 경우 자녀의 동거유무 그리고 건강상태에 따른 자립능력의 정도에 따라 노인돌봄의 기준선을 종합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노인의 경우 자립생활은 어려운데 반해 홀로 생활하고 있는 노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이 같은 기준이 노인돌봄기준선 설정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이 같은 기준선을 적용할 경우 독거노인이면서 자립능력이 없는 노인은 최소 1.5만명에서 최대 7.6만명정도로 추정되고 이들 계층에 대해서는 최소한도의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타인의 일정한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부노인가구까지는 적정기준의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전라북도의 독거노인은 2016년 기준 10.4%로 전국 평균 독거노인 비율인 6.6%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독거노인의 돌봄서비스에 대한 지원(노인돌봄기본서비스)은 15,950명에 불과해 다수 독거노인이 돌봄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그림V-16〉 장애인 자립지원 관련 기준선 설정 방향



아울러 장애인의 돌봄기준선은 돌봄서비스의 중요한 정책대상인 장애인 자립지원 관련하여 중장기적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의 탈시설화가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자립지원은 장애인 자립의향과 장애인자립능력을 기준으로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V-14〉 돌봄 및 교육분야 복지기준선

구분		정책목표 및 복지기준선	
정책목표		적정수준의 소득보장으로 인간다운 생활 보장	
영유아	공보육	최저기준	공보육 수용율을 10%까지 확대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한다
		적정기준	공보육 수용율을 40%까지 확대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한다
	특수보육	최저기준	특수보육수요의 공급율 20%까지 확대하여 보육만족도를 향상한다
		적정기준	특수보육수요의 공급율을 30%까지 확대하여 보육만족도를 향상한다
아동·청소년	방과후돌봄	최저기준	빈곤아동의 방과후돌봄서비스 수혜율을 50%까지 향상시킨다
		적정기준	빈곤아동의 방과후돌봄서비스 수혜율을 80%까지 향상시킨다
	아동보호	최저기준	학대아동의 재범률을 낮춘다
		적정기준	아동학대 신고비율을 낮춘다
장애인	돌봄지원	최저기준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의 이용율을 20%로 확대한다
		적정기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이용율을 30%까지 확대한다
	인권보호	최저기준	장애인의 인권침해 진정건수를 감소시킨다
		적정기준	장애인의 차별경험율을 감소시킨다
노인	돌봄지원	최저기준	일상생활장애노인 중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한 노인을 모두 보호한다
		적정기준	일상생활장애노인의 50% 이상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매예방	최저기준	치매노인의 등록율을 50%까지 확대한다
		적정기준	치매노인의 돌봄서비스 수혜율을 50%까지 확대한다

(2) 돌봄 및 교육 복지기준선 달성을 위한 정책 과제

돌봄 및 교육복지기준선 달성을 위한 세부과제로는 국가정책과 연계하여 전라북도의 정책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령, 공보육 수용율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가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이 지역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V-15〉 돌봄 및 교육분야 복지기준선

구분		정책목표 및 복지기준선	
정책목표		적정수준의 소득보장으로 인간다운 생활 보장	
영유아	공보육	최저기준	공보육 수용율을 10%까지 확대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한다
		적정기준	공보육 수용율을 40%까지 확대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한다
	특수보육	최저기준	특수보육수요의 공급율 20%까지 확대하여 보육만족도를 향상한다
		적정기준	특수보육수요의 공급율을 30%까지 확대하여 보육만족도를 향상한다

- ① 국공립보육시설 추가설치(최소 300개소)
 ② 농촌지역 미설치지역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③ 평가인증보육시설 확대(100%)

- ① 시간연장보육시설 확대
 ② 24시간 보육시설 확대

구분		정책목표 및 복지기준선		
아동 청소년	방과후 돌봄	최저기준	빈곤아동의 방과후돌봄서비스 수혜율을 50%까지 향상시킨다	① 지역아동센터 추가설치
		적정기준	빈곤아동의 방과후돌봄서비스 수혜율을 80%까지 향상시킨다	② 미설치 읍면동 지역아동센터 설치 ③ 지역아동센터 특성화
	아동 보호	최저기준	학대아동의 재범률을 낮춘다	① 아동학대 가해자 예방교육 강화
		적정기준	아동학대 신고비율을 낮춘다	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확대
장애인	돌봄 지원	최저기준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의 이용율을 20%로 확대한다	①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추가시간 확대
		적정기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이용율을 30%까지 확대한다	② 장애인활동지원 대상 확대
	자립 지원	최저기준	자립능력이 있고 자립의향이 있는 장애인을 모두 자립할 수 있도록 한다	① 탈시설 전환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적정기준	자립의향이 있는 장애인의 자립비율을 50%까지 향상시킨다	② 자립생활체험 및 소규모 자립시설 확충
	인권 보호	최저기준	장애인의 인권침해 진정건수를 감소시킨다	① 장애인인권상담 활성화(방문형 상담)
		적정기준	장애인의 차별경험율을 감소시킨다	② 장애인인권 교육 강화 ③ 장애인인권센터 시설인권상담 확대
노인	돌봄 지원	최저기준	일상생활장애노인 중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한 노인을 모두 보호한다	① 노인 돌봄기본서비스 확대(현 15,950명)
		적정기준	일상생활장애노인의 50% 이상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노인 장기요양수급자 확대 ③ 지역사회 돌봄안전망 구축(경로당 등)
	치매 예방	최저기준	치매노인의 등록율을 50%까지 확대한다	① 노인 돌봄종합서비스 확대(현 4,387명)
		적정기준	치매노인의 돌봄서비스 수혜율을 50%까지 확대한다	② 치매안심센터 확충 ③ 지역사회 돌봄안전망 구축

〈표V-16〉 전라북도 보육시설 증축률 현황

구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어린이집	878	987	1,079	1,146	1,203	1,275	1,298	1,479	1,506	1,531	1,580	1,620	1,647	1,654	1,623	1,562
정원	45,715	50,548	54,982	59,453	63,938	68,050	68,537	72,320	72,755	72,750	72,700	74,226	75,181	75,275	73,738	71,946
현원	37,918	41,840	44,172	46,746	51,505	54,975	55,950	55,978	55,619	56,531	57,114	60,401	59,050	58,328	55,226	53,798
정원 증축률	82.94	82.77	80.34	78.63	80.55	80.79	81.63	77.4	76.45	77.71	78.56	81.37	78.54	77.49	74.89	74.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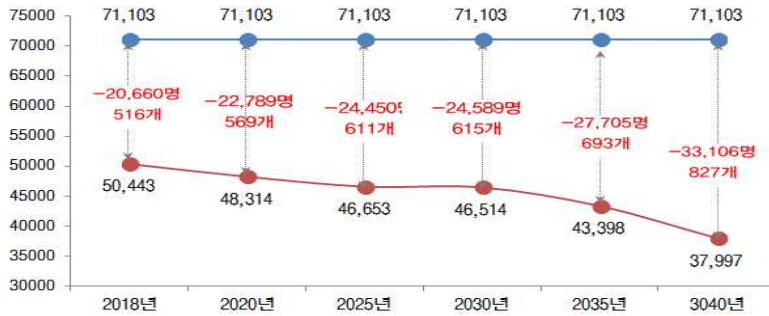
자료 : 보건복지부(2017) 보육통계 재구성

돌봄분야의 기준선인 공보육 수용을 확대를 위한 세부정책과제로는 무엇보다도 국공립보육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다. 국공립보육시설의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육아동의 감소와 함께 낮은 보육시설 수용율을 검토하여 중장기 로드맵을 가지고 구체화해야 한다. 전라북도의 보육시설은 2018년 현재에도 보육정원대비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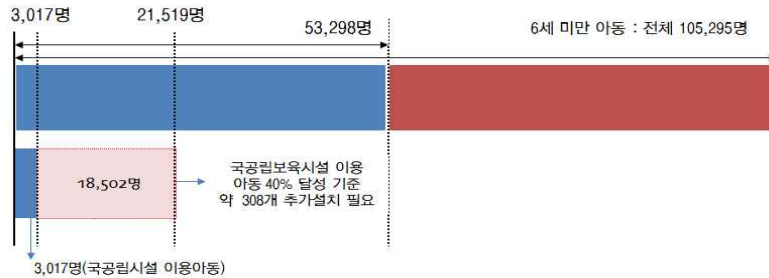
원의 증축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고 저출산의 영향을 고려하면 현재의 정원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2020년 정원기준 22,789명이 초과하게 되고 보육시설도 약 569개소가 공급광익으로 추정된다.

2020년을 기준으로 공보육 수용율을 20% 달성하기 위해서는 193개의 국공립보육시설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국공립보육시설이 56개소인 점을 감안하면 추후 137개의 국공립보육시설이 추가로 설치되어야 한다. 여기에 공보육수용율을 40%로 확대할 경우 386개소의 국공립보육시설이 추가로 설치되어야 하고 이 경우도 현재 56개소보다도 330개소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V-17〉 보육시설 중장기 수요



〈그림V-18〉 전라북도 국공립보육시설 추가설치 필요개수



2016년 현재 기준으로 공보육수용율을 40%로 설정할 경우 전라북도의 국공립보육시설은 약 308개소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추정치도 보육시설의 이용율을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가정하에서 추정된 것으로 향후 보육시설의 이용아동이 증가할 경우 공보육수용율 확대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국공립보육시설의 확대는 불가피하다.

〈표V-17〉 전라북도 보육시설 미설치지역 현황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1	5	7	6	10	3	7	1	4	9	2	6	5
나포면	웅포면	입암면	주천면	죽산면	비봉면	용담면	부남면	변암면	청웅면	인계면	상하면	주산면
	성당면	소성면	수지면	백산면	동상면	안천면		천천면	운암면	적성면	성송면	동진면
	낭산면	영원면	대강면	용지면	경천면	동향면		계남면	신평면		심원면	보안면
	망성면	덕천면	사매면	부량면		상전면		계북면	성수면		성내면	상서면
	용동면	이평면	덕과면	공덕면		백운면			신덕면		신림면	위도면
		감곡면	보절면	청하면		정천면			삼계면		부안면	
		산내면		진봉면		주천면			강진면			
				봉남면					덕치면			
				황산면					지사면			
				광활면								

또한 국공립보육시설의 확대와 함께 보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위해 보육시설의 미설치지역의 보육인프라 확대도 필요하다. 전라북도의 경우 총 241개 읍면동 중에서 총 66개 읍면지역이 아직까지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등의 보육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 국공립보육시설의 확대를 위해서는 신규설치도 필요하지만 현재도 보육시설이 공급과잉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이 비용효과적이다.

〈표V-18〉 전라북도 특성별 보육시설 현황

시군	어린이집 및 이용현황 (개소, 명)				특성별 어린이집 현황 (개소)									
	개소수	정원	현원	총족률 (%)	영유아 수	영아 전담	장애아 전문	장애아 통합	방과후 전담	방과후 통합	시간 연장형	휴일 보육	24 시간	공공형
2017년	1,536	71,103	47,030	66.1	105,317	33	10	11	1	32	409	4	6	103
전주시	669	27,949	18,191	65.2	40,696	16	2	1	0	2	135	0	0	26
군산시	241	11,909	8,446	70.9	17,905	2	2	1	0	2	41	1	1	27
익산시	242	11,139	7,294	65.5	16,928	5	3	2	0	10	82	0	1	16
정읍시	78	3,952	2,614	66.1	5,269	2	1	1	1	3	31	0	2	3
남원시	67	3,318	2,244	67.6	3,949	2	1	2	0	2	45	0	1	7
김제시	56	2,599	1,666	64.1	3,754	1	1	0	0	2	25	0	0	6
완주군	79	3,999	2,664	66.6	6,586	3	0	0	0	5	22	0	0	7
진안군	8	523	283	54.1	1,157	0	0	1	0	1	2	2	0	0
무주군	11	708	452	63.8	1,033	0	0	0	0	0	3	0	0	1
장수군	7	561	409	72.9	1,044	0	0	0	0	0	1	0	0	0
임실군	11	721	397	55.1	1,246	0	0	0	0	0	0	0	0	0
순창군	14	759	419	55.2	1,326	0	0	1	0	0	3	0	0	2
고창군	25	1,453	1,036	71.3	2,220	1	0	2	0	2	11	1	1	4
부안군	28	1,513	915	60.5	2,204	1	0	0	0	3	8	0	0	4

자료 : 전라북도(2017) 어린이집 현황(2017년 3월 기준)

여기에 특수목적 보육시설도 일부 지역의 경우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보육접근성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특수보육수요 충족을 위한 지역별 확충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특수보육수요는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시간연장 보육과 24시간보육 그리고 휴일보육에 대한 수요를 기준으로 최소와 적정의 공급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전국보육실태조사(2015)에서는 시간연장 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4.9%, 24시간 보육은 8.2%, 그리고 휴일보육은 15.1%로 나타났다.

시간연장 보육시설이 아직까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임실군은 다른 지역에 앞서 시간연장 보육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휴일보육과 24시간 보육시설이 아직까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보육수요를 감안하여 지역별로 단계적인 특수보육시설의 확대를 통해 지역의 보육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임실군의 경우 시간연장 보육시설뿐만 아니라 휴일보육시설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보다도 임실군을 중심으로 우선 특수보육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 돌봄기준선인 방과후 돌봄과 관련해서는 지역아동센터의 확대를 통해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이용을 향상시켜야 한다.

〈표V-19〉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현황

구분	개소 수	이용 아동 [a]	기초생활수급 아동										8~16세 빈곤아동 [b]	8~16세 전체아동 [c]	빈곤아동 기준 이용율 a/b	전체아동 기준 이용율
			8세	9세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전주시	66	1,749	412	475	513	474	570	617	666	685	872	5,284	67,091	33.10	2.61	
군산시	50	1,330	167	182	204	185	209	243	271	266	357	2,084	25,793	63.82	5.16	
익산시	46	1,055	202	242	265	258	240	292	310	361	439	2,609	27,708	40.44	3.81	
정읍시	29	696	65	90	96	88	123	127	136	177	189	1,091	9,670	63.79	7.20	
남원시	25	514	68	84	76	85	76	89	96	128	126	828	7,315	62.08	7.03	
김제시	11	279	58	76	85	93	92	85	133	118	161	901	6,021	30.97	4.63	
완주군	13	342	48	58	82	87	77	69	90	92	106	709	7,958	48.24	4.30	
진안군	12	302	22	15	18	16	17	21	12	19	21	161	1,595	187.58	18.93	
무주군	6	130	11	11	12	16	19	11	18	20	33	151	1,704	86.09	7.63	
장수군	7	186	13	19	29	21	28	29	23	28	38	228	1,626	81.58	11.44	
임실군	6	139	20	21	21	18	27	25	27	30	39	228	1,812	60.96	7.67	
순창군	3	62	18	13	21	20	24	22	17	16	31	182	2,156	34.07	2.88	
고창군	6	163	30	36	27	29	37	40	46	72	72	389	4,389	41.90	3.71	
부안군	6	178	24	35	23	28	45	51	50	58	77	391	3,822	45.52	4.66	
전체	286	7,125	1158	1357	1472	1418	1584	1721	1895	2070	2561	15,236	168,660	46.76	4.22	

자료 :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방과후 돌봄의 중요한 물적 자원인 지역아동센터는 2016년 기준 7,125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는 전라북도의 5세에서 14세까지의 아동의 26.6%에 해당한다. 5세에서부터 14세까지 전체아동의 지역아동센터 이용율이 25.6%인 점을 감안하면 전라북도의 지역아동센터 이용율은 전국 평균과 유사하다. 전라북도 시군으로 범위를 좁혀보면, 진안을 제외하면 모든 지역에서 지역아동센터의 빈곤아동의 수용율이 20%내외에 머무르고 있다.

〈그림V-19〉 대빈곤아동 비 지역아동센터 이용률



〈표V-20〉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현황

구분	전체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시설수	288	66	51	47	29	25	11	13	12	6	7	6	3	6	6	
총사 자	정원	631	151	124	97	59	52	25	31	27	13	14	13	6	12	7
	현원	631	151	124	97	59	52	25	31	27	13	14	13	6	12	7
월평균 이용인원	7,151	1,737	1,359	1062	703	500	277	349	306	130	183	133	65	163	184	
전체아동현황	217,340	86,700	33,027	35,642	12,611	9,400	7,782	9,993	2,075	2,147	2,057	2,350	2,729	5,784	5,043	
빈곤아동 (12.9%)	28,037	11,184	4,260	4,598	1,627	1,213	1,004	1,289	268	277	265	303	352	746	651	
빈곤아동 이용율(%)	25.51	15.53	31.90	23.10	43.21	41.23	27.59	27.07	114.32	46.94	68.96	43.87	18.46	21.85	28.28	

주 : 빈곤아동인구수는 전라북도 복지실태조사(2014) raw data 분석결과를 모든 시군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추정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미설치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추가적인 설치가 필요하다. 지역별로 보면,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등을 제외한 10개 시군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안정적인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의 확대가 필요하다.

한편, 지역아동센터의 확대와 함께 지역아동센터를 지역의 방과후 수요에 맞춰 특성화해야 한다. 방과후 돌봄인프라로서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 아카데미와 특성화된 방과후 돌봄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

〈표V-21〉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현황

구분	전주 (3)	군산 (3)	익산 (10)	정읍 (9)	남원 (10)	김제 (11)	완주 (3)	진안 (4)	무주 (2)	장수 (3)	임실 (9)	순창 (8)	고창 (11)	부안 (9)
미 설치 지역	중앙동 동서학 동금암1 동	옥도면 성산면 중앙동	함라면 웅포면 성당면 용안면 남산면 망성면 여산면 삼기면 용동면 영동2동	소성면 덕천면 성당면 정우면 태인면 웅동면 산내면 산외면 농소동	주천면 수지면 이평면 정우면 대산면 사매면 덕과면 보절면 야영면 산내면	죽산면 백산면 송동면 금지면 대산면 사매면 덕과면 보절면 야영면 산내면	비봉면 동상면 경천면	용담면 안천면 상전면 정천면	적상면 부남면	전천면 계남면 계북면	정읍면 운암면 신평면 성수면 신덕면 삼계면 강진면 덕치면 쌍치면 지사면	인계면 동계면 적성면 유동면 금과면 팔덕면 복흥면 쌍치면	고수면 아산면 무장면 공음면 상하면 해리면 성송면 대산면 삼원면 홍덕면 신림면	주산면 동진면 행안면 보안면 변산면 상서면 하서면 출포면 위도면
전체 읍면동	33	27	29	23	23	19	13	11	6	7	12	11	14	13
설치 읍면동	30	24	19	14	13	8	10	7	4	4	4	3	3	4
미설치 율	9.1	11.1	34.5	39.1	43.5	57.9	23.1	36.4	33.3	42.9	75.0	72.7	78.6	69.2

〈표V-22〉 전라북도 아동학대 현황

아동학대 유형	연도별	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중복학대
	2016년	1,447	113	330	34	228	742
	2017년	1,531	123	306	63	276	763
보호조치 결과	계	가정보호	분리보호	사망	분리보호후 가정보복	-	
	2016년	1,447	1,087	348	2	10	
	2017년	1,531	1,299	232	-	-	

자료 : 전라북도(2018) 내부자료

한편, 전라북도의 아동학대유형을 보면, 2017년 기준으로 총 1,531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하였고, 학대의 유형으로는 정서적 학대가 305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임 276건이었다. 중복학대도 763건이었다. 전라북도의 아동학대 건수는 2016년 1,447건(5.8%p)보다도 많았다.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보면, 가정보호가 1,299건으로 가장 많았고, 분리보호는 232건이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가정보호가 전체 보호조치의 84.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예방적 조치라고 할 수 있는 통합교육의 현황을 보면,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은 9,454명이었고, 아동에 대한 교육은 주로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학대예방 인형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에 관한 사항인 권리교육도 4,710건이었다.

아동학대는 학대예방과 적극적 구제 그리고 재발방지로 보호정책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아동학대 건수의 감소를 위해서는 예방적 교육이 필요하고, 예방교육은 단순히 잠재적 피해자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뿐만 아니라 잠재적 가해자인 성인이나 부모에 대한 교육도 강화되어야 한다.

〈표V-23〉 전라북도 아동학대예방 통합교육 현황

구분	총계	신고 의무자 교육	아동					일반인 교육
			소 계	아동 힘키우기 (미취학)	성학대 예방 인형극 (미취학)	성학대 예방 인형극 (초등)	아동 권리교육 (초등)	
2016년	77,271	25,279	46,241	6,537	14,365	17,747	7,592	5,751
2017년	52,106	9,464	37,750	6,672	12,272	14,096	4,710	4,892

자료 : 전라북도(2018) 내부자료

〈표V-24〉 전라북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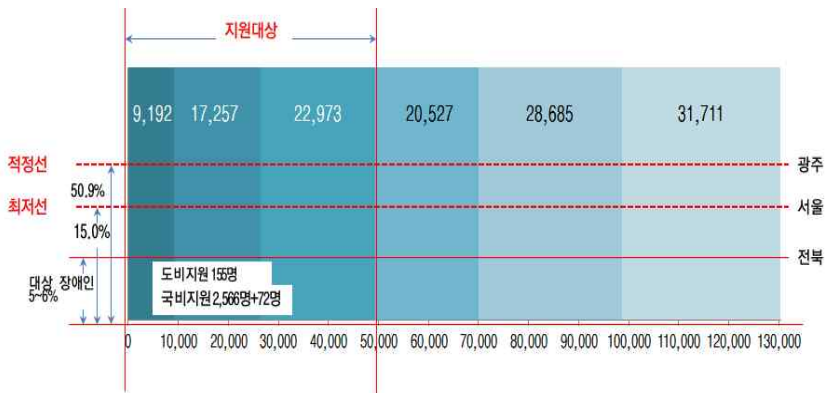
구분	2016년			구분	2017년			
	장애인 수	국비	도비추가		2017	국비	가산급여	도비추가
1급	9,260			1급	9,201			
2급	17,299	2,178	148	2급	17,272	2,566	72명	155명
3급	22,946	(4.4%)	(0.3%)	3급	23,044	(5.18%)	(0.1%)	(0.3%)
전체	49,505			전체	49,517			

아울러 장애인의 돌봄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지원을 위한 활동지원제도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1급에서 3급까지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국가의 지원과 지자체별로 별도의 추가지원을 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2016년 한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으로 국비지원대상이 약 2,178명 그리고 2017년에는 2,566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여기에 전라북도는 도비 추가지원을 통해 155명의 장애인에게 최소 10시간에서 최대 40시간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V-20〉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운영 현황

기본급여(국고보조)			추가급여(국고보조)		전라북도 추가급여(도비)
구분	등급	월급여액 (시간)	① 최종증(400점 이상) 독거가구	2,464 (274시간)	① 최종증 장애인 독거가구 40시간
장애 1~3급	1등급 (380점~470점)	1,063천원 (118시간)	② 중증(380~399점) 독거가구	720 (80시간)	② 만10세 이하 자녀양육 여성장애인 40시간
			③ 기타(380점 미만) 독거가구	180 (20시간)	③ 중증 장애인 독거가구 20시간
			④ 최종증(400점 이상) 취약가구	2,464 (274시간)	④ 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인 20시간
			⑤ 중증(380점~399점) 취약가구	720 (80시간)	⑤ 정기적인 사회활동을 하 는 장애인 20시간
	2등급 (320점~379점)	852천원 (94시간)	⑥ 기타(380점 이하) 취약가구	180 (20시간)	⑥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 구 10시간
			⑦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 가 출산한 경우(6개월)	720 (80시간)	⑦ 기타 자치단체장 인정 장 애인 40시간
			⑧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 립을 준비하는 경우(6개월)	180 (20시간)	
			⑨ 학교에 다니는 경우	91 (10시간)	
	3등급 (260점~319점)	642천원 (71시간)	⑩ 직장에 다니는 경우	360 (40시간)	
			⑪ 가족(실질적 보호자) 등의 결 혼,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180 (20시간)	
			⑫ 인정점수 400점 이상으로 수급 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직장 생활 및 학교생활 등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	657 (72시간)	
	4등급 (220점~259점)	430천원 (48시간)			

〈그림V-21〉 전라북도 장애인활동지원 복지 적정선 설정 기준



하지만 전라북도의 장애인활동지원의 지원대상은 전체 1-3급 장애인의 6%내에
외 불과하고 추가인정시간도 최대 40시간밖에 지원되지 않는다. 타지자체 중에는
서울시만 하더라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수혜자가 전체 1-3급 장애인의 15%정도
수준이고 광주광역시의 경우 1-3급의 중증장애인의 절반 이상인 50.9%의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의 수혜를 받고 있다.

여기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추가인정시간도 전라북도는 최대 40시간밖에
되지 않지만 부산광역시의 경우 최대 120시간, 서울시는 최대 350시간까지를 추가
로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전라북도의 장애인활동지원은 최저선을 15%로 설정하
고 적정선은 거의 모든 일에 도움이 필요한 약 51.5%를 기준선으로 설정하여 장
어진활동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표 V-25〉 전라북도 장애인 일상생활수행능력 정도

구분	모든일상생활 혼자 함	대부분의 일상생활 혼자 함	일부 도움필요	대부분 도움필요	거의 모든일에 도움필요
비해당	28.7	22.7	30.1	6.5	11.9
1급			29.5	31.7	38.8
2급	16.6	16.4	38.9	21.8	6.2
3급	36.6	15.9	26.4	14.6	6.5
4급	54.1	22.7	18.0	3.2	1.9
5급	61.7	16.1	16.1	3.9	2.3
6급	79.2	7.5	11.9	1.5	
전체	50.8	14.4	21.1	8.6	5.0

자료 : 보건복지부(2014) 노인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표 V-26〉 사유별 차별행위 진정접수 현황

구분	합계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신체조건	혼인여부											
누적	23,419	100	739	3.2	162	0.7	10,993	46.9	1,502	6.4	1,904	8.1	135	0.6	375	1.6	15	0.1	302	1.3	112	0.5
2016	2,440	100	96	3.9	15	0.6	1,511	61.9	99	4.1	87	3.6	8	0.3	28	1.1	-	0	18	0.7	16	0.7
2015	2,188	100	65	3	6	0.3	1,147	52.4	98	4.5	117	5.3	8	0.4	23	1.1	-	0	23	1.1	10	0.5
2014	2,197	100	64	2.9	15	0.7	1,139	51.8	103	4.7	158	7.2	19	0.9	48	2.2	3	0.1	21	1	6	0.3
2013	2,496	100	64	2.6	11	0.4	1,312	52.6	142	5.7	146	5.9	13	0.5	35	1.4	-	0	31	1.2	5	0.2
2012	2,549	100	45	1.8	12	0.5	1,340	52.6	166	6.5	185	7.3	6	0.2	9	0.4	1	0	40	1.6	6	0.2
2011	1,803	100	35	1.9	10	0.6	886	49.1	146	8.1	127	7	10	0.6	27	1.5	1	0.1	19	1.1	5	0.3
2010	2,681	100	45	1.7	14	0.5	1,695	63.2	196	7.3	81	3	7	0.3	27	1	3	0.1	24	0.9	5	0.2
2009	1,685	100	83	4.9	14	0.8	725	43	138	8.2	91	5.4	5	0.3	16	0.9	3	0.2	23	1.4	7	0.4
2008	1,380	100	42	3	13	0.9	640	46.4	62	4.5	103	7.5	4	0.3	28	2	2	0.1	15	1.1	5	0.4
2007	1,159	100	50	4.3	14	1.2	256	22.1	108	9.3	117	10.1	9	0.8	38	3.3	1	0.1	20	1.7	3	0.3
2006	824	100	28	3.4	8	1	116	14.1	69	8.4	208	25.2	10	1.2	28	3.4	-	0	11	1.3	22	2.7
2005	1,081	100	53	4.9	11	1	121	11.2	87	8	297	27.5	23	2.1	19	1.8	-	0	45	4.2	9	0.8
2004	389	100	24	6.2	8	2.1	54	13.9	57	14.7	64	16.5	6	1.5	10	2.6	-	0	6	1.5	7	1.8
2003	358	100	33	9.2	5	1.4	18	5	24	6.7	75	20.9	2	0.6	19	5.3	1	0.3	4	1.1	4	1.1
2002	136	100	10	7.4	4	2.9	20	14.7	6	4.4	31	22.8	2	1.5	12	8.8	-	0	2	1.5	2	1.5
2001	53	100	2	3.8	2	3.8	13	24.5	1	1.9	17	32.1	3	5.7	8	15.1	-	0	-	0	-	0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2016)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장애인돌봄정책과 관련하여 두 번째 세부정책은 인권침해에 따른 차별해소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행위 진정건수 중 장애로 인한 진정은 2001년 13건에서 2016년 1,511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2016년 한해 차별진정건수 중 장애로 인한 진정건수는 전체 진정건수의 61.9%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사회전반에서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라북도의 경우 전체 장애인의 약 33.8%정도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표V-27〉 전라북도 장애인 차별인식 정도

구분		항상 느낌	가끔 느낌	별로 느끼지 않음	전혀 느끼지 않음
장애 등급	비해당	16.6	40.0	27.0	16.4
	1급	11.3	32.4	35.6	20.8
	2급	17.3	55.1	19.8	7.8
	3급	9.1	35.1	36.9	18.8
	4급	5.2	24.2	38.5	32.1
	5급	1.5	19.5	44.8	34.2
	6급	1.6	14.2	45.3	38.9
기초 생활 수급	비해당	5.9	24.7	38.9	30.5
	일반수급	9.7	42.5	33.3	14.6
	조건수급		40.0	60.0	
전체		6.4	27.4	38.3	27.9

자료 : 보건복지부(2014)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그림 V-22〉 전라북도 인권센터의 장애인인권개선방향



전라북도의 장애인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2016년에 신설된 전북장애인권센터 내 장애인인권팀의 역할강화를 통한 적극적 구제조치가 이행되어야 한다. 장애인인권센터에서는 인권침해에 대한 사후조치보다는 방문형 인권상담 등을 통한 예방적 조치를 강화해야 하고, 장애인인권침해 우려시설인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진정접수 이전에 직권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노인의 돌봄과 관련해서는 노인돌봄서비스의 주요수요라고 할 수 있는 일상생활수행장애노인의 비율을 돌봄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표V-28〉 전라북도 전체노인 돌봄서비스 사각지대 추정

구분	장애노인	도움유무	도움제공자	비율	인원수 (추정)
돌봄 서비스 수요	ADL 장애 10.3% (36,182명)	도움(91.7%) 33,179명	① 가족도움	71.7	23,789
			② 가족+외부도움	8.0	2,654
			③ 외부도움	20.3	6,735
		미도움(8.3%)	㉠ 3,003명		
	IADL 장애 16.4% (57,610명)	도움(95.9%) 55,248명	① 가족도움	76.8	42,431
			② 가족+외부도움	8.9	4,917
			③ 외부도움	14.3	7,900
		미도움(4.1%)	㉢ 2,362명		
돌봄서비스 수요추정치(㉠+㉢)					5,365명

*2017년 기준 노인인구 351,282명 적용 수요추정

〈표V-29〉 전라북도 장기요양 자격별 주요질병 및 증상 현황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전체	27,625	1,443	2,935	8,597	12,611	2,039
치매	7,695	315	703	2,259	3,017	1,401
중풍(뇌졸중)	4,686	442	690	1,725	1,791	38
치매+중풍	1,904	274	442	661	452	75
고혈압	347	9	25	98	187	28
당뇨병	358	8	27	102	204	17
관절염	3,190	42	175	848	1,971	154
요통, 좌골통	3,899	37	208	1,049	2,430	175
호흡곤란	117	2	8	32	74	1
난청	27	0	1	5	17	4
백내장 등 시각장애	355	3	17	101	226	8
골절, 탈골 등 사고후유증	2,123	102	295	802	876	48
암	415	25	50	123	212	5
기타	1,855	148	224	559	859	65
질병없음	654	36	70	233	295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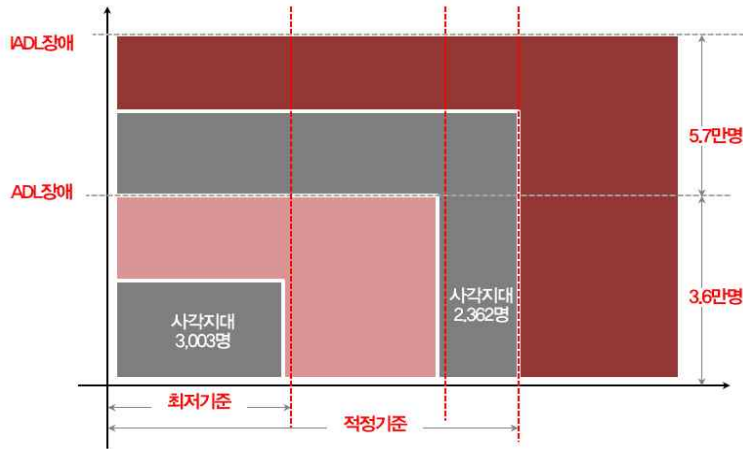
이 같은 기준 적용시 전라북도의 ADL장애노인은 전체 노인의 약 10.3%인 3.6만명정도로 추정되고 IADL장애노인은 전체 노인의 16.4%인 5.7만명으로 추정된다.

〈표V-30〉 전라북도 등급별자격별 판정 현황(65세 이상)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계	6,987	4,061	4,891	3,773	2,291	2,571	2,019	970	746	846	1,157	1,268	2,028	1,747
1등급	282	187	172	51	88	104	59	47	32	29	20	26	40	51
2등급	514	362	427	174	174	174	142	68	94	52	59	84	166	107
3등급	1,528	1,019	1,264	663	504	703	426	181	195	143	225	261	484	363
4등급	1,405	988	1,310	801	544	554	337	186	152	212	249	326	599	396
5등급	117	92	135	26	47	41	43	19	10	15	22	4	27	34
등급외	3,141	1,413	1,583	2,058	934	995	1,012	469	263	395	582	567	712	796
계	7,663	4,520	5,516	3,993	2,410	2,838	2,235	1,020	809	839	1,189	1,355	2,231	1,761
1등급	285	183	147	55	84	94	66	48	31	19	26	22	36	47
2등급	572	366	448	172	209	204	142	77	89	38	58	91	131	107
3등급	1,575	1,013	1,317	628	536	688	417	182	201	142	210	232	470	338
4등급	1,786	1,220	1,681	1,036	611	762	500	249	198	254	284	371	826	466
5등급	242	161	257	51	71	89	74	34	19	27	41	18	48	77
등급외	3,203	1,577	1,666	2,051	899	1,001	1,036	430	271	359	570	621	720	726
계	8,424	4,875	6,112	4,193	2,521	3,152	2,356	1,088	880	901	1,212	1,350	2,359	1,883
1등급	342	200	181	81	74	107	67	43	30	18	20	23	39	54
2등급	642	366	457	166	196	220	153	69	80	45	68	83	125	126
3등급	1,687	1,039	1,341	682	505	746	407	175	198	148	207	219	421	369
4등급	2,184	1,388	1,854	1,265	748	954	606	315	269	315	342	427	983	520
5등급	390	234	375	145	98	153	103	67	30	49	84	37	100	123
등급외	3,179	1,648	1,904	1,854	900	972	1,020	419	273	326	491	561	691	691

자료 : 건강보험공단(2016) 장기요양보험 통계

〈그림V-23〉 전라북도 노인돌봄서비스 사각지대 추정



전술한 바와 같이 전라북도 노인의 돌봄사각지대는 일상생활수행능력(ADL, IADL)의 장애를 기준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노인을 대상으로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전라북도의 경우 기본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의 장애가 있는 노인은 3.6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의 장애가 있는 노인은 약 5.7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장애노인 중 국가의 제도적 지원이나 가족의 돌봄지원이 없는 노인은 최소 3.6만명에서 최대 9.3만명 정도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돌봄서비스는 ADL 장애노인과 IADL장애노인을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추가적인 지원이나 노인돌봄서비스의 지원대상 확대 등을 통해서 최저기준과 최소기준의 단계적 충족이 필요하다.

또한, 일상생활의 장애가 있는 노인의 경우 장기요양보험이나 노인돌봄기본 혹은 돌봄종합서비스 등의 제도적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내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필요하다. 지역의 중요한 복지자원인 경로당을 활용하여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지역사회의 관계망을 통해서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전라북도의 경우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경로당을 그룹홈 혹은 공동생활가정으로 전환하여 홀몸노인의 여가와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사례도 좋은 예이다.

〈표V-31〉 전라북도 장기요양시설 추이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08-2016(증감)	
										개수	증감율
계	561	866	809	776	785	818	878	945	1,010	449	80.0
방문요양	237	440	478	440	434	451	489	551	588	351	148.1
방문목욕	152	307	352	340	338	352	373	417	444	292	192.1
방문간호	27	31	29	23	19	18	20	20	26	-1	-3.7
주야간보호	43	57	63	63	71	80	95	111	129	86	200.0
단기보호	33	72	17	10	8	4	5	4	3	-30	-90.9
복지용구	42	59	64	71	76	89	91	95	107	65	154.8
노인요양시설	126	132	138	144	150	150	152	152	162	36	28.6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6	30	43	54	61	71	75	71	66	50	312.5

자료 :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통계 각연도

또한, 노인돌봄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장기요양시설의 추가적인 확대도 필요하다. 현재는 장기요양시설이 수요대비 공급량이 과다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설 설치가 필요하지 않지만 향후 노인인구의 증가와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는 장기요양시설이 추가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도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서 공립요양 또는 주야간 보호기관이 없는 기초지자체에 대해 장기요양 공립시설의 추가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향후 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추가적인 장기요양수요에 대응하여 공립형 장기요양시설의 추가설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6년 기준 전라북도 요양시설의 정원은 7,236명으로 현재 정원충족율은 66.1%에 불과해 현재 수준에서는 장기요양시설의 확충이 필요하지 않지만 2029년 이후부터는 추가적인 시설확충이 필요하다.

〈표V-32〉 전라북도 요양시설 추가 수요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비고	
전체노인	346,883	356,636	371,521	384,707	398,387	413,647	429,878	450,204	471,396	487,086	505,079	518,396	534,129	-	
장기요양노인	28,098	28,888	30,093	31,161	32,269	33,505	34,820	3,6467	38,183	39,454	40,911	41,990	43,264	-	
시설 수요	요양시설	4,861	4,998	5,206	5,391	5,583	5,796	6,024	6,309	6,606	6,826	7,078	7,264	7,485	시설확충 필요
	공동생활 가정	357	367	382	396	410	426	442	463	485	501	520	533	549	-
	단기보호	14	14	15	16	16	17	17	18	19	20	20	21	22	시설확충 필요
	양로시설	25	26	27	28	29	30	31	33	34	36	37	38	39	-

4. 건강분야 복지기준선 설정

(1) 건강분야 복지기준선 설정의 쟁점

전라북도의 치매노인 등록자는 2016년 기준 19,377명으로 전체 노인의 8.90%를 차지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치매노인 등록비율은 전국 평균인 4.71%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노인생활실태조사에서 치매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인지저하자 비율은 40.0%로 전체 인구로 추정해보면 약 13.2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보건소에 등록된 치매노인은 2.9만명으로 인지저하자의 8.9%에 불과하다.

따라서 전체 인지저하자 중 치매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약 10.3만명의 노인은 치매노인의 관리 및 지원대책에서 배제되어 있는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실상 인지저하로 일상생활에 일정한 어려움이 있는 노인에 대해서는 치매검진을 통한 치매관리인구의 편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표 V-33〉 치매등록사각지대 현황

지역	MMSE-K 평균점수	인지저하자		치매등록자 ^㉔		전체노인	치매등록 사각지대 ㉔-㉕
		비율	추정인구 ^㉔	인원	비율		
전국	23.7	31.5	2,163,738	323,858	4.71	6,869,011	1839,880
서울	24.7	28.8	360,738	52,652	4.20	1,252,563	308,086
부산	24.5	23.1	126,310	13,578	2.48	546,797	112,732
대구	24.9	23.9	76,679	13,449	4.19	320,834	63,230
인천	24.3	21.4	66,954	14,548	4.65	312,871	52,406
광주	22.9	52.5	87,354	5,927	3.56	166,389	81,427
대전	19.3	73.7	121,994	6,974	4.21	165,528	115,020
울산	24.8	20.5	21,013	4,148	4.05	102,503	16,865
세종				903	4.07	22,168	
경기	24.2	29.1	405,845	49,973	3.58	1,394,655	355,872
강원	24.5	21.1	55,237	12,567	4.80	261,785	42,670
충북	23.8	24.6	57,218	10,010	4.30	232,592	47,208
충남	21.3	45.3	154,570	19,377	5.68	341,214	135,193
전북	22.7	40.0	132,507	29,493	8.90	331,268	103,014
전남	21.1	49.4	193,567	21,926	5.60	391,837	171,641
경북	24.6	23	110,316	34,180	7.13	479,634	76,136
경남	23.2	29.9	137,684	29,449	6.40	460,480	108,235
제주	23.1	34.1	29,290	4,704	5.48	85,893	24,586

또한 치매노인 중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대상도 전체 치매노인을 보호하고 있지 못해 요양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다. 전라북도의 장기요양보험 수혜자 중에서 치매노인은 7,695명이고 치매와 중풍 치매노인은 1,904명으로 약 9.6만명 정도만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다.

전라북도의 전체 장기요양서비스 수혜자 중에서 치매노인은 27.8% 수준이고 치매와 중풍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노인은 16.9%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 장기요양서비스의 수혜자가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지만 치매를 가지고 있는 노인 다수를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전라북도의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중 치매노인은 2010년 3,144명에서 2016년 7,695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치매노인의 장기요양보험 지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증치매라고 할 수 있는 인지저하자를 포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치매추정인구 중 장기요양보험에서 보호받고 있는 치매노인은 약 9천명밖에 되지 않아 최소 1.2만명 최대 1.3만명의 치매노인은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다.

〈표V-34〉 전라북도 장기요양 주요질병 및 증상 현황

지역	MMSE-K 평균점수	인지저하자		치매 등록자 b	장기요양노인			전체 노인	치매요양 사각지대	
		비율	추정인구 a		치매 c	치매 중풍d	e= c+d		a~c	a~e
전국	23.7	31.5	2,163,738	323,858	169,903	37,656	207,559	1,295,899	1,993,835	1,956,179
서울	24.7	28.8	360,738	52,652	27,897	5,864	33,761	536,064	332,841	326,977
부산	24.5	23.1	126,310	13,578	8,746	2,358	11,104	328,901	117,564	115,206
대구	24.9	23.9	76,679	13,449	7,248	1,914	9,162	324,255	69,431	67,517
인천	24.3	21.4	66,954	14,548	8,899	1,801	10,700	172,572	58,055	56,254
광주	22.9	52.5	87,354	5,927	3,837	784	4,621	171,568	83,517	82,733
대전	19.3	73.7	121,994	6,974	4,691	1,200	5,891	108,768	117,303	116,103
울산	24.8	20.5	21,013	4,148	2,521	641	3,162	24,197	18,492	17,851
세종					684	124	808			
경기	24.2	29.1	405,845	903	38,183	8,568	46,751	1,374,475	367,662	359,094
강원	24.5	21.1	55,237	49,973	6,882	1,761	8,643	266,152	48,355	46,594
충북	23.8	24.6	57,218	12,567	6,268	1,592	7,860	240,690	50,950	49,358
충남	21.3	45.3	154,570	10,010	9,697	1,826	11,523	350,108	144,873	143,047
전북	22.7	40.0	132,507	19,377	7,695	1,904	9,599	341,203	124,812	122,908
전남	21.1	49.4	193,567	29,493	10,009	1,435	11,444	398,916	183,558	182,123
경북	24.6	23	110,316	21,926	12,660	2,803	15,463	492,417	97,656	94,853
경남	23.2	29.9	137,684	34,180	11,232	2,493	13,725	480,278	126,452	123,959
제주	23.1	34.1	29,290	29,449	2,754	588	3,342	89,189	26,536	25,948

자료 : 보건복지부 노인생활실태조사(2014), 국민건강보험공단(2017) 장기요양보험통계 재구성

〈표 V-35〉 전라북도 자살생각 및 이유

지역	자살 생각률	자살 시도율	자살생각 이유							기타	계
			건강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사망 (배우자 가족 등)	부부자녀 갈등 및 단절	배우자가 죽 건강			
전국	10.9	12.5	24.4	40.4	13.3	5.4	11.5	4.8	0.2	100	
서울	13.5	18.3	17.4	43.1	20.8	2.9	10.9	4.9	0	100	
부산	15.5	16.2	29.6	39.4	6.7	8.8	13.1	2.4	0	100	
대구	9	8.6	29.6	42.1	5.3	6.8	11.2	5	0	100	
인천	12.7	3.4	28.7	42.8	12.6	0	9.7	6.3	0	100	
광주	6.1	16.6	15.1	54.5	8.9	3.8	11.8	5.9	0	100	
대전	5.5	7.2	39.5	26.5	12.7	7	2.4	12	0	100	
울산	10.4	9.1	29.1	49	3	9.8	4.2	4.8	0	100	
경기	15.9	9.3	24.7	41.1	10.3	5.7	13.7	4.2	0.4	100	
강원	6	18.8	19.7	39.7	21.1	1.3	16.3	1.9	0	100	
충북	7.3	18.1	16.6	35.3	20.6	9.9	14	2.4	1.3	100	
충남	4.1	3.8	31.8	40.8	8.1	6.1	5.8	6.1	1.3	100	
전북	9.4	16.2	28.1	33.1	10.7	1.7	18.9	7.5	0	100	
전남	6.2	8.2	20.5	27.2	28.7	11.9	3.6	8.1	0	100	
경북	8.8	12.8	30.2	39.8	17.1	7.1	0.7	5.1	0	100	
경남	8.2	7.7	24.5	39.2	6.7	8.5	14.6	6.5	0	100	
제주	6.5	10.2	41.8	34.6	2.2	0	16.2	5.2	0	100	

자료 : 통계청(2016) 사망원인통계

전라북도의 건강과 관련하여 또하나의 중요한 쟁점은 지역의 자살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전라북도의 자살생각률은 2016년 기준 9.4%로 전국 평균보다는 낮지만 광역도 지역에서는 경기도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고 자살시도율은 16.2%로 전국 평균인 12.5%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표 V-36〉 우울감 경험률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조율 (%)	표준 화율 (%)	조율 (%)	표준 화율 (%)	조율 (%)	표준 화율 (%)	조율 (%)	표준 화율 (%)	조율 (%)	표준 화율 (%)	조율 (%)	표준 화율 (%)	조율 (%)	표준 화율 (%)
전주시	6.9	6.8	3.4	3.4	5.4	5.2	5.8	5.8	7.2	7.0	3.8	3.6	5.2	5.0
군산시	4.1	3.9	2.4	2.5	7.9	7.8	6.2	5.9	5.0	4.7	4.3	4.2	6.0	6.3
익산시	5.3	5.0	3.6	3.3	4.0	3.7	7.2	7.1	10.3	9.3	6.3	6.0	8.2	7.7
정읍시	5.0	5.1	2.6	2.4	5.0	4.1	3.5	4.1	2.7	2.8	4.3	5.0	5.8	5.1
김제시	6.6	6.4	5.6	4.7	3.3	2.6	9.1	8.2	10.4	10.5	4.3	4.4	6.0	5.8
남원시	3.3	2.5	4.4	4.7	4.9	5.4	4.2	4.0	1.9	1.7	3.8	3.8	5.8	6.1
완주군	4.3	3.4	3.3	2.9	3.3	2.9	2.1	2.2	3.1	3.0	6.2	5.9	4.5	4.5
진안군	2.0	1.9	1.6	2.1	3.9	3.0	5.8	5.2	7.1	6.2	5.1	4.8	3.4	2.7
무주군	3.0	3.1	3.4	2.5	5.8	6.2	7.8	6.8	5.3	4.5	4.4	5.1	9.2	10.2
장수군	1.5	1.5	1.2	0.7	1.3	1.1	4.5	3.8	10.0	8.5	3.3	2.0	5.7	5.5
임실군	3.6	3.4	5.1	5.0	7.1	6.1	2.5	2.3	4.5	3.6	2.1	2.5	4.5	4.6
순창군	4.7	4.2	2.0	1.9	7.3	7.8	5.8	5.6	4.6	4.8	2.8	3.2	4.1	5.0
고창군	7.2	6.6	2.6	2.6	8.3	8.1	6.0	6.1	5.9	5.7	5.6	5.1	13.5	11.1
부안군	1.5	1.2	2.7	2.1	7.8	7.1	7.3	6.9	9.6	7.5	6.6	6.2	5.8	5.5

자료 : 보건복지부(각연도) 지역사회건강조사

〈표V-37〉 연령대별 자살률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계	2,261	943	596	769	339	374	274	54	2,879	495	517	665	528	562	773	912	151	13,144
10~14세	6	1	2	17	10	1	4		7		1	1	1	1		1		53
15~19세	47	13	16	29	11	7	9	3	65	9	7	10	11	12	7	11	2	269
20~24세	110	33	22	37	22	14	24	3	97	12	20	22	11	16	25	33	4	505
25~29세	131	60	30	67	30	19	20	2	126	17	20	23	18	21	32	39	5	660
30~34세	196	63	28	55	34	29	21	5	195	26	36	38	30	29	49	55	12	901
35~39세	167	70	44	69	39	28	28	6	217	24	39	46	25	30	55	80	8	975
40~44세	228	81	39	79	29	45	32	3	297	40	46	54	40	49	72	110	22	1,266
45~49세	201	97	65	77	36	50	23	4	334	49	42	64	50	45	69	95	12	1,313
50~54세	220	102	61	97	25	35	32	9	308	56	47	57	54	56	85	93	13	1,350
55~59세	235	105	72	53	22	32	24	3	279	52	49	59	62	59	81	92	11	1,290
60~64세	161	80	48	49	19	21	16	6	217	47	43	57	35	53	55	60	12	979
65~69세	126	67	43	39	19	24	12	2	145	20	35	44	46	39	55	50	9	775
70~74세	146	66	40	49	18	24	16	1	180	39	33	61	36	43	41	57	19	869
75~79세	118	54	38	52	25	20	13	3	175	50	49	50	44	40	60	64	11	866
80세 이상	169	51	48	27	16	25	9	4	237	54	50	79	65	69	87	72	11	1,073
80~84세	84	33	31	16	7	12	4	4	130	30	23	39	42	43	54	43	8	603
85~89세	56	13	13	9	2	8	217		72	12	21	31	19	19	23	15	2	532
90세 이상	29	5	4	580	258	5	57		35	12	6	9	4	7	10	14	1	1,036
15세미만	6	1	2	189	81	1			7		1	1	1	1		1		292
15~64세	1,696	704	425			280		44	2,135	332	349	430	336	370	530	668	101	8,400
65세 이상	559	238	169			93		10	737	163	167	234	191	191	243	243	50	3,288

자료 : 통계청(2016) 사망원인통계

특히, 전라북도의 사망자는 2016년 기준 14,062명이고 이중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528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3.75%를 차지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자살자 중 연령대별로 보면 55세에서 59세가 62명으로 가장 많고, 65세 이상 고령노인의 자살자로 191명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50세 이후의 자살자가 342명으로 전체 자살자의 64.7%를 차지하고 있어 50세 이후 중장년층과 노년층에 대한 자살예방적 정책이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표V-38〉 전라북도 연령별 자살자 및 인구십만명당 자살율 현황

구분	계	10세 ~ 14세	15세 ~ 19세	20세 ~ 24세	25세 ~ 29세	30세 ~ 34세	35세 ~ 39세	40세 ~ 44세	45세 ~ 49세	50세 ~ 54세	55세 ~ 59세	60세 ~ 64세	65세 ~ 69세	70세 ~ 74세	75세 ~ 79세	80세 이상	15세 미만	15세 ~ 64세	65세 이상
사망자 수	528	1	11	11	18	30	25	40	50	54	62	35	46	36	44	65	1	336	191
사망률 (십만명당)	28.5	1.1	9	8.9	19.2	28.5	20.5	28	32.9	37.1	41.7	30.6	46.6	43.6	61.1	79.9	0.4	26.4	57.1

자료 : 통계청(2016) 사망원인통계

전술한 바와 같이 연령대별 자살자 수를 보면, 50세 이상의 장년층과 고령자의 자살자 수가 가장 많을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고령자의 자살자 수는 계속해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편, 전라북도의 자살자 수는 2005년 492명에서 2016년 528명으로 7.3%P 증가하였지만 2011년 약 700명에 육박하던 자살자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지역별로 보면, 2016년 기준으로 사망자는 전주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익산, 군산 등의 순이다. 다만 인구10만명당 사망자수는 김제가 53.8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장수 47.1명, 순창 43.4명 등의 순이다.

〈표V-39〉 전라북도 연령별 자살자 및 인구십만명당 자살율 현황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사망자 수	사망률 (인구 십만명당)
전주	117	112	125	156	153	148	173	140	147	159	140	128	19.7
군산	65	48	83	58	89	84	106	89	91	84	70	86	31.2
익산	94	81	106	81	103	91	123	99	90	80	89	91	30.4
정읍	34	45	46	34	44	45	52	43	39	32	46	40	35.0
남원	18	24	36	33	31	44	35	31	35	33	15	25	29.7
김제	38	36	49	38	63	38	34	33	34	32	35	47	53.8
완주	23	20	41	30	39	29	42	24	24	23	19	23	24.3
진안	5	3	17	11	14	20	21	6	14	6	8	10	38.6
무주	7	9	9	11	12	12	10	5	10	4	6	10	40.0
장수	11	8	12	16	14	15	8	12	6	7	9	11	47.1
임실	12	13	16	24	20	15	16	12	11	17	11	12	39.9
순창	9	7	11	10	21	15	14	7	9	6	9	13	43.4
고창	29	35	21	29	28	31	37	22	23	26	13	19	31.7
부안	30	35	21	35	32	28	23	21	20	26	25	13	23.0
전체	492	476	593	566	663	615	694	544	553	535	495	528	

자료 : 통계청(2016) 사망원인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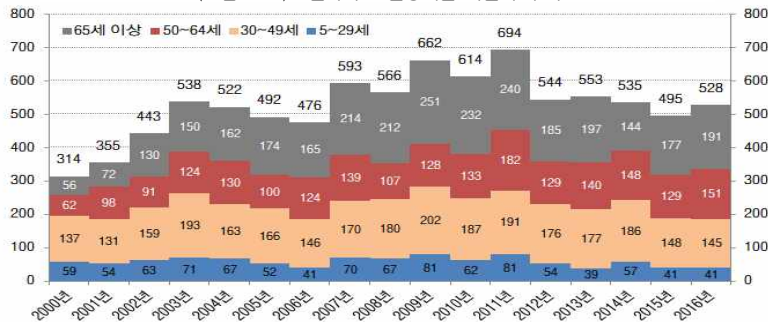
〈표V-40〉 전라북도 연령별 수 추이(단위 : 명, 비율)

구분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평균	증가율(2000-2006)	
											인원	비율
계	314	443	522	476	566	615	544	535	528	504.78	214	68.2
5~9세	1	0	0	1	0	0	0	-	-	0.22		
10~14세	2	0	2	0	2	1	0	-	1	0.89	-1	-50.0
15~19세	9	12	20	3	4	7	13	9	11	9.78	2	22.2
20~24세	22	20	24	23	22	13	17	19	11	19.00	-11	-50.0
25~29세	25	31	21	14	39	41	24	29	18	26.89	-7	-28.0
30~34세	33	38	36	33	34	44	47	34	30	36.56	-3	-9.1
35~39세	42	49	38	39	43	34	49	46	25	40.56	-17	-40.5
40~44세	42	40	50	36	51	64	32	57	40	45.78	-2	-4.8
45~49세	20	32	39	38	52	45	48	49	50	41.44	30	150.0
50~54세	20	28	45	44	39	55	55	63	54	44.78	34	170.0
55~59세	25	31	45	41	34	34	38	51	62	40.11	37	148.0
60~64세	17	32	40	39	34	44	36	34	35	34.56	18	105.9
65~69세	24	35	52	47	65	55	33	32	46	43.22	22	91.7
70~74세	15	28	42	37	52	68	54	39	36	41.22	21	140.0
75~79세	8	30	36	36	43	63	47	38	44	38.33	36	450.0
80세이상	9	37	32	45	52	46	51	35	65	41.33	56	622.2
80~84세	6	23	23	28	30	28	32	17	42	25.44	36	600.0
85~89세	1	8	6	12	18	16	16	11	19	11.89	18	1800.0
90세이상	2	6	3	5	4	2	3	7	4	4.00	2	100.0
15세미만	3	0	2	1	2	1	0	-	1	1.11	-2	-66.7
15~64세	255	313	358	310	352	381	359	391	336	339.44	81	31.8
65세이상	56	130	162	165	212	232	185	144	191	164.11	135	241.1

자료 : 통계청(2016) 사망원인통계

전라북도의 연령별 자살자 추이를 보면, 20대에서 40대까지의 자살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다만 15세와 19세의 연령대에서는 자살자의 수가 소폭 증가하였다. 따라서 또한 여전히 50세와 64세의 장년층에서의 자살자도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V-24〉 전라북도 연령대별 자살자 추이



〈표V-41〉 보건의료 분야 복지기준선

구분	정책목표 및 복지기준선		
정책목표			
영유아 건강	최저기준	검강검진율을 70%까지 향상시킨다	수검율 68.08%
	적정기준	검강검진 결과에 따른 정밀검진대상자의 검진율을 80% 향상시킨다	
치매 진단	최저기준	치매노인의 등록률을 전체 노인의 10%(중증치매)까지 확대한다	등록률 8.90%
	적정기준	치매노인의 등록률을 전체 노인의 40%(경도인지장애)까지 확대한다	
치매 진료	최저기준	중증치매노인의 돌봄서비스 수혜율을 50%까지 확대한다	수혜율 7.2%
	적정기준	중증 및 경증치매노인의 돌봄서비스 수혜율을 50%까지 확대한다	
자살 예방	최저기준	자살시도율을 10%이하로 감소시킨다	시도율 16.2%
	적정기준	자살자수율을 인구십만명당 20.0명으로 감소시킨다	
공공의료 접근성	최저기준	농촌지역의 의료접근성을 80%까지 향상시킨다	공공의료비율 5.3%
	적정기준	모든지역의 모든진료과의 의료접근성을 100%까지 향상시킨다	
의료부담 경감	최저기준	건강보험의 저소득 빈곤가구의 급여제한을 완전하게 해소한다	급여제한비율 2.7%
	적정기준	건강보험의 급여제한 자를 완전하게 해소한다	

전라북도의 보건의료분야의 복지기준선은 예방과 진단 그리고 치료의 과정에서 의료인프라의 구축 그리고 취약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두고 정책기준선이 설정되어야 한다. 전라북도의 경우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치매진단과 치료의 의료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공공의료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의 기준점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치매진단과 관련해서는 치매노인의 등록율을 기준으로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 아울러 치매의 진료와 재활영역에서도 돌봄서비스와 의료서비스의 지원비율 기준으로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의료의 접근성도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인프라 확충을 정책기준선으로 최저와 적정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V-25〉 보건의료분야 복지기준선 설정영역



(2) 건강분야 복지기준선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

보건의료분야의 복지기준선의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료인프라가 취약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의료 중심의 보건인프라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보건의료 인프라의 개선이 중장기 과제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방문형 방문의료서비스의 확대를 통한 의료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표 V-42〉 건강분야 복지기준선 달성을 세부정책과제

구분	정책목표 및 복지기준선	
정책목표		
영유아 건강	최저기준	건강검진율을 70%까지 향상시킨다
	적정기준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정밀검진대상자의 검진율을 80% 향상시킨다
치매 예방	최저기준	치매노인의 등록률을 전체 노인의 10%(중증치매)까지 확대한다
	적정기준	치매노인의 등록률을 전체 노인의 40%(경도인지장애)까지 확대한다
치매 진료	최저기준	중증치매노인의 돌봄서비스 수혜율을 50%까지 확대한다
	적정기준	중증 및 경증치매노인의 돌봄서비스 수혜율을 50%까지 확대한다
자살 예방	최저기준	자살시도율을 10%이하로 감소시킨다
	적정기준	자살자수를 인구십만명당 20.0명으로 감소시킨다
공공의료 접근성	최저기준	농촌지역의 의료접근성을 80%까지 향상시킨다
	적정기준	모든지역의 모든진료과의 의료접근성을 100%까지 향상시킨다
의료부담 경감	최저기준	건강보험의 저소득 빈곤가구의 급여제한을 완전하게 해소한다
	적정기준	건강보험의 급여제한 자를 완전하게 해소한다

먼저 영유아 건강과 관련해서는 건강검진율 향상을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의 확대와 함께 농촌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이동검진서비스 확대 그리고 공유일 검진기관 확대 등의 제도적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치매예방과 진료의 복지기준선 실현을 위해서는 치매안심센터의 확충과 함께 방문형 치매진단제도 운영 그리고 보건소과 노인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치매노인 돌봄안전망

구축 등의 사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의료의 접근성 향상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 및 병상수를 농촌지역 중심으로 확대하고 건강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소득 빈곤가구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표V-43〉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사업 현황

구분	영유아(0세~5세) (영유아 건강검진)		학동기(6세~18세) (학생검진) (생애전환기(만15~18세)건강진단)		성인기(19~64세) (일반검진 및 암검진) (생애전환기(만40세) 건강진단)		노년기(65세 이상) (일반검진 및 암검진) (생애전환기(만66세) 건강진단)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취학 학동기	비취학 기	학동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가입자
근거 법령	국민건강 보험법 제52 조	의료급여법 제14조	학교보건법 제7조	청소년 지원법 제9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산업안전 보건법 제43조	의료급여법 제14조 제52조 암관리법 제1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1조	의료급여법 제14조 제11조
대상 일 반 검 진	0~5세 전체 영유아		6세~18세 전 취학 학동	9~18세 학교 밖 청소년	· 직장가입자 ·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 40세이상 피부자 및 세대원 * 40세(생애전환기 건강진단)	· 만19세~64세 세대주 · 만41세~64세 세대원	성인기 건강보험 가입자와동일 * 66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66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암 검 진	-	-	-	-암종별 대상연령	-암종별 대상연령	-암종별 대상연령	-암종별 대상연령

자료 : 보건복지부(2017) 건강검진사업 안내 재구성

〈표V-44〉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율 현황

구분	대상인원 수검인원	전체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계 (Total)	200,139 136,355	68.08	69.87	65.92	67.93	67.43	67.12	72.76	68.48	64.55	63.19	64.88	60.26	63.72	67.80	68.13
4~6 개월	26,165 19,693	75.21	75.62	76.99	77.51	73.61	69.54	86.90	74.94	64.71	64.71	64.29	65.22	65.83	64.44	75.26
9~12 개월	27,136 19,831	73.02	74.87	73.73	72.37	70.64	72.14	76.21	73.71	66.67	70.90	51.64	60.25	63.52	70.07	73.08
18~24 개월	27,227 21,396	78.47	79.42	78.96	78.43	79.04	75.77	79.96	80.55	81.05	70.06	72.87	75.42	75.00	73.46	78.58
30~3 6개월	27,986 20,675	73.86	77.32	66.50	73.59	75.78	74.17	73.96	73.38	71.36	70.47	73.94	65.15	72.05	86.21	73.88
42~48 개월	30,526 20,850	68.29	69.31	65.38	67.10	66.25	70.22	73.15	70.78	68.87	74.23	73.15	56.93	67.03	72.59	68.30
54~60 개월	30,211 18,102	59.85	62.70	55.28	58.81	59.46	59.56	66.40	60.62	53.91	45.24	65.52	57.58	65.19	58.09	59.92
66~71 개월	30,888 15,808	51.16	51.79	47.27	51.67	52.94	52.68	60.40	48.83	54.07	54.91	52.54	45.58	43.78	54.37	51.18

자료 : 보건복지부(2016) 국민건강검진 통계연보

전라북도의 영유아 건강검진의 수검율은 도시와 농촌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존재한다. 농촌지역의 경우 보건의료시설이 부족해 수검율이 도시보다 낮은 것이 현실이다. 연령대별로 보더라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수검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V-45〉 영유아 건강검진 종합판정 결과

구분	전체	전주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계	13,782	24191	11342	3484	2542	2660	4162	883	709	667	778	799	1499	1359
양호	12,078	21396	10051	3022	2323	2313	3783	754	591	576	620	702	1336	1034
주의	1,170	1834	777	357	156	236	246	74	95	37	94	57	114	276
정밀평가 필요	534	961	514	105	63	111	133	55	23	54	64	40	49	49

자료 : 통계청(2016) 보건분야 통계

지역별로 보면, 의료인프라가 부족한 임실, 순창 등의 지역의 건강검진 수검율은 60% 초반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영유아 건강검진수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문형 검진제도 그리고 휴일 검진 확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영유아 건강검진 이후 주의 혹은 정밀검진이 필요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에 따른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V-46〉 OECD 치매관리정책 방향 및 우리나라 3차 치매관리정책 작성 비교

OECD가 제시한 10대 핵심 치매관리정책 방향	중증도별 돌봄경로에 따른 구성			
	전생애 구려자	경증 치매	중증 치매	생애 말기
I 치매발병위험 사전관리	①			
II 염려되는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 신속한 치매진단 제공	①	①		
III 치매환자에게 안전하고 수용적인 지역사회 조성	①	①	①	①
IV 치매환자에게 안전하고 적절한 환경제공		②	②	②
V 잘 조정되고 능동적이며 집근처에서 이용하는 돌봄제공		②	②	②
VI 양질의 안전한 공적돌봄서비스 제공		②	②	②
VII 치매를 인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보건기관 확립		②	②	②
VIII 원하는 곳에서 품위있게 임종할 수 있는 치매환자의 권리보호				②
IX 치매에 걸린 친구나 친척을 돌보고자 하는 이들에 대한 지원	③	③	③	③
X 기술을 통한 돌봄지원 구현	④	④	④	④

자료 : 보건복지부(2017) 국가치매관리 정책 추진방향

다음으로 전북의 치매노인은 지역별로 최소 1.7만명에서 최대 2.0만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약 24%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장기요양서비스의 수혜를 받는 노인은 전체 치매노인의 9.1%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치매노인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대안과 함께 치매로 진입한 정도인지장애단계에서부터의 재활지원에 이르는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표V-47〉 전라북도 등급별 장기요양현황 및 치매노인

	계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등급 (경증치매)	등급외	전체노인	치매추정 노인	데이 케어센터
전주	8,424	342	642	1687	2184	390	3179	85,157	20,438	38명
군산	4,875	200	366	1,039	1,388	234	1,648	44,580	10,699	18명
익산	6,112	181	457	1,341	1,854	375	1,904	50,357	12,086	25명
정읍	4,193	81	166	682	1,265	145	1,854	28,587	6,861	9명
남원	2,521	74	196	505	748	98	900	21,167	5,080	17명
김제	3,152	107	220	746	954	153	972	25,155	6,037	21명
완주	2,356	67	153	407	606	103	1,020	19,377	4,650	12명
진안	1,088	43	69	175	315	67	419	8,309	1,994	8명
무주	880	30	80	198	269	30	273	7,701	1,848	
장수	901	18	45	148	315	49	326	7,111	1,707	9명
임실	1,212	20	68	207	342	84	491	9,669	2,321	9명
순창	1,350	23	83	219	427	37	561	9,286	2,229	18명
고창	2,359	39	125	421	983	100	691	18,147	4,355	9명
부안	1,883	54	126	369	520	123	691	16,679	4,003	7명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2016)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데이케어센터를 포함하여 전라북도의 치매노인에 대한 보호는 최소 7.7천명 최대 9.5천명에 불과해 치매추정노인의 약 11%만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다. 따라서 치매노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체계에서 벗어난 사각지대 치매노인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차원의 별도의 보호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전라북도의 치매로 인한 입원환자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농촌지역의 경우 임신군과 순창군은 다빈도 증상에서 2위로 매우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 무주군도 3위를 차지하고 있을만큼 치매노인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표V-48〉 전라북도 등급별 장기요양 증상현황

구분		계	치매	중풍	치매 + 중풍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요통 좌골통	호흡 곤란	난청	백내장 등 시각 장애	골절 탈골등 사고 후유증	암	기타	질병 없음
계	합계	27,625	7,695	4,686	1,904	347	358	3,190	3,899	117	27	355	2,123	415	1,855	654
	남자	7,083	1,822	1,818	621	81	124	394	552	55	7	123	477	184	662	163
	여자	20,542	5,873	2,868	1,283	266	234	2,796	3,347	62	20	232	1,646	231	1,193	491
1등급	합계	1,443	315	442	274	9	8	42	37	2	-	3	102	25	148	36
	남자	380	43	157	53	2	1	2	6	-	-	1	35	10	60	10
	여자	1,063	272	285	221	7	7	40	31	2	-	2	67	15	88	26
2등급	합계	2,935	703	690	442	25	27	175	208	8	1	17	295	50	224	70
	남자	747	129	223	136	3	14	24	28	4	-	6	54	27	84	15
	여자	2,188	574	467	306	22	13	151	180	4	1	11	241	23	140	55
3등급	합계	8,597	2,259	1,725	661	98	102	848	1,049	32	5	101	802	123	559	233
	남자	2,306	497	723	226	24	41	92	159	16	2	32	172	60	203	59
	여자	6,291	1,762	1,002	435	74	61	756	890	16	3	69	630	63	356	174
4등급	합계	12,611	3,017	1,791	452	187	204	1,971	2,430	74	17	226	876	212	859	295
	남자	3,155	803	696	181	48	65	252	332	35	4	81	204	86	296	72
	여자	9,456	2,214	1,095	271	139	139	1,719	2,098	39	13	145	672	126	563	223
5등급	합계	2,039	1,401	38	75	28	17	154	175	1	4	8	48	5	65	20
	남자	495	350	19	25	4	3	24	27	-	1	3	12	1	19	7
	여자	1,544	1,051	19	50	24	14	130	148	1	3	5	36	4	46	13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2016)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표V-49〉 전라북도 치매환자(입원) 현황

지역	치매환자 순위	진료실인원 (명)	내원일수 (일)	급여일수 (일)	진료비 (천원)	급여비 (천원)
전주시	14~15위	2,722	559,103	566,561	39,473,558	30,845,987
익산시	11위	1,513	258,889	261,914	18,178,534	14,493,982
정읍시	7위	1,083	199,221	205,048	13,603,289	11,129,432
남원시	8위	660	122,278	122,929	8,491,370	6,707,930
김제시	5위	874	165,110	166,838	11,390,020	9,466,167
완주군	8위	725	148,625	150,512	10,475,617	8,306,611
진안군	8위	237	42,076	42,916	2,950,634	2,421,185
무주군	3위	209	39,053	39,269	2,726,280	2,137,094
장수군	11위	169	28,188	28,701	1,980,790	1,548,633
임실군	2위	363	69,893	70,243	4,856,332	3,860,869
순창군	2위	422	78,384	78,993	5,415,147	4,155,060
고창군	9위	535	107,273	108,780	7,431,169	5,923,851
부안군	15위	439	74,200	74,890	5,225,537	4,197,756
전 체	10위	11,222	2,122,995	2,151,568	148,338,774	117,787,717

하지만 치매노인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의 지원은 전체 치매노인의 약 9%밖에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중증치매노인에 대해서는 장기요양서비스의 확대와 함께 주야간돌봄시설의 확충 등의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하고 경증치매노인에 대해서는 보건서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치매관리지원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림V-26〉 전라북도 치매노인 돌봄기준선 설정



〈표V-50〉 전라북도 노인가간돌봄 데이케어센터 현황

연도별	합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2013년	23	4	2	3	2	2	2	1	1	1	1	1	1	1	1
2014년	23	4	2	3	2	2	2	1	1	1	1	1	1	1	1
2015년	21	4	2	3	1	2	2	1	1		1	1	1	1	1
2016년	21	4	2	3	1	2	2	1	1		1	1	1	1	1
2017년	20	3	2	3	1	2	2	1	1		1	1	1	1	1
보호인원	200명	38명	18명	25명	9명	17명	21명	12명	8명		9명	9명	18명	9명	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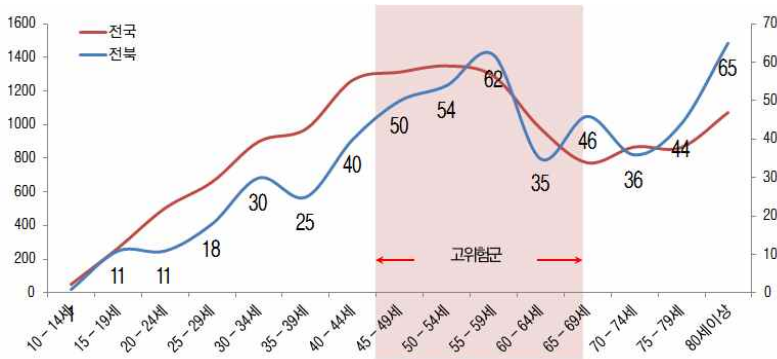
자료 : 전라북도 내부자료

중증치매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전라북도 차원의 대안으로는 무엇보다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이외 등급외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데이케어센터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전라북도의 데이케어센터는 총 20개소가 설치되어 있지만 여전히 치매노인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무주군의 경우 치매 입원환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매우 높은 수준임에도 야간돌봄센터는 아직까지 운영되고 있지 않다 데이케어센터에 대한 추가설치도 필요하다.

전라북도의 자살예방을 위한 제도적 조치도 강구되어야 한다. 자살은 우울증을 동반하거나 전조증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자살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40대와

50대 이후 장년층에 대한 예방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여기에 자살고위험 집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상담을 통해 자살위험군에 대한 조기발견과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건소를 자살예방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설정하여 자살예방팀을 신설하고 예방교육과 상담 그리고 고위험군 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림V-27〉 연령대별 자살자 현황



〈표V-51〉 전라북도 진료시설 현황(단위 : 개)

	분만실		신생아실		수술실		회복실		응급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병실	병상	병실	병상	병실	병상	병실	병상	병실	병상	병실	병상	병실	병상
전주														
완산	8	15	2	50	50	52	16	49	10	101	7	84	31	440
덕진	8	12	3	54	36	36	9	43	5	67	1	25	10	161
군산	1	2	1	5	22	23	7	15	5	61	1	20	13	196
익산	5	16	2	46	28	29	5	19	4	58	2	66	15	93
정읍	0	0	0	0	10	10	3	8	3	26	2	32	5	88
남원	1	3	1	3	6	6	1	4	2	35	1	33	2	45
김제	0	0	0	0	5	5	1	1	3	21	0	0	6	53
원주	0	0	0	0	1	1	0	0	1	5	0	0	3	46
진안	0	0	0	0	2	3	2	3	2	21	0	0	2	28
무주	0	0	0	0	0	0	0	0	1	10	0	0	1	18
장수	0	0	0	0	0	0	0	0	1	8	0	0	1	7
임실	0	0	0	0	1	1	1	3	1	10	0	0	2	34
순창	0	0	0	0	1	1	0	0	1	10	0	0	2	33
고창	0	0	0	0	3	3	2	5	1	10	0	0	2	40
부안	1	1	1	1	8	8	2	3	3	42	1	20	7	123

자료 :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2016) 공공보건의료 통계집

여기에 농촌지역의 부족한 보건의료 인프라도 확충해야 한다. 특히, 분만실과 신생아실이 없는 지역 그리고 응급상황에서 수술이 불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의료인프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표V-52〉 기준시간내 의료기관 접근율(비율)

	전체	내과	외과	소아 청소년	응급실	분만실	ICU	감염	재활	정신	중독	하상	투석
	60분	60분	60분	60분	60분	60분	60분	60분	60분	60분	60분	60분	60분
전주													
완산	89.96	90.77	87.79	94.79	90.25	92.27	79.65	89.6	89.62	87.32	86.18	80.2	84.99
덕진	90.23	90.21	88.38	95.29	90.83	91.91	77.47	89.24	90.24	88.19	89.22	87.7	81.68
군산	62.82	68.41	56.11	50.05	50.66	80.49	59.3	57.91	75.98	3.54	10.67	49.34	51.56
익산	76.33	79.92	81.24	95.46	73.92	87.66	73.06	83.42	50.23	34.97	39.41	71.17	74.32
정읍	55.75	66.48	57.8	66.21	25.37	48.91	41.71	68.73	1.87	71.4	57	47.17	47.29
남원	45.61	51.57	50.52	38.33	26.6	35.87	42.13	37.83	14.06	34.44	24.09	42.5	29.41
김제	70.54	71.34	68.48	88.34	8.79	83.61	58.24	68.23	51.57	59.55	75.68	67.05	49.3
완주	81.51	80.63	79.42	88.17	38.2	87.5	69.23	84.01	83.39	75.48	75.11	71.95	77.08
진안	20.64	23.22	23.52	5.45	1.94	1.42	3.58	15.82	6.58	44.69	35.71	24	0
무주	5.9	10.85	7.85	1.48	0	0	0	5.32	30.61	0	0	4.76	0
장수	11.96	24.16	10.61	8.58	0.96	3.13	11.43	12	2.45	1.49	4.94	5.88	10.53
임실	31.93	37.53	35.37	28.06	0	25.4	29.64	32.88	32.57	13.84	12.7	20	19.15
순창	23.94	35.2	23.59	12.46	0.31	10.62	6.91	22.77	5.79	10.22	0.83	41.46	34.78
고창	46.35	60.41	52.22	63.87	30.23	12.4	39.92	57.2	3.37	20.75	18.59	52.11	10.4
부안	57.13	63.87	60.31	22.77	35.18	33.76	31.24	61.49	0	4.86	3.23	67.68	44.32

자료 :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2016) 공공보건의료 통계집

〈표V-53〉 관내 의료기관 이용율

(단위 : 명, 비율)

	전체	내과	외과	소아 청소년	응급실	분만실	ICU	감염	재활	정신	중독	하상	투석
전주													
완산	63.91	72.57	67.07	73.96	58.97	67.53	49.83	69.89	66.22	8.08	11.15	36.14	45.24
덕진	47.9	51.78	54.31	49.73	62.45	71.65	51.58	52.23	54.6	12.98	6.37	66.84	57.76
군산	55.53	61.27	45.58	28.07	51.42	75.68	45.06	49.71	74.25	0	5.91	44.74	27.43
익산	63.43	72.02	72.44	92.43	82.47	82.2	65.66	74.38	38.11	10.04	9.49	50.31	68
정읍	49.69	64.24	55.87	64.66	36.24	46.72	40.21	67.26	0	56.03	31.15	46.23	46.57
남원	45.37	50.91	44.09	39.52	44.32	36.36	45.05	36.95	17.07	32.38	18.61	46.25	29.41
김제	27.4	21.02	14.01	0	2.75	43.71	0	10.89	0	66.23	77.89	14.77	0
완주	13.52	0.37	0.08	0	0.2	0	0	6.29	0	59.79	45.66	19.51	0
진안	7.15	14.3	14.07	4.49	3.34	0	0	6.06	0	0	0.48	12	0
무주	4.45	7.68	6.84	1.48	0	0	0	2.66	33.06	0	0	4.76	0
장수	4.55	15.3	0	0	0.16	0	0	7.5	0.61	0	0.62	0	0
임실	6.78	10.66	0	0	0	0	0	7.46	0	0	0.4	0	0
순창	15.03	21.65	5.24	8.77	0	0	0	12.87	0	1.78	0.83	34.15	0
고창	34.89	47.68	39.13	60.42	44.09	0	31.36	48.7	3.65	0	1.5	45.07	0
부안	60.02	66.16	64.3	20.11	49.57	0	32.14	66.13	0	0	1.08	68.69	43.18

자료 :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2016) 공공보건의료 통계집

여기에 기준시간내 적정한 의료기관의이용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의 설립을 통한 의료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무엇보다도 무주와 임실 등의

지역은 적정시간내에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응급의료전문의의 확충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농촌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근본적 조치가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표 V-54〉 관내 의료기관 이용율 (단위 : 비율)

구분	기준 시간	완산	덕진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상급병원	180분	64.19	68.73	60.72	71.81	68.14	62.39	71.7	70.44	66.77	35.71	59.23	61.13	63.86	51.15	59.95
권역응급 의료센터	90분	93.67	95.8	67.59	96.01	59.81	2.24	92.41	94.47	64.89	2.25	3.06	71.53	35.73	11.94	21.26
종합병원 (300병상이상)	90분	82.43	82.54	62.41	80.03	50.23	1.41	75.45	81.21	51.29	1.6	2.97	65.17	22.96	9.07	14.4
종합병원	90분	83.51	83.6	68.7	82.26	71.7	43.95	75.82	81.5	54.77	1.45	15.87	68.7	41.32	63.35	57.91
지역응급 의료센터	60분	92.25	92.22	59.25	88.14	3.24	42.93	71.71	84.1	6.25	0	9.31	28.21	6	0	0

자료 :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2016) 공공보건의료 통계집

관내의료기관 이용율의 경우 전주를 비롯한 도시권은 대부분의 진료과목에서 50%내외의 높은 이용율을 보이고 있지만 진안, 무주, 장수 등의 지역은 일부 진료과목에서 관내이용이용율이 전무한 경우도 있다. 또한 진안, 고창, 부안 등의 지역은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관내 이용이 어렵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농촌지역을 거점으로 일정병상을 소유한 공공의료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수가 적정성 검토 및 지역단위 건강증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직영병원의 추가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도 근본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료분야의 복지기준선인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저소득 빈곤가구를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료 지원을 통해 건강보험 연체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제한을 해소해야 한다. 일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 빈곤가구를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료 지원을 통해 경제적 이유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완화해야 한다.

〈표V-55〉 건강보험 연차제 현황(단위 : 명, %)

구분	2014년			2015년		
	건강보험 적용인구	급여제한자	급여제한자 비율	건강보험 적용인구	급여제한자	급여제한자 비율
전주시	1,784,795	43,952	2.50%	1,781,543	47,462	2.70%
완산구	350,215	8,340	2.40%	351,191	8,772	2.50%
덕진구	279,251	6,347	2.30%	279,023	6,843	2.50%
군산시	266,777	7,142	2.70%	267,008	7,500	2.80%
익산시	290,269	7,242	2.50%	287,940	7,611	2.60%
정읍시	109,569	3,105	2.80%	108,572	3,335	3.10%
남원시	80,272	1,503	1.90%	79,506	1,769	2.20%
김제시	83,080	2,232	2.70%	81,917	2,429	3.00%
완주군	86,211	2,353	2.70%	89,495	2,764	3.10%
진안군	25,311	475	1.90%	24,918	556	2.20%
무주군	24,184	506	2.10%	24,014	599	2.50%
장수군	22,020	413	1.90%	21,907	485	2.20%
임실군	27,900	571	2.00%	27,630	661	2.40%
순창군	28,214	602	2.10%	27,965	700	2.50%
고창군	57,053	1,526	2.70%	56,578	1,729	3.10%
부안군	54,469	1,595	2.90%	53,879	1,709	3.20%

자료 :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2016) 공공보건의료 통계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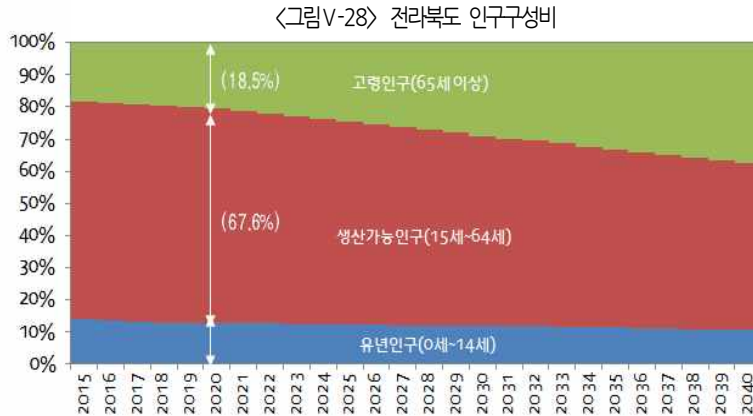
5. 일자리 분야 복지기준선 설정

(1) 일자리 분야 복지기준선 설정의 쟁점

일자리분야의 복지기준선 설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쟁점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라고 하는 인구학적 변동에 어떤 방향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저출산과 함께 청년인구의 유출에 다른 결과라는 점에서 국가, 특히 지방정부차원에서 일자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다.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일자리 정책은 공공주도의 일자리를 개발하는 방식이지만 이 같은 방식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지속성도 담보할 수 없다.

실업률과 고용률을 목표로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공적인 역할의 한계로 인해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민간의 역할을 추동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의 과정에서 공공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과 범

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빈곤계층과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일반시장에서의 낮은 고용경쟁력으로 인해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불가피하지만 이 또한 지방정부와 국가의 재정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그 범위와 정도를 두고 상당한 논쟁이 불가피하다.



〈표V-56〉 전라북도 종사자 지위별 현황

(단위 : 천명,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844	853	843	839	829	823	829	842	843	843	839	862	871	895	901	922	940	921
비임금근로자	410	421	428	377	368	356	358	364	370	358	344	327	331	315	311	325	341	319
•자영업자	291	305	316	284	284	279	276	282	286	275	263	252	262	248	248	259	272	251
•무급가족종사자	119	116	112	93	84	77	82	82	85	82	81	75	69	67	63	66	69	67
임금근로자	434	432	416	462	461	467	471	478	473	485	495	535	541	580	590	597	600	602
•상용근로자	222	235	229	225	230	242	240	253	249	244	270	305	327	358	364	363	385	387
•임시근로자	121	121	114	164	157	139	143	143	148	168	161	161	155	153	159	166	158	161
•일용근로자	91	76	72	72	74	86	88	83	76	73	64	70	59	69	66	69	56	5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임금근로자	48.6	49.4	50.8	44.9	44.4	43.3	43.2	43.2	43.9	42.5	41.0	37.9	38.0	35.2	34.5	35.2	36.3	34.6
•자영업자	71.0	72.4	73.8	75.3	77.2	78.4	77.1	77.5	77.3	76.8	76.5	77.1	79.2	78.7	79.7	79.7	79.8	78.7
•무급가족종사자	29.0	27.6	26.2	24.7	22.8	21.6	22.9	22.5	23.0	22.9	23.5	22.9	20.8	21.3	20.3	20.3	20.2	21.0
임금근로자	51.4	50.6	49.3	55.1	55.6	56.7	56.8	56.8	56.1	57.5	59.0	62.1	62.1	64.8	65.5	64.8	63.8	65.4
•상용근로자	51.2	54.4	55.0	48.7	49.9	51.8	51.0	52.9	52.6	50.3	54.5	57.0	60.4	61.7	61.7	60.8	64.2	64.3
•임시근로자	27.9	28.0	27.4	35.5	34.1	29.8	30.4	29.9	31.3	34.6	32.5	30.1	28.7	26.4	26.9	27.8	26.3	26.7
•일용근로자	21.0	17.6	17.3	15.6	16.1	18.4	18.7	17.4	16.1	15.1	12.9	13.1	10.9	11.9	11.2	11.6	9.3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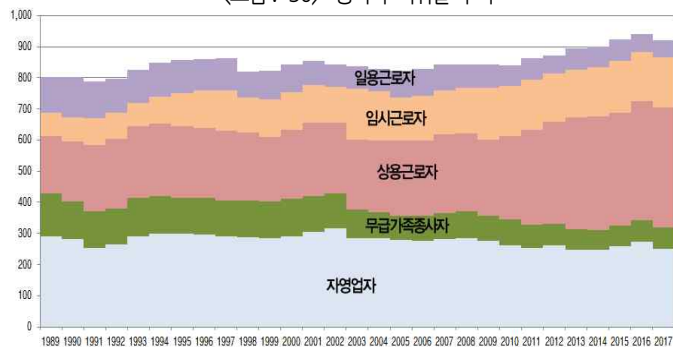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2017) 지역고용통계

특히, 전라북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임금근로자 보다는 비임금근로자가 많아 이미 창업지원보다는 취업지원이 시장의 교란과 과도한 경쟁을 지양할 수 있다. 전라북도의 종사자지위별 현황을 보면 비임금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27.25%를 차지하고 있고, 임금근로자는 42.02%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평균과 비교해 보면, 전라북도는 비임금근로자가 6.0%p 높고, 임금근로자는 8.23%p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저소득 취약계층이나 장애인 그리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정책은 창업지원보다는 고용능력 개선을 통한 취업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V-29〉 임금·비임금 근로자 현황 비교



〈그림V-30〉 종사자 지위별 추이



한편, 전라북도의 고용시장에서 긍정적인 것은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취약계층의 일자리는 주로 공공부문에서 제공되고 있고, 이 같은 경향은 신정부의 출범과 함께 강화되고 있다. 노인일자리 경우 공공부문을 주도로 전라북도에서만 약 2.5만개의 일자리가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공공부문의 일자리

도 해당 연령대의 지역주민이 원하는 만큼 제공되지 못해 취약계층의 일자리 수요에 맞춘 적절한 일자리 제공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기에 장애인과 노인 등의 취약계층은 공공부문만으로는 일자리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시장형도 함께 개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들 취약계층의 고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직업훈련 등의 정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표V-57〉 일자리분야 복지 기준선

구분		정책목표 및 복지기준선	
정책목표			
노인 일자리 활성화	최저기준	공공부문의 노인일자리 참여율을 40%까지 확대한다	노인경제활동 참여율
	적정기준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40%까지 확대한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	최저기준	공공부문의 장애인 참여율을	장애인취률 50.0%
	적정기준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직업훈련 활성화	최저기준	경증장애인(4-6급)의 장애인직업훈련 경험율 10% 향상 시킨다	장애인직업재활 경험율 5.2%
	적정기준	모든 장애인의 직업훈련 경험율을 30%를 취업으로 연계한다	
근로 빈곤층	최저기준	자활참여자의 자활성공률을 50%까지 확대한다	자활성공률
	적정기준	근로빈곤율을 15%이하로 낮춘다	
사회 서비스	최저기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매년 10% 향상시킨다	
	적정기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2) 일자리 분야 복지기준선 세부정책과제

일자리 분야의 복지기준선은 취약계층의 소득보장수단으로서 일자리 확대 혹은 노동시장 진입방안에 관한 세부적인 정책방향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먼저 노인일자리라는 공공형 중심의 노인일자리 정책 확대라고 하는 정부정책방향에 발맞춰 전라북도의 상황에 맞는 공익형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정부의 공공형 일자리 배정량이 일을 원하는 모든 노인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공공형과 시장형 모두의 일자리 확대정책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장애인일자리 또한 시장형 보다는 공공형으로 확대하되 공공부문의 일자리 참여율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행정보조원 등의 사무인력 그리고 컴퓨터 등의 보조인력에 대한 일자리 욕구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에서 사무보조 인력에 대한 일자리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의 가장 큰 장벽이라고 할 수 있는 취약한 고용능력신장을 위한 직업훈련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여기에 근로빈곤층과 사회서비스 분야도 자화성공율의 확대 그리고 일반시장 확대를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등도 세부정책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표V-58〉 일자리분야 복지 기준선

구분		정책목표 및 복지기준선	
정책목표			
노인 일자리 활성화	최저기준	일할 의사가 있는 노인에게 모두 일자리를 제공한다	① 공공형 노인일자리 확대 ②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③ 노인직업훈련 인프라 구축
	적정기준	전체 노인의 경제활동참여율을 40%까지 확대한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	최저기준	공공부문의 장애인 참여율을	① 공공부문 장애인일자리 확대 ② 장애인 직업재활 인프라 확대 ③ 장애인 의무고용 강화
	적정기준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30%까지 향상시킨다	
직업훈련 활성화	최저기준	경증장애인(4-6급)의 장애인직업훈련 경험율 10% 향상 시킨다	① 공공부문 장애인일자리 확대 ② 장애인 직업재활 인프라 확대 ③ 장애인 의무고용 강화
	적정기준	모든 장애인의 직업훈련 경험율을 30%를 취업으로 연계한다	
근로 빈곤층	최저기준	자활참여자의 자활성공률을 50%까지 확대한다	① 전북형 자활기업 육성 ② 맞춤형 자활사례관리 강화 ③ 고용복지통합인프라 구축
	적정기준	근로빈곤율을 15%이하로 낮춘다	
사회 서비스	최저기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매년 10% 향상시킨다	① 사회서비스 일반시장 확대 ②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 ③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강화
	적정기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 ① 공공형 노인일자리 확대
- ②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 ③ 노인직업훈련 인프라 구축
- ① 공공부문 장애인일자리 확대
- ② 장애인 직업재활 인프라 확대
- ③ 장애인 의무고용 강화
- ① 전복형 자활기업 육성
- ② 맞춤형 자활사례관리 강화
- ③ 고용복지통합인프라 구축
- ① 사회서비스 일반시장 확대
- ②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
- ③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강화

〈표V-59〉 전라북도 노인 취업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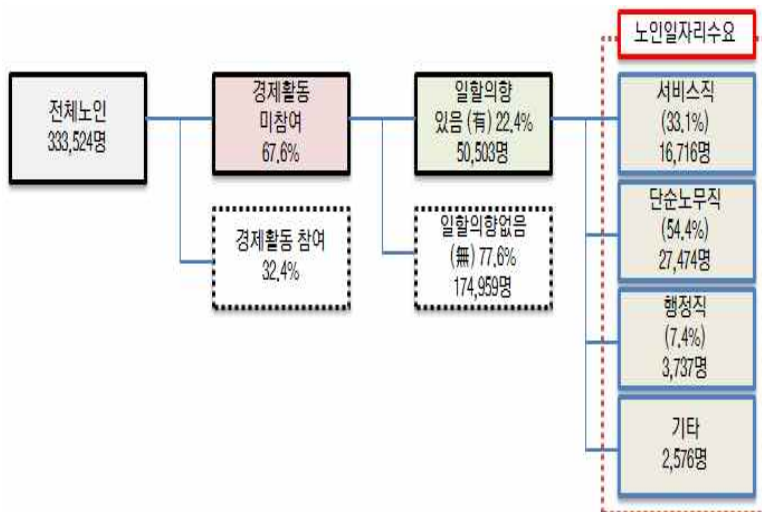
구분	지역	2013년 상반기	2013 하반기	2014년 상반기	2014년 하반기	2015년 상반기	2015년 하반기	2016년 상반기	2016년 하반기	2017년 상반기	2017년 하반기
취업자수 (천명)	전주시	16.2	15.4	14.0	14.1	16.5	18.2	17.4	18.3	18.5	19.1
	군산시	10.1	12.0	11.7	13.7	11.9	11.0	12.0	13.4	13.4	10.2
	익산시	14.0	15.2	14.8	15.7	15.0	15.8	15.3	16.9	18.2	11.9
	정읍시	10.0	11.1	11.2	11.1	11.5	12.2	12.7	12.6	13.1	11.7
	남원시	10.1	10.2	10.5	10.4	9.7	10.3	10.4	10.3	10.5	10.6
	김제시	11.2	11.1	10.9	11.7	12.0	12.4	11.7	11.8	12.3	9.5
	완주군	7.3	7.6	8.1	8.3	9.0	9.2	8.7	9.2	8.9	8.6
	진안군	4.1	4.6	4.0	4.3	4.3	4.5	4.3	4.4	4.5	4.7
	무주군	4.3	4.5	4.0	4.3	4.4	4.5	4.4	4.3	4.3	4.1
	장수군	4.5	4.5	4.4	4.4	4.5	4.3	4.3	4.6	4.6	4.4
	임실군	4.4	4.4	4.3	4.6	4.6	5.4	5.3	5.4	5.3	4.9
	순창군	4.7	4.6	5.2	5.0	5.0	4.8	4.7	4.6	4.5	4.7
	고창군	8.2	8.5	8.5	9.0	9.0	9.4	9.2	9.4	9.2	8.9
	부안군	7.9	8.4	8.5	9.2	9.9	10.1	10.1	10.3	10.1	9.7

구분	지역	2013년 상반기	2013 하반기	2014년 상반기	2014년 하반기	2015년 상반기	2015년 하반기	2016년 상반기	2016년 하반기	2017년 상반기	2017년 하반기
고용률 (비율)	전주시	22.8	21.3	19.0	18.7	21.5	23.1	21.8	22.3	22.1	22.4
	군산시	27.6	32.3	31.1	35.7	30.6	27.8	29.7	32.3	31.5	23.7
	익산시	32.9	35.1	33.8	35.5	33.4	34.6	32.8	35.7	37.7	24.3
	정읍시	39.0	42.9	42.8	42.2	43.4	45.7	46.9	46.4	47.8	42.7
	남원시	52.6	52.9	54.4	53.3	49.3	52.0	52.1	50.9	51.6	51.4
	김제시	48.5	48.1	47.2	50.1	51.2	52.6	49.0	49.6	51.3	39.5
	완주군	44.8	45.9	48.0	48.8	51.8	51.8	48.0	49.7	47.6	45.3
	진안군	55.4	62.5	52.9	56.9	57.1	59.5	56.9	57.9	59.3	61.5
	무주군	61.4	64.6	57.5	61.3	62.6	63.3	60.5	59.9	59.7	56.3
	장수군	72.1	70.5	68.9	68.2	69.2	67.1	65.5	70.4	68.4	65.7
	임실군	50.7	50.4	49.3	52.0	52.3	60.2	59.6	61.4	59.8	54.6
	순창군	54.3	53.7	59.6	57.0	57.3	55.1	53.2	51.7	51.1	52.8
	고창군	49.8	51.5	51.3	53.7	53.0	55.5	54.0	55.1	53.9	51.6
	부안군	53.0	56.2	56.5	60.8	64.2	65.5	65.6	65.7	64.3	61.0

자료 : 통계청(2016) 연령별 취업자수

전북의 노인취업자는 12.3만명으로 전체 노인의 36.8%정도이다.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노인 중 일할의향이 있는 노인은 약 5.1만명으로 추정된다.

〈그림V-31〉 전라북도 노인일자리 수요



〈표V-60〉 전라북도 노인일자리 현황

유형	단위사업	사업량	예산액 (단위:천원)			
			계	국비	도비	시군
공익 활동	총 계	27,987	74,974,966	35,777,998	14,964,787	24,232,181
	소 계	22,169	59,484,250	29,742,125	11,896,850	17,845,275
	노노케어	5,100	15,616,920	7,808,460	3,123,384	4,685,076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17,069	43,867,330	21,933,665	8,773,466	13,160,199
	경륜전수활동					
취업형	소 계	5,818	15,490,716	6,035,873	3,067,937	6,386,906
	① 시장형사업단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3,828	8,038,800	4,019,400	1,607,760	2,411,640
	서비스제공형					
	② 인력파견형사업단	1,200	180,000	90,000	36,000	54,000
	③-1 시니어클럽운영	66	3,096,260		330,878	2,765,382
	③-2 수행기관전담인력	182	3,724,084	1,862,042	744,817	1,117,225
	③-3 노인일리센터운영	500	168,710		168,710	
	③-4 시장형인센티브	-	128,862	64,431	25,772	38,659
	③ 기타					
	③-5 노인일자리양성 및 층형 교육	-	26,000		26,000	
	③-6 네트워크구축사업	-	38,000		38,000	
	③-7 노인회 사회적 일자 리사업	42	90,000		90,000	

전라북도의 노인취업율은 도시보다는 농업에 종사하는 노인의 비율이 높은 농촌지역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라북도의 노인일자리 현황을 세부적으로 보면, 공익형 노인일자리에 총 2.8만명이 참여하고 있고, 공익활동에 2.2만명 그리고 취업형에 5.8천명이 참여하고 있다.

〈그림V-32〉 전라북도 노인일자리 수요추정



전주시의 경우 2017년 하반기 노인취업률이 22.4%에 불과하지만 장수군의 경우 노인취업률은 65.7%로 전주시에 비해서 세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라북도의 노인일자리 필요량을 추정해 보면, 전라북도의 경제활동 참여노인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로 일할 의사가 없는 노인을 제외하고 향후 필요한 일자리는 약 5만개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이들 일자리 수요의 대부분은 단순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에 대한 수요가 전체 일자리 수요의 약 80%를 상회하고 있어 관련 분야의 공공형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일자리를 원하는 다수 노인의 경우 8시간의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보다는 시간제 일자리를 선호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특히, 신정부의 공공부문 노인일자리 확대에 발맞춰 공공부문의 지역적합형 일자리 발굴과 함께 4시간 이하의 시간제 일자리의 개발도 함께 요구된다.

여기에 장애인의 일자리도 장애로 인한 고용장벽으로 대부분 공공형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공공형의 경우 전라북도는 총 959명이 참여하고 있고, 이는 전체 등록장애인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다만, 공공분야의 장애인일자리와 노인일자리와 경우 국가의 재정적지원에 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지원된다는 점에서 국가의 재정확대 없이는 공공형일자리 확대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민간의 노동시장 진입을 확대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고용능력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직업훈련이 필요하다. 장애인 중 현재 취업을 못한 이유는 대부분 장애로 인한 업무수행불가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 등이다. 따라서 장애정도와 유형에 맞는 일자리의 발굴이 필요하다.

〈표V-61〉 전라북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시군별 배치현황

	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합계	959	240	133	159	92	73	72	39	20	20	18	16	12	33	32
행정도우미	330	74	51	39	29	24	29	13	8	6	7	9	6	18	17
복지일자리	578	152	76	102	61	40	43	26	12	14	11	7	4	15	15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32	14	6	8	2								2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19			10		9									

자료 : 전라북도(2018) 내부자료

〈표V-62〉 전라북도 경제활동미참여 장애인 중 일을 하지 않는 이유

구분	비 해 당	장애로 업무 수행 불가	하고 싶지 않음	임금 수준 근로 조건 부적합	교육기 술경험 부족	차별 선입견	찾아봤 지만없 어서	일 경험 없어	나이 때문	육아 가사	장애이 외질병 건강 문제	통학	창업 능력 부족	기타
비해당	33.4	20.8	32.3					9.5	1.2		2.7			
1급	.8	38.6	24.6						7.3		12.1	12.2		4.5
2급	29.5	30.1	10.5		4.7	1.6	2.7	2.3			13.2	3.6		1.9
3급	34.0	33.8	10.8			.8		3.1	3.1		7.5	3.7	3.1	
4급	48.5	12.4	15.6	2.0			.7		12.7	2.8	2.9	2.4		
5급	40.4	11.5	20.7	1.4			.8		11.4	2.0	11.8			
6급	56.5	8.9	10.3	1.5		1.2	1.6	1.0	7.7	4.0	7.2			
전체	41.1	18.4	15.2	1.0	.6	.6	1.1	1.4	7.4	1.9	8.4	2.0	.4	.5

자료 : 보건복지부(2015)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전라북도 장애인의 직업훈련 경험은 전체 장애인의 약 6%내외에 불과하고 직업훈련을 받지 못한 이유로는 직업훈련에 대한 인지 부족,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등의 사유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도 필요하다.

〈표V-63〉 직업훈련 경험 여부

	직업훈련경험				직업훈련 받지않은 이유									
	비 해 당	있음	훈 련 중	없음	비 해 당	직업훈련 물라서	등록일자 물라서	심한 장애로	비용부담	훈련내용 미흡 안들어서	취업 도움 안됨	훈련필요 없음	가정지역 근처 훈련기관 부재	기타
비해당				100.0		11.6		12.0				76.4		
1급		.8		99.2	.8			45.2				54.0		
2급	64	9.7	2.3	81.5	19.3	6.6	1.3	25.2		4.2	3.6	36.9	2.3	.7
3급	46		1.6	93.9	6.1	12.4		13.5		2.9	8.1	57.0		
4급		5.7	1.9	92.4	7.6	2.7	.5	5.1		1.1	5.4	77.6		
5급	20	1.9	3.0	93.1	8.4	8.5		2.3	1.4	1.7	8.1	67.8	1.9	
6급		3.0	.8	96.2	4.5	7.8	.3	3.0	.9	2.2	4.9	76.2	.1	
전체	1.9	3.5	1.7	92.9	7.7	7.3	.3	10.1	.5	2.1	5.5	65.6	.7	.1
구분	비해당	기계 금속	전기 전자	토목 건축	섬유	컴퓨터 정보처리	공예	참숯 안마	사무	이용 제한	기타	희망 안함		
비해당		0.0			7.4					0.0		92.6		
1급		0.0				12.7		5.2	5.8	0.0		76.4		
2급	64	2.7				2.4	3.2	2.9	4.1	1.9	3.8	72.7		
3급	46	0.0		2.9		3.1			1.6	3.1	1.5	83.2		
4급		4.4	1.4	0.9		5.0			2.0	0.0	0.5	85.9		
5급	20	2.5				3.4		0.2		1.4	2.8	87.7		
6급		6.1	0.1			5.0			2.7	3.2	3.4	79.5		
전체	2.0	3.1	0.3	0.5	0.3	4.2	0.4	0.7	2.1	1.8	2.3	82.3		

자료 : 보건복지부(2015)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표 V-64〉 직업훈련 희망 분야

구분	비해당	기계 금속	전기 전자	토목 건축	섬유	컴퓨터 정보처리	공예	침술 안마	사무	이미용 제과제빵	기타	희망 안함
비해당		0.0			7.4					0.0		92.6
1급		0.0				12.7		5.2	5.8	0.0		76.4
2급	6.4	2.7				2.4	3.2	2.9	4.1	1.9	3.8	72.7
3급	4.6	0.0		2.9		3.1			1.6	3.1	1.5	83.2
4급		4.4	1.4	0.9		5.0			2.0	0.0	0.5	85.9
5급	2.0	2.5				3.4		0.2		1.4	2.8	87.7
6급		6.1	0.1			5.0			2.7	3.2	3.4	79.5
전체	2.0	3.1	0.3	0.5	0.3	4.2	0.4	0.7	2.1	1.8	2.3	82.3

전라북도 장애인의 직업훈련 희망분야로는 단순노무(기계금속), 이미용 제과제빵 등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서는 임금보조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직업능력개발, 인식개선, 취업정보의 제공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65〉 장애인 직업재활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일

	비해당	인식 개선	취업정보 제공	직업능력 개발	취업상담 평가알선	사후 지도	임금 보조	편의 시설 확충	의무 고용제 준수유도	근로 지원 서비스	기타
비해당		21.8	23.9	31.0	1.2		19.4	2.7			
1급		14.5		33.1	7.7		20.3	6.1	6.3	12.0	
2급	6.4	15.8	10.1	17.5	7.8	4.5	23.0	3.1	4.6	7.1	
3급	4.6	20.1	10.6	19.7	6.2		25.9	3.4	4.2	2.9	2.4
4급		14.3	17.8	12.9	10.0		32.3	5.6	4.9	2.1	
5급	2.0	14.7	13.5	17.7	9.7	1.4	22.8	7.1	7.0	4.1	
6급		13.6	13.0	13.4	13.7	5.0	29.2	2.7	4.3	5.2	
전체	2.0	15.5	12.9	17.4	9.6	2.2	26.2	4.5	4.9	4.6	.3

종합해 보면,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장애유형에 따라 일자리 정책의 차별화가 요구된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보호작업장과 같은 국가지원 일자리와 함께 공공부문의 일자리 참여를 유인하도록 하고 경증장애인의 경우는 고용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다양화 그리고 취업정보 제공 및 연계 등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경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지역의 고용시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장애유형에 맞는 적합한 분야의 직업훈련이 제공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표V-66〉 전라북도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

시군별	계	수급자				수급자외		
		소계	조건부	일반	자활특례	소계	차상위	기타
계	2,981	1,849	996	626	227	1,132	748	384
전주시	835	635	385	210	40	200	125	75
군산시	295	149	98	35	16	146	85	61
익산시	340	260	175	58	27	80	80	
정읍시	210	135	52	46	37	75	39	36
남원시	255	162	53	84	25	93	93	
김제시	201	113	66	26	21	88	55	33
완주군	246	77	45	24	8	169	54	115
진안군	92	60	16	39	5	32	32	
무주군	47	26	4	20	2	21	21	
장수군	65	33	6	22	5	32	29	3
임실군	121	71	33	29	9	50	46	4
순창군	56	34	13	9	12	22	11	11
고창군	130	42	20	10	12	88	42	46
부안군	88	52	30	14	8	36	36	

한편, 전라북도의 근로빈곤층 완화를 위해서는 자활참여자의 탈빈곤 지원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 탈빈곤확대율은 전체 자활참여자 약 3천명의 30%정도 수준이다.

〈표V-67〉 전라북도 자활사업단 현황

구분	총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총계	기업	118	18	11	22	9	13	4	4	5	3	8	8	6	3
	인원	737	111	85	62	28	45	37	115	114	18	5	22	28	57
집수리	기업	21	1	2	4	1	3	1	1	1	2	1	1	1	1
	인원	109	7	4	9	2	15	26	4	4	6	4	3	5	17
간병	기업	12	3	3	2	1		1	1	1					
	인원	248	17	63	6	4		5	105	48					
청소	기업	17	1	2	2	1		1		1		2	2	3	1
	인원	140	10	3	4	5		4		51	5	5	16	33	4
폐자원재 활용	기업	9	2	0	3		2				1	1			
	인원	51	40	0	5		3				1	2			
세차	기업	3	0	1	0	1				1					
	인원	9	0	4	0	3				2					
영농	기업	10	0	0	3		2			1		1	3		
	인원	19	0	0	5		5			3		3	3		
음식	기업	7	0	0	2	1	2		1				1		
	인원	24	0	0	8	1	3		11				1		
환경	기업	0	0	0	0										
정비	인원	0	0	0	0										
산모	기업	1	1	0	0										
도우미	인원	2	2	0	0										
기타 (반찬유 통등)	기업	38	10	3	6	4	4	1	2		1	3	1	2	1
	인원	135	35	11	25	13	19	2	6		2	9	3	7	3

자료 : 전라북도 (2016)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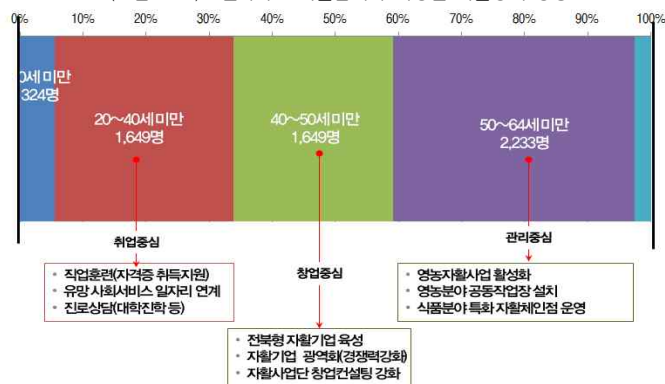
〈표V-68〉 전라북도 자활사업단 현황

구분		총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총계	사업단	146	23	17	22	10	8	9	10	7	7	6	8	5	5	9
	인원	1,584	246	175	230	174	144	147	79	75	39	46	72	25	73	59
집수리	사업단	5		1	2				1				1			
	인원	41		3	24				4				10			
간병	사업단	8	2	1	2		2		1							
	인원	106	41	6	28		27		4							
청소	사업단	10	2	2		1	1			1				1		2
	인원	125	25	21		21	7			22				6		23
폐자원재활용	사업단	2			1		1									
	인원	17			10		7									
도시락	사업단	4				2								1		1
	인원	27				11								5		11
세차	사업단	2		1				1								
	인원	17		7				10								
영농	사업단	20	2	1	2	2	1	1	3			3	1	2	1	1
	인원	284	32	4	27	51	45	32	36			21	11	11	3	11
세탁	사업단	7	3					1	1	1						1
	인원	72	28					20	7	12						5
음식	사업단	12	1	1	1	1	2	1	1		1		3			
	인원	128	2	7	6	46	27	8	5		3		24			
장애 통합	사업단	1			1											
	인원	4			4											
환경 정비	사업단	6		1	1	1				1					1	1
	인원	97		14	9	21				13					38	2
산모 도우미	사업단															
	인원															
기타 (보석숫가마 등)	사업단	69	13	9	12	3	1	5	3	4	6	3	3	1	3	3
	인원	666	118	113	122	24	31	77	23	28	36	25	27	3	32	7

자료 : 전라북도 (2016) 내부자료

탈빈곤을 확대를 위해서는 연령구간별로 취업과 창업의 차별화가 요구된다. 20대에서 40대까지의 장년층은 고용능력신장을 통한 취업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림V-33〉 전라북도 자활참여자 특성별 자활정책 방향



또한 40대에서 50대의 장년층은 고용능력의 신장을 통한 취업활성화보다는 전
북형 자활기업 육성 등을 통한 창업중심의 자활정책이 필요하다. 여기에 자활기업
의 광역화와 자활사업단의 창업컨설팅 확대 등이 함께 요구된다. 다음으로 50대
이상에 대해서는 취창업보다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활기업이나 자활사업이 일정
한 매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탈빈곤확대를 위해서는 저소득 빈곤계층 그리고 근로빈곤층의 취업에 대
한 종합적인 정보와 함께 복지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고용복지플
러스센터의 확대도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수요자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고용-복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른바 고용복지통합센터는 2015년도에만 40개소를 설치하였고,
2016년도에는 여수와 남원 등 30개소를 신규로 설치하였다. 이 같은 고용복지센터
의 설치에 고용복지통합이라는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의 효과와 함께 취업자 증가
라고 하는 실질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이다. 가령,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취
업자 수가 전년 동기 에 비해서 평균 10%이상 증가하였고, 월평균 취업자수만 760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전라북도의 경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전주,
김제, 익산, 정읍 등 총 4개소만 설치되어 있어 미설치지역을 중심으로 고용과 복
지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고용상담과 복지서
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V-69〉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치 현황

구분	설치지역
'14년	(경기)남양주, 동두천 (강원)춘천 (부산)북구 (경북)칠곡, 구미 (전라)해남, 순천 (충청)천안, 서산
'15년	(서울)강서, 송파, 구로 (인천)서구 (경기)파주, 오산, 구리, 김포, 수원, 의정부, 화성, 안양 (전라)광주광산, 광주북구, 정읍, 익산, 김제, 군산, 목포 (강원)원주 (경상)양산, 대구달성, 대구동구, 경산, 경주 (충청) 음성, 충주, 제천, 청주, 보령
	광역형(6개소) 서울, 인천, 대구, 대전, 울산, 부산
'16년	일반형 (24개소) 부산동부, 대구서부, 서울강남, 세종, 성남, 용인, 김해, 창원, 포항, 문경, 영주, 남원, 논산, 영월, 여수, 제주, 전주, 통영, 평택, 대구강북, 거제, 이천, 고양, 경기광주

〈표V-70〉 전체 인구대비 연령대별 빈곤율 현황

계	0~4	5~9	10~14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69	70~74	75~79	80세 이상
94287	1,494	5,067	8,721	13,000	5,001	1,370	1,456	2,716	4,485	6,561	6,929	7,298	5,728	5,782	5,565	5,528	7,586
1,864,791	73,102	84,270	87,768	119,853	124,667	94,669	102,681	122,970	140,393	155,191	145,516	153,759	118,749	99,944	82,388	73,568	85,303
1	2	0	8	53	67	9	81	70	93	91	16	59	49	4	8	8	3
5.06	2.04	6.01	9.94	10.85	4.01	1.45	1.42	2.21	3.19	4.23	4.76	4.75	4.82	5.79	6.75	7.51	8.89
			고위험 (장수, 김제 임실, 정읍)								빈곤인구 증가 (아동빈곤인구 연관성)					고위험 (진안, 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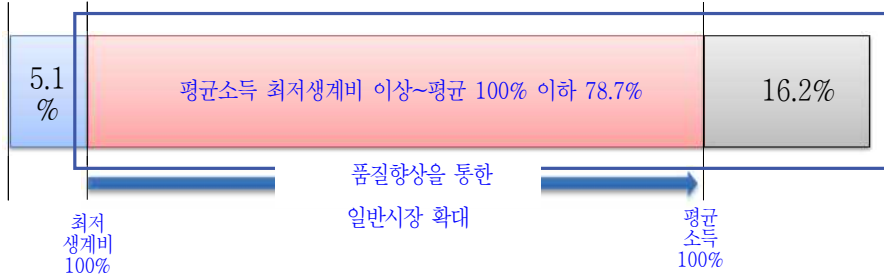
특히,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통합형 고용-복지 인프라를 우선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라북도에서 빈곤인구가 다수 거주하고 있는 밀집지역에 대한 공간 중심의 사회안전망 구축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즉, 평화1동, 평화2동, 효자4동(전주) 왕궁면(익산), 대산면, 노암동(남원) 지역은 취약계층 특별관리지역지정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민간복지자원, 정부시범사업 등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빈곤인구 다수 밀집지역은 찾아가는 동사무소 등 국가단위 전달체계 개편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해야 한다. 즉, 맞춤형 복지팀의 인력은 현재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고, 민간사례관리사 채용을 권고하는 등의 조치 등이다. 또한, 시군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자원연계 시범운영 등도 요구된다.

〈표V-7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사업 제공인력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총계	110,777	10,759	100,018	150,779	13,913	136,866	139,031	12,366	126,665	151,626	13,535	138,091
소계(돌봄분야)	84,133	6,599	77,534	99,721	7,578	92,143	106,495	8,025	98,470	118,480	8,960	109,520
가사 간병방문	5,257	28	5,229	5,759	31	5,728	5,804	28	5,776	5,794	34	5,760
노인 방문주간	19,100	149	18,951	23,562	166	23,396	23,933	150	23,783	26,141	153	25,988
돌봄종합 단기가사	-	-	-	612	1	611	938	2	936	1,369	3	1,366
산모신생아	8,470	2	8,468	9,859	9	9,850	10,562	7	10,555	12,321	1	12,320
장애인활동지원	51,306	6,420	44,886	59,929	7,371	52,558	65,258	7,838	57,420	72,855	8,769	64,086
지역사회서비스	18,066	3,375	14,691	40,873	5,387	35,486	21,732	3,354	18,378	20,969	3,423	17,546
발달재활서비스	7,756	647	7,109	9,667	919	8,748	10,180	946	9,234	11,479	1,110	10,369
언어발달서비스	822	138	684	288	18	270	389	28	361	454	33	421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	-	-	230	11	219	235	13	222	244	9	235

자료: 유태균(2017. 5. 19). 사회서비스 10년, 보건복지부 한국사회서비스학회

〈그림 V-34〉 전라북도 소득계층별 인구구성 및 시장소득 확대 기준



〈표 V-72〉 전라북도 유망사회서비스 전망

미취학아동		아동청소년		장애아동		노인		장애인	
방문교육	1-3만원	방문학습지도	1-3만원	예술치료	3-5만원	방문건강관리	1만원	건강관리상담	1만원 이하
자녀놀이지도	1-3만원	외국어교육	1-3만원	사회적응훈련	3-5만원	운동처방	1만원	운동처방	3-5만원
부모양육훈련	1만원이하	정서발달	1-3만원	가족상담	1만원	보조기구렌탈	1만원	기초보건	1만원 이하
문화여가	3-5만원	부모양육훈련	1-3만원	비장애자녀상담	1만원	취업연계	1만원	보조기구렌탈	1만원 이하
방문보건	3-5만원	자녀진로지도	1-3만원	방과후 돌봄	3-5만원	부양가족지원	1-3만원	가족상담	1만원 이하
자녀정서발달	1-3만원	체험학습	1-3만원	진로상담	1-3만원	식사배달	1만원	여행여가	1만원 이하
예술교육	3-5만원	방과후 돌봄	1-3만원	문화체험	1만원	주야간돌봄	1-3만원	활동보조지원	1-3만원
		취미예능교실	1-3만원	여가활동지원	1만원	취미여가지원	1만원	재활치료	3-5만원

6. 복지전달체계 분야 복지기준선 설정

(1) 복지전달체계 분야 복지기준선 설정의 쟁점

전라북도의 사회복지시설은 2016년 기준 인구당 시설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아 별도의 복지인프라 확충보다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복지시설의 기능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전라북도의 사회복지시설은 2016년 말 기준 인구천명당 21.37개소로 전국 평균인 18.64개소보다도 많을 뿐만 아니라 17개 시도에서도 대전 23.22개소 다음으로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전라북도의 사회복지시설은 정량적 기준으로 인구대비 시설 수는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사회복지시설을 욕구기준으로 분석할 경우 다소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아울러 지역별로 보면, 도시와 농촌별로도 복지인프라의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민간의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기준선은 별도의 복지시설의 설치보다는 욕구기준에 맞는 기능의 조정이 요구된다.

〈표V-73〉 사회복지시설 인구당 현황

구분	사회복지시설 (인구십만명)			노인여가복지시설 (인구천명당)			영유아복지시설 (인구천명당)		
	2013	2014	2015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전국	12.42	13.07	13.49	7.18	6.86	6.59	19.07	18.76	18.64
서울	7.49	7.56	7.67	2.13	2.04	1.98	16.78	16.75	16.91
부산	5.75	5.80	5.83	3.30	3.19	3.06	14.52	14.60	14.67
대구	13.99	14.28	14.71	3.40	3.25	3.12	15.51	15.19	14.95
인천	12.19	14.54	16.17	3.47	3.26	3.09	16.92	16.89	17.11
광주	10.39	10.84	10.94	5.96	5.72	5.46	17.98	18.59	18.94
대전	9.92	10.71	11.06	3.56	3.39	3.20	23.11	23.55	23.22
울산	6.92	6.26	6.82	5.20	4.91	4.67	16.06	15.85	15.55
세종	26.20	20.50	15.65	15.00	13.75	12.95	16.28	14.67	14.67
경기	13.37	14.22	14.65	5.26	4.95	4.67	21.57	20.84	20.26
강원	23.86	25.58	26.52	8.92	8.59	8.34	20.97	20.98	20.99
충북	22.70	23.05	23.55	12.98	12.46	11.96	17.23	17.60	17.75
충남	17.19	18.81	19.30	12.94	12.45	12.04	20.92	20.46	20.77
전북	17.35	17.85	17.54	15.44	14.94	14.57	21.06	21.24	21.37
전남	20.66	22.09	22.94	17.88	17.54	17.26	15.75	15.86	16.61
경북	15.60	16.59	17.80	12.43	12.05	11.68	19.48	18.85	19.10
경남	9.69	9.88	9.75	11.68	11.18	10.71	22.21	21.36	20.83
제주	15.66	15.64	15.86	3.92	3.78	3.66	20.02	18.93	17.85

자료 : 통계청(2016) 지방자료

〈표V-74〉 사회복지시설 인구당 현황

구분	사회복지(인구십만명)			영유아(인구천명)			노인(인구천명)		
	2013	2014	2015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전주시	9.69	10.11	9.51	24.88	24.78	24.20	5.60	5.38	5.18
군산시	13.65	14.38	13.29	17.50	17.77	19.02	8.90	8.67	8.46
익산시	20.55	21.70	21.85	20.89	21.67	21.33	10.93	10.56	10.32
정읍시	21.97	22.19	20.69	23.92	22.96	22.12	20.13	19.59	19.36
남원시	23.13	21.02	21.21	23.87	24.65	25.93	19.07	18.58	18.23
김제시	26.31	29.96	31.56	22.07	21.55	22.48	20.24	20.03	19.67
완주군	29.89	28.77	26.23	16.08	16.42	17.53	18.86	18.13	17.55
진안군	33.70	41.55	41.98	8.18	8.75	9.71	33.43	32.66	32.47
무주군	15.75	19.69	19.83	14.17	14.25	15.80	29.84	28.94	28.39
장수군	30.12	30.00	30.07	7.13	9.07	9.64	32.28	31.40	30.58
임실군	20.18	16.69	19.82	11.46	11.66	12.07	29.79	29.33	29.19
순창군	19.82	23.05	19.84	15.45	14.64	14.55	33.16	32.70	32.44
고창군	16.52	14.98	16.65	14.97	15.97	16.15	26.58	26.08	25.67
부안군	10.14	8.69	12.31	16.58	17.52	18.52	23.23	22.71	22.48

전라북도의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사회복지시설은 진안 및 김제, 장수 등의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많이 설치되어 있고, 영유아 보육시설의 경우 전주, 남원, 김제, 익산 등의 도시지역이 농촌지역보다는 다소 많이 설치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진안, 장수, 무주 등의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는 많이 설치되어 있다. 특히 노인시설의 경우 대부분 경로당으로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농촌지역은 먼단위 복지전달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로당을 활용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V-35〉 전라북도 민간복지전달체계 개선 방향

분야	이용시설 규모	거주시설 규모	가능조정 방향
A. 특성화	이용시설 多	생활시설 小	목적 : 복지시설 중복 완화 방향 : 이용시설의 특성화
B. 복합화	이용시설 小	생활시설 多	목적 : 생활시설의 개방화 방향 : 생활시설의 복합화
C. 기능전환	이용시설 小	생활시설 小	목적 : 복지시설 사각지대 해소 방향 : 경로당 등 마을거점 복지시설 기능전환

〈표V-75〉 전라북도 복지수요 대비 복지자원 현황

구분	사회서비스 수요자				복지기관			사회서비스기관				인구 만명당 사회 서비스 기관수	중위50% 인구 만명당 서비스 기관수	분류
	기초 수급자	노인	청년	중위 소득 120% 미만	사회 복지 관	장애 인 복지 관	노인 복지 관	지역사 회 서비스 제공기 관	가사간 병 방문지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 리	전체			
합계	102,190	339,248	451,215	1,404,189	16	12	16	319	28	11	358	5.54	2.57	
전주	29,729	80,987	179,022	490,763	5	2	7	77	5	9	91	3.35	1.90	
군산	14,120	42,444	70,837	208,996	1	1	1	45	4	1	50	1.66	2.39	부족
익산	17,367	48,227	76,394	226,260	3	1	1	45	3		48	4.17	2.12	
정읍	8,530	28,182	23,295	86,725	1	1	2	30	1		31	3.68	3.57	
남원	5,971	20,654	16,396	63,394	1	1		17	4	1	22	2.51	3.47	
김제	7,780	24,727	17,028	66,100	3	1		23	2		25	2.62	3.78	
완주	4,889	18,705	22,879	71,897		1		27	1		28	10.74	3.89	
진안	1,484	8,135	4,370	19,629		1	1	10	1		11	4.41	5.60	
무주	1,263	7,502	4,436	18,787		1	1	2	1		3	1.27	1.60	부족
장수	1,465	6,928	4,090	17,792		1		7	1		8	2.65	4.50	
임실	1,793	9,480	5,595	22,739			2	11	2		13	4.34	5.72	
순창	1,432	9,178	5,533	22,552				8	1		9	1.65	4.43	부족
고창	3,070	17,722	10,906	45,630	1		1	5	1		6	1.05	1.31	부족
부안	3,297	16,377	10,434	42,925	1	1		12	1		13	0.07	3.03	부족

여기에 최근 크게 확대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경우도 지역별로 인프라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인구당 기준으로 복지수요대비 공급량을 분석해 보면, 군산, 무주, 순창, 고창, 부안 등의 지역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보편적 사회서비스의 확대를 위해서는 부족한 제공기관으로 분류되고 있는 지역의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이 요구된다.

〈표V-76〉 복지전달체계 분야 복지기준선

구분	정책목표 및 복지기준선	
정책목표		
공공 복지 확대	최저수준 모든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한다	읍면동 맞춤형 복지 설치율 77.6% (187개)
	적정수준 모든 읍면동에서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한다	
민간 복지 강화	최저수준 복지시설 이용율을 40.0%까지 향상시킨다	복지시설 이용율 20.3%
	적정수준 전체 지역주민의 복지시설의 이용율을 60%까지 향상시킨다	
사회 서비스 확대	최저수준 동일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2개 이상 등록 및 제공하도록 한다	제공기관 403개소
	적정수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등록율을 20%향상 시킨다	
지역 맞춤형 복지강화	최저수준 빈곤인구 밀집지역(10개 지역)의 거점복지기관을 지정운영한다	저소득빈곤가구 밀집지역 10개
	적정수준 이용복지시설의 지역수요에 맞게 지정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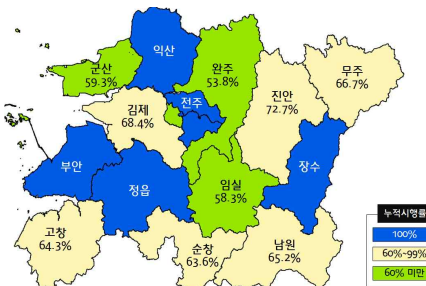
〈표V-77〉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현황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액	소계	37	45	56	70	97	104	125	177	215	250
	지투	37	45	56	70	97	104	74	120	150	189
	가사							30	33	36	37
	산모							21	24	29	24
이용자	소계	4,468	5,609	8,250	11,539	12,500	13,100	14,976	16,481	18,101	23,689
	지투	4,468	5,609	8,250	11,539	12,500	13,100	10,674	10,444	13,514	18,591
	가사							1,319	1,362	1,431	1,296
	산모							2,983	4,675	3,156	3,740
제공 인력	소계	286	359	528	719	800	950	2,014	2,181	2,138	2,721
	지투	286	359	528	719	800	950	1,117	1,118	1,132	1,622
	가사							492	538	559	598
	산모							405	525	447	501
제공 기관	소계							152	236	280	337
	지투							120	202	245	298
	가사							23	25	26	27
	산모							9	9	9	12
지투사업 수	29	31	35	50	62	70	71	80	30	34	29

(2) 복지전달체계 분야 복지기준선 달성을 위한 세부사업

전라북도의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기준선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까지 미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해야 한다. 전라북도의 경우 현재 241개 읍면동 중 아직까지 미설치 지역이 65개소에 이르고 있고, 이들 지역은 사례관리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문형 상담 등의 종합적인 복지제공이 어려운 지역이다

〈그림V-36〉 맞춤형 복지팀 추진실적(2017년 10월)



〈표 V-78〉 전라북도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설치 지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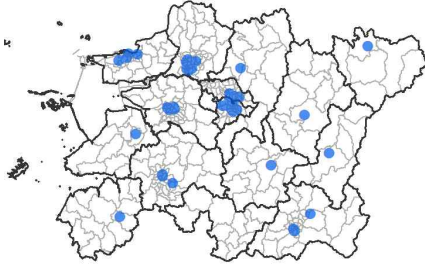
지역	설치 읍면	
군산시		
익산시	100.0%	9 오산면, 황등면, 함라면(웅포면, 성당면), 용안면, 낭산면,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 합열읍
정읍시	100.0%	15 북면, 입암면, 소성면, 고부면, 영원면, 덕천면, 이평면, 정우면, 태인면, 감곡면, 웅동면, 칠보면, 산내면, 산외면, 신태인읍
남원시	65.2%	7 주천면(산동면, 수지면, 이백면), 금지면(주생면, 송동면, 대강면), 죽산면(성덕면, 부량면), 백산면(공덕면), 용지면, 청하면(만경읍), 금산면
완주군	68.4%	5 이서면, 고산면(비봉면, 동상면), 삼례읍, 봉동읍, 용진읍
진안군	53.8%	3 안천면(용담면, 상전면, 동향면), 마령면(백운면, 성수면), 진안읍
무주군	72.7%	1 무주읍
장수군	66.7%	2 장계면(천천면, 계남면, 계북면), 장수읍(산서면, 변암면)
임실군	100.0%	2 관촌면(운암면, 신평면, 신덕면), 강진면(청운면, 덕치면)
순창군	58.3%	3 동계면(인계면, 적성면), 구림면(북흥면, 상치면), 순창읍
고창군	63.6%	9 아산면, 공음면, 대산면, 심원면, 흥덕면, 성내면, 신림면, 보안면, 고창읍
부안군	64.3%	9 주산면, 동진면, 계화면(행안면, 상서면), 보안면, 변산면(진서면, 위도면), 백산면, 하서면, 줄포면, 부안읍

따라서 전술한 미설치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 앞서 맞춤형 복지팀이 설치되어 공공복지전달체계가 보다 촘촘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맞춤형 복지팀이 신설된 지역에도 3명의 인력만으로는 통합사례관리를 비롯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어렵다는 점에서 민간 사례관리인력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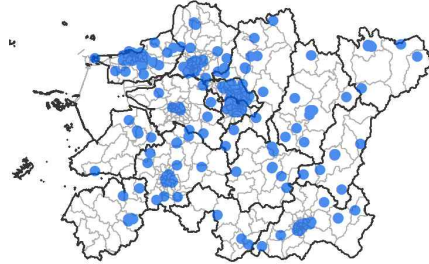
전라북도에서는 일부 시군에서 민간사례관리인력의 채용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복지자원의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고 이를 통해 읍면동의 주민센터가 공공 복지전달체계의 거점으로 운용되고 있다.

다음으로 민간복지시설의 경우도 현재 새롭게 복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보다는 지역의 복지서비스의 공급기반에 기초하여 기존 복지시설의 기능조정을 통해 부족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는 이용복지시설의 경우는 특성화를 통해서 도시지역주민의 특화된 복지 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복지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의 복지시설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합화 혹은 기능통합 등의 방식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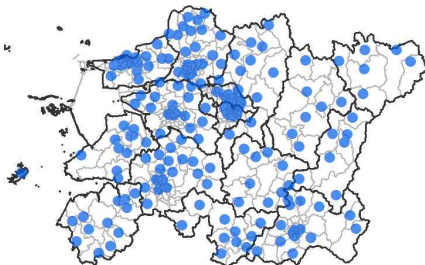
〈그림V-38〉 사례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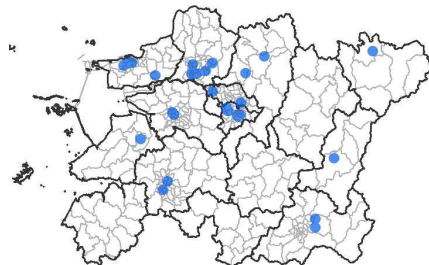
〈그림V-39〉 돌봄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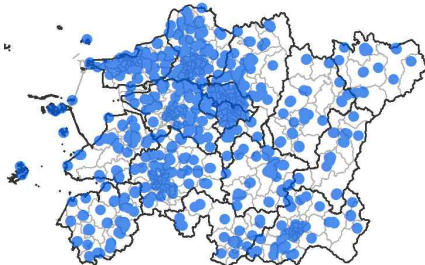
〈그림V-40〉 지역조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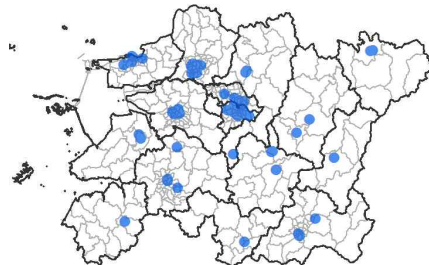
〈그림V-41〉 장애인차별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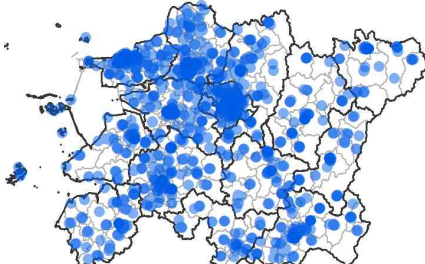
〈그림V-42〉 교육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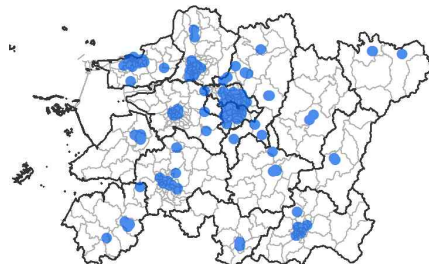
〈그림V-43〉 지역사회보호



〈그림V-44〉 전체사업



〈그림V-45〉 건강지원



〈표V-79〉 전라북도 잠재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구분	합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총계	1,005	294	110	150	86	46	49	96	38	24	19	18	22	16	37
마을기업	99	5	6(3)	10(3)	15(2)	6	7	11(2)	6(1)	7(3)	3	6	8	1	8(1)
사회서비스 적합 마을기업	15개	관광체험 11개 기관(군산, 익산, 정읍, 완주, 진안, 무주, 부안 등 7개 지역) 기관 . 기타 4개 기관													
사회적 기업	전체	153	62	15	15	9	8	7	5	4	1	2	5	9	7
	인증	99	42	9	10	7	4	4	2	4	1	1	1	5	7
	예비	54	20	6	5	2	4	3	3	0	0	1	4	4	0
	지역형	예비 41	18	5	2	1	1	3	3	0	0	1	2	3	0
	부처형	13	2	1	3	1	3	0	0	0	0	2	1	0	0
사회서비스 적합 사회적기업	37개 기관	보건복지 분야 사회적 기업 : 21개소 교육분야 사회적 기업 : 3개소 문화예술분야 사회적 기업 13개소													
협동조합	690	253	73	104	42	38	19	73	17	17	8	12	9	9	16
사회서비스 적합 협동조합	117개 기관	보건복지 분야 21개 기관(전주, 군산, 익산, 남원, 완주, 무주, 임실 등) 교육 분야 : 41개 기관(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무주, 장수, 고창, 부안 등 11개 지역) 문화여가 분야 : 55개 기관(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완주, 무주, 장수, 임실, 부안 등 10개 지역)													

특히, 지역별로 복지서비스의 제공기반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의 신규등록을 통해 복지욕구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시설과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현황에 대한 교차점검을 통해서 부족한 지역의 복지서비스를 사회서비스가 보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표V-80〉 전라북도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구분	영유아(0~만5세)			아동청소년(6~만20세)			청장년(21~만64세)			노인(만65세~)			2017년 계획
	인구수	제공기관수	적정기관수	인구수	제공기관수	적정기관수	인구수	제공기관수	적정기관수	인구수	제공기관수	적정기관수	
전주	34,479	8	4	119,853	51	60	415,857	1	5	81,555	14	16	전체 기관 확대
군산	15,514	2	2	45,588	30	23	173,639	0	2	42,810	10	8	청장년 기관 확대
익산	14,425	2	1	49,621	27	25	187,902	1	2	48,531	7	10	노인기관 확대
정읍	4,520	0	1	17,244	21	9	65,181	0	1	28,228	9	6	청장년 기관 확대
남원	3,331	0	1	12,893	13	7	47,253	0	1	20,711	4	4	
김제	3,183	0	1	10,862	18	6	48,887	0	1	24,850	4	4	
완주	5,617	3	1	14,041	14	7	57,009	1	1	18,813	7	4	
진안	1,000	0	1	2,925	6	2	14,011	0	1	8,133	2	2	
무주	875	0	1	2,973	2	2	13,574	0	1	7,527	0	2	청장년 노인기관 확대
장수	912	1	1	2,854	5	2	12,888	0	1	6,974	0	2	노인기관 확대
임실	1,094	0	1	3,319	2	2	16,232	3	1	9,552	5	2	
순창	1,156	0	1	3,743	5	2	15,857	0	1	9,193	2	2	
고창	1,933	0	1	7,886	4	4	32,921	0	1	17,857	1	4	노인기관 확대
부안	1,884	0	1	7,018	8	4	31,634	0	1	16,469	3	4	청장년 노인기관 확대
계	89,923	16	18	300,820	206	155	1,132,845	6	20	341,203	68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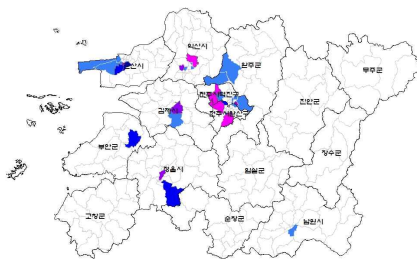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기초수급자와 장애연금 등 주요 복지수급자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간단위 맞춤형 전달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즉, 왕궁(익산), 대신, 노암(남원), 평화1(전주) 등의 지역은 전체 인구대비 20%가 빈곤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빈곤문화해소를 통한 탈빈곤 강화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만, 왕궁면은 수급자의 평균연령이 65.4세로 고령인구(수급자의 65.1%가 노인으로 구성)가 다수 차지하고 있어 취약지역 관리대응 필요하다.

〈표V-81〉 전라북도 복지수급자 인구순위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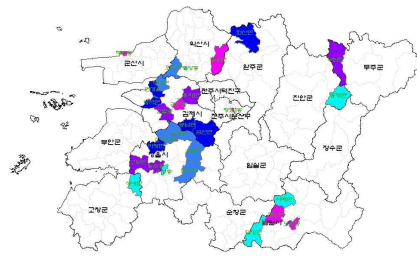
구분	기초수급자			자활참여자			긴급복지지원			장애인연금			전체			전체인구대비 구성비		
	시군	지역	인구	시군	지역	인구	시군	지역	인구	시군	지역	인구	시군	지역	인구	시군	지역	인구
1위	전주	효자4동	2,556	정읍	수성동	182	정읍	수성동	119	전주	평화2동	455	전주	효자4동	74,417	익산	왕궁면	23.22
2위	전주	평화2동	2,448	전주	효자4동	168	군산	나운2동	108	익산	삼성동	417	전주	평화2동	45,212	남원	대산면	21.41
3위	전주	평화1동	2,435	정읍	내장상동	147	김제	신평동	104	전주	효자4동	332	익산	삼성동	33,393	남원	노암동	21.21
4위	익산	삼성동	2,402	전주	평화1동	139	김제	검산동	103	익산	왕궁면	329	전주	평화1동	14,302	전주	평화1동	20.91
5위	익산	동산동	2,010	익산	삼성동	130	고창	고창읍	97	전주	평화1동	325	군산	나운2동	26,355	군산	해신동	17.00
6위	군산	나운2동	1,966	전주	평화2동	124	전주	평화1동	92	군산	나운2동	308	익산	동산동	23,494	김제	검산동	16.86
7위	익산	모현동	1,720	익산	동산동	107	전주	인후3동	89	익산	동산동	260	정읍	수성동	19,338	김제	용지면	15.13
8위	정읍	수성동	1,714	익산	모현동	107	정읍	내장상동	85	김제	검산동	251	익산	모현동	41,051	정읍	농소동	14.69
9위	전주	인후3동	1,685	군산	나운2동	106	전주	우아2동	76	부안	부안읍	248	전주	인후3동	35,207	김제	교월동	13.87
10위	김제	검산동	1,541	군산	개정동	104	부안	부안읍	75	익산	모현동	240	김제	검산동	11,795	정읍	고부면	13.59

자료 : 사회보장정보원 전북 수급자 data 통합분석

〈그림V-46〉 기초생활수급자 다수거주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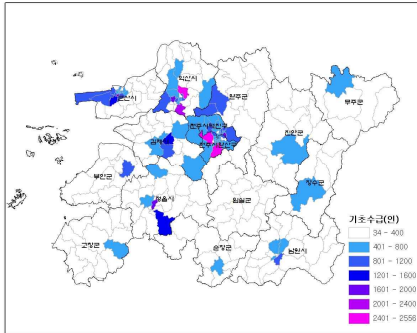
〈그림V-47〉 전체 인구대비 복지수급자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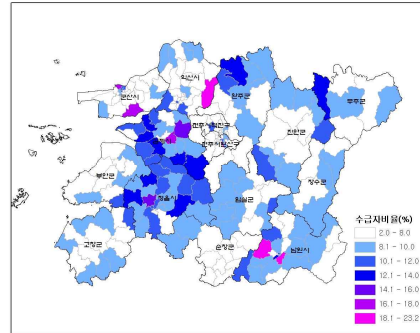
〈표V-82〉 전라북도 빈곤취약지역 특성

구분	평균연령	소득인정액	특징
효자4동, 평화2동, 평화1동	32.8세~50.3세	30만원 전후(전주 평균 50.3만원)	(효자4동) 높은 청장년비율
왕궁면	65.4세	36.6만원(군산 평균 58.2만원)	수급자 중 노인인구 65.1%
대산면, 노암동	47.8세~59.2세	15.5만원~45.6만원(남원 평균 57.8만원)	평균가구원수 1.3명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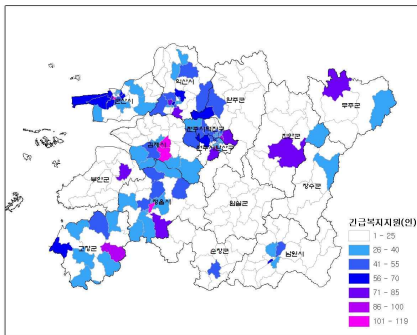
〈그림 V-48〉 기초생활수급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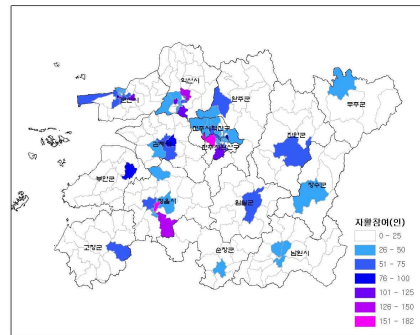
〈그림 V-49〉 기초생활수급자(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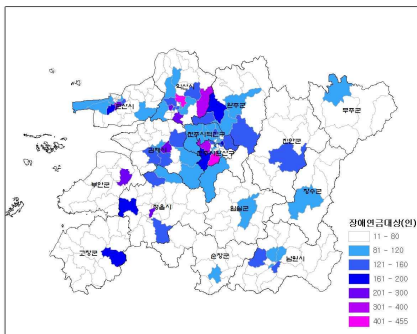
〈그림 V-50〉 긴급복지지원자 수



〈그림 V-51〉 자활참여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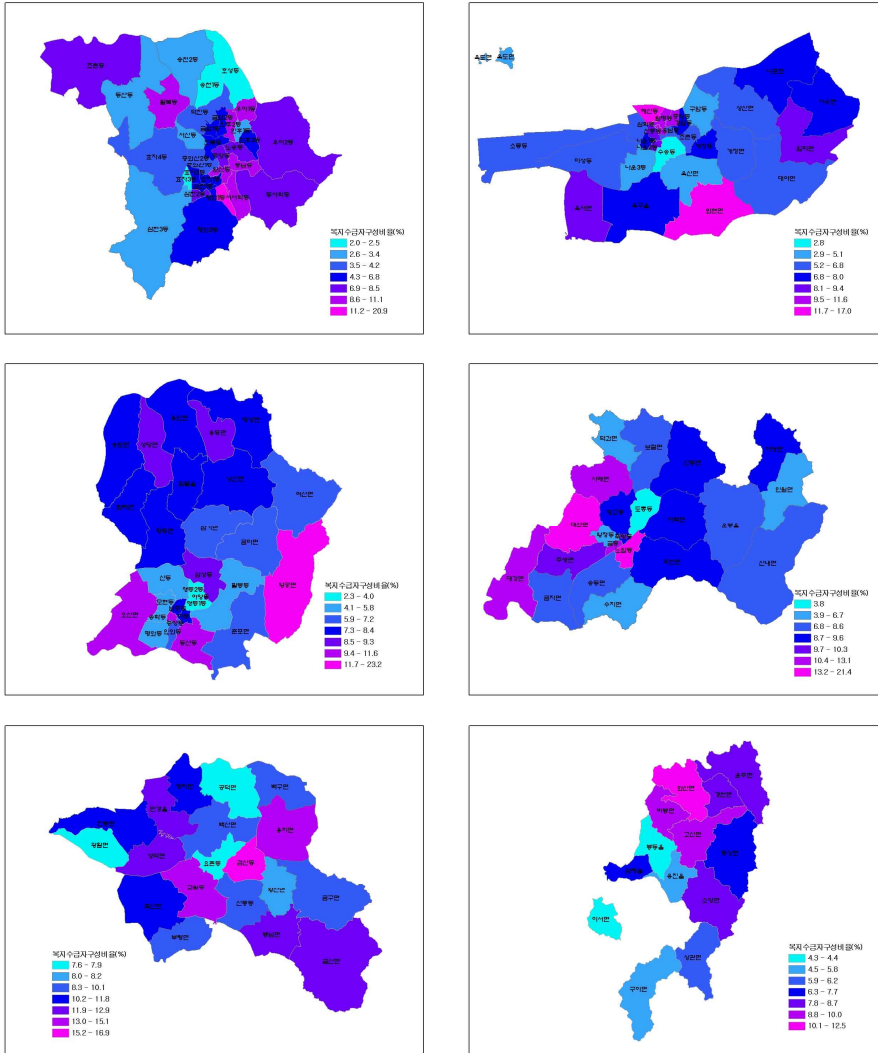


〈그림 V-52〉 장애연금수급자(수)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각 지역별 복지수요에 대한 진단을 기초로 민간복지시설과 공공 복지기관의 역할과 사업의 내용을 특성화하여 지역별로 지역주민의 복지수요에 민간과 공공의 복지전달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림 V-53〉 복지수급자 구성비



또한 신규 복지시설에 대한 설치시 지역별로 복지대상자의 유형과 분포를 고려하여 최적의 공간에 배치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신규배치는 주로 복지수요에 대한 진단을 기초로 설치되기보다는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공간에 대한 고민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도민의 복지접근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각 지역별 복지수요에 대한 진단을 기초로 최적지를 선정하여 민간과 공공의 복지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 국가인권위원회(2016),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국립중앙의료원(2016), 공공보건의료 통계집
국립중앙의료원(2016), 공공보건의료 통계집
국민건강보험공단(2016), 2016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2016), 장기요양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2017), 영유아 건강검진 자료
국토교통부(2017),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
국회예산정책처(2017),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기획예산처(2017),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김경혜 외(2012), 서울시민 복지기준 설정연구용역, 서울연구원
김미곤 외(2016), 세종시민 복지기준 수립 연구, 한국보선사회연구원
김영경(2017), 사회공헌형 일자리 활성화 방안 연구, 경성대학교 일반대학원
변재관(1998), 한국의 사회보장과 국민복지기본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2015),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보고서
보건복지부(2016), 2015년도 보건소 치매환자 등록자 현황
보건복지부(2016), 노인학대현황
보건복지부(2016),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6
보건복지부(2017), 2016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2017), 2017 아동복지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현황
보건복지부(2017), 건강검진사업 안내
보건복지부(2017), 국가치매관리 정책 추진방향
보건복지부(각연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
사회복지협의회(2016), 공공데이터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2018), 공공급식지원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양철호 외(2015), 광주시민복지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 동신대학교산학협력단
여성가족부(2015), 아이돌봄 서비스이용현황
여성가족부(2016), 청소년백서

오윤섭(2016), 사회보장제도 평가체계 내실화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2016), 2016 유아교육 보육 주요통계
 이중섭(2015), 2015년 전라북도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 전북연구원
 이태진(2015), 2015년 사회보장통계구축 및 관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일식 외(2018), 노인범죄의 증가에 따른 경찰의 대응방안 연구, 한국경찰연구학회
 전라북도(2017), 보육시설 이용율
 정경희 외(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17),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실태조사 의결 재구성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2016), 전국지역아동센터통계조사보고서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2017), 지역아동센터 현황보고서
 질병관리본부(2018), 예방접종 일정표
 초의수 외(2015), 부산시민복지기준 수립 연구, 부산복지개발원
 최승호(2017), 충청북도 노인자살 진단, 충북연구원
 통계청(2016),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2016), 지역별 주요질병현황
 통계청(2016), 행정구역별 경제활동인구 현황
 통계청(2017), 2017 고령자 통계
 통계청(2017), 노인1인가구 현황
 통계청(각연도), 초중고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
 한국노동연구원(2017), 한국노동패널 18차 원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6), 2016 노인일자리 통계동향,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6), 2017 장애인통계집,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6), 장애인고용율
 한국장애인고용공단(각연도), 장애인인구 및 취업동향
 한국장애인고용연구원(2016), 2016 장애인통계
 한국장애인총연맹(2017), 2016 장애인복지비교
 한동우 외(2017), 전남복지기준선 설정 및 중장기계획수립, 전남복지재단
 행자부(2016), 주민등록인구통계

기획연구 2018-03
전라북도 복지기준선 설정을 위한 기초연구

발행인 | 김 선 기

발행일 | 2018년 3월 30일

발행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247-9 9333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